발간등록번호
57-3720018-000001-11

議政白書

제5집 [제3대 후반기]

蔚山廣域市北區議會

발 간 등 록 번 호
57-3720018-000001-11

제 5 집

議政白書

-제3대 후반기-

(2004. 7. 1 ~ 2006. 6. 30)

蔚山廣域市北區議會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www.bukgu.ulsan.kr

북구의 상징

마 크

- 녹색부분 산, 육지 – 자연
- 파랑부분 바다 – 자연
- 주황색원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 공단
- 의미 전체적으로 산과 바다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연과 산업 중 어느 한곳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지역발전의 모습을 의미.

캐릭터

- 컨 셉 든든한 북구, 달리는 북구, 아이디어 북구
- 형 태 돌고래
- 의 미 강한 생명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젊고 높은 지능의 돌고래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반짝이는 아이디어, 새로운 탄생,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

상징물

구화 참나리

청초 우아함과 순결함을 지닌 꽃으로 번식력이 강하여 신설 북구의 깨끗함과 번영을 상징함.

구목 느티나무

화합, 번영, 안정성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장수성 나무로서 북구의 힘찬 번영과 도약을 의미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북구의 희망을 상징함.

구조 산까치

친숙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새로 더불어 사는 북구의 희망과 친환경성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상징함.

발 간 사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우리 북구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기록하게 될 『제5집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되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의정백서는 제3대 북구의회 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록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생생한 역사기록으로써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지역의 중요한 역사의 문헌이라 생각하여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였으며, 완벽한 자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중요한 의정활동의 자료 제공과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의회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정백서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북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유 재 건**

축 사

풀뿌리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자료로써 남게 되길....

「의정백서」발간을 축하하며.....

깊어가는 가을 정취와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제3대 의회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한 제5집 북구의회 의정백서 발간을 15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여년의 세월속에서 우리 북구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끊임없이 연구 · 노력하여 구정발전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써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역사는 기록에 의해서 그 의미가 부여되고 기록된 역사는 후세에 교훈이 될 때에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 북구의회 의정백서가 북구 역사에 중요한 역할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자료로써 남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만큼 집행기관과 의회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견제나 균형이 아니라 상호보완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서 우리 북구를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로 만들어 갈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간하는 제5집 의정백서가 다시 한번 지방의회사에 길이 남을 의정지로써 자리매김 할 것이라 믿으며 2006년 제5집 의정백서의 발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6. 12.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강 석 구**

축 사

시대변화를 앞당기고 선도하는 길라잡이가 되길....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의정활동의 기록을 보존하고 의정사의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3대 북구의회 후반기 의정백서의 출간을 15만 북구주민과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우리 북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경제전반의 여건 조성은 물론 여성, 환경, 레저, 보건위생 등 주민생활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둬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열정을 쏟아 봉사해 오신 북구의회 의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정백서는 의회의 얼굴이요 거울입니다.
북구의 과거를 통해 현재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내다보는 창으로서 든든한 기초 자료가 되고 주민들의 대변자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대의기관의 역할을 통해 시대변화를 앞당기고 선도하는 길라잡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정백서는 또한 의회의 타임캡슐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소중한 목소리를 간직하는 메모리 박스로서 의회기능의 중심에는 항상 주민들이 있다는 의미를 되새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의정백서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 · 현직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국회의원 **윤 두 환**

제3대 북구의회의원일람

의 장 단

(재임기간:2004. 7. 7 ~ 2006. 6. 30)

의장

하 인 규

부의장

이 재 경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후반기 원구성(2004. 7. 7)

第3代 議員現況 (임기 2002. 7. 1 - 2006. 6. 30)

선거구	성 명	학력 및 경력	주소 · 전화
농소1동	 이 재 경 (56. 4. 25)	■학력 - 농소중학교 졸업 - 신라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 - 공수특전사 중사 전역 - 농소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농소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이사 - 교육공동체울산시민연합공동대표 - 지체장애인북구협회후원회회장 -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회장 - 북울산라이온스클럽1부회장 - 북구생활체육협의회부회장 - 국민생활체육울산광역시육상연합회장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88-9 ☎282-8935 (사)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88-9 ☎295-5891 (E-mail) Ljkgo2@hanmail.net 011-583-7200
농소2동	 김 재 근 (58. 9. 11)	■학력 - 김해 합성초등학교 졸업 - 김해중학교 졸업 - 김해농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육군병장 만기전역 - 현대자동차노동조합1~10대 대의원 역임 - 현대자동차노동조합2,4,8,9대 대의원 대표 역임 - 울산여성회 자문위원 - 농소지구APT체육연합회 고문 -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회원 - 울산광역시국립대유치위원회공동상임위원장 - 북구도시계획심의위원 - 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역임 - 현대자동차 재직중	(자)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32 매곡현대A 105/504 ☎935-2365 (E-mail) jgkimmm@hananet.net 011-9557-8473
농소3동	 김 대 영 (60. 2. 2)	■학력 - 부산 괴정초등학교 졸업 - 송도중학교 졸업 - 동아고등학교 졸업 ■경력 - 육군하사 만기전역 - 현대자동차노동조합대의원 역임 - 현대자동차노동조합대의원 대표 역임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조직실장 역임 - 울산여성회북구지부 자문위원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 - 현대자동차 재직중	(자)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107-7 그린카운티A 303/203 ☎295-1291 (E-mail) dbkdy@hanmail.net 011-860-9744 ※ 임기(2002. 7. 1 ~ 2006. 4. 10)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의원직 사직

第3代 議員現況 (임기 2002. 7. 1 - 2006. 6. 30)

선거구	성 명	학력 및 경력	주소 · 전화
강동동	 윤 임 지 (52. 10. 15)	■학력 - 강동초등학교 졸업 - 강동중학교 졸업 - 울산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 - 경상남도 농민후계자회 감사2선 역임 - 울주군 농민후계자회 회장 역임 - 울주군 재향군인회 이사 - 강동농업협동조합 이사 - 강동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울산광역시 북구 농업경영인연합회 고문 -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자협회 부회장 - 울산광역시 새농민회 부회장 - 울산광역시 농업동지회 회장	(자) 울산광역시북구 신현동 596-1 ☎295-5598 (사) 울산광역시북구정자동 173-7 ☎295-8833 (E-mail) mi55982@nate.com 017-564-8833
효문동	 유 재 건 (61. 2. 5)	■학력 - 울산고등학교 졸업 - 용인대학교 졸업 ■경력 - 동울산청년회의소 상임부회장 역임 - 제2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역임 - 연암초등학교 운영위원 - 재울용인대학교 동문회장 - 효문동 환경정화위원회 회장 - 효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울산광역시유도회 이사 - 북구도시계획 심의위원 - 북구공공근로심의위원회위원장 - 효문동 청소년환경봉사단 단장 - 재성종합상사 대표	(자)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80-6 ☎288-0203 (사)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32-1 재성종합상사 ☎287-5060 (E-mail) 0203rj@hanmail.net 017-558-8931
송정동	 김 진 영 (64. 10. 11)	■학력 - 송정초등학교 졸업 - 울산중학교 졸업 - 울산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 - 현대엔진노동조합부위원장 역임 - 민노당북구지구당부위원장 역임 - 제2대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역임 -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조직전문위원 - 송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이사 - 송정동 청년회 총무 - 울산공고 총동창회 부회장 - 화봉조기회 부회장 - 울산핵발전소 반대공동집행위원 - 통일산악회 북구지부장 - 제3대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역임 - 현대중공업 재직중	(자)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635-1 효성삼환A 109-103 ☎288-8795 (homepage) http://jinyoung.pe.kr (E-mail) gim8793@hanmail.net 018-592-1003

第3代 議員現況 (임기 2002. 7. 1 - 2006. 6. 30)

선거구	성 명	학력 및 경력	주소 · 전화
양정동	 유 인 목 (61. 12. 30)	■학력 - 학성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졸업 ■경력 - 현대자동차써비스노동조합 신울산지부장 - 현대자동차노동조합판매본부 부본부장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지도위원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울산지부 고문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역임 -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위한북구연대 집행위원장 역임	(자)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64-1 문화아트빌 202 ☎287-5644 (사) ☎288-8333 (E-mail) ryoo1604@yahoo.co.kr 011-573-1604
염포동	 하 인 규 (59. 9. 17)	■학력 - 하동 가종초등학교 졸업 - 하동 옥종중학교 졸업 - 하동 옥종고등학교 졸업 ■경력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임시집행부 부위원장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2대 총무부장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7대 대의원 대표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6대 후생복지부장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7대 회계감사 - 참여자치연대 · 울산환경운동연합회원 - 전국반핵운동연대공동대표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326 성원쌍떼빌A 111/1203 ☎289-8518 (E-mail) haik8518@hanmail.net 017-703-1611

寫眞으로 보는 議政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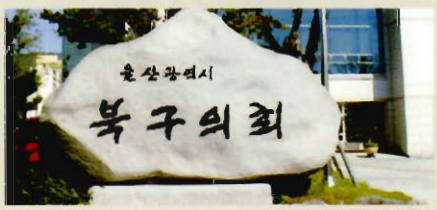

제3대북구의회 후반기 원구성(2004. 7. 7)

2003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2004. 7. 15)

2004 북구 경로잔치 및 실버가요제 참석(2004. 10. 15)

제1회 울산광역시 구·군 선출직 친선축구대회 참석 - 우승(2004. 10. 30)

제77회 임시회 - 정자천 소교량가설 현장확인(2004. 11. 23)

제77회 임시회 - 양정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현장확인(2004. 11. 24)

제78회 제2차정례회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요원 방청(2004. 12. 1)

무룡산등반 및 산불예방 캠페인(2004. 12. 20)

의원 및 관계공무원 특별연수(2005. 2. 14 ~ 16)

안성민교수 초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회(2005. 3. 30)

의원 간담회(2005. 5. 19)

1일 명예교사 수업 및 1일 구정체험의 날 행사(2005. 6. 17)

제83회 제1차정례회 - 2004회계연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2005. 7. 1 ~ 15)

경주시 방폐장 유치반대 기자회견(2005. 8. 23)

경주시 방폐장 유치관련 헌법소원 접수 기자회견(2005. 11. 28)

제86회 제2차정례회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2005. 11. 29)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 효문운동장 조성공사 현장(2005. 12.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 원지노인요양시설 예정부지(2005. 12. 3)

국립대학 북구유치 추진단 창립총회(2005. 12. 13)

울산국립대학교 북구유치 추진단 기자회견(2005. 12. 15)

국립대학 북구유치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2006. 1. 4)

상반기 의원 및 직원 특별 연수(2006. 2. 6)

효문운동장 개장식 참석(2006. 3. 25)

제3대 북구의회 의원 이임식(2006. 6. 27)

目　　次

■ 발간사

■ 축　사

■ 제3대 북구의회의원 일람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41

제2절 의회연혁 ····· 43

제3절 의회일반현황 ····· 45

1. 제3대(후반기)의회 원구성 ····· 45
2. 의회기구 ····· 46
3. 의원현황(직업,학력,연령,성별) ····· 46
4. 의회예산현황('04, '05, '06년도) ····· 47
5. 의사당 시설현황 ····· 48
6. 사무과 직원현황 ····· 48
7. 의회의 권한 ····· 49
8. 의회의 역할 ····· 50

제4절 구정기본현황 ····· 51
1. 지역여건 ····· 51
2. 구정현황 ····· 51
3. 구민생활지표 ····· 52
4. 동별 인구·면적 현황 ····· 54
5. 울산광역시 구·군 일반현황 ····· 55

제2장 의회운영현황

제1절 집회현황 ····· 59
1. 의회역대 집회현황 ····· 59
2. 연도별 집회현황 ····· 59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현황 ····· 60
제2절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 61
제3절 안건별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 62

제3장 제3대 후반기 개회상황

제1절 제74회 제1차정례회 ····· 121
1. 개회이유 ····· 121
2. 개회사 ····· 121
3. 의사일정 ····· 123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25

□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 ····· 125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99호) ····· 129
제2절 제75회 임시회 ····· 132
1. 개회이유 ····· 132
2. 개 회 사 ····· 132
3. 의사일정 ····· 134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34
□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 134
제3절 제76회 임시회 ····· 142
1. 개회이유 ····· 142
2. 개 회 사 ····· 142
3. 의사일정 ····· 144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46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 146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18호) ····· 147
□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호) ····· 148
제4절 제77회 임시회 ····· 150
1. 개회이유 ····· 150
2. 개 회 사 ····· 150
3. 의사일정 ····· 151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52

□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호) ····· 152
□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23호) ····· 154
제5절 제78회 제2차정례회 ····· 156
1. 개회이유 ····· 156
2. 개 회 사 ····· 156
3. 의사일정 ····· 158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62
□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안번호 제124호) ·· 162
□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안(의안번호 제125호) ·· 164
□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안(의안번호 제126호) ····· 166
제6절 제79회 임시회 ····· 168
1. 개회이유 ····· 168
2. 개 회 사 ····· 168
3. 의사일정 ····· 170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71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의안번호 제132호) ····· 171
□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33호) ····· 173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35호) ····· 175
제7절 제80회 임시회 ····· 176
1. 개회이유 ····· 176
2. 개 회 사 ····· 176
3. 의사일정 ····· 178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80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0호) ····· 180
□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 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1호) ····· 182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 183
□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39호) ····· 184
□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심의보류) ····· 184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3호) ····· 185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44호) ·· 186
제8절 제81회 임시회 ····· 188
1. 개회이유 ····· 188
2. 개 회 사 ····· 188
3. 의사일정 ····· 190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91
□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6호) ····· 191
□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7호) ····· 194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8호) ····· 195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9호) ····· 197
제9절 제82회 임시회 ····· 199
1. 개회이유 ····· 199
2. 개 회 사 ····· 199
3. 의사일정 ····· 20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05
□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 205
□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 ····· 209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1호) ····· 210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호) ····· 211
□ 울산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53호) ····· 212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 ····· 215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 217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호) ····· 218
□ 울산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 ····· 219
□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1호) ·· 221
□ 울산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 ····· 223

□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5호) ····· 224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철회촉구결의안
(의안번호 제165호) ····· 226
제10절 제83회 제1차정례회 ····· 228
1. 개회이유 ····· 228
2. 개 회 사 ····· 229
3. 의사일정 ····· 231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33
□ 울산광역시북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 ····· 233
□ 울산광역시북구개발제한구역훼손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안번호 제168호) ····· 234
□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호) ····· 236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67호) ····· 237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자원화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76호) ····· 238
□ 울산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75호) 247
□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3호) ····· 249
□ 울산광역시북구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74호) ····· 250
제11절 제84회 임시회 ····· 251
1. 개회이유 ····· 251

2. 개 회 사 ····· 251
3. 의사일정 ····· 253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54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 254
□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7호) 256
□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8호) ····· 257
□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79호) ····· 258
□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80호) ····· 260
□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 261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 ····· 263
제12절 제85회 임시회 ····· 264
1. 개회이유 ····· 264
2. 개 회 사 ····· 264
3. 의사일정 ····· 266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68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90호) ····· 268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6호) ····· 269
□ 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85호) ·· 271

□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안번호 제187호) ···· 273
□ 울산광역시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88호) ·· 275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9호) ····· 276
제13절 제86회 제2차정례회 ····· 279
1. 개회이유 ····· 279
2. 개 회 사 ····· 279
3. 의사일정 ····· 281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84
□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95호) ····· 284
□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 ····· 286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0호) ····· 288
제14절 제87회 임시회 ····· 290
1. 개회이유 ····· 290
2. 개 회 사 ····· 290
3. 의사일정 ····· 29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94
□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03호) ····· 294
□ 울산광역시북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 ····· 295

제15절 제88회 임시회 ····· 298

1. 개회이유 ····· 298

2. 개 회 사 ····· 299

3. 의사일정 ····· 301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303

□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 303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7호) ····· 304

□ 울산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 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 308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 309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 311

□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1호) ····· 312

□ 울산광역시북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의안번호제212호) ····· 314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5호) ····· 315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 ····· 316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7호) ····· 318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 제213호) ····· 319

제16절 제89회 임시회 ····· 320

1. 개회이유 ····· 320

2. 개 회 사 ····· 320

3. 의사일정 ····· 323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323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 323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1호) ····· 327

□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9호) ····· 328

□ 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 330

□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22호) ····· 332

제4장 예산 · 결산심의사항

제 1절 2003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 건 ····· 337

제 2절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42

제 3절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44

제 4절 2004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49

제 5절 2005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 353

제 6절 200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58

제 7절 2004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 건 ····· 362

제 8절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66

제 9절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68
제10절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373
제11절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78
제12절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83

제5장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1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387
1. 감사개요 ····· 387
2. 감사실시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 ····· 388
3.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 389
4. 행정사무감사일정 ····· 390
제2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392
1. 감사실시 개요 ····· 392
2. 감사실시 경과 ····· 393
3. 주요 감사실시 내용 ····· 396
제3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411
제4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413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 413
2.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 41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5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460

1. 감사개요 ····· 460

2. 감사실시 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 ····· 461

3. 감사자료 제출요구 ····· 462

4. 감사실시 방법 및 일정 ····· 462

제6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465

1. 감사실시 개요 ····· 465

2. 감사실시 경과 ····· 466

3. 주요 감사실시 내용 ····· 470

제7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484

제8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485

1. 시정·건의 요구사항 현황 ····· 485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 486

제6장 기타의정활동

제1절 5분 자유발언 ····· 535

제2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 537

제3절 주요의정활동사항 ····· 549

1. 공무원노동조합노동3권보장입법촉구결의안 ····· 549

2. 수산자원보호령촉구결의안 ····· 550
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철회 촉구결의안 ····· 551
4. 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파업 징계최소화 촉구결의안 ····· 552
5. 경주시 방폐장 유치 철회를 위한 의정활동 ····· 553
6. 울산국립대학교 북구유치를 위한 의정활동 ····· 554

제4절 의정활동일지 ····· 558

〔附 錄〕

1. 역대 의장단 명단 ····· 595
2. 초대의원 명단 ····· 596
3. 초대의원 사진 ····· 597
4. 제2대의원 명단 ····· 598
5. 제2대의원 사진 ····· 599
6. 제3대의원 명단 ····· 600
7.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97.7.15이전) ····· 601
8. 역대 구청장 명단 ····· 602
9.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 602
10. 역대 전문위원 명단 ····· 602

제 1 장
일반현황

제 1 절 우리고장의 연혁
제 2 절 의회 연혁
제 3 절 의회 일반현황
제 4 절 구정 기본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부족국가시대

○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하였으며, 굴아화촌이라는 촌락 형성

□ 삼국시대

○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에 지명을 하곡으로 개칭, 임관군에 속함.

□ 고려시대

○ 태조때 하곡, 동진, 우풍현을 합하여 흥려부로 승격

○ 제16대 현종때 울주로 개칭

□ 조선시대

○ 제3대 태종 13년 울주를 울산으로, 선조 31년 울산 도호부로 승격

○ 고종 32년 울산군으로 개칭

□ 근 대

○ 1941년 부군 정리폐합하는 지방제도 개편시 언양군을 울산군에 병합하고 울산면, 사항면, 대현면으로 행정구역개편

□ 현 대

○ 1962. 2. 1 : 각령 제403호로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 공포
(당시 농소면 송정리, 화봉리 편입)

○ 1962. 6. 1 : 법률 제1086호로 울산시로 승격

울산군을 울주군으로 명칭변경
(농소·강동면→울주군 편입)

○ 1985. 7. 15 : 대통령령 제11716호로 구제실시
(2구 1출장소 40개동, 중·남구)

○ 1988. 1. 1 : 대통령령 제12367호로 방어진출장소 설치

○ 1991. 1. 1 : 방어진출장소→동구청으로 승격(3구 40개동)
(울주군→울산군으로 명칭변경)

○ 1995. 1. 1 : 법률 제4081호로 울산시·군, 도·농통합
(울산군→울주구로 명칭변경)

○ 1995. 3. 2 : 농소면→농소읍으로 승격

○ 1996. 12. 31 : 법률 제5243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공포
(북구는 종전 울산시 중구 송정, 효문, 진장, 양정동과 울주군 농소읍, 강동면으로 구역획정)

○ 1997. 7. 15 : 울산광역시 및 북구설치〈신설〉 → 8개동
(농소읍→농소1, 2, 3동, 강동면→강동동으로 전환)

○ 1998. 3. 1 : 대통령령 제15652호 "광주광역시북구등4개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거 동구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 9개동

○ 1998. 10. 1 : 인구과소동 폐치분합 진장동·효문동 → 효문동(8개동)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1차 구조조정 지침〉

○ 2001. 6. 1 : 청사 소재지 변경
(남구 신정3동 585-9→북구 연암동 1004-1)

제2절 의회연혁

□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 ○ 1952. 4. 25 : 초대 읍·면의원 선거(56명)
- ○ 1956. 8. 8 : 제2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 1960. 12. 19 : 제3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 1961. 9. 1 : 울산읍·면의원 해산

□ 울산시 승격 이후

- ○ 1991. 3. 26 : 울산시의회의원 선거(50명)
- ○ 1991. 4. 15 : 초대 울산시의회 개원
  - 임기 : '91. 4. 15 ~ '95. 6. 30
- ○ 1992. 7. 12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중·남·동구 각 1명)
- ○ 1993. 7. 10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동구 1명)

□ 울산시·군 통합 이후

- ○ 1995. 1. 10 : 울산시·군 통합 울산시의회 개원(64명)
- ○ 1995. 6. 27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1995. 7. 11 : 제2대 울산시의회 개원(60명)
  - 임기 : '95. 7. 1 ~ '98. 6. 30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97. 7. 15 ~ '98. 6. 30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72명)

○ 1998. 3. 1 :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 제2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98. 7. 1 ~ 2002. 6. 30

○ 2000. 2. 21 :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02. 7. 1 ~ 2006. 6. 30

○ 2006. 5. 31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06. 7. 1 ~ 2010. 6. 30

제3절 의회일반현황

1. 제3대〈후반기〉의회 원구성

○ 의장단 선거【전반기 의장 임기중 선거】

2004년 6월 30일 10시에 개회된 제7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8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반기 의장인 김진영의장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에 하인규의원, 부의장에 이재경의원을 선출하였음.

○ 의장단선거 실시결과

- 투표참석 의원5명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실시
- 총 투표수 5표 중 무효와 기권 없이 하인규의원이 5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의장에 당선되었음.
- 총 투표수 5표 중 무효와 기권 없이 이재경의원이 5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부의장에 당선되었음.

2. 의회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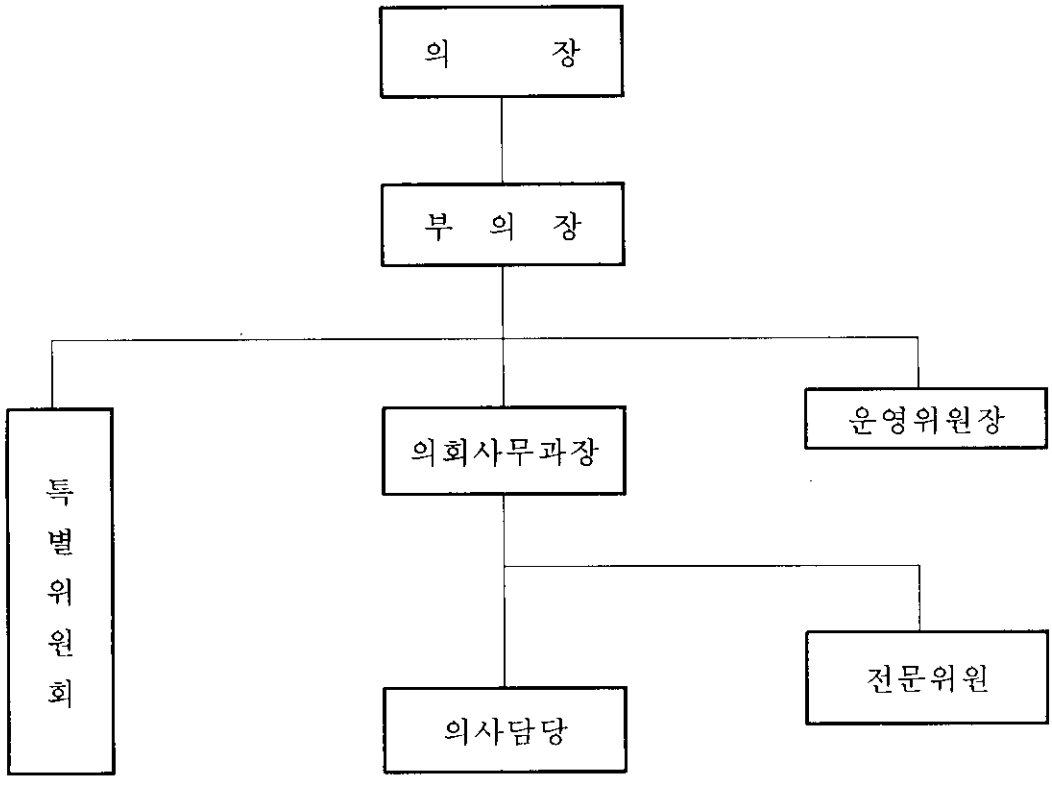

3. 의원현황

□ 의원정수

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8	1	1	1	1	1	1	1	1

□ 직업별

직업별 / 의원수	농 업	상 업	회사원	건설업	기 타
8	1	1	5	1	

□ 학력별

학력별 / 의원수	독학	국졸	중졸	고졸	대재	대졸
8				6		2

□ 연령별

연령별 / 의원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8			7	1	

□ 성 별

의 원 수	계	남	여	비고
8	8	8		

4. 의회예산(당초)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회 계		
	계	의사운영	의정활동
2002년도	623,408	436,056	187,352
2003년도	735,578	530,682	204,896
2004년도	803,439	598,543	204,896
2005년도	858,020	604,052	253,968
2006년도	899,138	616,022	283,116

5. 의사당 시설현황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 면적 : 북구청 5층 1,052㎡ (318평)

(단위 : ㎡(평))

시 설 명	전용면적	비 고
본 회 의 장	208.43(63.05)	
방 청 객 실	60.23(18.22)	
소 회 의 실	108.00((32.67)	
의 장 실	70.47(21.32)	
부 의 장 실	60.70(18.36)	
의 원 사 무 실	129.05(39.04)	2인1실 3개
민 원 접 견 실	72.00(21.78)	
의 회 사 무 과	117.43(35.52)	
전 문 위 원 실	36.00(10.89)	
방 송 실 등 5 실	189.40(57.29)	

6. 의회사무과 직원현황

직위 및 직급	정 원	현 원	비 고
계	13	13	
5급(과 장)	1	1	
5급(전문위원)	1	1	
6급(의사담당)	1	1	
7급(행 정 직)	3	3	
8급(행 정 직)	1	1	
9급(행 정 직)	1	1	
기 능 직	5	5	운전원1, 필기원2, 속기원2

7. 의회의 권한

○ 의결권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함.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는 통제권으로 매년 정례회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있음.

○ 자율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스스로 규율을 정함.

(회의규칙, 회기결정 등)

○ 선거권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등 선출

○ 청원처리권

주민이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함.

○ 의견표명권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건의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음.

8. 의회의 역할

○ 주민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
(선거지역뿐만 아니라 해당자치단체 전주민 대표)

○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역할

○ 입법기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역할

○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 보고, 승인, 질문, 행정사무감사·조사하는 역할

제4절 구정기본현황

1. 지역여건

○ 주거, 공단, 해양관광, 수산의 3개 권역별 지역·기능적 구분

○ 주민생활 및 의식이 도시·농촌적 요소 공존

○ 신개발지로서 도시기반시설 미비와 행정수요의 다양

2. 구정현황(2006. 6. 30.현재)

□ 면 적

○ 행정구역 —— 157.31㎢

○ 도시계획구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미지정)
116.63㎢	9.75	0.81	8.61	97.46	-

※ 개발제한구역 77.629㎢(49.35%)

□ 인 구

가 구	총 인 구 수			외국인 등록수
	계	남	여	
47,369세대	147,560명	76,862	70,698	1,066

□ 행정조직

○ 기 구

구 분	본 청	사 업 소	동
현 황	3국 1실 16과	1사업소(보건소)	8개동

○ 공 무 원

(정원/현원)

계	본 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
469/455	351/338	13/13	37/37	68/67

○ 예산(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2002년도	39,676	39,099	577	49.2%
2003년도	56,572	55,942	631	39.5%
2004년도	66,576	65,742	834	37.3%
2005년도	74,699	73,889	810	38.8%
2006년도	74,022	73,507	514	38.4%

3. 구민생활지표(2006. 6. 30.현재)

□ 보건복지

식품접객	공중위생	의료시설		생활보호대상자(세대/명)					생활폐기물 발생량(일평균)		1일분뇨 수거량 (수거율)
		기관	병상수	소계	일반	시설	조건부	특례	1인1일 발생량	총발생량	
1,383개소	348개소	119	527	931 / 1,889	899 / 1,637	8 / 8	3 / 217	24 / 27	0.71 kg	103.7 ton	66ton (100%)

□ 지역경제

경지면적				기업체		노조설립업체	
소 계	전	답	과수원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조합원수
2,483ha	919	1,408	156	828개	40,839명	18개	28,975명

□ 도시건설

도로				추택	상수도			하수도		
연장	도로율	포장도	포장율	보급률	1일 급수량	1인당1일 급수량	보급률	총인구	보급인구	보급률
488.6 km	9.14 %	161.66 km	95.8 %	38,317 105.44%	32,700 ton/일	326ℓ	92.3 %	147,560 명	94,512 명	64.1 %

□ 교 통

자동차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55,959대	43,947	2,991	8,648	373

□ 교 육

(개소/학생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32개소 / 33,215명	15 / 17,520	9 / 8,886	6 / 6,412		2 / 397

4. 동별 인구 · 면적현황(2006. 6. 30.현재)

구 분	면 적 (㎢)	법정동	인구수	지 역 여 건 및 특 성
계	157.31	27	147,560	
농소1동	14.91	4 (2개동중복)	22,031	농소라는 말은 고려 태조때의 박윤웅공의 **식읍지(食邑地)**인데서 생긴 말이며, 아파트단지가 많고 경주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로 **재래시장 및 신개발주거지역임**
농소2동	11.42	3 (2개동중복)	22,307	
농소3동	31.02	5	31,465	
강동동	60.67	9	4,927	강동지역은 신라초에 율포현이 있고 울산지역의 동쪽이며, 해수욕장과 산과 바다가 조화된 **천혜의 관광지역**이며 **국제규격의 강동축구장**이 있음
효문동	16.28	4	29,646	효문은 세종때 효자였던 송도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효문이라 하였으며,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많은 **준공업지역**임
송정동	10.79	2	14,705	송정은 큰 노송들이 많이 우거져있고 좋은 정자가 있었다하여 송정이라고 하였으며, 울산공항이 있고 북구 중심의 **교통요충지역임**
양정동	6.68	1	8,349	영조때 오정리와 양정리의 두마을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회사가 소재해 있고, **7,800여평의 양정생활체육공원**이 있음.
염포동	5.54	1	14,130	염포는 이조때 수군의 군사기지와 왜군회유책으로 개항한 **제포, 부산포와 함께 3포의 하나**였으며 현대하이스코, 현대모비스 회사가 소재하고 있음.

5. 울산광역시구·군 일반현황(2006. 6. 30.현재)

□ 인구·면적현황

구 분	면 적(㎢)	인 구 (명)			외 국 인 등록수(명)
		계	남	여	
계	1,056.7	1,097,986	565,406	532,580	8,922
중 구	37.0	236,385	120,706	115,679	898
남 구	71.6	347,905	177,435	170,470	1,766
동 구	35.8	188,069	98,662	89,407	2,469
북 구	**157.3**	**147,560**	**76,862**	**70,698**	**1,066**
울주군	755	178,067	91,741	86,326	2,723

□ 재정규모현황(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울산광역시	1,402,089	1,608,922	333,167	60%
중 구	93,574	89,440	4,134	23.1%
남 구	123,770	117,624	6,146	43.1%
동 구	71,616	70,684	933	38.8%
북 구	**74,022**	**73,507**	**514**	**38.4%**
울 주 군	279,634	262,608	17,027	50.5%

제 2 장
의회운영현황

제 1 절 집회현황
제 2 절 회기별 안건처리 현황
제 3 절 안건별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제1절 집회 현황

1. 의회역대 집회 현황

구 분	연 도	정 례 회		임 시 회		합 계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초대	계	1	35	9	25	10	60
	'97	1	35	4	11	5	46
	'98			5	14	5	14
제2대	계	6	140	36	184	42	324
	'98	1	35	6	31	7	66
	'99	1	35	11	45	12	80
	2000	2	35	8	45	10	80
	2001	2	35	9	45	11	80
	2002			2	18	2	18
제3대	계	8	152	29	168	37	320
	2002	2	35	5	27	7	62
	2003	2	35	8	45	10	80
	2004	2	34	8	46	10	80
	2005	2	48	5	29	7	77
	2006			3	21	3	21

2. 연도별 집회 현황

연 도	정 례 회		임 시 회		합 계		법정회기일수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계	15	327	74	377	89	704	
'97	1	35	4	11	5	46	연 80일 (정기회 35일이내)
'98	1	35	11	45	12	80	〃
'99	1	35	11	45	12	80	〃
2000	2	35	8	45	10	80	〃 (정례회 35일이내)
2001	2	35	9	45	11	80	〃
2002	2	35	7	45	9	80	〃
2003	2	35	8	45	10	80	〃
2004	2	34	8	46	10	80	〃
2005	2	48	5	29	7	77	연 80일
2006			3	21	3	21	〃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 현황

회 기	회 별	소 집 요 구 인	집회공고일	집 회 기 간	일수
제74회	정례회		2004. 7. 2	2004. 7. 7~ 7.16	10
제75회	임시회	김재근의원 외 2인	2004. 8.24	2004. 9. 1~ 9. 1	1
제76회	〃	김대영의원 외 2인	2004.10. 7	2004.10.15~10.26	12
제77회	〃	김대영의원 외 2인	2004.11.16	2004.11.23~11.24	2
제78회	정례회		2004.11.17	2004.11.25~12.18	24
제79회	임시회	김대영의원 외 2인	2004.12.13	2004.12.20~12.24	5
제80회	〃	김대영의원 외 2인	2005. 2.11	2005. 2.18~ 2.28	11
제81회	〃	김대영의원 외 2인	2005. 3.24	2005. 3.30~ 3.31	2
제82회	〃	김대영의원 외 2인	2005. 5.13	2005. 5.19~ 5.27	9
제83회	정례회		2005. 6.24	2005. 7. 1~ 7.15	15
제84회	임시회	류인목의원 외 5인	2005. 8.31	2005. 9. 5~ 9. 6	2
제85회	〃	김대영의원 외 2인	2005.10.17	2005.10.24~10.28	5
제86회	정례회		2005.11.17	2005.11.25~12.27	33
제87회	임시회	김대영의원 외 2인	2006. 2. 3	2006. 2.10~ 2.22	13
제88회	〃	류인목의원 외 2인	2006. 4.25	2006. 5. 2~ 5. 8	7
제89회	〃	류인목의원 외 2인	2006. 6. 1	2006. 6. 7~ 6. 7	1

제2절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제3대울산광역시북구의회〈후반기〉(2004.7.1~2006.6.30)　　2004~2006년도

회수	기간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승인)	건의안	결의안	청원	보고	질문	기타
합계		152	163	8	2	70	11	0	4	0	7	0	61
소계	2004년도	54	46	3	1	11	5	0	2	0	2	0	22
제74회	2004.7.7~7.16	10	8		1	2	1				1		3
제75회	2004.9.1~9.1	1	4								1		3
제76회	2004.10.15~10.26	12	9	1		2	1		1				4
제77회	2004.11.23~11.24	2	7			2							5
제78회	2004.11.25~12.18	24	10	1		3	2						4
제79회	2004.12.20~12.24	5	8	1		2	1		1				3
소계	2005년도	77	86	4	1	44	3	0	2	0	3	0	29
제80회	2005.2.18~2.28	11	11			7					1		3
제81회	2005.3.30~3.31	2	8			4							4
제82회	2005.5.19~5.27	9	19	1		12			1				5
제83회	2005.7.1~7.15	15	14		1	7	2				1		3
제84회	2005.9.5~9.6	2	10			7							3
제85회	2005.10.24~10.28	5	11			5							6
제86회	2005.11.25~12.27	33	13	3		2	1		1		1		5
소계	2006년도	21	31	1	0	15	3	0	0	0	2	0	10
제87회	2006.2.10~2.22	13	7			1	1				2		3
제88회	2006.5.2~5.8	7	16	1		10	1						4
제89회	2006.6.7~6.7	1	8			4	1						3

제3절 안건별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1. 제74회제1차정례회 : 2004. 7. 7 ~ 7.16(10일간)

의안 번호	안건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99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2004.6.30 구 청 장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직의 통·폐합 내용 ◦도시건설국 소관 분장사무중 재난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광고물 등 도시미관업무에 관한 사무를 경제사회국 소관 분장사무로 하며,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에 포함된 공공시설 신축에 관한 사무를 도시건설국 분장사무로 신설 ◦총무국 소관 120즉시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사무를 경제사회국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도서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신설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 연장(부칙) ▪당초 : 2004. 6.30 ▪변경 : 2005. 6.30	2004.7.8 (제2차) 원안가결
110	울산광역시북구 주민투표조례안	2004.6.30 구 청 장	○주민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와 주민 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는 등 구의 책무를 정함 ○20세 이상의 외국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함. ○주민투표의 대상을 정함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	2004.7.8 (제2차) 수정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총수의 15분의 1로 정함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함.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심의·의결 사항, 위원의 임기와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등 ※ 수정내용 ◦안 제5조 중 "15분의1"을 → "20분의1" 로 한다	
111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4.6.30 구 청 장	○2003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 지출사업건수 : 음식물공공자원화 시설설치 환경캠페인외 20건 - 지출결정액 : 637,328,000원 - 지 출 액 : 537,349,780원 - 잔 액 : 56,965,220원	2004.7.16 (제8차) 승인가결
112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2004.6.30 구 청 장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액 : 104,136,158,100원 - 세출결산액 : 73,626,348,850원 - 세계잉여금 : 30,509,809,250원	2004.7.16 (제8차) 승인가결

2. 제75회임시회 : 2004. 9. 1 ~ 9. 1(1일간)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2004.8.30 구 청 장	○음식물자원화시설추진상황	2004.9.1 (제1차) 보 고

3. 제76회임시회 : 2004. 10. 15 ~ 10. 26(12일간)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17	2004년도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 예산안	2004.10.8 구 청 장	○요구예산액 : 80,656,037천원 ▫일반회계 : 79,740,564천원 (증 5,843,159천원) ▫특별회계 : 915,473천원 (증 25,941천원) ▫심의기간 : 2004.10.16~ 10.22 (7일간) ○삭감내역 ▫세 입 : ▫세 출 : 1건 60,000천원 (일반 1건 60,000천원) ○확정예산액 : 80,656,037천원 ▫일반회계 : 79,740,564천원 ▫특별회계 : 915,473천원	2004.10.26 (제9차) 수정가결
120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건	2004.10.12 의장제의	○감사기간 : 2004.11.29 ~ 12. 5(7일간) ○감사주체 : 본회의	2004.10.22 (제7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16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 안	2004.10.8 구 청 장	■제안이유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현행과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유지할 경우 주35시간 근무가 되므로, ▫ 동절기 퇴근 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대주민 서비스의 지속 제공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퇴근시간을 1시간(5시에서 6시까지)연장하려는 것임	2004.10.25 (제8차) 부 결
11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4.10.8 구 청 장	○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위 치 : 북구 호계동 268-8번지 ▫ 부 지 : 701.8㎡(212평) ▫ 건 물 : 지상2층 826㎡정도(250평) ▫ 사 업 비 : 1,570,000천원	2004.10.25 (제8차) 원안가결 (승인)
119	울산광역시북구 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10.11 김대영외2명	○ 전자결재 문서에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의 인영을 매년 1회 공인대장에 날인·보존토록 근거 마련 ○ 공인의 찍는 위치를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함 ○ 공인폐기시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함 ○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시 일반공인처럼 공보에 공고토록 의무화	2004.10.25 (제8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121	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보장입법촉구결의안	2004.10.25 류인목외2명	○정부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법안의 제정을 둘러싸고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함 ○정부는 특별법 형태의 "공무원조합법" 입법발의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과 단체 행동, 단체교섭 등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위의 결의가 우리 북구주민은 물론 전국 90만 공무원노동자와 양식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정부측에 성실한 대응을 촉구함. ■조치사항 ○국회, 행정자치부, 노동부, 울산광역시 북구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울산지역본부북구지부 결의문 이송	2004.10.26 (제9차) 원안가결

4. 제77회임시회 : 2004. 11. 23 ~ 11. 24(2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122	울산광역시북구 각종위원회수당 및여비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	2004.11.9 구 청 장	○위원회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액을 신설함 구 분 / 지급금액 / 초과기준 위원회 / ·기본 : 70,000원 ·초과 : 3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 ·기본 : 50,000원 /	2004.11.23 (제1차) 수정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수정내용 ○안 제3조 관련 별표(위원회 참석수당)의 사이버위원회 부분 삭제 ○별표 초과기준 중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를 → "회의 시작 4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으로 한다.	
123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2004.11.9 구 청 장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함	2004.11.23 (제1차) 원안가결

5. 제78회제2차정례회 : 2004. 11. 25 ~ 12.18(24일간)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24	울산광역시북구 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안	2004.11.9 구 청 장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구체화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기준 ○유료화장실 신고 및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정함	2004.11.26 (제2차) 원안가결
125	울산광역시북구 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안	2004.11.9 구 청 장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공공부조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004.11.26 (제2차) 수정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주요내용 ○난방비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목적 및 정의 규정 ○난방비 지급대상자 기준 및 지급시기 근거 마련 ○난방비 지급중지에 대한 근거 마련 ※수정내용 ○안 제1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차상위 계층에게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하여"를 → "상대적으로 공공부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차상위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최소한의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2조중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 "난방을 위하여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한다	
126	울산광역시북구 장수수당지급조례안	2004.11.9 구 청 장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기준 및 시기 -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기출타자·국외이주자는 제외한다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실명의 계좌에 지급한다.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지급중지 기준	2004.11.26 (제2차) 원안가결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131</td><td>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td><td>2004.11.22
구 청 장</td><td>○「효문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위 치 : 북구 연암동 966번지 (현 부지), 완충녹지지역
▫규 모 : 지상3층 1,091㎡정도(330평), 철근콘크리트조
▫사 업 비 : 1,464,000천원
▫사업기간 : 2005. 2 ~ 2005. 12</td><td>2004.12.6
(제3차)
원안가결</td></tr>
<tr><td></td><td>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결의건</td><td>2004.12.18
의장제의</td><td>○감사기간 : 2004.11.29~12.5(7일간)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현황
<table>
<tr><th>감사대상부서</th><th>감사자료제출건수</th><th>증인출석인원</th><th>참고인출석인원</th><th>주요감사실시건수</th></tr>
<tr><td>계</td><td>207</td><td>27</td><td></td><td>207</td></tr>
</table>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table>
<tr><th>감사대상부 서</th><th>계</th><th>모범사례</th><th>시정요구사 항</th><th>건의사항</th></tr>
<tr><td>계</td><td>72</td><td></td><td>52</td><td>20</td></tr>
</table></td><td>2004.12.18
(제13차)
원안가결</td></tr>
<tr><td>129</td><td>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td><td>2004.11.19
구 청 장</td><td>○요구예산액 : 74,698,936천원
▫일반회계 : 73,888,734천원
▫특별회계 : 810,202천원
○본회의심의내역
▫심의기간 : 2004.12.6~12.17(12일간)
▫삭감내역 : 세입
세출 감1,209,654천원
○확정예산액 : 74,698,936천원
▫일반회계 : 73,888,734천원
▫특별회계 : 810,202천원</td><td>2004.12.18
(제13차)
수정가결</td></tr>
</table>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 rowspan="2">130</td><td rowspan="2">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td><td>2004.11.19
구 청 장</td><td>○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전심사(원안가결)
•심사기간 : 2004.12.6~12.17(12일간)</td><td rowspan="2">2004.12.18
(제13차)
원안가결</td></tr>
<tr><td colspan="2">○기금운용 총괄
(단위:천원)
<table><tr><th>기 금 명</th><th>금 액</th></tr><tr><td>계</td><td>796,126</td></tr><tr><td>재 난 관 리 기 금</td><td>108,988</td></tr><tr><td>저 소 득 주 민 자 녀
장 학 기 금</td><td>96,875</td></tr><tr><td>노 인 복 지 기 금</td><td>116,350</td></tr><tr><td>식 품 진 흥 기 금</td><td>150,726</td></tr><tr><td>재 해 대 책 기 금</td><td>323,187</td></tr></table></td></tr>
</table>

6. 제79회임시회 : 2004. 12. 20 ~ 12.24(5일간)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32	울산광역시북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2004.12.13 구 청 장	○지급 대상 - 과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지급 기준 -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 100분의 1 -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 금액의 100분의 5	2004.12.21 (제2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지급 한도 -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 1건당 30만원 - 개인당 월 지급액 : 60만원 ○지급 심의 - 구정조정위원회 심사·결정후 지급 ○지급 신청 및 관리 -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서 및 지급대장 비치·관리 ○포상금 지급 - 당해 징수액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 - 징수한 공무원의 개인 예금계좌에 입금 ○포상금 환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징수금액이 환급된 경우	
133	울산광역시북구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2004.12.13 구 청 장	■제안이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은 지역여건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당초 기금설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유사한 자금이 농림수산과와 농협을 통해 지원되고 있고, 융자 지원가구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부 칙〉 ○시 행 일 : 2009년 6월 30일부	2004.12.21 (제2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일전까지 존속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의 상환을 종료하기 위한 회수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함 ·이 조례 공포일 현재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현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며, 매년도별로 회수하는 융자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함	
134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12.14 구 청 장	○요구예산액 : 83,074,556천원 ▫일반회계 : 82,108,895천원 (증 2,368,331천원) ▫특별회계 : 965,661천원 (증 50,188천원) ▫심의기간 : 2004. 12.21~ 12.24 (4일간) ○삭감내역 ▫세 입 : 2건 1,552,386천원 ▫세 출 : 2건 2,052,386천원 (일반 2건 2,052,386천원) ○확정예산액 : 81,522,170천원 ▫일반회계 : 80,556,509천원 ▫특별회계 : 965,661천원	2004.12.24 (제5차) 수정가결
13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4.12.14 구 청 장	○『울산북구 기적의 도서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위 치 : 북구 중산동 570-2번지 외1필지 ▫규 모 : 지상1·지하1층, 연면적 728.50㎡정도(220평) ▫재산가액 : 1,019,700천원 ▫사업기간 : 2003. 12. 20~2004. 6. 29	2004.12.21 (제2차) 원안가결 (승인)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처수)
			▫용 도 : 어린이전용 도서관 ▫취득사유 :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본 건물을 우리구에 기부승낙해 옴에 따라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함.	
136	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결의안	2004.12.15 윤임지외2명	■제안이유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특정어업의 금지구역)제4호 기선선인망 〔기선권현망〕 어업금지구역의 별표4 제10호가 ' 울산 동구 방어동 울기등대에서 110도 2천미터의 점' 의 규정이 수십년간 그대로 유지돼 옴으로써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 어업활동의 제약 등 시대적, 환경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 왔지만 동령은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구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어구훼손은 물론 자원 남획으로 지역어업인들과 기선권현망어업인들과의 잦은 마찰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북구의회는 지역별 형평성 및 어업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북구지역 연안 해상도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 보호령 제4조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함.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는 입법당시 어업여건과 현재의 여건이 변화한 만큼 현실성 있게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영세 한 우리구 연안어업인을 보호할 것을 촉구함.	2004.12.20 (제1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 2002.11. 우리구에서 동령 제4조제4호의 별표4제10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안에 대하여도 조업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 을 요구하여 「해양수산부 개정시안」에 반영되었으나,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선권현망수협의 반발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던 내용이 당초 요구안대로 개정되도록 촉구함. ■ 조치사항 ▫ 국회, 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북구청 결의문 이송	

7. 제80회임시회 : 2005. 2. 18 ~ 2.28(11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005.2.3 구 청 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05.2.19 ~ 2.28 보 고
138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2.3 구 청 장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에 과세표준액이 명시되지 않아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토록 조항 신설	2005.02.24 (제6차) 원안가결
139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5.2.3 구 청 장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전관리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2005.02.24 (제6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전관리자문단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함.	
140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2.3 구 청 장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중 감량의무사업장 적용기준인 객석(객실 포함) 면적을 적용하게 되므로 영업장 면적 기준과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영업과 관련된 객실(객석 포함), 조리실, 기타 면적 등을 통합하여 일률적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기 위함 ○일반음식점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에 대한 제외사항을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에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적용	2005.02.22 (제4차) 원안가결
141	울산광역시북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2.3 구 청 장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주민신고시 위반횟수와 상관 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토록 한 규정을 삭제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규모를 월간 100만원에서 전국기준 50만원으로 하향조정	2005.02.22 (제4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42	울산광역시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2.3 구 청 장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 신설에 따른 울산광역시북구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와 기준 신설 【신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2005.02.28 (제8차) 심의보류 제82회 임시회 (제2차) 수정가결
143	울산광역시북구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2.4 유재건외2명	■제안이유 ○2005년 1월 27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공포번호 법률 제7362호)에 의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전면 삭제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원활한 정례회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례회 회기를 3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안 제3조(회기)를 삭제함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7일에서 7월 1일로 변경함	2005.02.28 (제8차) 원안가결
144	울산광역시북구 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5.2.4 김대영외2명	○의회운영위원회가 없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삭제함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 의미전달이 명확 하도록 관련 단어를 일부 추가함	2005.02.28 (제8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본회의 중심으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재정비함 ○상임위가 설치된 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삭제함 ○잘못 표현되어 있는 번안동의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 ○안건심의와 관련, 현실에 맞게 관련 문구를 일부 추가함 ○「국회법」이나 타 지방의회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4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수정함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에서 발언할수 있도록 함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함	

8. 제81회임시회 : 2005. 3. 30 ~ 3.31(2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146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3.18 구 청 장	○조례의 명칭을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로 개정 ○위원회의 명칭을 "울산광역시 북구 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명칭 개정 ○당연직 위원중 "지역경제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함	2005.03.31 (제2차) 수정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신설 ○위원회 사무처리 간사는 개별주택가격 심의사항은 소관업무 담당이 하도록 함 ※수정내용 ◦안 제1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로 한다	
147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3.18 구 청 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편의의 대상 확대	2005.03.31 (제2차) 원안가결
148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3.18 구 청 장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 자치지원단으로 전환하고 민원봉사과 명칭을 민원지적과로 변경 ○도시건설국에 재난관리과 신설 ○자치행정과 "한시기구" 명시부분 삭제	2005.03.31 (제2차) 부 결
149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3.18 구 청 장	○정원의 총수 442명을 465명으로 함 ○규칙으로 정하던 정원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	2005.03.31 (제2차) 부 결

9. 제82회임시회 : 2005. 5. 19 ~ 5. 27(9일간)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42	울산광역시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2.3 구 청 장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 신설에 따른 울산광역시북구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와 기준 신설 【신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수정내용 ◦안 제9조제2항 과태료 부과금액중 "1차 위반 10만원, 2차위반 30만원, 3차위반 50만원"을 →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50만원" 로 한다	2005.05.20 (제2차) 수정가결
151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5.11 구 청 장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인 자치지원단으로 전환하고 민원봉사과 명칭을 민원지적과로 변경 ○도시건설국에 재난관리과 신설 ○자치행정과 "한시기구" 명시부분 삭제	2005.05.20 (제2차) 원안가결
15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5.11 구 청 장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해 여유기구제 도입 및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기구 조정과, 6급 정원책정 비율 확대지침 등 각종 조직관리 지침에 의한 신규 사무 및 증가사무에 대한 담당 신설 등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005.05.20 (제2차) 수정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처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442명을 463명으로 함 • 규칙으로 정하던 정원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 ※수정내용 ▫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463명"을 → "460명" 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50명"을 → "447명"으로 한다	
153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005.5.11 구 청 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주민의 정의 및 권리, 법규의 한계 등을 제시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원칙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편성시 분야별 예산심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위원회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지역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사업의 우선순위 등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총괄 조정하도록 함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9인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조례에 대한 제·개정(안) 연구 및 의견제시, 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마련 등 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2005.05.20 (제2차) 수정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수정내용 ▫안 제18조 재정 및 실무지원 제3항 "구청장은 위원회 및 예산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154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5.11 구 청 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조정 ○법률 제6388호(2001.7.24)에 의거 「공직자 윤리법」 제23조에 관한 내용이 폐지 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요 심사 사항 개정	2005.05.20 (제2차) 원안가결
155	울산광역시북구 청대회의실사용 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5.11 구 청 장	○대회의실 사용범위를 구 관내 거주자는 물론 본적을 둔 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최대한 구민 편의 혜택을 제공 ○토요일 휴무제 실시로 대회의실 사용시간을 조정함 ○예식장 사용시간을 1시간 기준으로 운영 하고 예식장외 기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만 초과 사용시간 인정 ○대회의실 사용료를 예식장 및 기타용도 사용시에도 동일하게 90,000원으로 조정하여 사용료 현실화 및 타구 형평성 유지 ○대회의실 사용 정지 및 취소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사용 제한 요인 발생시 민원 예방	2005.05.21 (제3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56	울산광역시북구 지명위원회조례안	2005.5.11 구 청 장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함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함	2005.05.21 (제3차) 원안가결
157	울산광역시북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5.11 구 청 장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 이원화 및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을 재산세에 포함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함 ○종전에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포함하도록 조정함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변경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종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토지 및 주택을 포함한 시가표준액으로 조정함 ○재산세 납기를 지방세법 제191조에 의거 토지는 종전 10월에서 9월로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로 현행유지, 주택분(부속토지포함)은 7월과 9월로 2회 균등분할조정	2005.05.20 (제2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자수)
158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5.11 구 청 장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개정함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장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매입하는 경우로 분리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율을 전액에서 50%까지 차등 적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한다"로 규정함	2005.05.20 (제2차) 원안가결
159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5.11 구 청 장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안마시술소 허가사항변경을 안마 시술소 신고사항변경으로 하고, 의료기관 신고사항변경 수수료 요율인 20,000원으로 개정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수수료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요율인 20,000원을 30,000원으로 개정	2005.05.20 (제2차) 원안가결
160	울산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	2005.5.11 구 청 장	○환경보전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을 제시 ○사회 구성원들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자 및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	2005.05.21 (제3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으로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의 보전,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관리,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구민을 참여시키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함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 대처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 하여야 함	
161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5.11 구 청 장	○제안이유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에 대하여는 구·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관지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색채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에 대한 건축행위 기준마련	2005.05.21 (제3차) 원안가결
162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5.5.12 구 청 장	○요구예산액 : 85,026,617천원 ◦일반회계 : 83,534,177천원 (증 9,645,443천원) ◦특별회계 : 1,492,440천원 (증 682,238천원)	2005.05.27 (제8차) 수정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심의기간 : 2005. 5.23 ~ 5.26(4일간) ○삭감내역 ◦세 입 : 천원 ◦세 출 : 6건 303,200천원 (일반 5건 23,200천원, 특별 1건 280,000천원) ○확정예산액 : 85,026,617천원 ◦일반회계 : 83,534,177천원 ◦특별회계 : 1,492,440천원	
16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5.5.12 구 청 장	○『매곡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위 치 : 북구 매곡동 478번지 일원 ◦부지면적 : 11,300㎡(3,418평)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사 업 비 : 800백만원 ◦사업내용 : 소규모운동장, 다목적 구장 1면, 기타편의시설 및 조경시설 ◦취득사유 :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하고 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함	2005.05.26 (제7차) 원안가결 (승인)
16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철회 촉구결의안	2005.5.26 윤임지외2명	■제안이유 • 지난 3월 2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기피대상이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2005.05.27 (제8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건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 급기야 지난 4월 2일 경주시의회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및 원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감으로 인해 울산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철회촉구에 따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주요내용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해안에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 단지화의 즉각적인 철회 촉구 • 핵폐기장과 핵발전소는 따로 뗄 수 없는 같은 사안임으로 편의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 실시 • 정부는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부추겨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 • 한 세대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핵 쓰레기장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까 심히 우려되므로 핵폐기물관리·처분에 관한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역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력 촉구. ■조치사항 • 국회,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회, 경북경주시, 경북경주시의회 결의문 이송	

10. 제83회제1차정례회 : 2005. 7. 1 ~ 7. 15(15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166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6.23 구 청 장	○2004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 지출사업건수 :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작업외 2건 - 지출결정액 : 75,676,000원 - 지 출 액 : 75,675,630원 - 잔 액 : 370원	2005.7.15 (제11차) 승인가결
16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5.6.23 구 청 장	○『양정 제2공영주차장』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소 재 지 : 북구 양정동 527-1·2·4번지 ◦부지면적 : 1,465㎡(설치면수 : 약50대) ◦사 업 비 : 700백만원	2005.7.13 (제9차) 원안가결
168	울산광역시북구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2005.6.27 유인목외2명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함.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005.7.13 (제9차) 심의보류
170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5.6.27 구 청 장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액 : 108,647,913,310원 - 세출결산액 : 76,516,125,240원 - 세계잉여금 : 32,131,788,070원	2005.7.15 (제11차) 승인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71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2005.6.29 구 청 장	○제안이유 ▫우리 구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지휘·감독	2005.07.13 (제9차) 원안가결
172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6.29 구 청 장	○제안이유 ▫양정체육공원 및 효문운동장 완공시 시설사용료 부과 근거를 미련함으로써 시설사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별표부분의 시설명이 농소운동장으로 명시되어 양정생활체육공원, 효문운동장 및 추후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 완공시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근거가 없으므로 농소 운동장을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으로 개정.	2005.07.13 (제9차) 원안가결
173	울산광역시북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6.29 구 청 장	○제안이유 ▫2004.12.31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05.1.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05.07.14 (제10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주요내용 ◦위탁기간 - 보육시설의 안정을 위해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종사자 임면 및 관리 - 여성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종사자의 정년규정 폐지 ◦『울산광역시북구 보육위원회』를 『울산광역시북구 보육정책 위원회』로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174	울산광역시북구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	2005.6.29 구 청 장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위원회의 역할을 법제화하여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예방·보호하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주요내용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아동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 ◦아동위원의 역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005.07.14 (제10차) 원안가결
175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체 운영조례안	2005.6.29 구 청 장	○제안이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의 민·관 대표자·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005.07.14 (제10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주요내용 ㅇ주요기능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ㅇ구성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 ㅇ간사 및 직원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둔다. ▫각 협의체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176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2005.6.29 구 청 장	○제안이유 ▫우리 구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2005.07.14 (제10차) 수정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주민지원기금의 용도 - 지원협의체에서 심의 결정된 공동사업, 지원협의체 운영경비, 지원협의 체의 요구에 의한 가구별 현금지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 지원협의체 운영,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주민지원 대상 사업, 주민감시단 활동사항, 기타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의 적정 및 적정처리, 환경오염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자,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자격정지, 자격상실된 자, 주변영향 지역내 주민등록상 3년미만 거주자 ◦2005년 및 2006년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는 근거 마련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 수정내용 ▫ 제명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을 →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 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조례"로 하고, 안 제12조 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①항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워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를 → "구청장은 주민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로 한다.	

11. 제84회임시회 : 2005. 9. 5 ~ 9. 6(2일간)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77	울산광역시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8.19 구 청 장	○제안이유 ▫ 일부 농촌지역(농소, 강동)의 경우 고령화로 인하여 통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장 상한연령을 현실에 맞게 폐지하고, 통·반장 표창 및 선진행정기관 견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의 역량배양과 사기를 진작함과 아울러 조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통장연령제한규정 "25세 이상 65세 이하"를 "25세 이상"으로 개정 ▫ 통장 및 우수반장의 역량 배양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근거 마련	2005.9.6 (제2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78	울산광역시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8.19 구 청 장	○제안이유 ◦중학교 의무교육시행에 따른 공납금(수업료) 납부제도 폐지와 일부 통의 경우 자체적으로 통장 임기를 2년 순환제로 운영함에 따라 통장자녀 학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자금장학금의 미지급 사례를 방지함으로서 통장의 사기를 도모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 하고자 함 ○주요내용 ◦본문상의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개정 ◦장학생의 자격 중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변경	2005.9.6 (제2차) 원안가결
179	울산광역시북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8.19 구 청 장	○제안이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명칭 개정 당초 :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 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 개정 : 「울산광역시북구인감 및 주민 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제1조 본문중 인감업무담당자에게 국한 했던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자에게 확대 시행하는 법적근거 마련	2005.9.6 (제2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 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기존의 인감업무담당자 및 그 대직자에서 이를 포함한 주민등록업무담당자와 그 대직자까지 포함하는 법적근거마련 및 범위 조정	
180	울산광역시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005.8.19 구 청 장	○제안이유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등 주변환경의 변화로 당초의 기금의 설치취지가 퇴색되었으며, 저금리로 인한 재원의 부족 등 기금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북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2005.9.6 (제2차) 원안가결
181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5.8.19 구 청 장	○제안이유 ▫ 사회복지관련 기금들의 통합을 통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존의 사회복지관련 기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들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설치와 관련 규정을 마련함 ▫ 국·시비 보조금·구의 출연금 및 기타 보조금등의 기금 조성의 근거 마련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함	2005.9.6 (제2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82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8.26 김대영외2명	○제안이유 ▫지난 8월 5일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91호, 2005. 8. 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함	2005.9.6 (제2차) 원안가결
183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9.2 구 청 장	○제안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1.14.대통령령 18677호)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이 변경(6.30⇒5.31) 되어 과세기준일(6.1)전에 결정·공시한 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납세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재산세 과표경감규정 신설 - 2005년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부칙개정 ▫조례 제27조의3의 유효기간을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적인 부칙개정	2005.9.6 (제2차) 원안가결

12. 제85회임시회 : 2005. 10. 24 ~ 10. 28(5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85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5.10.14 구 청 장	○제안이유 ◦2005년 9월중 개관예정인 농소3동 도서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일치된 공공도서관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늘어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함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임기2년) - 기능 : 도서관 주요 운영에 대한 심의 ◦시설의 사용과 변상책임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료의 기증,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 자료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함	2005.10.27 (제2차) 원안가결
186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10.14 구 청 장	○제안이유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특별휴가 제도 등을 일부조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005.10.27 (제2차) 수정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주요내용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정 - 재직기간별 1 ~ 2일 축소 조정 ▫특별휴가의 조정 - 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 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 일수를 축소함 ※ 수정내용 ▫안 제24조 특별휴가 제③항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유사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의 →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부분 삭제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87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2005.10.14 구 청 장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재난관리법(2004년 5월 31일 폐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자연 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 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적립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재원을 규정함.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토록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 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기금회계공무원 지정 ·기금운용관(재난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재난업무 담당)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대체)에서 심의	2005.10.28 (제3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88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2005.10.14 구 청 장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등의 14개 용어를 정의함. ○나. 운영기간을 규정함. - 자연재난대책기간 : 여름(5. 15 내지 10. 15), 겨울(12. 1 내지 익년3. 15) - 인적재난대책기간 : 재난 발생시 부터 복구완료시까지 - 기반재난중점대응기간 : 4. 1내지 9. 30 ○구성 및 임무를 규정함. - 본부장(구청장), 차장(부구청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 ○ 운영 및 근무체제와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005.10.28 (제3차) 원안가결
189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10.14 구 청 장	○제안이유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약속한 20억원을 출연금으로 확보하고, 주민들과의 약속 및 배심원단의 권고사항의 이행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은 물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주요내용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을 위한 구의 출연금의 근거마련과 조성기한 명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금을 포함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항목 조정	2005.10.28 (제3차) 수정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 중 주변지역 내에서 사실상의 거주자로 완화 ※수정내용 ◦안 제17조 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 중 제2호 "주변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3년미만"를 → "주민등록상 주변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1년미만 거주자" 로 한다.	
19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5.10.14 구 청 장	○『종합복지회관』 공유재산 취득 (기부채납) ◦소 재 지 : 북구 연암동 1121-2번지 일원(북구 보건소 뒤) ◦규 모 : 토지8,816㎡, 건축연면적 11,570㎡ ◦재산가액 : 200억원 정도 ◦용 도 : 운동, 교양, 문화시설의 종합복지회관	2005.10.27 (제2차) 원안가결
191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2005.10.14 의장제의	○감사기간 : 2005.11.28 ~ 12. 4 (7일간) ○감사주체 : 본회의	2005.10.24 (제1차) 원안가결

13. 제86회제2차정례회 : 2005. 11. 25 ~ 12. 27(33일간)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05 ~ 2009)	과거년도		기준년도	미래년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472,234	89,711	84,821	92,578	99,480	105,644	
일반회계	468,603	88,219	84,326	92,057	98,932	105,068	
특별회계	3,631	1,492	495	521	548	576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005. 11.25 구 청 장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td><td>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승인의 건</td><td>2005.12.20
의장제의</td><td>○감사기간 : 2005.11.28~12.4(7일간)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현황
<table><tr><th>감사대상부서</th><th>감사자료 제출건수</th><th>증인 출석 인원</th><th>참고인 출석 인원</th><th>주요감사 실시건수</th></tr><tr><td>계</td><td>225</td><td>28</td><td></td><td>225</td></tr></table>○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table><tr><th>감사대상 부 서</th><th>계</th><th>모범 사례</th><th>시정요구 사항</th><th>건의 사항</th></tr><tr><td>계</td><td>69</td><td></td><td>48</td><td>21</td></tr></table></td><td>2005.12.20
(제13차)
원안가결</td></tr>
<tr><td>193</td><td>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td><td>2005.11.18
구 청 장</td><td>○요구예산액 : 74,021,731천원
◦일반회계 : 73,507,285천원
◦특별회계 : 514,446천원
○본회의심의내역
◦심의기간 : 2005.12.6~12.19
(14일간)
◦삭감내역 : 세입
세출 감207,053천원
○확정예산액 : 74,021,731천원
◦일반회계 : 73,507,285천원
◦특별회계 : 514,446천원</td><td>2005.12.20
(제13차)
수정가결</td></tr>
<tr><td>194</td><td>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td><td>2005.11.18
구 청 장</td><td>○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전심사(원안가결)
•심사기간 : 2005.12.5~12.19(15일간)
○기금운용 총괄
(단위:천원)
<table><tr><th>기 금 명</th><th>금 액</th></tr><tr><td>계</td><td>2,465,408</td></tr><tr><td>사 회 복 지 기 금</td><td>283,616</td></tr><tr><td>식 품 진 흥 기 금</td><td>149,603</td></tr><tr><td>주 민 지 원 기 금</td><td>1,694,659</td></tr><tr><td>재 난 관 리 기 금</td><td>337,530</td></tr></table></td><td>2005.12.20
(제13차)
원안가결</td></tr>
</table>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처수)
19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5.11.18 구 청 장	○『염포동 공공시설 부지』 매입 ◦위 치 : 염포동 348-1번지 외3 (성원상떼빌 뒤) ◦규 모 : 7,128㎡(2,158평), 매입비 755,300천원정도 ○『양정·염포 권역별도서관』 신축 ◦위 치 : 염포동 348-1번지 일원 ◦규 모 : 건축연면적 874㎡정도, 지상3층 ◦사 업 비 : 1,334,000천원 (부지매입비 제외)	2005.12.5 (제2차) 원안가결
197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5.11.23 구 청 장	○종전의 시장 권한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사무를 구의 업무로 일원화 ○현행 조례 보완·개선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추가 -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 표시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을 추가함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조정(건물의 최저층수) 및 추가 -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 "4층 이상 → 5층 이상"으로 조정하여 타 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4개 구 간의 형평 유지 - 현행「항공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알수있도록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 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 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추가함	2005.12.5 (제2차) 원안가결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198</td><td>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td><td>2005.12.15
구 청 장</td><td>○요구예산액 : 93,521,162천원
▫일반회계 : 92,658,681천원
(증 9,124,504천원)
▫특별회계 : 862,481천원
(감 629,959천원)
▫심의기간 : 2005.12.21 ~ 12.25
(5일간)
○삭감내역
▫세 입 : 2건 200,970천원
▫세 출 : 1건 287,100천원
(일반 1건 287,100천원)
○확정예산액 : 93,320,192천원
▫일반회계 : 92,457,711천원
▫특별회계 : 862,481천원</td><td>2005.12.27
(제18차)
수정가결</td></tr>
<tr><td>199</td><td>2005년도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td><td>2005.12.15
구 청 장</td><td>○출연금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조성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재원 조성
○기금운용 총괄
(단위 : 천원)
<table>
<tr><th rowspan="2">2004년
도말
현재액
(A)</th><th colspan="3">2005운용계획</th><th rowspan="2">2005년
도말
현재액</th><th rowspan="2">비
고</th></tr>
<tr><th>수입</th><th>지
출</th><th>증감
(B)</th></tr>
<tr><td>0</td><td>1,000,000</td><td></td><td>1,000,000</td><td>1,000,000</td><td></td></tr>
</table></td><td>2005.12.21
(제14차)
원안가결</td></tr>
<tr><td>200</td><td>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td><td>2005.12.15
구 청 장</td><td>○제안이유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 증가, 사회양극화 현상 등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둔 사회복지 전담 인력 확충과 일부 부서 정원조정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원의 총수 460명을 46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47명을 454명으로 함</td><td>2005.12.21
(제14차)
원안가결</td></tr>
</table>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201	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파업 징계최소화 촉구결의안	2005.12.26 김대영외2명	○제안이유 ▫울산광역시북구의회는 지난 2004년 10월 26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보장 입법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음. ▫공무원의 파업은 현실적인 법 아래에서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지만 수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엄청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 서까지 파업에 동참하여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려 했는지를 우리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임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또 다른 문제의 불씨를 만들기보다 시와 구·군간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공직사회의 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해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올바르게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징계의 중요한 잣대로 삼길 바람. ▫울산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하고, 울산시민을 위해 더욱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길 바람. ▫특히, 지도부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사익이 아닌 공직사회의 개혁이라는 공익에 희생되지 않도록 징계를 최소화하길 바람. ■조치사항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북구청 결의문 이송	2005.12.27 (제18차) 원안가결

14. 제87회임시회 : 2006. 2. 10 ~ 2. 22(13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006.2.3 구 청 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06.2.13 ~ 2.22 보 고
202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006.1.10 구 청 장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령(2005.8.4)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 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대한 제설 책임 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 - 소유자 거주시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 비거주시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 -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다만 야간 적설시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의무화	2006.2.21 (제8차) 부 결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203</td><td>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td><td>2006.2.1
구 청 장</td><td>○제안이유
▫ 화봉동 제2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중 도서관 신설이 조성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15만 구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북구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북구 공공(중앙)도서관 건립』 변경 내역
<table>
<tr><th>구 분</th><th>당 초</th><th>변 경 후</th><th>변경사항</th></tr>
<tr><td>위 치</td><td>연암동 404-1, 대</td><td>연암동 378번지, 공원(화봉제2근린공원 내)</td><td>장소변경</td></tr>
<tr><td>취득부지</td><td>1,036.3㎡
(313.4평)</td><td>992㎡(300평)</td><td>미취득</td></tr>
<tr><td>건 물</td><td>지하1층, 지상4층, 2,644(800평), 철근콘크리트조</td><td>지하1층, 지상3층, 2,644(800평), 철근콘크리트조</td><td>규모축소</td></tr>
<tr><td>추정가격</td><td>4,600,000천원
(건축비4,000,000,
부지매입600,000)</td><td>4,600,000천원
(건축비)</td><td></td></tr>
<tr><td>건립재원
(백만원)</td><td>국비800,
시비1,600,
구비2,200</td><td>국비800,
시비1,600,
구비2,200</td><td></td></tr>
<tr><td>사업기간</td><td>2004.7월~2006.6월</td><td>2004년~2007년</td><td>사업기간 변동</td></tr>
</table></td><td>2006.2.15
(제4차)
원안가결</td></tr>
<tr><td></td><td>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td><td>2006.2.20
구 청 장</td><td>○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td><td>2006.2.22
보 고</td></tr>
</table>

15. 제88회임시회 : 2006. 5. 2 ~ 5. 8(7일간)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205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4.21 구 청 장	○제안이유 ▫구청장 비서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현안 및 내부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비서실의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당면 구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구청장비서실 직급 조정(별표) · 비서실장 : 별정 6급 → 행정6급 · 수행비서 : 행정 7급 → 별정7급	2006.5.3 (제2차) 심의보류
206	울산광역시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4.25 구 청 장	○제안이유 ▫정확한 공인의 규격이 없어 혼용되어 왔던 공인의 규격을 바로잡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공인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인의 규격(별표) - 합의제기관(의결, 자문, 기타합의제)의 직인의 규격을 추가함. ▫공인의 비치사용 - 인영의 인쇄 사용시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와 혼용되므로 삭제함	2006.5.2 (제1차) 원안가결
207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6.4.21 구 청 장	○제안이유 ▫공유재산 관리 업무가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교환·처분방법 등 같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2006.5.2 (제1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주요내용 ○【제 1 장 총 칙】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제외 사항 조정 ○ 대장가격이 1천만원을 2천만원이하(특별시, 광역시지역은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 2 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무상 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 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사용허가 기간일의 기준을 실제 사용 일로 함. 【제 4 장 잡종재산】 가.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 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제 8 장 보 칙】 가. 변상금의 분할납부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 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50만원초과 : 6월 이내 2회 분납 • 100만원이상 : 1년 이내 4회 분납 • 200만원이상 : 2년 이내 4회 분납 • 300만원이상 : 3년 이내 4회 분납	
208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2006.4.21 구 청 장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 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위원임기·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주민참여대상공사를 규정함 -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5억원미만 마을진입로, 배수로, 간이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럭설치,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공사 등 (단, 전문건설공사인 경우 2억원미만) ※ 울산광역시북구대형공사구민감시관 제도 적용대상은 제외 다.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기준을 정함	2006.5.2 (제1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209	울산광역시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4.21 구 청 장	○제안이유 ▫ 2005. 1월「지방세법」일부 개정 및 8. 31부동산대책 등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나.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로 하던 것을 주택의 별도 규정 신설 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 기간 삭제	2006.5.2 (제1차) 원안가결
210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6.4.21 구 청 장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삭제하거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조항 신설 나. 세무공무원 소액 지방세 수납 조항 변경 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삭제 및 적용특례 적용 라.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 -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일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2006.5.2 (제1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211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4.21 구 청 장	○제안이유 ㅇ동사무소 내 한정되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유휴시설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의무 등 현실에 적합하게 관련 조항을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가. 종전 동사무소에 한정되었던 주민 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을 관할구역 내 유휴시설로 확대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함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 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2006.5.2 (제1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212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2006.4.25 구 청 장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함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재해저감계획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자연대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함. 등	2006.5.3 (제2차) 원안가결
213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4.21 구 청 장	○2005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 지출사업건수 : 쌍용아진아파트 진입도로 및 태연재활원 진입도로 복구작업 외 6건 - 지출결정액 : 959,448,000원 - 지 출 액 : 851,999,790원 - 잔 액 : 107,448,210원	2006.5.8 (제4차) 승인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처수)
214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2006.4.25 구 청 장	○요구예산액 : 81,109,942천원 ▫일반회계 : 80,419,919천원 (증 6,912,634천원) ▫특별회계 : 690,023천원 (증 175,577천원) ▫심의기간 : 2006.5.3 ~ 5.7(5일간) ○삭감내역 ▫세 입 : 천원 ▫세 출 : 1건 5,000천원 (일반 1건 5,000천원) ○확정예산액 : 81,109,942천원 ▫일반회계 : 80,419,919천원 ▫특별회계 : 690,023천원	2006.5.8 (제4차) 수정가결
216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4.26 류인목외2명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2조(2005. 8. 4 공포, 법률 제7670호)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항목으로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그 지급기준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을 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2006. 2.. 8 공포, 대통령령 제19322호)개정으로 국내여비의 일부항목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당초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 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의 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나.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거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월정수당은 월130만원을 지급함	2006.5.3 (제2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다.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지급범위(제6조제1항)관련 숙박비, 식비등을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 것을 일원화하였음	
217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4.26 류인목외2명	○제안이유 ㅇ「지방자치법」 제32조(2005. 8. 4 공포, 법률 제7670호)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3(2006. 2. 8공포, 대통령령 제 19322호)의 개정 규정에 의거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이 제도화 됨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의 신설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 하고자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ㅇ가. 제명 개정 ·당초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 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개정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나.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거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함 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함	2006.5.3 (제2차) 원안가결

16. 제89회임시회 : 2006. 6. 7 ~ 6. 7(1일간)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218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2006.5.25 구 청 장	○제안이유 ㅇ「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 봉사활동 지원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사업 등을 제도적으로 뒷 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가.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관하여 규정 -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으로 규정함.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 -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선임하며,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함. 다.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 등	2006.6.7 (제1차) 원안가결
219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5.25 구 청 장	○제안이유 ㅇ「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공시심의위원 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가. 제명을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함	2006.6.7 (제1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나. 위원회의 목적에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에서 15인으로 조정함 마.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함	
220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5.25 구 청 장	○제안이유 ㅇ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1단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연관이 있는 사회복지, 고용, 문화체육, 평생교육, 주거복지, 관광, 여가지원 등의 조직을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이에 따라 과 신설 및 폐지 등 조직을 개편하여 국에 두는 과와 주요 분장 사무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가. 경제사회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 나. 도시건설국을 도시경제국으로 개편 다. 자치지원단을 폐지하고 2과를 신설하였으며, 담당을 조정 통합하여 5개과를 명칭변경 함	2006.6.7 (제1차) 수정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4과 신설(1과 순증) ●기획감사실(정보관리, 정보통신)+총무과(경리, 재산관리, 복식부기) = 회계정보과 ●지역경제과(직업안정)+사회복지과(생활보장)+자치지원단(주민참여)+통합조사(신설)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사회복지과(복지기획, 여성아동, 노인복지) = 복지서비스과(노인복지, 여성아동, 장애인복지) ●지역경제과(지역경제, 상공)+도시 교통과(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신설) = 경제교통과(경제협력, 기업지원,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담당 타과로 이관 후 명칭변경 : 5개과 ●기획감사실(정보관리, 정보통신 → 회계정보과, 문화공보과 공보편입) ⇒ 기획홍보실 ●문화공보과(공보 ⇒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농림수산과(산림, 공원녹지 → 도시녹지과) ⇒ 생명산업과 ●건축과(환경미화과 도시미관 편입) ⇒ 건축주택과 ●환경미화과(도시미관 → 건축과로 이관) ⇒ 청소행정과 ※ 수정내용 ▫안 제5조의2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제①항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를 둔다"를 → "주민생활 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로 한다.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221</td><td>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td><td>2006.5.25
구 청 장</td><td>○제안이유
ㅇ주민생활지원조직을 통합하여 서비스 달체계를 개선하는 조직개편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각종 상담·접수,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현장성·대면성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 부서 전담인력 보충과 일부 부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3조와 관련된 별표의 1과 2담당 신설에 따른 5급 및 6급 증원에 대한 직급간 상계 조정
• △3명(7급1, 9급2) ⇒ 3명 증(5급1, 6급2)</td><td>2006.6.7
(제1차)
원안가결</td></tr>
<tr><td>222</td><td>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td><td>2006.5.25
구 청 장</td><td>○제안이유
ㅇ당초 (구립)농소어린이집 건립 대상지가 매곡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접하여 대형차량 통행, 소음, 교통량 증가 등 보육환경 문제로 건립대상지를 변경코자 위치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구립) 농소어린이집 건립』부지 변경내역
<table>
<tr><th>구 분</th><th>당 초</th><th>변 경 후</th><th>변경사항</th></tr>
<tr><td>위 치</td><td>농소2동
(매곡동 590-1번지 외 3필지, 사유지)</td><td>농소2동
(매곡동 795-39번지 일원, 울산광역시 소유)</td><td>장소변경</td></tr>
<tr><td>취득부지</td><td>992㎡(300평)</td><td>1,000㎡(302평)정도</td><td></td></tr>
<tr><td>건 물</td><td>400㎡(121평),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td><td>400㎡(121평),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td><td></td></tr>
<tr><td>추정가격</td><td>700백만원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td><td>700백만원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td><td></td></tr>
<tr><td>건립재원
(백만원)</td><td>국비76, 시비58,
구비466,
특별교부금100</td><td>국비76, 시비58,
구비466, 특별교부금100</td><td></td></tr>
<tr><td>도시계획</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d>자연녹지지역</td><td></td></tr>
<tr><td>사업기간</td><td>2004. 7 ~ 2005. 2</td><td>2004년 ~ 2007년</td><td></td></tr>
</table></td><td>2006.6.7
(제1차)
원안가결</td></tr>
</table>

제 3 장
제3대 후반기 개회상황

제 1 절 제74회 제1차정례회
제 2 절 제75회 임시회
제 3 절 제76회 임시회
제 4 절 제77회 임시회
제 5 절 제78회 제2차정례회
제 6 절 제79회 임시회
제 7 절 제80회 임시회
제 8 절 제81회 임시회
제 9 절 제82회 임시회
제10절 제83회 제1차정례회
제11절 제84회 임시회
제12절 제85회 임시회
제13절 제86회 제2차정례회
제14절 제87회 임시회
제15절 제88회 임시회
제16절 제89회 임시회

제1절 제74회 제1차정례회

1. 개회이유

가.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8조(정례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04. 7. 7(수) 10:00

다. 회　　기 : 2004. 7. 7. ~ 7. 16 (10일간)

라. 부의안건

- ○ 2003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 ○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 ○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 ○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3대 북구의회 후반기 출범과 동시에 2004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제3대 북구의회 전반기를 원만하게 이끌어 오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게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3대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이란 중임을 맡기신 구민 여

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우정어린 배려의 참뜻을 되새겨 보며 실로 엄숙한 감회와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마음가짐으로 14만 구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헤아리고 살펴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에 또 다른 각오와 다짐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 그리고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심사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투표법의 시행을 앞두고 심의·처리하게 될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니 만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여야 할지 등이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7월은 올 한해 전반기를 반성하고 후반기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달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반기 중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향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운 일 궂은일에 먼저 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모두 어나서고 솔선수범 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갖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다음주 초부터 시작될 울산광역시 종합감사로 인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이번 정례회와 일정이 겹쳐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주어진 임무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7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하 인 규**

3. 의사일정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4.7.7~7.16(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7.7 (수) 10: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7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3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 (결산검사위원) 4. 제7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7.8 (목) 10:00	2	1.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 (의안번호110호, 자치행정과)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99호, 기획감사실) 3.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안번호 111호) ○기획감사실(관련부서)	수정가결 수정가결
2004.7.9 (금) 10:00	3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안번호 112호) ○총무국(자치행정과,문화공보과,지방세과)	
2004.7.10 (토)		휴회(휴무토요일)	
2004.7.11 (일)		휴회(일요일)	
2004.7.12 (월) 10:00	4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총무국(총무과,민원봉사과) ○ 보건소	
2004.7.13 (화) 10:00	5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2004.7.14 (수) 10:00	6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건설과 농림수산과,허가과)	
2004.7.15 (목) 10:00	7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기획감사실 ○ 의회사무과	
2004.7.16 (금) 10:00	8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종합의결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 종합의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 30.(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7. 8.(제74회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제정(2004. 1. 29. 법률 제7124호)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등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는 등 구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20세 이상의 외국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함(안 제3조)

○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한 주민투표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4조)

○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과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 ○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 ○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 기타 법 제7조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 ○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총수의 15분의 1로 정함(안 제5조)
- ○ 주민투표를 청구한 대표자가 주민에게 서명 요청시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덧붙이도록 하며, 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명요청방식을 정함(안 제6조)
- ○ 청구인대표자와 대표자로부터 서명 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주민에게 청구인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함(안 제7조)
- ○ 청구인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안 제8조)
- ○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9조)
- ○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확인을 위해 구청장은 동장에게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은 행정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제11조)

○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안 제12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 위원의 임기와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13조·제14조)

○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 및 결정기간 등을 정함(안 제15조)

○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규정함(안 제16조)

○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에 관한 사항 및 공표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7조·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제정(2004. 1. 29. 법률 제7124호) 되어 2004. 7.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구민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 본 제정안은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구의 책무(안 제2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안 제3조), 주민투표의 대상(안 제4조), 투표청구 주민수(안 제5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등 총18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2004. 5. 31일부터 6. 21일까지 22일간의 입법예고와 2004. 6. 22일 '의견수렴간담회'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

○ 이 조례에서 가장 핵심사항은 안 제4조의 주민투표대상과 안 제5조의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라 판단됨. 안 제4조의 주민투표대상의 경우 표준안에 근거한 내용상의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 안 제5조의 투표청구 주민 수에 있어서 우리구의 경우 행정자치

부 권고사항에는 20세이상 인구규모대비 청구주민 수 적용비율을 1/9로 하고 있고, 조례안에서는 1/15로 정하고 있음.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참여확대라는 제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청구 주민수 비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비율을 너무 낮출 경우 주민투표남용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및 업무추진의 장애 등 부작용 또한 고려할 사항임.

2003. 12. 31일기준 현재 우리구는 행자부 권고안 1/9에 의할 경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85,646명 대비 투표청구 주민수는 9,517명이고, 조례안 1/15에 의할 경우 5,710명이 됨.

私見입니다만, 투표청구수 적용비율은 주민참여에 의한 民主性과 행정 업무의 效率性이라는 대립하는 양 측면뿐만 아니라 투표청구의 代表性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가치임을 판단해 볼 때 투표청구 주민수 1/15은 너무 낮다고 판단되며 비율을 약간 높여 1/10(8,565명)로 정함이 바람직해 보임.

○ 기타 서명요청방식, 청구인 서명부 작성 등의 절차 및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음.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 ---------- ---------- ---------- ----------20분의 1 -----.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안번호9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 30.(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7. 8.(제74회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일부 조직의 통·폐합과 신설 등 조직을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직의 통·폐합 내용

1) 도시건설국 소관 분장사무중 재난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광고물 등 도시미관업무에 관한 사무를 경제사회국 소관 분장사무로 하며, (안 제6조제2항제2호)

2)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에 포함된 공공시설 신축에 관한 사무를 도시건설국 분장사무로 신설 (안 제6조제2항제4호)

3) 총무국 소관 120즉시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사무를 경제사회국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도서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신설 (안 제5조제2항제3호, 제5조의2제2항제5호)

나)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 연장(부칙)

• 당초 : 2004. 6. 30 • 변경 : 2005. 6. 30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수정안은 제72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99호로서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수정내용은 당초 원안에서 한시기구로 설치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5. 6.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부칙을 추가하기 위한 안건임.

○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나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관련지침이 6. 29일 시달되어 이번 정례회에 관련 내용을 회부하게 됨. 수정안대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생략) ②(생략) 1. (생략) 2. 자치행정, 동정관리,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민방위업무 등에 관한 사무 3. 구정홍보 및 공보발행, 문화관광, 체육청소년업무 등에 관한 사무 4.~6. (생략) 제5조2(경제사회국에 두는 과) ①(생략) ②(생략) 1.~4. (생략) 5. 폐기물처리, 재활용, 음식물처리 업무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자치행정, 동정관리,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민방위재난업무 등에 관한 사무 3. 구정홍보 및 공보발행, 문화관광, 체육청소년업무, 도서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 사무 4.~6. (현행과 같음) 제5조2(경제사회국에 두는 과) ①(현행과같음) ②(현행과같음) 1.~4. (현행과 같음) 5. 폐기물처리, 재활용, 음식물처리, 도시미관 및 120즉시민원처리 업무 등에 관한 사무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허가과----. ② (생략) 1. (생략) 2.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풍수해방지, 재난·재해관리 및 치수업무에 관한 사무 3. (생략) 4. 건축, 주택행정, 광고물 등 도시미관업무에 관한 사무. 5. (생략)	제6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건축과----.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풍수해방지, 재해관리 및 치수업무에 관한 사무 3. (현행과 같음) 4. 건축, 주택행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신축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현행과 같음)

제2절 제75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김재근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4. 9. 1. 10:00

다. 회　　기 : 2004. 9. 1.(1일간)

라. 부의안건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음식물자원화시설추진상황)

2. 개회사

존경하는 14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이하여 오늘 이처럼 제7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기에서는 북구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추진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통하여 사업추진 내용을 확인하고 의회차원에서의 지원 및 대안제시 등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자 본인부담원칙에 입각한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타지역에 위탁처리 시에는 차후 처리비 인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바로 북구 주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두 차례의 격론 끝에 부결되었으나 우리 북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2002년 12월에 가결되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의 중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 비록 소수든 다수든 간에 지역주민들의 목소리 또한 간과(看過)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을지연습훈련과 태풍피해 복구지원 등으로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압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태풍으로 인한 관내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상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75회 임시회가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하 인 규**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7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4.9.1~ 9.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9.1 (수) 10: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7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7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경제사회국(환경미화과) ○총무국(총무과)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 그 간 추진경위

○ 기본현황

- 시설규모 : 30톤/일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29번지(3,170㎡)
- 방 식 : 퇴비화(지렁이 사육)
- 공사기간 : 2003. 12. 5 ~ 2004. 9. 3

- 건　　축 : 지상2층, 연면적 835.76㎡(252평)
- 사 업 비 : 2,770백만원(국831 시1,469.5 구469.5)

○ 시설의 필요성

- 2005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에 대비하여 2004. 4. 1부터 분리수거 전면 시행
- 분리 수거된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 근거리의 시설을 이용하므로써 수집·운반·처리시간 단축
- 수거 지연사태 예방 주민편익 제공

○ 추진상황

- 1998.12~'01. 2 : 2,330세대에 대해 분리수거 시작
  - 이후 16,687세대 11톤/일 소사육 농가 공급(경주2, 강동1)
  - 2001년 당초예산 360백만원(국비108, 시비126, 구비126) 편성
- 2001. 2. 6 : 광우병 파동으로 음식물 소사료 전면금지(재검토)
- 2001. 8. 30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계획 수립(지렁이사육)
- 2001. 9. 1 :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 승인 신청
  - 방식 : 퇴비화(지렁이) - 규모 : 30톤/일
- 01. 9. 1~10. 12 : 자원화시설 설치 대상지 조사
  - 국·공유지 중심(3,000㎡ 이상)
- 2001. 11. 5 : 시설설치 예정지 결정(중산동 829번지)
- 2001. 11. 30 : 국유지 매입 신청(재정경제부)
- 2002. 2. 28 : 국유지 매각 결정(34,870천원)
- 2002. 4. 19 : 국시비 예산편성(2002년 제1회 추경)
  - 1,566.5백만원(국비723, 시비843.5)
- 2002. 8. 30 : 북구의회 운영중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남해)

- 2002. 10. 25 : 구비 예산편성(2002년 제2회 추경)
  - 343.5백만원(구비), 500백만원(시 특별교부금)
- 2002. 12. 3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02. 12. 12 : 주민설명회(중산현대관리사무소, 주민30명)
- 2002. 12. 13 : 부지매입 및 등기
- 2002. 12. 20 : 주민자치위원 설명회(농소2동 자치위원15명)
- 2002. 12. 23 : 통장 설명회(농소2동 통장20명)
- 2002. 12. 30 : 주민 간담회(구청장실, 비대위위원장 등 주민14명)
- 2003. 1.3, 1.6, 1.10 : 남해군자원화시설견학(주민41명)
- 2003. 1. 7 : 홍보물 제작 배포(4,000매 - 10일간)
- 2003. 1. 25 : 자원화시설설치관련 구정소식지 "희망북구" 게재 및 이화지역아파트 11개소 2,498세대 각 세대 배포
- 2003. 2. 9 : MBC 울산진단 출연토론(구청장, 남해시설대표, 비대위공동의장, 부의장, 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 2003. 2. 10 : 남해군자원화시설 주민견학(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33명, 부구청장외 공무원 10명)
- 2003. 2. 19 : 남해군자원화시설 견학(비대위 의장 등 44명)
- 2003. 2. 23 : 자원화시설관련 라디오 방송(MBC 백만시민의 광장)
- 2003. 2. 25 : 자원화시설설치관련 구정소식지를 통한 홍보
- 2003. 3. 12 : 주민토론회 개최(2층 대회의실)
  (비대위의장, 구청장, 주민 150여명)

• 2003. 3. 28 : 「ubc시사진단 함께 풀어봅시다.」 방송출연 토론(구청장, 강혁진 비대위의장 등)
• 2003. 5. 26 :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공사 기술공모공고
• 2003. 7. 9 : 공모제안서 접수(3개사)
• 2003. 7. 22 : 공모제안서 심의 평가회 개최
- 1순위 : 해창, 2순위 : 지렁이와 환경, 3순위 : 대경기계
• 2003. 7. 23 : 업체실사 ⇒ 1, 2순위업체(7. 23 ~ 8. 8)
- 실사결과, 1순위업체 결격사유 발생 : 실적증명서 허위작성, 운영시설 부적합
• 2003. 8. 11 : 시공업체 최종 확정 → (주)지렁이와환경
• 2003. 9. 2 : 자원화시설 실시설계 용역계약
• 2003. 12. 5 : 착공계 접수
• 2003. 12. 20 : 사무실 개설, 파일공사, 휀스 설치 등
• 2004. 2. 9 : 진입로 개설
• 2004. 3. 8 : 공사 잠정중단 발표(기자회견)
• 2004. 3. 23 : 중산동 주민과의 토론회 개최(온누리교회, 200여명)
• 2004. 3. 29 : 구청장과 비대위와의 대화(구청 소회의실, 15명)
• 2004. 5. 3 : 주민대화 방안 제의(구청 → 비상대책위원회) 先 당정협의 입장정리, 後 주민대화
• 2004. 5. 3 :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역외이전 건의(광역시) 광역시 기초환경시설 부지내 불가통보(7. 22)
• 2004. 6. 21 :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 2004. 8. 16 :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전부지 협의 시장방문(불가)
• 2004. 8. 25 : 농소2동 주민대표 설명회 개최(35명, 통장,

자치위원)

• 2004. 8. 26 : 중산동 주민 설명회 개최(비대위 15명)

• 2004. 8. 31 ~ 9. 3 : 중산동 지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예정

◎ 시설설치가 지연된 사유

○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간담회, 전문가 초청토론회 개최 등 주민홍보 기간 확보에 따른 사업 연기

○ 「자원화시설」 ⇒ 「혐오시설」 인식, 인근 주민들의 공사방해, 시공업체의 대비책 미흡

○ 총선후보자의 부정적 공약 남발, 총선에 정치적 악용의 연계고리 차단, 주민분열 예방차원에서 공사잠정 중단

◎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유 및 대책

○ 주민동의를 얻지 못한 사유

•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결 : 대의적 주민동의

- 예산의 승인 : 2002년 제1, 2회 추가경정예산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02. 12. 3

• 지역주민들의 당초 환경적,기술적 문제의 반대 논리가 비현실적인 정서상 반대로 전환된 전형적인 님비현상으로 동의가 어려운 현실임

- 악취, 해충, 교통난, 미관상문제 등에 기술적인 보완 가능 제시

- 문화, 복지 소외되고 낙후 → 정책적 배려 약속, 실천중

→ 先 문화,복지시설 요구(자원화시설 설치의 시기성 무시)

→ 동네이미지 실추, 집값 하락, 중산동 전부지 매입 등

(과거 처리시설에 대한 선입감, 전형적인 님비현상)

○ 대 책

• 주민들이 우려하는 기술적 측면 보완 ⇒ 완벽한 시설 설치

• 지역별 순회설명회 ⇒ 공사재개의 불가피성, 지역개발론 방안 제시

• 님비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민정서의 회복

⇒ 철저한 시설 운영으로 주민들의 염려가 기우였음을 증명

◎ 향후 추진계획

○ 지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 기　　간 : 2004. 8. 31 ~ 9. 3(4일간)

• 대상지역 : 약수, 화정, 이화본동, 현대글로리아 주변

• 내　　용 : 공사재개 불가피성 설명, 공사방해 자제 요청 등

○ 현부지 공사재개

◎ 기타 등

○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기관별 견해 및 의지

• 환경부, 광역시, 울산발전연구원

- 자치구 고유사무로 배출자 부담원칙 자치구에서 설치

• 시공업자

- 대내외적 신인도 저하, 영업손실 증가→공사재개불가피

- 공사재개시 주민 공사방해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

• 감사원 : 자원화시설 설치 부진사유 제출(2004. 8. 23)

◇ 음식물자원화시설부지 취득변경 및 취소여부에 관한 사항

◎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 취득변경

○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결정 요인

• 국유지 매입

⇒ 재정자립도를 감안, 저렴한 국유지를 최대한 활용

• 접근성 용이

⇒ 북구 인구의 50%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지역과 접근용이

• 교통의 편리성

⇒ 수거한 음식물을 주택가 등을 경유하지 않고 7호 국도에서 바로 진입 가능

• 오폐수처리 용이성

⇒ 동천강 둑에 매설되어 있는 방어진하수처리장 하수관로에 직연결 가능

○ 역내·외 이전 건의 및 검토 결과

• 우리구 주민의 반대로 중단된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 절대로 우호적일 수 없고, 반드시 주민반발에 직면

• 녹지훼손 불가,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전 건의에 불가 통보, 이는 자추진하라는 광역시장의 의지가 재확인 된 것으로, 시에서는 이전부지 제공 의사가 없음

• 취득변경시 이전부지물색,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승인, 주민반발, 시공 업체의 공사지연에 따른 반발 등 공사재개 불투명

⇒ 2005년에 시행되는 음식물직매립금지에 능동적대처 불가로 주민 부담 가중

◎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 취소

○ 의결권을 행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12월 31일에 종기를 맞이하는 행정계획(의결)으로 종기 이후 의회나 집행부 스스로 취소 철회 등 변경행위를 하지 못하는 확정력을 가짐(지방재정법 제77조)

○ 자체시설 미확보에 따른 불이익 감수

• 위탁시설의 무리한 단가 인상 요구에 수용 불가피

- 현재 톤당 38,100원 : 2 ~ 3년내 7만원선 인상계획

• 2005년 직매립금지 대안 부재

→ 향후 불편가중 및 불만이 전구민에게 확산 예상

○ 막대한 예산손실 감수

• 국·시비 반납 및 향후 보조금 확보에도 악영향

• 시공업체 손해배상(전액 구비)

⇒ 주민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 취득변경, 취소 없이 현시점에서 공사 재개

제3절 제76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김대영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4. 10. 15. 10:30

다. 회　　기 : 2004. 10. 15. ~ 10. 26.(12일간)

라. 부의안건

- ○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 제의)
-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넉넉함이 느껴지는 이때 제7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건,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을 심의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로 두 번째 다루어지는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견실하고 균형 잡힌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의 주요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달에 열리는 제2차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5년도 예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회기이오니 지금부터 준비 자료를 하나하나 연구 검토하시어 구정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초에 우리 구민에게 약속하였던 업무계획들을 성실히 챙겨 목표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솟은 땀과 정성이 이제 풍성한 결실로 이어져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다행히도 올해의 작황은 태풍 등의 자연재해의 영향을 덜 받아 풍년 농사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 온 농작물을 적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76회 임시회가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인 이때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결실의 계절에 하시는 일 모두가 알찬 성과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하 인 규**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7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4.10.15~10.26(12일간)

월 일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10.15 (금) 10:3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7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 제안설명-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7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04.10.16 (토) 10:00	2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무국 (총무과,지방세과)	
04.10.17 (일)		휴회(일 요 일)	
04.10.18 (월) 10:30	3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총무국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10.19 (화) 10:30	4	1. 2 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04.10.20 (수) 10:30	5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04.10.21 (목) 10:30	6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보건소 ○기획감사실	
04.10.22 (금) 10:30	7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2.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계수조정	
04.10.23 (토)		휴회(휴무토요일)	
04.10.24 (일)		휴회(일 요 일)	
04.10.25 (월) 10:30	8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과)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의회사무과)	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04.10.26 (화) 10:30	9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식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0. 8.(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10. 25.(제76회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현행과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유지할 경우 주35시간 근무가 되므로,

○ 동절기 퇴근 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대주민 서비스의 지속 제공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퇴근시간을 1시간(5시에서 6시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개정안은 이미 제73회 임시회시 의안번호 제107호에서 다루어 진바 있음

○ 본 조례안은 11월부터 시작되는 동절기 근무시간을 앞두고 조례 제13조 제1항 후반부의 동절기 근무시간 17까지의 근무시간을 삭제하고 하절기, 동절기 구분 없이 18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일원화하는 것으로써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시행, 1시간 연장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거 수 십 년간 시행해 온 동절기 근무시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 공무원 중식시간에 대한 업무시간 포함여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시달에 의한 조례

제정권의 지자체 자율성훼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 10월 중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근무시간을 18시로 일원화 시킨 점, 울산시의 경우 동구를 제외한 시, 울주군, 남구, 중구도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한 점에 비춰 우리구도 앞의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행정의 통일성 및 대국민 대주민 행정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심의결과 : 부결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1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0. 8.(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10. 25.(제76회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부　　지 : 701.8㎡(212평)

◦ 건　　물 : 지상2층 826㎡정도(250평),

◦ 사 업 비 : 1,570,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신축은 정보화시대 구민들의 지식획득

과 정보공유를 용이하게 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여가선용을 통한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임.

○ 본 공유재산취득 계획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며 취득재산은 현재 재경부 부지로써 매입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정부지 주변의 호계초등학교 및 농소 초·중학교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접근성 및 활용도는 클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준주거지역이지만 주변에 상가 및 음식점 등이 많다는 점, 부지면적(212평)이 협소한 점(농소3동 권역별도서관 부지면적은 293평임) 그리고 차량주차 및 어린이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4. 10. 11.(김대영운영위원장 외 2인)

○ 심의일자 : 2004. 10. 25.(제76회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이 체계화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자구 일부를 수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전자결재 문서에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공인의 인영을 매년 1회 공인대장에 날인·보존토록 근거 마련(안 제 5조의2)

다) 공인의 찍는 위치를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함(안 제7조)

라) 공인폐기시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함(안 제8조제2항)

마)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 시 일반공인처럼 공보에 공고토록 의무화(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7811호) 및 동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03호)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 하고자 김대영운영위원장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임.

○ 공문서상 전자문서가 일반화되어감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에 있어서도 기존 공인의 등록, 재등록과 동일하게 하고 공인의 폐기방법을 별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폐기하지 않고 이관시킴으로써 공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보존을 하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4절 제77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김대영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4. 11. 23. 11:00

다. 회　　기 : 2004. 11. 23. ~ 11. 24.(2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북구각종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제7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7회 임시회는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확인과 집행부에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온 제2차정례회에서 다룰 2005년도 예산안 심의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사전 준비 시간을 갖는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에 열리게 될 행정사무감사에서 잘잘못을 가려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한 번 더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당초 계획된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고 정리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이때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하 인 규**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7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4.11.23~11.24(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11.23 (화) 10:30		(개 회 식)	
	1	1. 제7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개회식 직 후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7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04.11.24 (수)10:30	2	◆ 현장확인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1. 9.(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11. 23.(제77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지급되던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16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급 기준액을 신설하여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액을 신설함(안 제3조, 별표)

구 분	지급금액	초 과 기 준
위원회	• 기본 : 70,000원 • 초과 : 3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위원회	• 기본 : 50,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개정안은 제3조의 일부를 개정하여 각종 위원회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성하던 것을 별표의 수당 지급기준액을 신설하고자하는 것임.

○ '지급금액'에 있어, '2004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바, 시간강사 수당(평균 시간당 3만원정도)에 근거하여 편성된 본 금액은 적정하다고 봄. 다만, 사이버위원회의 경우 사이버상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견해 표명이 가능하므로 기본 지급금액을 "5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함.

○ 그리고, '초과기준'에 있어,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이라는 표현을 기준에 대한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자구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 시작 2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시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3조(수당)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td><td>제3조(수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위원회 참석수당(제3조 관련)
<table>
<tr><th>구분</th><th>지급금액</th><th>초과기준</th></tr>
<tr><td>위원회</td><td>· 기본:70,000원
· 초과:30,000원</td><td>· 회의시작 4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해 지급</td></tr>
</table>
</td></tr>
</table>

□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2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1. 9.(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11. 23.(제77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2004. 3. 1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2.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3.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제정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 본 제정안은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위원의 임기(안 제4조),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 위원회내 실무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등 총14개 조문,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 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정조례준칙안"에 근거하여 만들어져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 등 내용상의 하자는 없어 보이며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재 재난관리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으로 말미암아 "총무국장"은 위원이지만, 업무특성상 도시건설분야와의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하는 "도시건설국장"은 위원에서 배제되어, 도시건설국장을 위원으로 추가하던지 아니면 업무를 도시건설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5절 제78회 제2차정례회

1. 개회이유

가. 근　　거 : 지방치법 제38조(정례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집회)소집요구

나. 개회일시 : 2004. 11. 25. 10:30

다. 회　　기 : 2004. 11. 25. ~ 12. 18(24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결의건(의장 제의)

○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계속)(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하반기 바쁜 의사일정 관계로 이틀간의 임시회가 끝나고 여유도 없이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정중한 경의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의 구정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한 해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의 현안사항을 다루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내주부터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진단하여 구정운영의 틀을 바로잡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거시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 건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못함을 충분히 감안하여 좀더 엄격하고도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자치구로서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당부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동절기를 맞아 재해대책 및 산불 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소외된 불우이웃에게도 관심과 따뜻한 정성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하 인 규**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7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4.11.25-12.18(2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11.25 (목) 10:30 개 회 식 직 후		개 회 식	
	1	1. 제7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4. 제7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4.11.26 (금) 10:30	2	1.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안(환경위생과) 2.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 조례안(사회복지과) 3.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안 (사회복지과)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4.11.27 (토)		휴무 토요일	
2004.11.28 (일)		일 요 일	
2004.11.29 ~ 2004.12.5 (7일간)		행 정 사 무 감 사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11.29 ~ 2004.12.5 (7일간)		행 정 사 무 감 사	
2004.12.6 ~ 2004.12.17 〈12일간〉	3~ 1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예산안 심의 -	
2004.12.18 (토) 10:30	13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결의건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폐 회	

【200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 사 대 상 부 서	비 고
2004.11.29 (월)	10:30	소회의실	○증인선서 - 실·국·소·과·동장 ○기획감사실 ○총 무 국 ·총무과	1
2004.11.30 (화)	10:30	〃	○총 무 국 ·민원봉사과 ·지방세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2
2004.12.1 (수)	10:30	〃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3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4.12.2 (목)	10:30	소회의실	○경제사회국 · 환경미화과 ○도시건설국 · 건축과 · 도시교통과	4
2004.12.3 (금)	10:30	〃	○도시건설국 · 건설과 · 농림수산과	5
2004.12.4 (토)	10:30	〃	○보건소 ○의회사무과 ○전부서부분별	6
2004.12.5 (일)	10:30	대상사무현장	○현장확인	
2004.12.2 (목)	10:30	소회의실	○경제사회국 · 환경미화과 ○도시건설국 · 건축과 · 도시교통과	4
2004.12.3 (금)	10:30	〃	○도시건설국 · 건설과 · 농림수산과	5
2004.12.4 (토)	10:30	〃	○보건소 ○의회사무과 ○전부서부분별	6
2004.12..5 (일)	10:30	대상사무현장	○현장확인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200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4.12.6-12.17(1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12.6 (월) 10:30	3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과) 3.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총무국(총무과,자치행정과)	
2004.12.7 (화) 10:30	4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총무국(민원봉사과,지방세과)	
2004.12.8 (수) 10:30	5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총무국(문화공보과)	
2003.12.9 (목) 10:30	6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	
2004.12.10 (금) 10:30	7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12.11 (토)		휴무 토요일	
2004.12.12 (일)		일 요 일	
2004.12.13 (월) 10:30	8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 건설과)	
2004.12.14 (화) 10:30	9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도시건설국(건축과,농림수산과)	
2004.12.15 (수) 10:30	10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보건소	
2004.12.16 (목) 10:30	11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2004.12.17 (금) 10:30	12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계수조정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안번호 제12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1. 9.(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11. 26.(제78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구체화(안 제9조)
2.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안 제11조 내지 제13조)
3.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안 제14조 내지 제15조)
4. 유료화장실 신고 및 준수사항(안 제16조 내지 제17조)
5. 과태료 부과 기준 정함(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공중화 장실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임.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을 구체화(안 제9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안 제11조 내지 제13조),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안 제14조 내지 제15조), 유료화장실 신고 및 준수사항(안 제16조 내지 제17조),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18조) 등 총18개 조문,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형식상, 내용상 하자는 없어 보이며, 향후 조례에 근거하여 좀 더 철저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안(의안번호 제12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1. 9.(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11. 26.(제78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원사항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한정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공공부조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난방비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내지 제2조)

2. 난방비 지급대상자 기준 및 지급시기 근거 마련(안 제3조 내지 제5조)

3. 난방비 지급중지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공공부조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창설적 조례임.

○ 본 조례안은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안 제3조 및 제4조), 지급시기 및 지급중지(안 제5조 및 제6조) 등 총7개 조문,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안이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이 가중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됨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조례제정의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봄.

○ 내용에 있어 안 제1조(목적)부분에서 이 조례를 왜 제정하게 되었는지 필요성 및 목적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목적성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고, 안 제2조(정의)부분에서 포괄적인 개념정의보다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상 다음의 표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조 례 안	수 정 의 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상대적으로 공공부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차상위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최소한의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 난방비(이하 "난방비"라 한다)"이라 함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난방을 위하여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1.1부터 시행한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상대적으로 공공부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차상위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최소한의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난방비(이하 "난방비"라 한다)"이라 함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난방을 위하여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안(의안번호 제12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1. 9.(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11. 26.(제78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기준 및 시기(안 제3조 및 제5조)

2.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지급중지 기준(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창설적 조례임.

○ 본 조례안은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지급대상 및 수당지급(안 제3조 내지 제5조), 지급중지(안 제6조) 등 총7개 조문,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현재, 전국지자체중 제주도, 계룡시, 부여군 등이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 안 제3조의 장수수당 지급대상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체 연령별 노인인구, 구재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 바, 조례안의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자로 할 경우 95명에 소요예산은 연간 2,400만원(2004년 10월기준)으로 파악되어 우리구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라 판단됨.

○ 그러나, 고령화사회의 가속화와 세부담의 증가, 구군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시로부터 적정한 보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2005년도 예산안(200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서 P.388참조)에 반영되어 있음.

○ 안 제4조의 수당신청에 있어, 장수노인인 수급권자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각동 관련업무 담당자가 배제되는 장수노인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와 안내가 요구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6절 제79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김대영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4. 12. 20. 10:30

다. 회　　기 : 2004. 12. 20. ~ 12. 24.(5일간)

라. 부의안건

-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결의안(윤임지의원 외 2인 발의)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금년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차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당부하고 지적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구정의 살림이 짜임새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북구 구세징 수포상금지급조례안을 비롯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이 많으실 줄 알지만 올 한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 시간만 되면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후회스럽고 아쉬운 일들만 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일을 위한 반성이요, 희망이라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새해에는 다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 을유년에는 한층 더 알차고 내실 있게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아 우리 주변에 소외된 불우한 이웃들이 없는지 살피시고 그분들에게도 변함없는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해 마지막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내실있게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14만 구민을 위해 한 해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7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하 인 규**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7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4.12.20~12.24(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12.20 (월) 10:3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7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결의안 5. 제7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04.12.21 (화) 10:30	2	1.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의안번호제132호,지방세과) 2.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 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제133호,자치행정과)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번호제135호,총무과) 4.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총무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12.22 (수) 10:30	3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04.12.23 (목) 10:30	4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계수조정	
04.12.24 (금) 10:30	5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종합심의의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의안번호 제13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2.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12. 21.(제79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98. 12. 31 폐지된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부활시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체납세를 일소하고 체납세 징수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향후 체납세 징수에 큰 관심과 노력을 다하여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지급 대상(안 제2조)

○ 과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2. 지급 기준(안 제3조)

○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1

○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3. 지급 한도(안 제4조)

○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 1건당 30만원

○ 개인당 월 지급액 : 60만원

4. 지급 심의(안 제5조)

5. 구정조정위원회 심사·결정후 지급

6. 지급 신청 및 관리(안 제6조)

○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서 및 지급대장 비치·관리

7. 포상금 지급(안 제7조)

○ 포상금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

○ 당해 징수액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

○ 징수한 공무원의 개인 예금계좌에 입금

8. 포상금 환수(안 제8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 9월 26일 제6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시 체납징수는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이고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는 이유로 부결되었던 조례임.

○ 본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대상(안 제2조), 포상금 지급기준 (안 제3조), 포상금 지급한도(안 제4조),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 (안 제5조), 포상금 지급 신청 및 관리(안 제6조), 포상금 지급 (안 제7조) 등을 포함하여 총 8개 조문 및 부칙으로 되어있음.

○ 본 조례안은 작년에 제출된 案과 비교하여 지급대상을 과년도 구세에 한정하였고, 지급대상자에 있어서도 공무원에만 대상으로 하여 포상금지급 범위를 제한하였음.

○ 본 안건의 형식 및 내용상 하자는 없어 보이며, 첨부와 같이 이미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포상금지급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장될 수 있는 세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세원확보를 위하여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3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2.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12. 21.(제79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자금은 지역여건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당초 기금설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 현 보유자금으로 다수의 농·어가에 대한 지원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자금이 농림수산과와 농협을 통해 지원되고 있고, 융자지원가구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부 칙》

○ 시 행 일 : 2009년 6월 30일부

○ 경과조치

- 이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일전까지 존속하는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의 상환을 종료하기 위한 회수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함.
- 이 조례 공포일 현재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현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며, 매년도별로 회수하는 융자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안이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시대적 환경변화와 지역여건에 맞지 않아 본 특별회계를 운영관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바, 기 융자된 자금의 회수기간을 고려 부칙에 경과조치를 둔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함.

○ 그리고 2004. 11. 15~12. 4동안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고, 2004년도에는 융자신청 또한 없었으며 2005년도예산안에 편성된 융자금의 경우 전액 삭감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3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2.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12. 21.(제79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북구 기적의 도서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울산북구 기적의 도서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 소 재 지 : 북구 중산동 570-2번지 외1필지

◦ 규　　모 : 지상1 · 지하1층, 연면적 728.5㎡(220평)

◦ 재산가액 : 1,019,700천원

◦ 용　　도 : 어린이전용 도서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울산북구 기적의 도서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것으로서 같은 건에 대하여 2003.6. 17일 제63회 임시회시 토지 매입을 위하여 취득 승인한 바 있으며,

○ 이번에 건물에 대하여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체결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어린이전용공공도서관건립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재)책읽는 사회문화재단이 기부 승낙해옴에 따라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7절 제80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김대영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205. 2. 18 (금) 10:30

다. 회　　기 : 2005. 2. 18 ~ 2. 28 (11일간)

라. 부의안건

○ 2005년도주요업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건 의원 외 2인 발의)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2005년도 첫 회기인 제8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구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북구의회가 더욱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한해도 국내·외적 상황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선언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는 물론, 남북·북미 관계가 본격적인 긴장국면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또한 국내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연초부터 서민경제 살리기와 선진한국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궁극적으로 주민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2005년도 구정시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울산광역시북구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들의

의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조례안 등 일반 의안도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집행을 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해 예산집행의 오류나 부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2월 18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하 인 규**

3. 의사일정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5.02.18~2005.02.28(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02.18 (금) 10:30 개회식직후		개 회 식	
	1	1. 제8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8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5.02.19 (토) 10:30	2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감사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02.19 (토) 10:30	2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감사실	
2005.02.20 (일)		휴회(일요일)	
2005.02.21 (월) 10:30	3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2005.02.22 (화) 10:30	4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경제사회국(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0호, 환경미화과) 3.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1호, 환경미화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5.02.23 (수) 10:30	5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총무국(총무과, 문화공보과)	
2005.02.24 (목) 10:30	6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총무국(민원봉사과, 지방세과, 자치행정과) 2.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8호, 지방세과) 3.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9호, 자치행정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자	순서	의 사 내 용	비 고
2005.02.25 (금) 10:30	7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도시건설국(건축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2005.02.26 (토)		휴회(휴무토요일)	
2005.02.27 (일)		휴회(일요일)	
2005.02.28 (월) 10:30	8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보건소 2.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보건소)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류재건의원)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44호, 김대영의원)	심의보류 원안가결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4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2. 3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2. 22 (제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중 감량의무사업장 적용기준인 객석(객실 포함) 면적을 적용하게 되므로 영업장 면적 기준과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영업과 관련된 객실(객석 포함), 조리실, 기타 면적 등을 통합하여 일률적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일반음식점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에 대한 제외사항을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에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적용(안 제2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11일 공포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안 제2조제2호와 별지 제1호서식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중 감량의무사업장 적용기준인 객석(객실 포함)면적을 적용함에 따른 영업장면적 기준과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 영업과 관련된 객실(객석 포함), 조리실, 기타 면적 등을 통합한 영업장 면적의 일률적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객석면적보다 영업장 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개정사항은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2. 3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2. 22 (제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2004.6.7 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 (2004.12.28)

나. 주요내용

○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주민신고시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토록 한 규정을 삭제(제9조제1항 삭제)

○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제16조제1항)

○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규모를 월간 100만원에서 전국기준 50만원으로 하향조정(제17조제1항제3호)

○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환경개선을 제고하기 위해 매장규모 33제곱미터 이하의 도·소매업소도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포함하되,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는 제외

(별표)

○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부과기준에 사업자나 신고인에게 요구되는 준수비용 및 신고비용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별표)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2. 3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2. 24 (제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은 「지방세법」 제 293조에 의해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조례 일부 조항의 경우 세액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적용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

나. 주요내용

○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에 과세표준액이 명시되지 않아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토록 조항 신설(안 제27조의2)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2. 3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2. 24 (제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2004. 3. 11)됨에 따라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재난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안전관리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안전관리자문단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2. 3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2. 28 (제8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의 신설에 따라 대상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2항 신설에 따른 울산광역시북구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와 기준 신설

【신설】

○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2. 4(유재건의원 외 2인)

○ 심의일자 : 2005. 2. 28 (제8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5년 1월 27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공포번호 법률 제7362호)에 의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제한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2항이 전면 삭제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원활한 정례회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례회 회기를 3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안 제3조(회기)를 삭제함(안 제3조)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7일에서 7월 1일로 변경함(안 제4조 제1호)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4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2. 4(김대영의원 외 2인)

○ 심의일자 : 2005. 2. 28 (제8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을 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이 당초 상임위가 설치되어 있는 의회를 기본으로 하여 제정되어, 상임위가 없고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구 의회의 회의진행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본회의 중심으로 회의가 운영되는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신설 및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회운영위원회가 없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6조제2항)

○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 의미전달이 명확하도록 관련 단어를 일부 추가함 (안 제17조)

○ 본회의 중심으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재정비함(안 제20조)

○ 상임위가 설치된 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1조 내지 안 제23조)

○ 잘못 표현되어 있는 번안동의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4조)

○ 안건심의와 관련, 현실에 맞게 관련 문구를 일부 추가함(안 제25조)

○ 「국회법」이나 타 지방의회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4분자유 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수정함(안 제38조)

○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함(안 제75조의2)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8절 제81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김대영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5. 3. 30 (수) 10:30

다. 회　　기 : 2005. 3. 30 ~ 3. 31 (2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제8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일정도 불구하고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북구 의정발전과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울산지역 최대의 적설량을 기록한 이번 폭설 때 신속한 재설작업으

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킨 노고는 구민들로부터 높이 평가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세간에 가장 뜨거운 이슈 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마 독도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본의 한 지방의회에서 독도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역사 교과서 왜곡을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경솔한 행동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과거 제국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이 강대국의 지원에 힘입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일본의 그릇된 도발행위를 경계하고 군국주의적 망상이 부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국민들에게 우리의 영토와 주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건 심의에 있어 구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고, 구정 발전을 위한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호 협력해 보다 알찬 임시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올해의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보고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봄철 해빙기를 맞아 각종 재난사고가 우려 되므로 대형공사장 절개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일본 후쿠오카 지진의 여파로 울산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만큼, 지진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새봄의 충만한 기운과 함께 알찬 성과를 거두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3월 30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하 인 규**

3. 의사일정

제8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5. 3. 30 ~ 3. 31(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30(수) 10:30 개회식 직후		개 회 식	
	1	1. 제8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8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31(목) 10:30	2	1.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6호, 총무국 민원봉사과) 2.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7호,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3.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8호, 기획감사실) 4.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9호, 기획감사실) 5.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기획감사실)	수정가결 원안가결 부 결 부 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3. 18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3. 31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5. 1. 14.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한 부동산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명칭을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로 개정

○ 위원회의 명칭을 "울산광역시 북구 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명칭 개정(안 제1조)

○ 당연직 위원중 "지역경제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함(안 제2조제3항)

○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신설(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 위원회 사무처리 간사는 개별주택가격 심의사항은 소관업무 담당이 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05. 1. 14일 전면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에 위임된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규정하여 재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임.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안 제1조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른 안 제2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건축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3호 및 제4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은 타당함.

○ 다만, 안 제9조제2항의 " 토지관리업무 담당 또는 개별주택가격 심의사항은 소관업무 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을 "토지 및 개

별주택 소관업무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이 자연스런 표현으로 더 바람직하며 수정의견을 제시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현행·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울산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
제2조(구성)① ~ ②(생략) ③위원중 지방세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교통과장, 민원봉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생략) 2. 변호사,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감정평가사,부동산공인중개사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제2조(구성)① ~ ②(생략) ③---------- **건축과장** ----------. 1. (현행과 같음) 2. ---------- ---**부동산 가격**----------

현 행	개 정 안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생략) 〈신 설〉 〈신 설〉 3.(생략)	제4조(기능) ———————————— 1. ~ 2.(현행과 같음)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9조(간사와 서기) ①(생략) ②간사는 **토지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생략)	제9조(간사와 서기) ①(현행과 같음) ②———— **토지관리업무 담당 또는 개별주택가격 심의사항은 소관업무 담당** ————————————. ③(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3. 18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3. 31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주차장법」(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7055호)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체계에 맞도록 용어를 재규정하고 유공상이자에 대한 이용편의의 대상자확대 등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편의의 대상 확대(안 제6조)

○ 주차장법상 용어의 정의에 따른 자구수정(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2003. 12. 31일 개정된「주차장법」에 따라 안 제6조제4항 제1호의 유공상이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및 예우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법상 용어정의 개정에 따라 안 제20조의 "전용주차장"을 "전용주차구획"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법령 제명표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3. 18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3. 31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본청에 여유기구 설치 및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차원 의 "재난관리과" 신설을 승인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관리과 신설 및 국에 두는 과와 주요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 자치지원단으로 전환하고 민원봉사과 명칭을 민원지적과로 변경 (안 제5조제1항)

○ 도시건설국에 재난관리과 신설 (안 제6조제1항)

○ 자치행정과 "한시기구" 명시부분 삭제 (부칙<2004.7.19>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하여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방재조직보강차원에서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인 "자치지원단"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임.

○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의 의미보다 조직보강 및 조정'으로 보아지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과의 특징에 맞게 변경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시행령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과"를 "자치지원단"으로 변경한 것은 여유기구제 도입취지에 맞는 우리구 특성과 특정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로의 전환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함.

○ "재난관리과"의 신설은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행자부지침, 12.18)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우리구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설해야 할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우리구 특성에 맞는' 그리고 '과간 업무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구로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음.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3. 18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3. 31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해 여유기구제 도입 및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기구 조정과 6급 정원책정 비율확대지침 등 각종 조직관리 지침에 의한 신규 사무 및 증가사무에 대한 담당 신설 등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442명을 465명으로 함(안 제2조)

○ 규칙으로 정하던 정원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 (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행정자치부령인 「동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등 각종 조직관리 지침(총 9건)에 의한 신규 사무 및 증가 사무에 대한 담당 신설과 정원 증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를 기존 442명이던 것을 23명 증원된 465명으로 하고, 규칙으로 정하던 정원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전자의 경우, 총무과 2명, 지방세과 2명, 환경위생과 1명, 도시교통과 2명, 재난관리과 10명, 보건소 2명, 의회사무과 1명, 8개동 각 1명 등을 증원하고, 자치행정과 5명, 건설과 1명 등을 감원하여 총 23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과, 지방세과, 재난관리과 등의 정원증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증원 14명이며(실제 지침에 따르면, 22명 증원인력소요), 환경위생과(업무이관), 도시교통과(거주자우선주차제), 보건소(청사 관리 및 건강증진업무), 의회사무과(예산심의), 8개동(사무장 배치 및 2만이상 동 증원)은 새로운 행정수요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후자의 경우, 정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주민의 통제(즉,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게 함)를 강화시킨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임.

○ 결론적으로, 앞서 심의를 한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구조정이 아닌 대폭적인 기구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현 정원증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부결

제9절 제82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김대영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5. 5. 19 (목) 10:30

다. 회　　기 : 2005. 5. 19 ~ 5. 27 (9일간)

라. 부의안건

○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82회 임시회는 5월27일까지 9일간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를 확인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개인의 건강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기에 지역구에서 지역주민들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방침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는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 외 각종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중심의할 추가경정 예산안은 관계공무원이 구정업무중 충분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편성하였겠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의 의사와 북구 전체의 발전을 위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최근 서울시에서 발생한 청계천 개발과 관련한 금품수수 비리사건이 서울시 각 구청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뉴스와 최근 울산지역에도 과태료부과자료 은폐로 징수 근거를 없앤 사건 등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물질에 현혹되었던,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이상 우리 공직사회는 큰 충격이면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은 공직자들을 바르게 볼 수 없겠지만 공직자들은 근무의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비리가 전체 공직자에게 다가오는 따가운 시선은 공직자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저지른 비리 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은 공무원이 외압에 굴하지 않는 소신과 법률로 정해진 원칙에 근거한 예산집행, 북구의회의 법률이나 조례로 정해진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 최대한 투명하고 깨끗한 사업집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는 사회가 변하는 만큼 우리도 변해야합니다.

앞으로 북구청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근거로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한 충분한 문제점 검토와 주민의 민원에 대비한 사업 추진으로 구민이 공직자를 불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5월은 청소년의 달이자 가정의 달이며 우리만의 전통이고 미덕인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사상을 일깨우는 달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가화만사성이라 하여 가정의 소중함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왔습니다.

가정의 달을 계기로 구민 모두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변함없는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은 본격적인 영농기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내실 있는 영농시책의 추진과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

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하 인 규**

3. 의사일정

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5.05.19~2005.05.27(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05.19 (목) 10:30 개회식직후	1	개 회 식 1.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 제 안 설 명 - 4.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5.05.20 (금) 10:30	2	1.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2호, 보건소) 2.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4호, 기획감사실) 3.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51호, 기획감사실)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05.20 (금) 10:30		4.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호, 기획감사실)	수정가결
		5.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53호, 기획감사실)	수정가결
		6.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지방세과)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호, 지방세과)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호, 지방세과)	원안가결
2005.05.21 (토) 10:30	3	1. 울산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60호, 환경위생과)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1호, 도시교통과)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156호, 민원봉사과)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5호, 총무과)	원안가결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 (의안번호 제163호, 총무과)	
		6.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5.05.22 (일)		휴회(일요일)	
2005.05.23 (월) 10:30	4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총무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05.24 (화) 10:30	5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05.05.25 (수) 10:30	6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건축과)	
2005.05.26 (목) 10:30	7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2005.05.27 10:30 (금)	8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종합심의의결	수정가결

당일의사일정

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5.05.19~2005.05.27(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05.26 (목) 10:30	7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163호 총무과) 3.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계수조정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2. 3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5. 20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제8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와 동일함

나. 주요내용

○ 제8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와 동일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8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와 동일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수정의견)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관련)

근거 법령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내지제2항)	법 제9조제2항의규정에 위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30	70	150
	법 제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0	70	150
	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	20	50	100
	법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0	50	10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20	50	1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고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이 처분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당초제출안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관련)

근거 법령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내지제2항)	법 제9조제2항의규정에 위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0	30	50
	법 제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법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법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20	30	5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고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이 처분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현 행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법령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내지제2항)	1. 법 제9조제2항의규정에 위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0	30	50
	2. 법 제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신 설>			
	<신 설>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20	30	5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고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이 처분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5. 20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단서조항이 대통령령제 18698 (2005.2.11)호에 의하여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본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조정(안 제6조제2항)

○ 법률 제6388호(2001.7.24)에 의거 「공직자윤리법」제23조에 관한 내용이 폐지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요 심사사항 개정(안 제6조제2항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8698호(2005.2.11)에 의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단서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 안 제6조제2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5. 20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구 본청에 여유기구 설치 및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차원의 "재난관리과" 신설을 행자부가 승인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관리과 신설 및 국에 두는 과와 주요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인 자치지원단으로 전환하고 민원봉사과 명칭을 민원지적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 도시건설국에 재난관리과 신설(안 제6조제1항)

○ 자치행정과 "한시기구" 명시부분 삭제(부칙〈2004.7.19〉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난 제81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으로 지난번 상정된 내용과 동일하여 의안번호 제148호의 검토의견으로 갈음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5. 20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해 여유기구제 도입 및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기구 조정과, 6급 정원책정 비율확대지침 등 각종 조직관리 지침에 의한 신규 사무 및 증가사무에 대한 담당 신설 등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442명을 463명으로 함(안 제2조)

○ 규칙으로 정하던 정원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 (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제81회 임시회시 의안번호 제149호로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으로 안 제2조에서 부결된 안보다 정원의 총수가 2명 줄어든 463명으로 조정되어 제출된 안건임.

○ 부결된 의안 제149호 검토의견에서 밝힌바와 같이 추가 요구된 21명의 증원은 새로운 업무(방재업무, 과표업무, 공무원단체업무 등) 및 증가하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판단되며, 조직개편이 수반되지 않는 현 인력의 증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46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50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460명**----------. 1. ----------: **447명** 2. 원안과 같음

□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5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5. 20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 예산편성에 있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절차와 기준을 표준화·제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주민의 정의 및 권리, 법규의 한계 등을 제시함(안 제1조 내지 제5조)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원칙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안 제6조 내지 제11조)

○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편성시 분야별 예산심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위원회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12조)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지역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사업의 우선순위 등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총괄 조정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9인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조례에 대한 제·개정(안) 연구 및 의견제시, 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마련 등 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규율와 절차를 표준화·제도화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제정되는 제정조례안임.

○ 본 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내지 안 제13조), 지역토론회 개최(안 제19조), 조정회의 구성 및 개최(안 제21조, 제22조), 연구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23조 내지 안 제25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5개장, 27개조문,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본 조례안의 제정은 주민들에게 예산을 공개하고 주민 스스로 예산편성에 참여함으로서 행정의 透明性과 民主性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할 것임. 본 조례안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광주 북구(04.3), 울산동구(04.9), 순천시(05.3) 등 3개 지자체가 집행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보급 및 정착을 위해 본 조례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2005예산지침서, pp.280~287)

○ 내용에 있어, 기 집행중인 지자체의 조례와 대동소이하여 큰 하자는 없지만, 안 제18조제3항의 경우 위원회 위원들에게 「울산

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경우 과다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원봉사 원칙에 입각한 최소한의 여비만 지급될 수 있도록 기 조항을 "③구청장은 위원회 및 예산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무릇, 법령은 주민 누구나 알기 쉬워야 하며, 그 내용이 예측 가능해야 하는 바, 지방재정법에 예산절차(편성-심의-집행-결산)의 시기를 명기해 두듯이 본 제정안에서도 실질적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과정도 중요한 한 부분이므로 예산편성시기 내에 진행될 주민참여예산과정(시민위원회 - 지역토론회 · 분과위원회-조정회의)의 시기를 적시해 두는 것이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었으며 최소한 규칙에 이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 ·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①(생략) ②(생략) ③구청장은 위원회 및 예산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①원안과 같음 ②(원안과 같음) ③(삭제)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5. 20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2005.1.5.법률제7332호) 개정으로 종전 건물과 토지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과세하던 것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 이원화 및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을 재산세에 포함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함 (안 제3조제2항3호, 안 제35조 내지 제46조)

○ 종전에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포함하도록 조정함(안 제21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변경(안 제22조)

○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종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토지 및 주택을 포함한 시가표준액으로 조정함(안 제23조)

○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현실화(과세표준액 산출기준이 되는 건물신축 가격 기준가액을 종전에 1㎡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상향조정)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억제를 위하여 과세 표준단계 축

소 및 세율 인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표준세율 적용하며 다만 항공기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안 제25조)

○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한 세율적용을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대상 등으로 적용 조항 신설하고 지방세법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 세율 적용(안 제25조의2)

○ 재산세 납기를 지방세법 제191조에 의거 토지는 종전 10월에서 9월로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로 현행유지, 주택분(부속토지 포함)은 7월과 9월로 2회 균등분할조정(안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2005.1.5. 법률제7332호)의 개정으로 지방세법령 및 행정자치부『2005년 지방세조례 정비안』을 기초로 하여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어 '과세대상'이 조정되며, 재산세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로 변경됨.

또한, 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재산세의 과표구간 축소 및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토지 및

○ 주택의 세율적용방법을 신설하였으며,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 납기가 변경·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조정함.

○ 이상과 같이, 개정안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공평과세실

현과 납세자 납세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5. 20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2005.1.5.법률제7332호) 개정으로 종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토록 변경되어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주차장 전용 건축물 및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안 신설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장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매입하는 경우로 분리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율을 전액에서 50%까지 차등 적용(안 제10조)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로 규정함(안 제12조 및 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 개정과 "2005년 임대주택활성화 등 관련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2005. 1. 26, 행자부세정과-169호)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차장 전용 건축물 및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매입하는 경우로 분리,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감면을 확대하여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 등으로써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5. 20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건설교통부령 제425호, 2005.2.12)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시지가와 같이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및 발급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변경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2

조의3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기관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변경에 준하는 수수료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 안마시술소 허가사항변경을 안마시술소 신고사항변경으로 하고, 의료 기관 신고사항변경 수수료 요율인 20,000원으로 개정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수수료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요율인 20,000원을 30,000원으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에 근거하여 관련수수료 요율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것으로서, 신설되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 요율을 준용하였고,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변경수수료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변경' 수수료 요율을 준용하도록 한 것에 따른 개정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 .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5. 21 (제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환경보전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을 제시(안 제1조 내지 제4조)

○ 사회 구성원들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자 및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안 제5조 내지 제8조)

○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으로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의 보전,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내지 제17조)

○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구민을 참여시키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안 제18조 내지 제21조)

○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 대처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22조 내지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임

○ 본 조례는 이 조례의 기본이념(안 제2조), 기본원칙(안 제3조), 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안 제9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안 제11조),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 공개(안 제18조), 환경보전에 관한 협력(안 제22조 및 제23조) 등을 내용으로 총 5개장, 23개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됨.

○ 본 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4조의4에 근거하여 환경을 관리·보전해 나가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본 조례는 지역환경에 대한 선언적·상징적 의미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향후 이를 실천적 의미 특히, 지역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방의제21』과 같은 아젠다(Agenda)를 만들어 이를 환경적 관점에서 우리구의 의제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임. 내용상 하자는 없어 보이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5. 21 (제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에 대하여는 구·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관지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색채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에 대한 건축행위 기준마련

구 분	내 용	비 고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	미관지구안 건축물·담장·대문·건물조경·옹벽·광고물·기타 시설물의 구조·형태·색채 및 재료 등에 대한 건축 행위 기준	(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에 대하여 구·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2005. 4. 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미관지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색채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5. 21 (제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지명위원회를 구성, 지명의 제정·변경·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지명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함

(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함(안 제6조)

○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지명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안임

○ 본 제정안은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지명의 조사(안 제6조), 위원회 회의(안 제7조), 지명의 심의·결정에 있어 의견 청취(안 제10조) 등을 내용으로 하여 12개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짐.

○ 측량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35조의 위임된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정 되었어야 함에도 광역시 출범전후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내용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대동소이하고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5. 21 (제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대회의실 사용료를 시 관내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효율적인 대회의실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대회의실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회의실 사용범위를 구 관내 거주자는 물론 본적을 둔 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최대한 구민 편의 혜택을 제공 (안 제2조)

○ 토요일 휴무제 실시로 대회의실 사용시간을 조정함(안 제2조)

○ 예식장 사용시간을 1시간 기준으로 운영하고 예식장외 기타용도로 사용할 경우만 초과 사용시간 인정 (안 제4조)

○ 대회의실 사용료를 예식장 및 기타용도 사용시에도 동일하게 90,000원으로 조정하여 사용료 현실화 및 타구 형평성 유지 (안 제4조)

○ 대회의실 사용 정지 및 취소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사용 제한 요인 발생시 민원 예방(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2001.6월 청사 개청 후 주민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회의실 사용료를 시 관내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효율적인 대회의실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대회의실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은 예식장 이용자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인상(현행 예식장 사용시 50,000원, 기타 용도시 30,000원→ 개정 1시간 90,000원 일원화)과 예식장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예식장 사용시간을 1시간으로 사용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규제개혁 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

○ 안 제4조(사용료) 개정안은 표현 및 의미전달이 모호하고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사용료)①대회의실 사용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는 90,000원으로 선납하고, 예식장외 기타 용도로 사용시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매 시간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징수하며,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사용료는 구 일반회계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제4조(사용료)①사용료는 대회의실 사용시간 1시간 기준으로 90,000원으로 하고 선납한다. ②예식장 사용은 1시간으로 제한하며, 예식장외 기타 용도로 사용시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되 매 시간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 징수하며, 60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③(왼쪽과 동일) ④(왼쪽과 동일)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철회 촉구결의안

(의안번호 제16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26 (윤임지의원 외 2명)

○ 심의일자 : 2005. 5. 27 (제8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난 3월 2일『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기피대상이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급기야 지난 4월 2일 경주시의회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처분시설 및 원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감으로 인해 울산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철회촉구에 따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해안에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 단지화의 즉각적인 철회 촉구

○ 핵폐기장과 핵발전소는 따로 뗄 수 없는 같은 사안임으로 편의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 실시

○ 정부는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부추겨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

○ 한 세대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핵 쓰레기장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까 심히 우려되므로 핵폐기물관리·처분에 관한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역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력 촉구.

제10절 제83회 제1차정례회

1. 개회이유

가.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8조(정례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05. 7. 1 (금) 10:00

다. 회　　기 : 2005. 7. 1 ~ 7. 15 (15일간)

라. 부의안건

○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결산검사대표위원)

○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지역 주민들과 현안문제 그리고 주민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방침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83회 정례회는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15일간 2004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결산과 개발제한구역훼손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외 7건의 조례를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제도 속에서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각종 규제와 기초의회의 관계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기초의원도 선거제도와 급여도 유급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유급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정치권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기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으로 구정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생활의 풍요로움은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7월은 올 1년 예산을 실천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반기 중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향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 본격적인 우수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지만 각종 재난재해의 교훈을 거울삼아 대형공사장이나 주요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장마철에 골짜기에 있는 생활쓰레기가 바다에 유입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비책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되는 종합감사로 인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번 정례회와 일정이 겹쳐 다소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주어진 임무에 더욱더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날씨가 무더운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7월 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하 인 규**

3. 의사일정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5.07.01.~2005.07.15.(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07.01 (금)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1.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결산검사위원) 4.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5.07.02 (토)		휴 회(토요일)	
2005.07.03 (일)		휴 회(일요일)	
2005.07.04 (월) 10:00	2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 2.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관련부서)	
2005.07.05 (화) 10:00	3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계속〉 ○총무국(지방세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2005.07.06 (수) 10:00	4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계속〉 ○총무국(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2005.07.07 (목) 10:00	5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계속〉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2005.07.08 (금) 10:00	6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계속〉 ○경제사회국(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2005.07.01.~2005.07.15.(15일간)

월 일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07.09 (토)		휴 회(토요일)	
2005.07.10 (일)		휴 회(일요일)	
2005.07.11 (월) 10:00	7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계속〉 ○도시건설국(건축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2005.07.12 (화) 10:00	8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계속〉 ○보건소 ○의회사무과	
2005.07.13 (수) 10:00	9	1.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북구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류인목의원 외 2명) 3.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공보과〉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총무과〉	원안가결 심의보류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5.07.14 (목) 10:00	10	1.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환경미화과) 2.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사회복지과) 3. 울산광역시북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4. 울산광역시북구 아동위원 운영조례안 (사회복지과)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07.15 (금) 10:00	11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계속〉 ○종합의결 2.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 ○종합의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6. 2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7. 13 (제83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무(안 제4조) 및 수탁기관의 선정(안 제5조)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안 제6조)

○ 지휘·감독(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구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한 위임 조례안임.

○ 본 조례안은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안 제4조), 수탁기관의 선정(안 제5조), 위원회 등(안 제6조), 협약체결 등(안 제7조), 지휘·감독(안 제11조) 등을 내용으로 총 16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개별법령의 위임 없이도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한 본 조례안을 통하여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총칙적 기준이 되는 조례안이며 구 출범부터 제정되었어야 할 조례임.

○ 내용에 있어, 첨부된 시 조례와 대동소이하며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의안번호 제16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6. 27 (유인목의원 외 2명 발의)

○ 심의일자 : 2005. 7. 13 (제83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전체면적 157.27㎢중 개발제한구역은 80.41㎢로써 51%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단속공무원들이 배치 운영되고 있으나 취약 시간대 개발제한구역안 훼손행위의 증가

로 인하여 관리에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안 법령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를 통한 동 구역안의 위법행위로 인한 도시의 무질서한 훼손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함.(안 제2조)

○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7일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발제한구역내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창설적 조례안임.

○ 본 조례안은 본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 제2조), 신고방법(안 제4조), 신고서처리 등(안 제6조) 등의 내용으로 총 11개조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 구는 전체면적 중 50%가 넘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면서 同 내에서 많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미미한 실정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불법행위 훼손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GB단속에 대한 인력의 한계를 보

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에서 제출된, ①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판단에 대한 법률의 복잡성, ②소규모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벌의 어려움, ③전문사냥꾼 양산 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개발제한구역 단속 매뉴얼작성, 법령이해에 대한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단속의지, 예산의 범위내 포상금지급 등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법훼손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 와 '집행부 의견에 의한 행정집행의 우려' 를 이익형량(利益衡量) 시 전자의 이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조례내용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포상금 지급액이 여타 조례보다 금액이 다소 많지만 양형에 견주어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됨.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6. 2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7. 13 (제83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양정체육공원 및 효문운동장 완공시 시설사용료 부과 근거를 미련함으로써 시설사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별표부분의 시설명이 농소운동장으로 명시되어 양정생활체육공원, 효문운동장 및 추후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 완공시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근거가 없으므로 농소운동장을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으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25일 전문 개정한 바 있는 조례안으로서 개장하는 양정체육공원 및 효문운동장 등에도 사용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별표중 "시설명"을 "시설"로 하고, "농소운동장"을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6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6. 23(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7. 13 (제83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정 제2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정 제2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 소 재 지 : 북구 양정동 527-1·2·4번지

◦ 부지면적 : 1,465㎡(설치면수 : 약50대)

◦ 사 업 비 : 7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변경계획안은 『양정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건으로서 지난 제1회 추경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반영되어 편성된 예산 중 구비가 삭감된 사안임.

○ 취득부지는 "도시계획지역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사유지(소유자 2인)이며 약 440여평, 차량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임.

○ 양정동지역 여건상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效果에 비해 다소 과다한 費用이지만(한편, 주거지역내 보상비로서 많다고는 볼 수 없음.), 최소한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짐.

○ 참고로, 지난 1회추경시 총 7억원 예산중 시비 4억2천만원은 기확보된 상태이나, 2회추경에서 구비 2억 8천만원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6. 2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7. 14 (제83회 제1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안 제6조)

-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안 제10조)

- 지원협의체에서 심의 결정된 공동사업, 지원협의체 운영경비, 지원협의체의 요구에 의한 가구별 현금지원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 제12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

○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안 제13조)

- 지원협의체 운영,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주민지원 대상사업, 주민감시단 활동사항, 기타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안 제17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의 적정 및 적정처리, 환경오염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안 제18조)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자격정지, 자격상실된 자, 주변영향지역내 주민등록상 3년미만 거주자

○ 2005년 및 2006년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는 근거마련(부칙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한 창설적 조례안임.

○ 본 조례안은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계획·용도(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등 총19개 조문,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 조례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한 사항 및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적인 장치로서 법제화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내용적 측면에서,

첫째, 이 조례안의 제목이 말하는 대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변주민지원을 위한 조례이므로 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바, 약속한 ①2년간 매년 10억원 특별예산편성 ②지역발전기금 조성 ③문화, 체육시설 중 한 가지 지역안배 ④주민참여제도 및 기구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 조례안의 가장 핵심사항인 ① 항이 배제되어 있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고 봄.

둘째,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은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인 반면 약속이행이 완료되면 책임의 해제도 수반되어야 하는 바, 부칙조항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상과 같이 내용적 측면을 일부 보완 및 추가하고 형식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첫째,"주변영향지역"용어는 법적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주민에 피해를 입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어 제목 및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에 기술된 "주변영향지역"용어를 "주변지역"으로 수정함.

둘째, 제2조의 정의에서 추가로 다음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제13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주민지원기금"이라 함은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 의해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4. "주변지역"이라 함은 자원화시설주변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셋째, 안 제6조에 구청장의 주민에 대한 공약사항의 핵심인 "출연금"규정을 삽입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넷째, 부칙의 제2항을 출연금의 재원에 대한 규정으로 수정하고, 한시적 운영이 되도록 존속기한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명 :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명 :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변지역 ---------- ---------- ---------- ----------
제2조(정의)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울산광역시부구 중산동 829번지에 설치·운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좌와 동일) 2."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제13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주민지원기금"이라 함은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4."주변지역"이라 함은 자원화시설 주변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변지역의 세분화)①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제3조(주변지역 지정)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정하고,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원 안	수 정 안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영향지역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1. 자원화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자원화시설의 위치·규모 및 현황 3.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구청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1. ~ 2. (생략)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변지역---------- ---------- ----- 1. ~ 2. (원안과 같음)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지원 등)①제6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제3조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등의 종류 및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과 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여건, 기금의 조성시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와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지원 등)①---- ----------주변지역 ----------복리증진---------- ---------- ---------- ---------- ②----------주변지역 ---------- ---------- ----------

원 안	수 정 안
③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중 지원협의체와 협의된 대상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협의체와 협의된 사항을 추진중 일부 대상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주변지역----------
제10조(주민기금의 용도)①~②(생략)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년·소녀 가장세대, 부녀자 세대에서 응급구호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서 구호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주민기금의 용도)①~②(원안과 같음) 〈삭제〉
제11조(기금의 결산)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3. (생략)	제11조(기금의 결산)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제12조(지원협의체 구성 등)①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생략)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 4. (생략) ②~⑤ (생략)	제12조(지원협의체 구성 등)----- ---------- ----------15인---------- ---------- ---------- ---------- 1. (원안과 같음) 2. 주변지역---------- 3. ~ 4. (원안과 같음) ②~⑤ (원안과 같음)
제15조(수당의 지급)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제16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①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①- ----주변지역---------- ---------- ---------- ---------- ---------- ②~③ (원안과 같음)
제17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2. 반입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제16조(주민감시요원 활동) (원안 제17조와 같음)

원 안	수 정 안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제18조(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은 제12조 및 제1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12조의 주민대표와 제16조의 주민감시요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생략) 5. (생략)	제17조(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 ----------제15조---------- ---------- ---------- ---------- -------제2호---------- 제15조---------- ---------- 〈삭제〉 〈삭제〉 〈삭제〉 1. (원안 4호와 같음) 2. (원안 5호와 같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원안 제19조와 같음)

□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7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2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7. 13 (제83회 제1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의 민·관 대표자·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지 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요기능(안 제2조)

ㅇ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ㅇ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ㅇ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구성(안 제3조)

ㅇ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ㅇ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

ㅇ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

○ 간사 및 직원(안 제8조)

ㅇ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둔다.

ㅇ각 협의체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제정안은 보건의료와 복지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공공과 민간부문의 보건, 복지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대표, 복지 및 보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임.

○ 본 제정안은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위원의 임기(안 제6조), 각 협의체의 회의(안 제9조) 등 총 16개 조문,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근거한 이 조례안은 4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여 경실련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일부 의견이 반영되었음.

○ 본 안의 내용에 있어 표준안보다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투명성이 제고된 것으로 여겨지며 법안의 형식적인 부분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 전체적으로 지난 5년간 복지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분야를 연계하고, 주민의 대표 및 보건·복지분야 민간전문가를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고차원적인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할 것임.

○ 첨언하자면, 향후 산재해 있는 각종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등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로 통합하여 지역복지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접근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작업이 필요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6. 2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7. 14 (제83회 제1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4.12.31 개정된「영유아보육법」이 2005.1.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안 별표 제2조)

보육시설의 안정을 위해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종사자 임면 및 관리(안 별표 제7조 제3항)

여성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종사자의 정년규정 폐지

○ 『울산광역시북구 보육위원회』를『울산광역시북구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안 제3조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영유아보유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항의 재정비 및 별표의 '위탁계약서'상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7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6. 2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7. 14 (제83회 제1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위원회의 역할을 법제화하여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예방·보호하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아동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아동위원의 역할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제정안은 아동위원회를 통한 지역내 아동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와 아동들의 예방·보호 활동을 활성화하여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고시키기 위한 조례안임.

○ 본 제정안은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아동위원의 역할(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6조 및 제7조), 위원회의 회의(안 제8조) 등 총 11개 조문,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아동위원의 역할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그동안 구심점 없이 운영되어온 위원들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내실 있는 아동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의 내용은 타 지자체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1절 제84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윤임지의원 외 2명 발의

나. 개회일시 : 2005. 9. 5 (월) 10:00

다. 회　　기 : 2002. 9. 5 ~ 9. 6 (2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이하여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제8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일정은 짧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분!

최근 들어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이 아마도 기름값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연일 치솟는 유가(油價)는 멈추질 않아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마냥 올라가는 기름값이 내려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이(安易)한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자가용 10부제의 적극적 참여유도, 빈사무실 소등, 실내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의 절전모드 사용 등 작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대책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에너지절약으로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라 것을 인지(認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교통대책과 물

가안정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그늘지고 소외받는 주민들이 없는지 살펴 그분들에게도 변함없는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제14호 태풍 '나비'가 북상중에 있습니다.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서 보듯이 자연 재해에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방만이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9월 5일

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하 인 규**

3. 의사일정

제8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5.09.05.~2005.09.06.(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09.05 (월) 10:00 개회식 직 후	1	개 회 식	
		1. 제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제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09.06 (화) 10:00	2	1.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3호, 총무국)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7호, 총무국)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8호, 총무국)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북구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79호, 총무국)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북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80호, 경제사회국)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81호, 경제사회국)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2호)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9.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9. 6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1.14. 대통령령18677호)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이 변경(6.30 ⇒ 5.31) 되어 과세기준일(6.1)전에 결정·공시한 현 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납세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산세 과표경감규정 신설(안 제27조의3)

2005년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 부칙개정

조례 제27조의3의 유효기간을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적인 부칙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1.14. 대통령령 제18677호)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 시일이 변경(기존 6.30 ⇒ 변경 5.31)되어 재산세 부과기준이 과세기준 일(6.1) 전에 결정·공시한 현 년도 공시지가가 적용[1]되어야 하므로,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방세감면조례 표

준안"(2005. 8. 19, 행자부 지방세제팀-3069호)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임.

○ 표준안에 근거한 안 제27조의 3(재산세 과표경감)의 신설 및 부칙 개정을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8.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9. 6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일부 농촌지역(농소, 강동)의 경우 고령화로 인하여 통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장 상한연령을 현실에 맞게 폐지하고, 통·반장 표창 및 선진행정기관 견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의 역량배양과 사기를 진작함과 아울러 조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장연령제한규정 "25세 이상 65세 이하"를 "25세 이상"으로 개정(안 제5조)

○ 통장 및 우수반장의 역량 배양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현행 65세로 정하고 있는 통장 상한 연령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

여 통·반장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본 개정안은 지난 6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서, 안 제5조의 상한연령 폐지는 도농복합형 도시인 우리구의 경우 통장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제10조제2항의 신설 또한 통·반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8.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9. 6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중학교 의무교육시행에 따른 공납금(수업료) 납부제도 폐지와 일부 통의 경우 자체적으로 통장 임기를 2년 순환제로 운영함에 따라 통장자녀학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자금장학금의 미지급사례를 방지함으로서 통장의 사기를 도모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본문상의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개정(안 제1조·안 제2조·안 제4조)

○ 장학생의 자격 중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통

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변경(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중학교 의무교육시행에 따른 수업료 납부제도 폐지와 장학생 선발기준에 있어 통장근속연수를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일부 통의 통장자녀학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서 통장의 사기를 도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된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8.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9. 6 (제8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 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칭 개정

당초 :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

개정 : 「울산광역시북구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

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 본문중 인감업무담당자에게 국한했던「인감증명법시행령」제 20조에「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자에게 확대 시행하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조)

○ 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기존의 인감업무담당자 및 그 대직자에서 이를 포함한 주민등록업무담당자와 그 대직자까지 포함하는 법적근거 마련 및 범위 조정(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2003. 4. 25일 제정된「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에 대하여 2004. 3. 22일 신설된 「주민등록법」제20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한하여 제정된 본 조례에 대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주민등록법」제20조가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목 및 제1조 내지 제6조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8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8.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9. 6 (제8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등 주변환경의 변화로 당초의 기금의 설치취지가 퇴색되었으며, 저 금리로 인한 재원의 부족 등 기금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북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조례안은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당초의 기금설치 취지가 퇴색되었고, 저금리로 인한 재원의 부족 등 현실정과 맞지 않는 많은 문제점 등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폐지사유로 첫째, 중학교의무교육에 따른 학비부담의 경감, 둘째, 교육급여 및 학비지원에 따른 이중적 수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모·부자 세대의 경우), 셋째, 저금리로 인한 재원부족, 넷째, 대상자 선발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부의 집중화 및 양극화, 빈곤층의 증가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관련된 지

원책이 줄어드는 것은 전자의 폐지사유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됨.

○ 먼저, 본 조례의 목적이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기 위한"것인 만큼 '이중적 수혜'와는 달리 볼 필요성이 있고, 오히려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성취욕구, 사기진작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기금운용에 따른 비효율성'은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되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며, '대상자 선발' 은 동장추천보다 직접 학교장추천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기금운용'에 의한 장학금지급은 폐지하되, 장학금제도가 저 소득층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사기 앙양책으로서의 당위성은 있으므로 폐지보다는 내용 보완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폐지하더라도 위의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8.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9. 6 (제8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관련 기금들의 통합을 통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존의 사회복지관련 기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들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설치와 관련 규정을 마련함(안 제1조)

○ 국·시비 보조금·구의 출연금 및 기타 보조금등의 기금 조성의 근거 마련(안 제3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제정안은 기존 사회복지관련 기금들을 통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사회복지관련 기금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임.

○ 본 제정안은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기금의 조성(안 제2조), 기금의 용도(안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안 제7조) 등 총10개 조문과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등을 담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8. 26 (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 심의일자 : 2005. 9. 6 (제8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난 8월 5일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91호, 2005. 8. 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5조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회기수당을 1일 10만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련 조항인 본 조례안의 안 제5조제1항 중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을 '1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2절 제85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김진영의원 외 2명 발의

나. 개회일시 : 2005. 10. 24 (월) 10:00

다. 회　　기 : 2005. 10. 24 ~ 10. 28 (5일간)

라. 부의안건

○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0월14일 울산에서 열린 제86회 전국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전국 체전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북구의 명예를 드높인 선수

와 임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제8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의결의 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외 6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건 심의에 있어 구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호 협력하여 보다 알찬 임시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온 2차 정례회는 2005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시 조정교부금의 축소로 2005년과는 달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정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산편성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회기의 집행과정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외 경비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과감하고 소신 있게 정리하여 북구의 발전과 소외계층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한 사업을 연내 마무리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업무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틀 뒤면 우리 구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재선거로 비상근무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선거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이때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하 인 규**

3. 의사일정

제8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5.10.24.~2005.10.28.(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10.24 (월) 10:00 개회식 직 후	1	개 회 식	
		1. 제8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8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91호)	수정가결
2005.10.25 (화)		개별 현장활동(자료수집)	
2005.10.26 (수)		개별 현장활동(자료수집)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10.27 (목) 14:00	2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합복지회관)(의안번호 제190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6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 총무국)	심의보류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5.10.28 (금) 10:00	3	1.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187호, 도시건설국) 2.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88호, 도시건설국) 3.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89호, 경제사회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당 일 의 사 일 정

제8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5.10.24.~2005.10.28.(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10.28 (금) 10:00	3	1.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187호, 도시건설국) 2.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88호, 도시건설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자	시간	부 의 안 건	비 고
2005.10.28 (금) 10:00		3.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89호, 경제사회국)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합복지회관)	수정가결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9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0. 14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10. 27 (제8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복지회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합복지회관』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 소 재 지 : 북구 연암동 1121-2번지 일원(북구 보건소 뒤)

◦ 규　　모 : 토지8,816㎡, 건축연면적 11,570㎡

◦ 재산가액 : 200억원 정도

◦ 용　　도 : 운동, 교양, 문화시설의 종합복지회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변경계획안은 현대자동차(주)와 울산광역시북구와의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종합복지회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은 "도시계획지역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토지 8,816㎡과 건축연면적 11,570㎡의 건물의 취득임.

○ 약정서에 의하여 추진되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0. 14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10. 27 (제8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특별휴가제도 등을 일부조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안 제13조)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무

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정(안 제19조)

- 재직기간별 1 ~ 2일 축소 조정

○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4조)

- 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 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 일수를 축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자 공포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18894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근무시간, 연가일수 등 관련내용을 일치시키고, 「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따른 특별휴가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노사협상에 의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법체계상 현실적으로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짐.

○ 따라서, 논란의 여지는 안 제24조의 "특별휴가"규정으로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접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행정규칙인「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 안 제24조의 "특별휴가"규정은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축소 및 폐지와 여성의 보건휴가 무급 단서조항신설이 쟁점사항으로, 전자는 유교적 전통에 따른 가족중시문화를 도외시한 면이 없지 않고, 후자는 보건 휴가의 신설목적 취지를 사문화할 우려가 있음.

○ 다만, 국가공무원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행정내부적 구속력을 지니는 「공무원휴가업무예규」도 고려되어야 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4조(특별휴가)①~②(생략)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유사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특별휴가)①~②(현행과같음)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유사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제〉

□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8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0. 14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10. 27 (제8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5년 9월중 개관예정인 농소3동도서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

하고 기존의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일치된 공공도 서관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제4조)

○ 늘어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조 내지 11조)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임기2년)
- 기능 : 도서관 주요 운영에 대한 심의

○ 시설의 사용과 변상책임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내지 17조)

○ 자료의 기증,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 자료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18조 내지 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9월에 개관한 「농소3동도서관」이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울산광역시북구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기적의 도서관 조례")를 폐지하여 향후 건립예정인 모든 도서관에 통합적으로 관리 및 적용될 수 있는 일원화된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구 관내 도서관 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본 제정안은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용어의 정의(안 제3조), 공공도서관 운영 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5조 내지 안 제11조) 등 총 23개 조문과 부칙

으로 이루어져 있음.

○ 부칙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모든 도서관 운영에 있어 기존의 『기적의 도서관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 『기적의 도서관 조례』와 대동소이하며 큰 하자는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18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0. 14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10. 27 (제85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재난관리법(2004년 5월 31일 폐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적립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재원을 규정함. (안 제2조)

○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 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토록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3조)

○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안 제6조)

·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재난관련 장비구입

○ 기금회계공무원 지정 (안 제9조)
· 기금운용관(재난업무 담당국장)
· 기금출납원(재난업무 담당)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의 기능 대체)에서 심의(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재난관리법」(2004년 5월 31일 폐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적립·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임.

○ 본 제정안은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기금의 조성(안 제2조),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3조), 기금의 용도(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의결(안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안 제10조) 등 총 11개 조문과 시행시기를 규정한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대체하는 조례로 그 내용상 대동소이 하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8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0. 14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10. 27 (제85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04. 6. 1 시행)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규정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등의 14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운영기간을 규정함.(안 제3조)

- 자연재난대책기간 : 여름(5. 15 내지 10. 15), 겨울(12. 1 내지 익년3. 15)
- 인적재난대책기간 : 재난 발생시부터 복구완료시까지
- 기반재난중점대응기간 : 4. 1 내지 9. 30

○ 구성 및 임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본부장(구청장), 차장(부구청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

○ 운영 및 근무체제와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내지 제23조)

○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내지 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제정안은 2004. 6. 1자로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등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임.

○ 본 제정안은 표준안에 근거하여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안 제7조 내지 제11조), 재난상황관리체제구축(안 제12조 내지 제23조),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안 제24조 내지 제30조)등 총 6장, 33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입법예고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기존의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대체함과 아울러 재난의 예방·대응·대비·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임.

○ 내용상 큰 하자는 없어 보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조직운영을 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판단되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0. 14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10. 28 (제85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약속한 20억원을 출연금으로 확보하고, 주민들과의 약속 및 배심원단의 권고사항의 이행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은 물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을 위한 구의 출연금의 근거마련과 조성기한 명시(안 제6조제1항 및 부칙 제2항)

○ 주민지원기금에 출연금을 포함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항목 조정(안 제10조제1항제2호)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 중 주변지역 내에서 사실상의 거주자로 완화(안 제17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3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의결한 조례로서 심의중에 논의되었던 '구 출연금'과 관련한 개정안임.

○ 그 당시 검토보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안 제6조제1항 및 부칙 제2항의 "출연금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예산의 집행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한 사항 및 지역주민에 대한 약속실천'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 담보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기타 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안 제17조제2호의 개정사항에 있어 하자는 없음.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 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 민감시요원은 제12조 및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호는 제12조의 주민대표와 제15조의 주민감시요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생략) 2. 주변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3년 미만 거주자	제17조(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 ---------- ---------- ---------- ---------- ---------- ---------- ---------- ---------- 1.(현행과 같음) 2. 주민등록상 주변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1년미만 거주자
부 칙	부 칙
①(생략) ②(유효기간) 제6조제1호의 출연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하여야 한다	①(현행과 같음) ②(유효기간) 제6조제1호의 출연금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조성하여야 한다

제13절 제86회 제2차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38조(정례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05. 11. 25 (금) 10:30

다. 회　　기 : 2005. 11. 25 ~ 12. 27 (33일간)

라. 부의안건

○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 제출)

○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파업 징계최소화 촉구결의안(김대영의원 외 2명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광오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는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주

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한 해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어질 행정사무감사에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보완하며,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엄격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11월24일 사법부의 판결로 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대충 할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능동적인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은 물론 의원들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더욱더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하 인 규**

3. 의사일정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5.11.25~2005.12.27(3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11.25(금) 10:30		개 회 식	
	1	1.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193호) - 시 정 연 설 (구 청 장) - 4.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기획감사실) 5.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5.11.26(토)		휴 무 토 요 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11.27 (일)		일 요 일	
2005.11.28 (월) ~2005.12.4 (일) (7일간)		행 정 사 무 감 사	
2005.12. 5(월) 10:00	2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94호, 기획감사실)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95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7호, 경제사회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5.12. 6(화) ~2005.12.1 9(월) (14일간)	3 ~ 12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안 심의	
2005.12.20 (화) 10:00	13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승인의 건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3.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12.21 (수) ~2005.12.2 6(월) (6일간)	14 ~ 17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심의	
2005.12.27 (화) 10:00	18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당 일 의 사 일 정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5.11.25~2005.12.27(3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12.21 (수) 10:00	14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8호) ○제안설명(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00호, 기획감사실) 3. 2005년도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99호, 경제사회국) 4.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총무국	원안가결

당 일 의 사 일 정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5.11.25~2005.12.27(3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12.27 (화) 10:00	18	1. 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파업 징계최소화 촉구결의안 (의안번호 제201호, 김대영의원) 2.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종합심의의결 - 심의결과보고(류재건의원)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9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1. 18(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12. 5 (제86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염포동 공공시설 부지』 매입

◦ 위 치 : 염포동 348-1번지 외3 (성원상떼빌 뒤)

◦ 규 모 : 7,128㎡(2,158평), 매입비 755,300천원정도

○ 『양정·염포 권역별도서관』 신축

◦ 위　　치 : 염포동 348-1번지 일원

◦ 규　　모 : 건축연면적 874㎡정도, 지상3층

◦ 사 업 비 : 1,334,000천원(부지매입비 제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염포동 공공시설 부지』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과 『양정·염포 권역별도서관』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각각 1건임.

○ 본 건은 2006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계획")에 의하여 『염포동 공공시설 부지』 토지 취득을 통해 2006년도에 『양정·염포 권역별도서관』을 신축하고, 2008년도 『염포동사무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어 각 건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중기지방계획 심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나, '보상비'와 '취득시기'에 있어 본 안의 내용과 중기계획과의 약간의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다 더 세심한 자료검증이 요구됨.(본 건은 7억5천만원, 2006~2007년 취득인 반면, 중기계획에서는 8억5천만원, 2006년 취득(책자 p.49 및 p.144)으로 되어 있음)

○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6년도 예산안」에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미반영 된 것은 내년 예산 사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부족한 재원(필요한 구예산 : 총 1,447,300천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해당과로부터 상세한 보충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1. 23(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12. 5 (제86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2005. 6. 24. 시행)으로 시 옥외광고물 관련사무가 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및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전의 시장 권한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사무를 구의 업무로 일원화

○ 현행 조례 보완·개선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추가(안 제5조)

-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 표시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을 추가함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조정(건물의 최저층수) 및 추가(안 제8조)

-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 "4층 이상 → 5층 이상"으로 조정하여 타 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4개 구간의 형평 유지(제1항)

- 현행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알수 있도록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 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추가함(제4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제5조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중 벽보, 전단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여 울산광역시내 구·군 간의 형평 유지(안 제35조제1항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다. 벽 보		다. 벽 보	
(1) 일반 광고내용	장당 1만5천원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장당 10천원
		- 11~20장 이하	장당 15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장당 3만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내용	
		- 1~10장 이하	장당 15천원
		- 11~20장 이하	장당 2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0천원
라. 전 단		라. 전 단	
(1) 일반 광고내용	장당 1만원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장당 5천원
		- 11~20장 이하	장당 10천원
		- 21장 이상	장당 15천원

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위 반 사 항	과 태 료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장당 2만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5천원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2. 15 (구청장)

○ 심의일자 : 2005. 12. 21 (제86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 증가, 사회 양극화 현상 등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둔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과 일부 부서 정원조정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460명을 467명으로 하고,

○ 집행기관의 정원을 447명을 454명으로 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각종 지침, 구 자체적인 증원요인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 복식부기제도·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전 시범운영을 위한 인력보강, 기타 농소1동 권역별도서관 준비 및 운영 인력보강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2005년 9.5~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

○ 지난 제82회 임시회시 의안번호 제152호로 상정되어 18명의 인원이 증원된 바 있으며, 이번 안은 추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요구된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복지전담인력 보강과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보강 등의 인력증원으로 모든 지방정부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증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추가 요구된 증원 7명에 대한 필요성 및 불가피성 그리고 지침에 따른 소요인력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상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4절 제87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김대영의원 외 2인

나. 개회일시 : 2006. 2. 10 (월) 10:00

다. 회　　기 : 2006. 2. 10. ~ 2. 22 (13일간)

라. 부의안건

- ○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청장 권한대행이신 김광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2006년도 첫 회기인 제8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구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북구 의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크고 작은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고, 소중한 땀의 결실을 맛본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해에는 새로운 목표와 다짐으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북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재도약의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2006년도 구정시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들의 의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조례안 등 일반 의안도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자 맡으신 분야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10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하 인 규**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8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6.2.10~2006.2.22(13일간)

월 일	순서	부 의 안 건	비 고
2006.2.10 (금)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1. 제8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8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11 (토)		휴회(토요일)	
2.12 (일)		휴회(일요일)	
2.13 (월) 10:00	2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기획감사실	
2.14 (화) 10:00	3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총무국(총무과,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2.15 (수) 10:00	4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총무국(민원지적과, 자치지원단)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203호, 총무국)	원안가결
2.16 (목) 10:00	5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2.17 (금) 10:00	6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경제사회국(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18 (토)		휴회(토요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19 (일)		휴회(일요일)	
2.20 (월) 10:00	7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2.21 (화) 10:00	8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도시건설국(건축과, 재난관리과) 2.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 도시건설국)	부 결
2.22 (수) 10:00	9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보건소	

당 일 의 사 일 정

제8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6.2.10~2.22(1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20 (월) 14:00	7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2.21 (화) 10:00	8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도시건설국(건축과, 재난관리과) 2.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호, 도시건설국)	부 결
2.22 (수) 10:00	9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보건소 2.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 ○ 기획감사실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0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2. 1.(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2. 15.(제87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화봉동 제2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중 도서관 신설이 조성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15만 구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북구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북구 공공(중앙)도서관 건립』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후	변경사항
위 치	연암동 404-1, 대	연암동 378번지, 공원 (화봉제2근린공원 내)	장소변경
취득부지	1,036.3㎡(313.4평)	992㎡(300평)	미 취득
건 물	지하1층, 지상4층, 2,644(800평),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3층, 2,644(800평), 철근콘크리트조	규모축소
추정가격	4,600,000천원 (건축비4,000,000, 부지매입600,000)	4,600,000천원 (건축비)	
건립재원 (백만원)	국비800, 시비1,600, 구비2,200	국비800, 시비1,600, 구비2,200	
사업기간	2004. 7월 ~ 2006. 6월	2004년 ~ 2007년	사업기간변동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2004년 6월11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바 있으며 금회 『북구 공공(중앙)도서관』 신축부지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된 것 임.

○ 본 북구 공공(중앙)도서관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06년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 당초 위치보다 취득면적은 적으나 화봉 제2근린공원내에 위치하여 부지사용 협소성 해소, 접근의 용이성, 주변여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건물취득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지난 제72회 임시회(2004.6.11)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총사업비 4,600백만원 중 2,644백만원 57.5%만 확보 되었으므로 예산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01.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2. 21.(제87회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령(2005.8.4)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안 제3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대한 제설 책임 명시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안 제4조)

- 소유자 거주시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 비거주시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안 제5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다만 야간 적설시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

○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의무화(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의 제정은「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 의하면 제설작업 및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여 건축물관리책임자에게 제설·제빙작업을 의무화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제정안은 제1조 목적에 대한 설명에 이어 총 8개 조문과 부

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법 예고한바 성숙된 주민들의 인식으로 내집앞 눈치우기는 내가 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인정하므로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

- ○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 ○ 과연 내 집 앞 눈치우기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 판단됨.

4) 심의결과 : 부결

제15절 제88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류인목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6. 5. 2. 10:00

다. 회　　기 : 2006. 5. 2. ~ 5. 8 (7일간)

라. 부의안건

-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구청장 권한대행이신 김광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을 맞이하여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제8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 례안을 심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유심히 살펴보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고 구정 발전을 위한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3대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회

와 집행부간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호 협력해 보다 알찬 임시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은 청소년의 달이며,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달이기도 하지만, 특히 5월에는 우리만의 전통이며 아름다운 사상을 일깨워 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상이 예로부터 우리 가정의 소중함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 왔습니다.

가정의 달을 계기로 구민 모두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변함없는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31 지방선거가 이제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참된 일꾼을 선출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2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하 인 규**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6.5.2~2006.5.8(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개 회 식	
2006.5.2 (화) 10:00 개회식 직 후	1	○ 5분 자유발언(김진영의원) 1. 제8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14호)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4.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 5.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06호, 총무과) 7.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 총무과) 8.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8호, 총무과) 9.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지방세과) 10.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지방세과) 11.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1호, 자치지원단)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3 (수) 10:00	2	1.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 재난관리과) 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 기획감사실)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 의회사무과)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7호, 의회사무과) 5.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13호, 기획감사실) - 관련부서 6.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원안가결 심의보류 원안가결 원안가결
5.4 (목) 10:00	3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총무국(총무과,문화공보과,지방세과, 민원지적과,자치지원단)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건설과,농림수산과, 건축과,재난관리과) 2.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계수조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5 (금)		휴 회(공휴일)	
5.6 (토)		휴 회(토요일)	
5.7 (일)		휴 회(일요일)	
5.8 (월) 10:00	4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종합심의의결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종합심의의결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4. 25.(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5. 2.(제88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정확한 공인의 규격이 없어 혼용되어 왔던 공인의 규격을 바로잡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공인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인의 규격(별표)

- 합의제기관(의결, 자문, 기타합의제)의 직인의 규격을 추가함.

○ 공인의 비치사용(안 제2조 제6항)

- 인영의 인쇄 사용시 「울산광역시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와 혼용되므로 삭제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참여정부로 들어오면서 구민들이 구정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각종 의결, 자문을 위한 합의제 기관도 늘어나고 있으나 직인에 대한 규격이 없어

○ 설립된 기관마다 제 각각으로 혼용되어 왔던 직인의 규격을 바로 잡아 업무의 효율성 및 공인관리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 이제라고 공인규격을 조례로 개정함은 신설되는 기관으로부터는 공인인쇄시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4.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5. 2.(제88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관리 업무가「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교환·처분방법 등 같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 1 장 총 칙】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제외 사항 조정

○ 대장가격이 1천만원을 2천만원이하(특별시, 광역시지역은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안 제4조제2항제3호)

○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대상 재산의 대장가격 조정(안 제4조제2항제4호 가목)

-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이하 토지 또는 대장가격을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의 재산으로 조정

나.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10조제1항)

※ 재산관리 재원확보 및 재산관리 목적외 사용 방지

【제 2 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 무상 사용기간

•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안 제16조)

※ 사용허가 기간일의 기준을 실제 사용일로 함.

【제 4 장 잡종재산】

가.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

정하는 감액율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안 제34조)

-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나. 대부료의 납기

○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안 제35조제1항)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구와 구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공유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한다.(안 제40조제1항제5호)

【제 8 장 보 칙】

가. 변상금의 분할납부

○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안 제64조제1항)

- 50만원초과 : 6월 이내 2회 분납
- 100만원이상 : 1년 이내 4회 분납
- 200만원이상 : 2년 이내 4회 분납

• 300만원이상 : 3년 이내 4회 분납

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영 제84조 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안 제65조제1항)

-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를 신고 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공유재산업무가 2005. 8. 4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포와 2005. 12. 30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공포되므로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전부개정 된 조례로

○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공유재산의사용·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 처분 등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례를 시행에 필

요하게 전부 개정된 사항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4.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5. 2.(제88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위원임기·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나. 주민참여대상공사를 규정함(안 제12조)

-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5억원미만 마을진입로,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럭설치,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공사 등(단, 전문건설공사인 경우 2억원미만)

※ 울산광역시북구대형공사구민감시관제도 적용대상은 제외

다.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기준을 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공사감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 제시와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감독 자의 대한 실비지급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 현 실태를 보면 담당공무원 한사람이 타 업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데 공사현장을 지도감독까지 하기란 업무 여건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 이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주민이 참여하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은 점진적 발전과 투명성 제고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 공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사 주변주민을 우선 지정과 여비와 실비를 지급하므로 지역의 애착심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 본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4.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5. 2.(제88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5. 1월「지방세법」일부 개정 및 8. 31부동산대책 등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안 제9조)

나.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로 하던 것을 주택의 별도 규정 신설(안 제11조)

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 기간 삭제(안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74조 및 같은법 제275조(2005.12.31 법률 제7843호)개정 및 지방세법감면제도개선토론회(2005.6)와 8.31 부동산 대책 관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삭제하거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할 내용을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안 제9조)안과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로 하던 것을 주택의 별도 규정 신설(안 제11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 기간 삭제(안 제24조) 하는 것으로

○ 본 조례 안은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근거에 의한 개정사항임으로 본 조례 안은 원안가결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4.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5. 2.(제88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삭제하거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나. 세무공무원 소액 지방세 수납 조항 변경(안 제10조)

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삭제 및 적용특례 적용(안 제23조)

라.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안 제26조)

-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일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개정과 행정자치부『특별·광역구 조례 정비안』및『울산광역시 구세 조례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조항신설(안 제6조 의2), 세무공무원 소액 지방세 수납 조항 변경(안 제10조), 재산세 납기 조정(안 제26조)하였고, 도한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일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 이상과 같이 개정안은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평과세 실행과 납세자 편의증진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4.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5. 2.(제88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동사무소 내 한정되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유휴시설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의무 등 현실에 적합하게 관련 조항을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가. 종전 동사무소에 한정되었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을 관할구역 내 유휴시설로 확대

•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7항 신설)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안 제17조, 제20조)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안 제17조 제7항)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에 근거하여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동사무소에 한정되었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을 관할 구역 내 유휴시설로 확대(안 제7조제7항 신설)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안 제 7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로 개선하여 위원회의 의무를 강화(안 제17조, 제20조)하였음, 관할 동장이 매년 주민자치위원 위촉하던 번거로움과 위원들의 연속성을 위하여 임기1년에서 2년으로 변경

○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치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1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4. 25.(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5. 3.(제88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함(제2조).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재해저감계획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 「자연대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함(제3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중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함(제6조).

○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7조,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행정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자연재해로부터 영향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 인·허가 승인 전에 전문적인 검토를 통하여 재해를 저감하고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위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으로

○ 본 조례안은 지형적, 주변 환경에 따르는 재해위험요소 등 재해 사전예방에 충분한 성과가 예상되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0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4.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5. 3.(제88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청장 비서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현안 및 내부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비서실의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당면 구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ㅇ 구청장비서실 직급 조정(별표)

· 비서실장 : 별정 6급 → 행정6급

· 수행비서 : 행정 7급 → 별정7급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ㅇ 1997.7.15 우리 북구가 자치구로 신설되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으나 민선단체장 선출은 1년 후인 '9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행이 되어오면서

ㅇ 신임 구청장 취임에 이어 지역현안 및 내부환경 파악 등을 조언할 위치에 있는 비서실장을 별정6급에서 행정6급으로 개정하여

ㅇ 구청장님께서 빠른 시일내 업무파악과 연속성을 위하여 비서실장 직책인 별정6급을 행정6급으로 조정은 서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히 재검토가 요망됨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

1) 심의경과

ㅇ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6. 4. 26.(류인목의원 외 2인)

ㅇ 심의일자 : 2006. 5. 3.(제88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ㅇ 「지방자치법」 제32조(2005. 8. 4공포, 법률 제7670호)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항목으로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그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

에서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을 정하고, 또한「지방자치법 시행령」(2006. 2.. 8공포, 대통령령 제19322호)개정으로 국내여비의 일부항목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가. 제명 개정

· 당초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

· 개정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나.「지방자치법」및 같은법시행령에 의거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월정수당은 월130만원을 지급함(안 제5조제1항)

다.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지급범위(제6조제1항)관련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 ·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 것을 일원화하였음(안 별표1)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16대 대통령 선거시 지방의회의 생산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급제공약으로

○ 2003년도 광역의장단 간단회시 지방의회 보수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시로

○ 2005.8.4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 2006.2.8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 저의 구에서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3. 23일 1차 회의에 이어 4. 24 2차회의시에 월 240만원 연봉2,880만원으로 결정되어 울

산광역시 5개 기초 자치단체 평균 2,953만원 보다 73만원이 하향 조정되어 의원님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우려가 되나

○ 심의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여 타 구.군 비고와 지방 재정자립도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기울러 결정한 것임으로 판단됨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7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6. 4. 26.(류인목의원 외 2인)

○ 심의일자 : 2006. 5. 3.(제88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2조(2005. 8. 4공포, 법률 제7670호)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3(2006. 2. 8공포, 대통령령 제19322호)의 개정 규정에 의거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이 제도화 됨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의 신설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가. 제명 개정

・당초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개정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나.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거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함(안 제2조제2호)

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으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1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4.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5. 8.(제88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북구 재무 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예비비 지출결정건수 : 7건

○ 예비비 지출결정액 : 959,448,000원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6절 제89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류인목의원 외 2인

나. 개회일시 : 2006. 6. 7. 10:00

다. 회　　기 : 2006. 6. 7. (1일간)

라. 부의안건

- ○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구청장 권한대행이신 김광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많은 경쟁자 중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른 일을 하시게 되는 동료의원에게도 늘 하시는 일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89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3대 북구 의회 회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4년간 어느 때 보다도 참신한 모습으로 북구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의정을 펼쳐왔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2년간의 의장을 맡으면서 의회의 생산적인 회의체계와 북구의회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많았고 아쉬움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께서 한마음으로 감싸고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많이 도와주신 사모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지역현안이나 의회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으로 지역과 구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 북구는 신설구로서의 한계도 있었지만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의 성실한 활동으로 권역별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이나 어른들, 의원들의 손때 묻은 권역별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어린이와 어른들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제정으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참여예산제나 우리 자녀들의 질 좋은 먹거리 제공을 위해 우리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산업도시 울산에서 소외받는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것은 사

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북구의 회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에 많은 도움 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지지하고 지원해 주신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들의 북구 지역에 대한 많 은 관심은 앞으로 희망찬 북구 건설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의회에 가한 비판과 질책은 앞으로 많은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15만 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이상범 구청장님과 470명의 북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3대 의회 임기는 끝이 나고 7월이면 4대 의회와 민선 3기의 북구 구정이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에는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 사업은 태산과 같이 많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원정수가 축소되고 처음으로 정당공천을 받아 출마한 당선자이기에 자칫하면 정당간의 대립으로 갈 수 도 있습니다.

예산도 축소되어 계획된 사업 외 지역 현안 사업 하나 추진하기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협력하여 북구 구민이 더욱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북구 발전을 이루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한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6월 7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하 인 규**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8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6.6.7.(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6.6.7 (수)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1. 제8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8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1	4.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5.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 6.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9호) 7.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218호)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222호)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5. 25.(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6. 7.(제89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연관이 있는 사회복지, 고용, 문화체육, 평생교육, 주거복지, 관광, 여가지원 등의 조직을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이에 따라 과 신설 및 폐지 등 조직을 개편하여 국에 두는 과와 주요 분장 사무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경제사회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안 제5조의2)
나. 도시건설국을 도시경제국으로 개편(안 제6조)
다. 자치지원단을 폐지하고 2과를 신설하였으며, 담당을 조정 통합하여 5개과를 명칭변경 함(안 제5조 내지 제6조)

○ 4과 신설(1과 순증)

- 기획감사실(정보관리, 정보통신)+총무과(경리, 재산관리, 복식부기) = 회계정보과
- 지역경제과(직업안정)+사회복지과(생활보장)+자치지원단(주민참여) +통합조사(신설) = 주민생활지원과(복지연계, 통합조사, 생 활보장, 자활고용)
- 사회복지과(복지기획, 여성아동, 노인복지)
  = 복지서비스과(노인복지, 여성아동, 장애인복지)
- 지역경제과(지역경제, 상공)+도시교통과(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 시설(신설)
  = 경제교통과(경제협력, 기업지원,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 담당 타과로 이관 후 명칭변경 : 5개과

- 기획감사실(정보관리, 정보통신 → 회계정보과, 문화공보과 공보 편입)
  ⇒ 기획홍보실
- 문화공보과(공보 ⇒ 기획감사실) ⇒ 문화체육과
- 농림수산과(산림, 공원녹지 → 도시녹지과) ⇒ 생명산업과
- 건축과(환경미화과 도시미관 편입) ⇒ 건축주택과
- 환경미화과(도시미관 → 건축과로 이관) ⇒ 청소행정과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제 개편사업이 2007년도 전면실시에 앞서 금년도 7.1일부터 전국 5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실시하는 1단계 사업에 우리구도 선정되어 참여하게 된 사항으로,

○ 주요 개편사항을 보면 총무국은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가 있으며, 경제사회국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를 두었고, 도시건설국은 도시경제국으로 개편하여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등 일괄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행정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 주민들에게 삶의 질과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개편사업은 시범실시의 인센티브를 떠나 하루빨리 주민들을 위한 질 높은 행

정서비스 제공을 하고자는 마음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선 행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북구청 행정에 대하여는 찬사를 보내면서

○ 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국별 실 과 조정은 잘 된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내 문화예술회관 담당을 폐지하고 평생학습지원담당으로 변경 한 것은 주민들을 위한 개편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취지는 좋으나

○ 현재 우리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이 타의 문화예술회관보다 잘 운영되고 있으며 시에서도 공해도시 울산의 오명을 벗고자 환경과 문화 문제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울산을 환경 문화의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홍보를 위해서라도 평생학습지원담당보다는 당초대로 문화예술회관담당으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의2(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를 둔다.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 활고용, 120 즉시민원처리,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주거 복지, 자원봉사에 관한 사무	제5조의2(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 활고용, 120 즉시민원처리,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주거 복지, 자원봉사에 관한 사무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5.25.(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6. 7.(제89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생활지원조직을 통합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조직개편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각종 상담·접수,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현장성·대면성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 부서 전담인력 보충과 일부 부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3조와 관련된 별표의 1과 2담당 신설에 따른 5급 및 6급 증원에 대한 직급간 상계 조정

• △3명(7급1, 9급2) ⇒ 3명 증 (5급1, 6급2)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서를 통합하여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 생활지원 전담부서를 통합 운영을 하고자

○ 주민생활지원부서 확충 및 전담인력보충을 위하여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표 직급별 증감현황을 보면 5급1명, 6급2명이 증원되고 7급1명, 9급2명이 감소되므로 정원은 변동이 없으나

○ 직급 상향조정으로 년간 36,000천원정도 인건비가 증액 되지만 질 높은 원-스톱 행정서비스에 의하면 크게 부담되는 사항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임으로 7.1일자로 통합행정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 직급별 증·감 현황

구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395	5	26	75	114	122	53	-	68
조정	395	5	27	77	113	122	51	-	68
증감	-	-	+1	+2	△1	-	△2	-	-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5. 25.(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6. 7.(제89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함

나. 위원회의 목적에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다. 위원회의 기능에「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

라.「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에서 15인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1항)

마.「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 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운영 하라는 사항을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으로

○ 현재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성과 운영 내용이 서로 비슷하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별 문제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통합 운영 관리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5. 25.(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6. 7.(제89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사업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으로 규정 함.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선임하며,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함.

다.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형태를 규정하며, 민간위탁 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주도로 하도록 함.

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13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16)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정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이어「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공포:2006. 2. 6)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을 보면

1.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관한 규정 및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2.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정책결정 등 협의 운영함으로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함과
3. 자원봉사자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보험 및 공제가입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등임으로

○ 본 조례안의 제정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부심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2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5. 25.(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6. 7.(제89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당초 (구립)농소어린이집 건립 대상지가 매곡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접하여 대형차량 통행, 소음, 교통량 증가 등 보육환경 문제로 건립대상지를 변경코자 위치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립) 농소어린이집 건립」 부지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후	변경사항
위 치	농소2동 (매곡동 590-1번지 외 3필지, 사유지)	농소2동 (매곡동 795-39번지 일원, 울산광역시 소유)	장소변경
취득부지	992㎡(300평)	1,000㎡(302평)정도	
건 물	400㎡(121평),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400㎡(121평),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추정가격	700백만원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700백만원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건립재원 (백만원)	국비76, 시비58, 구비466, 특별교부금100	국비76, 시비58, 구비466, 특별교부금100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사업기간	2004. 7 ~ 2005. 2	2004년 ~ 2007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구립) 농소어린이집 위치가 매곡산업단지 진입로와 연접하고 있어 대형차량 통행, 소음, 분진 등 사고위험성과 보육환경 등이 최악의 상태인데

○ 이번 매곡사업단지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부지로서 불가피하게 이전이 요구되나

○ 기 보육시설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하여 이전지역이 현 시설에서 300~400m 떨어진 매곡동 795-39번지 일원 공유지에 건립은 예산절감과 위치, 환경적으로는 적절한 장소로 판단되면

○ 아쉬움이 있다면 현 공유재산 임대사용자에게 시설물설치에 대하여 사전홍보 및 예방이 미흡함과 주변에 고물상등이 난립하여 보육생들에게 위험성이 항상 존재함으로

○ 사업시행 전에 현 임대사용주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주변환경정비 등 노력을 요하는 조건에 의하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 4 장
예산 · 결산심의사항

제 1 절 2003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 2 절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 3 절 2004년도 제2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4 절 2004년도 제3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5 절 2005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 6 절 2005년도 제1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7 절 2004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 8 절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 9 절 2005년도 제2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0절 2006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11절 2006년도 제1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2절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 1 절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 30, 구청장

나. 심의일자 : 2004. 7. 9 ~ 7. 15

나. 의결일자 : 2004. 7. 16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 주요골자

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 세입결산액 : 104,136,158,100원
- ○ 세출결산액 : 73,626,348,850원
- ○ 세계잉여금 : 30,509,809,250원

나.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 세입결산액 : 208,721,180원
- ○ 세출결산액 : 90,720,000원
- ○ 세계잉여금 : 118,001,180원

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 세입결산액 : 55,759,010원
- ○ 세출결산액 : 26,856,930원
- ○ 세계잉여금 : 28,902,080원

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 세입결산액 : 66,837,190원
- ○ 세출결산액 : 47,500,000원

○ 세계잉여금 : 19,337,190원

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액 : 529,154,950원

○ 세출결산액 : 284,795,690원

○ 세계잉여금 : 244,359,260원

3.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789억 5,439만 6천원이며, 수납액은 806억 9,092만 5천원으로써 예산액의 102.2%가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5%포인트가 높아졌고, 불납결손액은 1억 8,643만 8천원으로써 시효완성,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발생되었음.

○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5억 4,642만 3천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유로는 거소불명이 6,010만 6천원, 무재산이 9,835만 6천원, 고질적 체납이 3억 8,796만원으로써 전년도 징수율이 징수결정액 대비 14.2%인데 반해, 당해연도 징수율은 20.5%로 약간 상승은 되었으나, 고질적 체납자 등 미수납 원인별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출부문

○ 보조금 사업의 경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050만원과 당해연도 예산액 2억 2,403만원이 인원확보 문제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재이월 되었으므로, 차후부터는 예산이 확보된 사업을 인원충원 문제로 인해 재차 이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임.

- ○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관리에 있어 태연재활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용을 보면, 매월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시, 직원 개인명의로 된 통장을 일괄 개설하여 퇴직금을 적립한 후, 태연재활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 지급하고 있어, 이는 퇴직금 적립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후부터는 직원 개인통장이 아닌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임.
- ○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경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 삭감을 적게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총무관리의 재료비 항목 등 몇몇 항목은 지출원인행위 없이 바로 불용처리된 사례도 있었음.
- ○ 사고이월의 대부분이 전년도 명시이월에서 재이월된 것으로써, 이는 명시이월된 공사가 다시 사고이월되는 관행이 계속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사추진시 이월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이월 건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향후,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두번씩 이월되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음.

□ 특별회계부문

- ○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의 경우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세입예산 편성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과년도수입 예산을 미편성하여 세입에 일괄 징수조치하고 있으며,
- ○ 과년도 수입에 대하여는 채권으로써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세입예산 편성시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과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징수한 후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2,347,607,3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7,700,081,740원, 수납액은 104,136,158,100원으로써 96.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 이는 당해연도 징수실적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북구는 지역특성상 재정증가 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 따라서, 전 실과소에서는 자체재원 이외의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람.

□ 세출부문

○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예산이 실제 집행된 것을 확정적인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 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사업비, 경상비 등 예산편성시 소요금액만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전 충분한 조사없이 과다하게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예산전액을 불용시키는 사례도 있는 등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차후 시장조사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철저히 파악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집행

이 완료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시설공사의 경우 예산 편성후 공사 준비 단계시부터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규모가 큰 공사는 거의 대부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므로 예산이 성립되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몇몇 항목은 총액편성 제도를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 총액편성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의 절감과 자율성 확보 등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총액편성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5. 심의결과 : 승인가결

제 2 절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 30, 구청장

나. 심의일자 : 2004. 7. 8

다. 의결일자 : 2004. 7. 16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 주요골자

○ 일반회계

· 예 산 액 : 1,927,693,000원

· 지출결정액 : 637,328,000원

· 지 출 액 : 537,349,780원

- 음식물공공자원화시설설치 환경캠페인외 20건

· 이 월 액 : 43,013,000원

· 지 출 잔 액 : 56,965,220원

3.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므로 보조금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은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의견 요지

○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으며, 또한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927,693,000원으로써 음식물 공공자원화시설설치 환경캠페인외 20건에 637,32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37,349,780원을 지출하였으며, 43,01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6,965,2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03년도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일부사업은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필요이상의 소요사업비를 산출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 또한, 태풍 "매미" 발생시 수산생물양식장 복구 등 3건에 대한 태풍피해 복구비로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음.

○ 따라서, 긴급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업은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예비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케 하는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해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은 이월되는 사례없이 긴급 복구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

○ 그리고, 예비비 지출결정시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자체사업과 경상경비는 가능하면 자제토록 하되, 만약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경우 세밀한 검토후 집행토록 할 것이며,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사업완료 후 재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기 바람.

○ 앞으로 예비비 집행시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사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함.

5. 심의결과의견 : 승인가결

제 3 절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0. 8, 구청장

나. 심의기간 : 2004. 10. 15 ~ 10. 25

다. 의결일자 : 2006. 10. 26

(제7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라.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4예산액	기정예산액 (2004. 1회)	증 감	
			금 액	비율(%)
계	80,656,037	74,786,937	5,869,100	7.8%
일 반 회 계	79,740,564	73,897,405	5,843,159	7.9%
특 별 회 계	915,473	889,532	25,941	2.9%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62,402	162,402	0	0%
의 료 급 여 기 금	51,303	51,303	0	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 활 안 정 기 금	62,108	37,708	24,400	64.7%
주 차 장	639,660	638,119	1,541	0.2%

3.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A)	예산심사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80,656,037		60,000		1,421,562	1,481,562	80,656,037	2,419,681
일반회계		79,740,564		60,000		1,242,311	1,302,311	79,740,564	2,392,217
기타특별회계		915,473				179,251	179,251	915,473	27,464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62,402				112,402	112,402	162,402	4,87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51,303				400	400	51,303	1,539
기타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62,108				1,908	1,908	62,108	1,863
기타특별회계	주차장	639,660				64,541	64,541	639,660	19,190

4. 심의결과 의견요지

□ 세 입

○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74,786,937천원보다 5,869,100천원이 증가된 79,740,56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500,000천원, 세외수입 24,400천원, 지방교부세 1,918,000천원, 지방양여금 △66,382천원, 조정교부금 1,300,000천원, 국·시비보조금 2,193,082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국·시비보조금 등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금은 결산후 익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부서에서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음.

○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을 제외한 재원에 대해서는 사전 정확한 세수추계로 가급적 당초예산에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복지증진비로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인 사업추계로 인하여 수개월간 사업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세 출

○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계속사업의 부족분,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정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일부 예산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삭감예산이 금회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상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지출에 있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나 위의 사용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집행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거나 또는 추가지출이 없을 경우 예비비를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행정기구설치개편에 따른 실과별 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일부 항목간 상호 보완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예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차례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문화예술회관 시설장비 유지비에 관한 사항 중 본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삭감 조치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일부부서의 경우 가장 기초적인 예산편성 시 사업명에 따른 부기를 잘못 표기하는 등 예산편성자료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 대부분의 부서에서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사업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내시변경시 기계적으로 구비부담을 삭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복지수준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일부 간부공무원의 경우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숙지 소홀 및 사전 답변준비 부족으로 예산 심의 때 마다 의원들의 질문에 불명확한 답변으로 혼란을 가져왔던 부분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심히 유감스러우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당초예산을 앞두고 사전 간부 공무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함.

○ 이상과 같이 언급된 제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심의 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수행을 위하여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제 4 절 2004년도 제3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2. 13, 구청장

나. 심의기간 : 2004. 12. 20 ~ 12. 23

다. 의결일자 : 2004. 12. 24

(제7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라.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2004년도 제3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경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4예산액	기정예산액 (2004. 2회)	증 감	
			금 액	비율(%)
계	83,074,556	80,656,037	2,418,519	3.0%
일 반 회 계	82,108,895	79,740,564	2,368,331	2.9%
특 별 회 계	965,661	915,473	50,188	5.5%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62,402	162,402	0	0%
의 료 급 여 기 금	51,303	51,303	0	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 활 안 정 기 금	62,108	62,108	0	0%
주 차 장	689,848	639,660	50,188	7.8%

3.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A)	예산심사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증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83,074,556	1,552,386	2,052,386	2.5	2,294,051	2,794,051	81,522,170	2,445,665
일반회계	82,108,895	1,552,386	2,052,386	2.5	2,038,407	2,538,407	80,556,509	2,416,696
기타특별회계	965,661				255,644	255,644	965,661	28,969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62,402				112,402	112,402	162,402	4,87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51,303				400	400	51,303	1,539
기타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62,108				1,908	1,908	62,108	1,863
기타특별회계 주차장	689,848				140,934	140,934	689,848	20,695

4. 심의결과 의견요지

□ 세 입

○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80,656,037천원보다 2,418,519천원이 증가된 83,074,55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657,574천원, 조정교부금 690,000천원, 국 · 시비보조금 1,070,945천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음.

○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을 제외한 자주재원은 사전 정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당초예산에 미리 반영되어야 함에도 세외수입추계의 잘못으로 이번 제3회 추경에 증액 또는 삭감되는 사례가 있었음.

○ 특히, 총무과의 경우 국 ·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65,622천원 증액편성되는 것이나, 환경위생과의 분뇨처리수수료 9,000천원, 도시교통과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33,436천원의 세외수입이 삭감 편성되는 것은 집행부의 세입에 대한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향후 이런 점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함.

○ 그리고,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지서비스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함.

□ 세 출

○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 계속사업의 부족분, 법적 · 필수경비 위주의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일부 실과 예산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삭감예산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 자치행정과 소관 행사실비보상금 중 일부사업 및 동 예산 중 인건비 등에 대하여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당초 사업계획이 목적대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반면, 불가항력적인 변동요인 발생시에는 과감하게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상안어린이공원조성』 사업예산과 관련, 이 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농림수산과로 이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5억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100% 증액된 10억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분석이 잘못된 것이며, 설사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거나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보충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결산추경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세부사업계획 또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것으로써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함.

○ 또한, 사회복지과의 무룡동 406번지 『장수마을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 사업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다고는 하나, 본 시설이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지역주민 여론수렴 및 해당 지역구 의원과 의회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그 행정절차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사업추진 방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보조금 전액을 삭감함.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심의 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수행을 위하여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제 5 절 2005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1. 19, 구청장

나. 심의기간 : 2004. 12. 6 ~ 12. 17

다. 의결일자 : 2004. 12. 18

(제7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본회의)

라.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2005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05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2004당초)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74,698,936	100.0	66,576,235	100.0	8,122,701	2,240,968
일 반 회 계	73,888,734	98.8	65,742,432	98.8	8,146,302	2,216,662
특 별 회 계	810,202	1.2	833,803	1.2	-23,601	24,306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72,800	0.2	232,000	0.3	-59,200	5,184
의 료 급 여 기 금	19,000	0.0	41,000	0.1	-22,000	57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76,111	0.1	43,695	0.1	32,416	2,283
주 차 장	542,291	0.7	517,108	0.7	25,183	16,269

3.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A)	예산심사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심사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74,698,936		1,209,654	1.6	981,315	2,190,969	74,698,936	2,240,967
일반회계	73,888,734		1,159,654	1.6	834,546	1,994,200	73,888,734	2,216,662
특별회계	810,202		50,000		146,769	196,769	810,202	24,305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72,800		50,000		122,800	172,800	172,800	5,184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9,000						19,000	570
기타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76,111				6,111	6,111	76,111	2,282
기타특별회계 주차장	542,291				17,858	17,858	542,291	16,269

4. 심의결과 의견요지

□ 세 입

○ 2005년 총 예산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 66,576,235천원보다 8,122,701천원이 증액된 74,698,936천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액은 지방세수입 4,166,257천원, 조정교부금액이 718,773천원, 국시비보조금이 3,613,272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음.

○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전년대비 16.9% 증액된 것은 각종 어두운 경기지표에도 불구하고 신흥 개발지역으로 급부상한 우리구의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 분석으로 개발수요가 많은 우리구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세입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세 출

○ 2005년 당초 예산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8,146,30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총 증액된 예산의 60.7%인 4,945,711천원이 증가된 반면 자체사업예산은 오히려 147,546천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은 전반적으로 국가전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비 투자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과 노력이 전혀 없었으며, 기적의 도서관개관, 문화예술회관운영 등 경상적경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또 권역별도서관 및 보훈회관 등이 개관되어 2006년도 사업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 경상적경비가 과다 또는 확대 편성되어 있는 것은 경상적경비 편성에 대한

통제기능을 상실한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어려운 내년 경기여건을 감안 무분별하게 편성된 경상적경비 절감과 사회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실과별 일반운영비 총액대비 10%를 삭감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한 10%삭감하였으며, 감사에서 지적한 관내출장여비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200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무려 94%가 증액 편성되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다편성 되었으나 심의회의 기능을 존중하고 향후 감사시 이를 충분히 점검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며
- 또한, 기박산성의병축제, 노동문화축제, 해변영화축제, 쇠부리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복투자가 우려됨과 동시에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북구종합축제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하고 있음.
- 총괄적으로 이번 2005년도 예산안은 매년 예산액이 10%이상씩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예산은 오히려 매년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예산심의시 전 의원은 실망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다양한 주민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의 완벽한 준비로 단순한 공약의 의미와 정책적 의미를 벗어나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예산

은 전 구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 현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단위업무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전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제 6 절 2005년도 제1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2. 구청장

다. 심의기간 : 2005. 5. 23 ~ 5. 26

다. 의결일자 : 2005. 5. 27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라.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2005년도 제1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5예산액	기정예산액 (2005 당초)	증 감	
			금 액	비 율(%)
계	85,026,617	74,698,936	10,327,681	13.8%
일 반 회 계	83,534,177	73,888,734	9,645,443	13.1%
특 별 회 계	1,492,440	810,202	682,238	84.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81,598	172,800	8,798	5.1%
의 료 급 여 기 금	32,991	19,000	13,991	73.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 활 안 정 기 금	60,450	76,111	-15,661	-20.6%
주 차 장	1,217,401	542,291	675,110	124.5%

3.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85,026,617	0	303,200	0.35	1,497,533	1,800,733	85,026,617	2,5550,799
일반회계		83,534,177	0	23,200	0.02	1,478,245	1,501,445	83,534,177	2,506,025
특별회계		1,492,440	0	280,000	18.76	19,308	299,308	1,492,440	44,744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81,598				0	0	181,598	5,448
	의료급여기금	32,991				1,000	1,000	31,991	99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60,450				450	450	60,450	1,814
	주차장	1,217,401	0	280,000		17,858	297,858	1,217,401	36,522

4. 심의결과 의견요지

□ 세 입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74,698,936천원보다 10,327,681천원이 증가된 85,026,61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1,100,000천원, 세외수입 4,703,294천원, 지방교부세 2,588,318천원, 조정교부금 650,000천원, 국·시비보조금 2,803,831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세인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바 전실과에서는 재원조정으로 인한 분권교부세 등 세수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또한 보다 더 세밀한 검토·분석을 통한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세 출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전반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재원조정으로 인한 예산과목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일부 예산의 경우 보건소 청사용역비 등 금회 추경시 삭감 조치하여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도 있었음.

○「지방재정법」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도시교통과의 『공영주차장 설치』예산의 경우 선행되어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취득의결 등의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7억원이라

는 막대한 예산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와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사안으로, 향후 전실과에서는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을 촉구함.

○ 아울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솔라 2004 프로젝트 태양광 및 태양열사업』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시기에 맞춰 가동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사전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하여 성공적인 수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매번 되풀이 되는 지적이지만 일부 간부공무원의 경우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숙지 소홀 및 사전 답변준비 부족으로 예산심의 시 마다 의원들의 질문에 불명확한 답변으로 혼란을 가져왔던 부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심히 유감스러우며, 사전 간부공무원들이 담당업무 연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부족이 아쉬운 실정임.

○ 이상과 같이 언급된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심의 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제 7 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6. 27, 구청장

나. 심의기간 : 2005. 7. 5 ~ 7. 12

다. 의결일자 : 2005. 7. 15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라. 심의결과 : 승인의결

2. 주요골자

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08,647,913,310원
- 세출결산액 : 76,516,125,240원
- 세계잉여금 : 32,131,788,070원

나.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81,597,730원
- 세출결산액 : 0원
- 세계잉여금 : 181,597,730원

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51,940,260원
- 세출결산액 : 38,951,130원
- 세계잉여금 : 12,989,130원

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86,119,260원

○ 세출결산액 : 60,000,000원

○ 세계잉여금 : 26,119,260원

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 세입결산액 : 724,883,610원

○ 세출결산액 : 425,588,240원

○ 세계잉여금 : 299,295,370원

3.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805억 5,650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823억 4,703만 1천원으로써 예산액의 102.2%가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02%포인트가 높아졌고, 불납결손액은 2,980만 9천원으로써 대부분 시효완성으로 인해 발생되었음.

○ 당기의 불납결손액은 전기의 1억 8,643만 8천원에 비해 2,980만 9천원인 16%에 불과한 바 그 사유를 보면, 전기에는 고액체납법인에 대한 결손처분 1억 3,460만 5천원이었고, 2002년도 시효완성 및 2003년도 시효완성 분을 전기에 한꺼번에 결손 처분하였으며, 당기에는 시효완성을 제외한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에 의한 결손처분을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음. 체납정리 결과에 따라 결손처분을 매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수년간 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는 경향이 있음.

□ 세출부문

○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등의 사용에 있어 보건소 및 몇몇 실과의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등을 검토한바 기중에는 잔액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이 계속 이루어져 연말에는 잔액이 많이 남아 한꺼번에 예산집행을 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하여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 명시이월 후 불용처리에 있어 당기에는 명시이월 후 바로 불용처리되는 공사건이 많이 발생 하였는바 이는 토지보상 등 공사관련 민원으로 인한 공사 불능이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되나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공사 진행 예측을 하여처리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임.

□ 특별회계부문

○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의 경우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세입예산 편성시 과년도 수입예산을 미편성하여 당해연도 세입에 일괄 징수조치 하고 있으며,

○ 과년도 수입에 대하여는 채권으로써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세입예산 편성시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과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징수한 후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6,792,311,4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2,430,917,130원, 수납액은 108,647,913,310원으로써 96.6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 이는 당해연도 징수실적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 징수대책

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우리 북구는 지역특성상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신규 재원 증가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전 실과소에서는 자체재원 확보방안뿐만 아니라 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람

□ 세출부문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실제 집행된 것을 확정적인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 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비, 경상적경비 등 예산편성시 적정 소요금액만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전 충분한 조사 없이 과다하게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등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차후 사업의 비용분석, 시장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철저히 파악 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드시 감액정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그리고, 『시설공사』의 경우 예산편성 후 공사 준비 단계시부터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바라며, 이월된 사업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특히 겨울공사로 인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하여 주기 바람

제 8 절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6. 23, 구청장

나. 심의기간 : 2005. 7. 4

다. 의결일자 : 2005. 7. 15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라. 심의결과 : 승인의결

2. 주요골자

○ 일반회계

· 예 산 액 : 2,538,407,000원

· 지출결정액 : 75,676,000원

· 지 출 액 : 75,675,630원

-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작업외 2건

· 이 월 액 : 0원

· 지 출 잔 액 : 370원

3.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므로 보조금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은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의견 요지

○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으며, 또한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538,407,000원으로써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작업외 2건에 75,67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75,675,630원을 지출하였으며, 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04년도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명촌 및 주공임대아파트 수급가구 전입에 따른 수급가구 증가로 급여수요가 증가되어 국시비보조분에 대한 구비확보를 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 또한, 시례동 산5번지 일대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되어 피해목을 적기에 제거하여 방지를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앞으로 예비비 집행 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사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함.

제 9 절 2005년도 제2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2. 15, 구청장

나. 심의기간 : 2005. 12. 21 ~ 12. 25

다. 의결일자 : 2005. 12. 27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8차 본회의)

라.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2005년도 제2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예산액	기정예산액 (2005. 1회)	증 감	
			금 액	비 율(%)
계	93,521,162	85,026,617	8,494,545	9.99%
일 반 회 계	92,658,681	83,534,177	9,124,504	7.9%
특 별 회 계	862,481	1,492,440	-629,959	-42.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81,598	181,598	0	0%
의 료 급 여 기 금	33,991	32,991	1,000	3.0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 활 안 정 기 금	64,560	60,450	4,110	6.80%
주 차 장	582,332	1,217,401	-635,069	-52.1%

3. 2005년도 제2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임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93,521,162	200,970	287,100	0.2	2,235,841	2,321,971	93,320,192	2,805,635
일반회계		92,658,681	200,970	287,100	0.2	2,023,243	2,109,373	92,457,711	2,779,760
특별회계		862,481				212,598	212,598	862,481	25,875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81,598				0	0	181,598	5,448
	의료급여기금	33,991				1,000	1,000	33,991	1,0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64,560				4,560	4,560	64,560	1,937
	주차장	582,332				207,038	140,934	582,332	17,470

4.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85,026,617천원보다 8,494,545천원이 증가된 93,521,16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830,264천원, 지방교부세 1,431,000천원, 조정교부금 2,172,194천원, 국·시비보조금 4,691,04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국·시비보조금 등 집행 잔액에 대한 이월금은 일부 이월사업 등 계속사업을 제외하고는 결산 후 익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부서에서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세입 예산 중 의존재원을 제외한 재원에 대해서는 사전 정확한 세수추계로 가급적 당초예산에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인 사업추계로 인하여 사업 준비부족으로 수개월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금, 특별교부세·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세 출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전반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태풍 "나비" 피해복구에 따른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 정

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일부 예산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삭감예산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고, 또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각종 세목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 및 적조관련 사유 미발생 등으로 사업계획이 취소, 변경되는 경우조차도 불용액을 삭감하지 않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 그리고, 호계 수동마을 외 하수도정비사업 등 시설비의 경우 발생한 집행 잔액에 대하여 금회 추경 시 반납처리하기보다는 관내 하수도정비사업 대상지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집행 잔액을 사장시키지 말고 관내 하수도 정비에 지출하는 융통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함.

○ 특히, 내년 5월에 시행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올해 편성된 예산 중 기타보상금의 경우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축소 또는 취소되는 등 전 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사업추진이 정히 불가하다면 사업추진 방법을 변경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 · 개정하여 기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14호 태풍 "나비"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와 관련 기 조사된 3개소에 대한 완벽한 복구공사와 아울러 GB단속요원, 산불감시요원 등을 활용하여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전방위적인 피해지 조사 후 내년 우수기를 대비한 최소한의 피해복구가 되어 제2의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 대부분의 부서에

서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사업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일부 실과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반드시 시정하기 바라며, 부득이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정산을 정확히 하여 1회 추경 시 반납할 수 있도록 전실과소에서는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특히, 장애아전담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미숙으로 반납하는 것은 결국 구민들에게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원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복지수준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언급된 제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심의 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수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제 10 절 2006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1. 18, 구청장

나. 심의기간 : 2005. 12. 6 ~ 12. 19

다. 의결일자 : 2005. 12. 20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

라.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2006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06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2005당초)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74,021,731	100.0	74,698,936	100.0	-677,205	2,220,652
일 반 회 계	73,507,285	99.3	73,888,734	98.9	-381,449	2,205,219
특 별 회 계	514,446	0.7	810,202	1.1	-295,756	15,433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0	0	172,800	0.2	-172,800	0
의 료 급 여 기 금	39,000	0.1	19,000	0.1	20,000	1,17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0	0	76,111	0.1	-76,111	0
주 차 장	475,446	0.6	542,291	0.7	-66,845	14,263

3. 2006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장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74,021,731		207,053	0.28	930,356	1,150,238	74,021,731	2,220,652
일반회계		73,507,285		187,053	0.26	930,356	1,117,409	73,507,285	2,205,219
특별회계		514,446		20,000	3.88	12,829	32,829	514,446	15,433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39,000		0	0			39,000	1,17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0				0	0	0	0
	주차장	475,446		20,000	4.20	12,829	32,829	475,446	14,263

4. 심의의견요지

□ 세 입

○ 2006년 총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 74,698,936천원보다 677,205천원이 감액된 74,021,731천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액은 지방세수입 202,000천원, 지방교부세 871,000천원, 국시비보조금이 8,001,725천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967,960천원, 조정교부금 8,783,970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 세입에 있어서 전년대비 가장 크게 줄어든 세목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127,930천원, 조정교부금 8,783,970천원이 각각 감액된 것은 내년에도 불확실한 경기로 인하여 세입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개발수요가 많은 우리구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방세과 등 관련실과에서는 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은 물론 특별교부금 · 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세 출

○ 2006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677,20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의 경우 전년도 대비 1,270,452천원 정도로 소폭 감액된 반면, 국시비보조사업의 증가로 자체사업은 전년도 예산대비 50%인 무려 5,678,516천원이 오히려 감소되어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은 전반적으로 국가전체가 경제적 ·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투자에 대한 집행부의 자구노력도 인정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기적의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운영 등

경상적경비 부담이 매년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농소1동 및 양정 · 염포 권역별도서관 등이 개관되어 2006년도 사업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부서에서는 명확한 사업계획 없이 경상적경비를 연례 답습적으로 편성 요구하여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경상적경비 편성에 대한 통제기능을 상실한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따라서, 어려운 내년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상당히 긴축편성 하였다고는 보여 지나 경상적경비 절감과 사회적 고통분담차원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씩 일률 삭감하였고, 총무과의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 1억5천만원, 문화공보과의 농소2,3동 문화의집 인건비 4,453천원, 농림수산과의 어류종묘방류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조치하고, 또한 특별회계로는 도시교통과 주정차위반차량 적발 감시용 카메라설치 2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음.

○ 2006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으로 1회성 행사경비를 감액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증가 편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심의회의 기능을 존중하고 향후 감사시 이를 충분히 점검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며,

○ 또한, 기박산성의병축제, 정자해변영화축제, 쇠부리문화축제 등 실과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축제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복투자가 우려됨과 동시에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개선 발전시켜나가도록 지난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한 사항을 참조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길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총괄적으로 이번 2006년도 예산안은 매년 예산액이 10%이상씩 증가해온 것과는 달리 오히려 9% 감액편성 되었으며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무려 50%나 감소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향후 특별교부금 · 교부세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 시에는 다양한 주민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매년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 현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단위업무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전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제 11 절 2006년도 제1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4. 25, 구청장

나. 심의기간 : 2006. 5. 3 ~ 5. 7

다. 의결일자 : 2006. 5. 8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라.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2006년도 제1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예산액	기정예산액 (2006년 당초)	증 감	
			금 액	비 율(%)
계	81,109,942	74,021,731	7,088,211	9.57%
일 반 회 계	80,419,919	73,507,285	6,912,634	9.4%
특 별 회 계	690,023	514,446	175,577	34.1%
의 료 급 여 기 금	39,000	39,000	0	0%
주 차 장	651,023	475,446	175,577	36.9%

3. 2006년도 제1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81,109,942	-	5,000		1,439,622	1,444,622	81,109,942	2,433,298
일반회계		80,419,919	-	5,000		1,251,684	1,256,684	80,419,919	2,412,597
특별회계		690,023				187,938	187,938	690,023	20,701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39,000				-	-	39,000	1,170
특별회계	주차장	651,023				187,938	187,938	651,023	19,531

4.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74,021,731천원보다 7,088,211천원이 증가된 81,109,94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700,000천원, 지방교부세 1,868,430천원, 조정교부금 1,400,000천원, 국·시비보조금 1,944,20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 예산 중 의존재원을 제외한 재원에 대해서는 사전 정확한 세수추계로 가급적 당초예산에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인 추계로 인하여 순세계 잉여금이 1,700,000천원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공공도서관 신축, 종합사회복지관 진입도로 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등 당면 현안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 안일한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심히 유감스러우며, 집행부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며

○ 그리고,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다른 보조금, 특별교부세·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함.

□ 세 출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전반적으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지급단가 인상으로 집행부의 부족한 국내여비

조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경비, 국 · 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등 법적 · 필수경비 위주의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문화공보과 문예회관 공연장 천정 흡음재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2003년도 준공한지 3개월 만에 태풍"매미" 로 인하여 천정부분이 파손되어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년도 채 되지 않아 일부하자가 또다시 발생하여 9,500천원의 예산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의심치 않을 수 없음.

○ 그리고, 효문운동장내 축구장 휀스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농소운동장 및 양정생활체육공원은 인조구장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기 휀스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점차 개방화를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타 지역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 그리고, 환경미화과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혁신 우수단체 특별교부세 1억원이 교부된 것은 우리구로써는 우수사례로 볼 수 있으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등 일부 항목과 관련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지역주민과 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협의 후 편성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음.

○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경제에 부담에 되고 있는 만큼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빠른

시일내 절연기구 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중산동일원에 140,720㎡(42,000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중산일반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시 주거지역으로 희망하고 있는 주민정서에 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조성코자 공고시점에 이른 만큼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지 않고 사업추진한데 대하여 매우 아쉬움이 있음.

○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만큼 우리구에서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금 및 자체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 농림수산과의 경우 각종 헌수운동, 등산로 정비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적 특색이 있는 테마 숲 조성 등 형태로 추진하여 향후에 테마거리조성 등 볼거리 문화조성으로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람.

○ 마지막으로, 특히 도시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양정 제2공영 주차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체재원 확보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어렵게 확보한 지난해 특별교부금 420,000천원을 반납하였으나, 금회 추경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60,352천원이나 발생한 것에 대하여 예산안을 검토한 의원으로써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음.

○ 이상과 같이 언급된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심의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수행 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제 12 절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4. 21, 구청장

나. 심의일자 : 2006. 5. 3

다. 의결일자 : 2006. 5. 8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주요골자

○ 일반회계

· 지출결정액 : 959,448,000원

· 지 출 액 : 851,999,790원

- 쌍용아진A 진입도로 및 태연재활원 진입도로 복구작업 외 6건

· 지 출 잔 액 : 107,448,210원

3. 심의의견 요지

○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으며, 또한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 총 959,448,000원중 쌍용아진A 진입도로 및 태연재활원 진입도로 복구 작업외 6건에 959,44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51,999,790원을 지출하였으며, 107,448,210원

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05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태풍"나비"내습시 토사로 염포동 성원쌍떼빌 아파트 및 신전시장 일원에 배수암거 및 하수구 막힘 준설에 집행잔액 54,939,450원, 쌍용아진아파트 진입도로 및 태연재활원 진입도로 복구에 진행잔액 42,035,720원, 태풍"나비"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집행잔액 7,292,000원 등「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적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비비사용 목적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예비비 집행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함.

○ 태풍 "나비" 내습 시 토사로 염포동 성원쌍떼빌 아파트 및 신전시장 일원에 배수암거 및 하수구 막힘 준설과 관련하여 향후 근본적으로 상류 지천을 정비하지 않고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배수로 및 암거 토사준설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므로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바라며

○ 또한, 음식물처리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각 가정 및 식당 등 음식물배출업소에서 원천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 확보 및 주민홍보, 교육 등을 통하여 음식물을 감량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람.

4. 심의결과의견 : 승인가결

제 5 장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 1 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 2 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제 3 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제 4 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 5 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 6 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제 7 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제 8 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1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개요

가. 감사의 목적

○ 2004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 하고자 함

나. 근 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다. 감사 기간 : 2004. 11. 26 ~ 2004. 12. 4(7일간)

라.. 감사 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마.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하 인 규

○ 부 의 장 : 이 재 경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이 상 찬

○ 사무직원 : 김 성 철

2.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사무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청		구 청 장	이 상 범		감사요구 자료참고
		부 구 청 장	이 기 원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최 종 식		
	○ 총 무 국	총 무 국 장	김 정 도		
		총 무 과 장	김 지 호		
		자치행정과장	김 영 식		
		문화공보과장	조 계 현		
		지 방 세 과 장	이 동 훈		
		민원봉사과장	김 실 근		
	○ 경제사회국	경제사회국장	박 해 동		
		지역경제과장	김 덕 룡		
		사회복지과장	최 효 원		
		환경위생과장	박 상 우		
		환경미화과장	김 경 재		
	○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김 도 헌		
		도시교통과장	조 충 래		
		건 설 과 장	김 종 배		
		농림수산과장	주 수 생		
		건 축 과 장	박 기 봉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사무
		직	성명	전임자	
	○ 보건소	보건소장	이병희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전 동	농소1동장	정순상		
		농소2동장	박민수		
		농소3동장	서강수		
		강동동장	이상헌		
		효문동장	구일우		
		송정동장	강걸수		
		양정동장	박경규		
		염포동장	김현옥		

3.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 제출요구 현황(제76회 임시회, 2004. 10. 22)

계	공통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199	15	20	57	45	48	11	3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4. 행정사무감사 일정

가. 감사일정별 감사대상 부서 및 장소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4. 11. 26 (금)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실·국·소·과·동장 ○기획감사실 ○총 무 국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2004. 11. 27 (토)	10:00	〃	○총 무 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휴무토요일
2004. 11. 28 (일)	10:00	〃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2002. 11. 29 (월)	10:00	〃	○도시건설국 ·농림수산과 ·허가과	
2002. 11. 30 (화)	10:00	(대상사무 현장확인)	○현장확인	
2002. 12. 1 (수)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건설과	
2002. 12. 2 (목)	10:00	〃	○보건소 ○의회사무과	

※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 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다.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실·국·소·과장·동장 합동 실시 - 27명
(국장3명, 소장1명, 실·과장15명, 동장8명)

- 선서문 낭독 : 총무국장

라. 기타 행정사항

○ 현장확인 활동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안내

제2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실시개요

가.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감사기간 : 2004. 11. 29 ~ 2004. 12. 4 (7일간)

다.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감사실 ○ 총 무 국 ○ 경제사회국 ○ 도시건설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2.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하 인 규	이 재 경	김 재 근 김 대 영 윤 임 지 류 재 건 김 진 영 류 인 목	이 상 찬	김 성 철

나. 감사일시 및 장소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4. 11. 29 (월)	10:30	북구의회 소회의실	○기획감사실 ○총 무 국 · 총 무 과	
2004. 11. 30 (화)	10:30	〃	○총 무 국 · 자치행정과 · 문화공보과 · 지방세과 · 민원봉사과	
2004. 12. 1 (수)	10:30	〃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4. 12. 2 (목)	10:30	〃	○경제사회국 · 환경미화과 ○경제사회국 · 도시교통과 · 건 축 과	
2004. 12. 3 (금)	10:30	〃	○도시건설국 · 건 설 과 · 농림수산과	
2004. 12. 4 (토)	10:00	〃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004. 12. 5 (일)	10:00	(대상사무 현장확인)	(현장확인)	

다. 감사방법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감사첫날 관계공무원 합동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라.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주요감사 실시건수
계	207	27		207
공 통 사 항	14			14
기 획 감 사 실	13	1		13
총 무 국	58	14		58
경 제 사 회 국	52	5		52
도 시 건 설 국	51	5		51
보 건 소	16	1		16
의 회 사 무 과	3	1		3

마. 감사결과 모범사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모범사례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72**		**53**	**19**
공 통 사 항	5		5	0
기 획 감 사 실	4		3	1
총 무 국	26		22	4
경 제 사 회 국	21		17	4
도 시 건 설 국	15		5	10
보 건 소	1		1	0

바. 현장확인 감사

□ 동천 및 마동천 수해복구 공사 현장

○ 일 시 : 2004. 12. 5(일) 11:00

○ 내 용 : 호안정비 공사 및 복구 현장 확인

○ 참 석

- 의　　회 : 전 의원, 사무직원

- 담당부서 : 건설과(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준비)

□ 매곡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현장

○ 일 시 : 2004. 12. 5(일) 12:00

○ 내 용 : 인근 하천정비 후 진입로 개설 현장 확인

○ 참 석

- 의　　회 : 전 의원, 사무직원

- 담당부서 : 건설과(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준비)

3. 주요감사실시내용

<table>
<tr><th>소관부서</th><th colspan="8">세부요구자료내용</th><th>비 고</th></tr>
<tr><td rowspan="6">울산광역시
북　　구
〔전부서
공통사항〕</td><td colspan="8">1. 예산집행현황(일반, 특별회계 구분작성)</td><td rowspan="6">※항목은
세 항,
세세항,
목 기재</td></tr>
<tr><td rowspan="2">항목</td><td colspan="4">예 산 액</td><td rowspan="2">집행액</td><td rowspan="2">잔 액</td><td rowspan="2">미집행사유</td></tr>
<tr><td>합
계</td><td>당초</td><td>1회
추경</td><td>2회
추경</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8">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td></tr>
<tr><td>민원명</td><td>접수일자</td><td colspan="2">처리일자</td><td>민원인</td><td>민원내용</td><td colspan="2">처리결과</td></tr>
<tr><td>계</td><td></td><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부요구자료내용</th><th>비 고</th></tr>
<tr><td>울산광역시
북 구
〔전부서
공통사항〕</td><td>
3. 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사업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위 치</th><th>사업개요</th><th>사업비</th><th>진 도</th><th>시공자</th><th>예산확보
시 기</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당초, 1회,
2회추경</td></tr>
</table>
4.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현황
<table>
<tr><th>위원회명</th><th>설치근거</th><th>설치목적</th><th>주요사항
처리결과</th><th>운영횟수</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5.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단체에 대한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
(정산서 사본첨부) - 2004. 1. 1 ~ 2004. 10. 31
★일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포함.
6. 각종용역사업 추진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용역
종류</th><th>용역비
(천원)</th><th>착수
일자</th><th>완료
일자</th><th>용역
결과</th><th>계 약 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2">예 산 액</th><th colspan="2">집 행 액</th><th colspan="2">반납내역</th><th rowspan="2">반납사유</th></tr>
<tr><th>국비</th><th>시비</th><th>국비</th><th>시비</th><th>국비</th><th>시비</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8.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 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9.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서식 1」
1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서식 1」
11.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12. 2004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td><td></td></tr>
</table>

<table>
<tr><th>소 관 부 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울산광역시
북 구
〔전부서
공통사항〕</td><td>13. 2003년 예산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
(계속,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14. 각실·과·소별 각종서식 인쇄내역
- 품명, 규격, 용지종류, 단가, 수량 등</td><td></td></tr>
<tr><td>기획감사실</td><td>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2. 대학유치사업 추진현황
3. 일용인부임(일시사역인부임 포함) 현황(전부서 취합)
<table>
<tr><th>부서명</th><th>성명</th><th>사역목적</th><th>사역기간</th><th>단가(원)</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4.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5. 2004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
6. 주민참여제 추진실적 및 예산반영 내역
7. 예산 전·이용 현황 및 사유(전부서 취합)
8.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민사)수행사항
9. 승소사례금 지급내역(사건별)
10. 자체감사, 시, 행자부, 감사원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일상감사 포함)
11.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처분사항,
모범 사례)
12. 주요 전산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td><td></td></tr>
</table>

<table>
<tr><th>소 관 부 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총 무 과</td><td>
1. 공무원 정·현원(부서별) 현황(2003, 2004)
2.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연수(출장)목적, 부서명, 연수기간, 경비 등)
3. 각종 공사·물품구입 계약현황
(공사3,000만원 이상, 물품·용역 400만원 이상)
<table>
<tr><th>부서명</th><th>일자</th><th>건명</th><th>사업량
(수량)</th><th>예정가</th><th>낙찰가</th><th>낙찰율</th><th>낙찰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4.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전부서 취합작성)
- 차량번호, 종류, 용도, 구입년월일, 상태
5. 각종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6.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
7.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실적
8.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현황
9. 구청사 월별 전기요금 납부 현황
10. 공유 재산현황(구소유 - 토지, 건물)
<table>
<tr><th>품 명</th><th>구 입
(취득)일</th><th>구입(취득)
방 법</th><th>구입(취득)
가 격</th><th>구입(취득)
목 적</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1.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 표창 수여 현황
12. 실과별 연가, 특별휴가, 관외출장, 교육 등 월별
사용 인원 및 사용일수
<table>
<tr><th>실과명</th><th>월별</th><th>정원</th><th>사용인원</th><th>사용일수</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부요구자료내용	비 고
총 무 과	✱ 실과별, 구분별(연가, 특별휴가 등) 별지작성 ✱ 교육현황은 기간, 과정명, 장소 등 13. 청사 여유공간 활용 제고방안 14. 대회의실 이용현황(월별, 사용횟수, 사용료수입 등)	
자치행정과	1. 주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2. 동별 예산 집행현황 3.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융자실적 및 회수실적 4. 민방위교육 실시 현황 - 일시, 참여인원, 교육내용, 강사 포함 - 민방위 교육불참자 고발 현황 5.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6.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7.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현황 - 부서별 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현황(복무연장 등) 8.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동별) 9.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0.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현황 및 관리 실태 11.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 추진 실적 12. 민간단체 위탁사업현황 -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수탁자, 성과분석 등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공보과	1.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 추진상황 (사업비, 현공정율, 문제점 및 대책 등) 2. 효문운동장조성 추진상황 (사업비, 현공정율, 문제점 및 대책 등) 3. 생활체육시설설치 및 보수현황 4.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 5. 노래방 및 청소년다중 이용시설점검 내역과 단속 실적 6.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 (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7. PC방 업체현황 시설점검내역 및 단속실적 8. 구정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현황 9. 구정소식지(전자신문 등) 발간 및 배포내역 10. 농소운동장 월별 사용료징수 현황 11.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문화교실, 공연 등 계획 및 실적) 12. 문화예술회관 월별 대관료 징수실적 13. 농소1,3동 도서관건립 추진상황 (사업비, 현공정율, 문제점 및 대책 등) 14. 문화재 지정현황 및 정비실적 15. 청소년체육활동장 운영현황(사용료 수입 월별작성 등) 16. 문화예술회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추진사항 (일자, 주관, 행사내용, 사업비 등) 17.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관련 울산달내쇠부리 놀이 행사참여 현황 (일자, 주관, 장소, 사업비, 참가자 현황 - 주소, 성명, 참가자별 역할, 연락처 등)	

소관부서	세부요구자료내용	비 고
지방세과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세목별)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 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 (건수, 금액, 사유 : 10만원 이상)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5. 세무조사결과 추징현황 및 내역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8. 비과세 감면 현황	
민원봉사과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실적 및 주민만족도 조사 내역 4.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실적 5.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실적 6. 재택전자민원 (G4C)신청 및 처리실적 7.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지역경제과	1.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현황 (행정처분 내역) 2. 가스판매업소 점검현황(행정처분 내역) 3.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 및 처리결과 4. 고용촉진 훈련 추진 내역(예산집행 내역 포함) 5. 가스관련 허가, 신고 접수처리 현황	

소관부서	세부요구자료내용	비고
지역경제과	6. 업체별 외국인 취업현황 7.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8. 달천농공단지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실적 9.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현황 10. 솔라(Sola) 프로젝트 사업 및 지역에너지사업 추진현황 11. 노동자지원관련 사업 및 행사 추진현황 12.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3. 근로자 농가체험활동 추진현황 (추진기간, 참여인원 및 명단, 참여단체(기관), 대상지, 활동내용, 사업비 등) 14. 현장근로자 해외연수 현황 (인원, 소속(기업체명·직위), 연수국, 사업비(자부담 및 지원금 구분작성), 연수목적 등)	
사회복지과	1.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현황 3. 아동, 노인, 여성복지 지원사업 현황 4. 경로당 및 북구 노인회 지원 현황(실적) 5.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현황 6. 보훈회관 등 건립 추진현황 7. 노인의 달 및 가정의 달, 여성주간 행사 개최 내용 및 실적 8.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9.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 내용 포함)	

소관부서	세부요구자료내용	비 고
사회복지과	10.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내역 11.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스티커제작 및 발급현황 12.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및 노인복지 기금 운영실태 13. 자활후견기관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 2004년도 사업계획, 예산지원현황 - 2004년도 사업실적 - 년간 총수익금 - 수익금집행내역 14. 태연재활원·메아리복지원 운영현황 - 2004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현황, - 2004년도 사업실적 - 년간 총수익금(후원금 포함) - 수익금집행내역 - 재단출연금 현황 -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 재학생입학 및 대기자 현황 15. 집수리 사업 및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16.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 및 아동공부방 운영현황 (설치장소, 설치시설내용, 이용인원 등)	
환경위생과	1.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및 불법 영업 업소 단속실적 2.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 및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table>
<tr><th>소 관 부 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환경위생과</td><td>3. 부정 불량식품 수거검사 처리내역
4.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5.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현황
(근린공원, 정자해변 등)
6.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
7. 관내 숙박시설 관리현황
<table><tr><th>업 소</th><th>위 치</th><th>건축허가일</th><th>객실수</th><th>위반현황</th></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8. 간이상수도 긴급 보수비 집행 내역
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자동차, 시설물)</td><td></td></tr>
<tr><td>환경미화과</td><td>1. 폐기물 수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현황
-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지역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포함)
- 지도점검 결과
2.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3.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내역 등) - 별도작성
4. 환경미화원 정·현원(2003, 2004) 및 담당구역현황</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부요구자료내용</th><th>비 고</th></tr>
<tr><td>환경미화과</td><td>5.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6. 분리수거 추진실태
7. 환경미화원 복지관련 예산집행 현황
8. 재활용교환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
①매출실적
②예산지원 현황
9.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결과 및 문제점, 대책 등
10.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추진 상황
11.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등
12. 구민환경감시원 운영실적
13.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td><td></td></tr>
<tr><td>도시교통과</td><td>1.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 현·과년도 구분작성
- 주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
2.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
3.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내역
4.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5. 그린벨트내 주민숙원사업 공사현황
<table><tr><th>사업명</th><th>위 치</th><th>공사규모</th><th>사업비</th><th>업체명</th></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부요구자료내용</th><th>비 고</th></tr>
<tr><td>도시교통과</td><td>6. 도시계획관련 용역업무 추진현황
7. 도시계획수립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8. 화물차 차고지 현황 및 단속현황
<table><tr><th>사 업 주</th><th>차 고 지</th><th>허가대수</th><th>단속 및 조치내용</th></tr><tr><td></td><td></td><td></td><td></td></tr></table>
9.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실적 및 문제점 등</td><td></td></tr>
<tr><td>건 설 과</td><td>1.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2. 하천 점 사용료 부과 및 납부현황, 무단사용자 조치내역
3. 도로굴착허가 및 조치내역
4. 긴급도로 복구공사 현황
(도로명, 위치, 복구내용, 공사기간, 사업비 등)
5. 도로 점 사용료 부과, 징수내역
6. 가로등·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table><tr><th>민원접수일자</th><th>내 용</th><th>완료일자</th><th>비 고</th></tr><tr><td></td><td></td><td></td><td></td></tr></table>
7.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8. 제방 응급복구 공사 내역
9.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10.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현황</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부요구자료내용	비 고
건 설 과	11.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12. 자전거 전용로로 개설 추진현황(부대시설 포함) (예산 투입액-2003년이전, 2004년, 향후예산투입 예상액 등) 13. 우·오수관로 뚜껑교체 정비현황 14. 소방도로 개설후 잔여지 활용현황 15. 신천천 잠수교 당초개설 경위 및 도로폐쇄 사유 16. 산하 공영주차장내 전광판 설치현황 (당초사업계획서, 설치일자, 사업비 등)	
농림수산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휴경농지 보조금 집행내역 4.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5.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 6. 수산관련 인허가 현황 7.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8.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9. 임도 개설·보수 현황 및 업체계약내역 10.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11. 전복 치패사업 투자현황 및 실적분석 12.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3. 관내 공원시설물 보수 및 정비 실적 (시설명, 보수내역, 사업비, 화장실 관리 실태 등) 14.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및징수 현황	

소관부서	세부요구자료내용	비 고
농림수산과	15.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16. 산림 병해충 방제현황 17. 강동어전마을 돈사시설 철회후 원상복구관련 자료 18.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9. 강동해안가꾸기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	
건 축 과	1.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및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공유수면, 하천부지, 국·공유지상의 건축허가 현황 4. 관내숙박업 허가관련 허가사항 및 관리 현황 5.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6. 준공검사 후 불법 확장공사 단속 및 조치 현황 7.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현황 8.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보 건 소	1.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2.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사항 3. 진료비조정 및 징수현황 4. 주요약품 구입내역 및 관리현황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및임시) 유형별 약품구입 및 접종 실적 7.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및 보상내역 8.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 및 대책 9.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10.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현황 11. 동별 간호방문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부요구자료내용</th><th>비 고</th></tr>
<tr><td>보 건 소</td><td>【대상자(명)/방문일수】
<table>
<tr><th>월별
동별</th><th>'03
.11</th><th>12</th><th>'04.
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r>
<tr><td>농소1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농소2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농소3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강동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효문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송정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양정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염포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2. 특수학교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13. 결핵예방접종에 관한사항
14. 감염성폐기물 처리현황
15. 체력진단실 및 체력단련실 운영현황 및 실적
16. 비만·당뇨 예방대책 및 실적(효과)</td><td></td></tr>
<tr><td>의회사무과</td><td>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의회개최 및 회의록 발간배부 현황</td><td></td></tr>
</table>

제3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2004. 11. 29~12. 5일 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사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임위원회가 없어 본회의에서 구정 전 업무를 감사함으로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었으며,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통보하였으나 정확한 감사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는 여겨지나 전반적으로 매년 감사지적사항인 감사자료 작성에 일부 소홀함이 있었으며, 의원들의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각 실·과 관계공무원의 업무파악 미흡으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는 경우 등이 많았음.

○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또는 각종 안건 심사 시 구체적이며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 각종 문제점에 따른 감사지적사항으로는 감사 시 지적사항 반복발생과 예산집행 부적절 등 시정요구 53건, 그리고 건의사항 19건으로서 총 72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니 그 처리결과를 2005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기 바람.

제4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시정 · 건의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72	53	19		53	39	14		19	14	5	
공 통 사 항		5	5			5	5						
기 획 감 사 실		4	3	1		3	3			1		1	
총무국	계	26	19	7		22	17	5		4	2	2	
	총 무 과	6	5	1		6	5	1					
	자치행정과	6	5	1		6	5	1					
	문화공보과	7	6	1		6	5	1		1	1		
	지 방 세 과	2	1	1		2	1	1					
	민원봉사과	5	2	3		2	1	1		3	1	2	
경제사회국	계	21	12	9		17	9	8		4	3	1	
	지역경제과	5	3	2		4	2	2		1	1		
	사회복지과	1	1			1	1						
	환경위생과	6	3	3		5	3	2		1		1	
	환경미화과	9	5	4		7	3	4		2	2		
도시건설국	계	15	13	2		5	4	1		10	9	1	
	도시교통과	4	4							4	4		
	건 설 과	4	2	2		2	1	1		2	1	1	
	농림수산과	2	2			1	1			1	1		
	건 축 과	5	5			2	2			3	3		
보 건 소		1	1			1	1						

2. 시정 · 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 · 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공통사항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 일시 : 2005. 1. 31. 14:00 ○ 장소 : 구민대화의 방 ○ 대상 : 실·과·소 주무담당 차석(15명) ○ 교육내용 -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공통지적사항(시정 · 건의)에 대한 직무교육실시			
공통사항 (시 정)	□ **감사시 반복지적사례 시정 조치 촉구** ○기획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체감사에 있어 대부분의 실과소동에서 관내 · 관외여비 지급시 연가, 관용차량이용, 당직휴무자에게도 여비를 초과 또는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특근매식비 또한 지급기준액을 초과 지출하는 사례에 대하여 감사시마다 지적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무부서에서는 대안을 마련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함.	○일상감사 및 기타 감사시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소홀히 하여 관계서류를 소홀히 확인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바, 향후 동일한 건에 대한 지적이 있을시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추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직무 교육 실시.	완 결
	□ **관용차량 관리 철저**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많은 유지보수비가 지출되고 있으므로 운전원 및 관	○각 부서별 관용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나, 관리부주의 및 유지보수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 등의 지적에 대하여 담당부서별 운행 후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공통사항 (시 정)	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차량관리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운전원에게 근무지침과 운전원 준수사항, 기타 안전교육과 운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	
공통사항 (시 정)	□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일부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에서 일반운영비가 2004.10월말 현재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고, 특히 보건소의 경우 일반운영비 245,068천원중 집행잔액이 무려 110,652천원이나 되어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각 부서에서는 예산추계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필수경비만 계상할 것을 시정 요구함.	○각 부서별 당초예산 관련 정확한 예산 추계로 예산편성 시 반드시 필요한 금액만 편성 되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 하지 않도록 예산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완 결
	□ **각종 대형공사 성실 시공** ○호계동 262-2번지에 신축하고 있는 보훈회관의 경우 당초 연약지반인데도 지질조사등 사전 철저한 준비도 없이 공사를 발	○각종 공사시 사전 철저한 현장점검 준비 등으로 설계변경의 최대억제와 각종 대형공사 현장의 내실있는 관리 및 감독에 철저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공통사항 (시 정)	주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바, 향후 사전 준비과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각종 대형공사 현장의 내실 있는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로 인한 사후관리에 또다시 추가 예산이 투입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공통사항 (시 정)	□ **사회단체보조금집행 및 관리 철저** ○사회단체보조금이 연간 많은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당초사업계획과 사업후 실적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정산서류도 형식적으로 사진, 간이 영수증 등만을 부착하여 관리하는 등 관리상태가 부실한 바, 향후 예산지원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과 아울러 정산시에도 세금계산서 첨부, 카드결재, 사진 등 기타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시정 요구함.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서류 검토 -당초사업계획과 사업후 실적을 확인. -정산서류 철저 확인 대조 (세금계산서첨부, 카드결재, 사진등 기타 증빙서류 첨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인 만큼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접수 등 각 사회단체별 비교확인대상이 되므로 보조금관련 서류작성에 철저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시 정)	□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의 형평성 있는 집행**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규모가 작고 시급한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된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예산으로써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공정하면서도 지역간 형평성을 기하여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사회복지과의 양정경로당 개·보수공사와 같이 예측 가능하고다소 큰 사업에 이를 집행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비의 당초 목적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라는 의회의 고유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주민숙원사업비의 공정하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액을 정하여 일정규모(3천만원)이상의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있으며 기준에 해당이 되더라도 민원 불편을 고려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2004년도 추진사업중 경로당 보수공사의 경우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었으나 기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하였으나,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심의 기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 결
기 획 감사실 (시 정)	□ **형평성 있는 법집행** ○다수의 노래방에서 대부분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영업장에	○주민의 권익보호 강화 및 의무이행강제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각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시 정)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바, 이에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취소 청구소송 3건이 제기 되었는데 법 집행에 있어서 문화공보과와 협의하여 형평성 있는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종 행정처분시 엄정하고 공정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철저	완 결
기 획 감사실 (시 정)	□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행** ○효문운동장 및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 공공도서관 및 권역별도서관 건립 등 일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부터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을 통한 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함에도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집행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향후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은 5억원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중장기계획을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함은 물론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사업의 시행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세부적인 위치, 총사업비 등은 실제로 추진과정에 있어 일부는 유동적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최대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초계획에서 큰 변동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시 정)		○특히, 적정한 사유없이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 실질적인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되도록 하겠음.	
기 획 감사실 (건 의)	□ **시 홈페이지 공유대책 강구** ○주민들은 일반민원에 대하여 시, 구소관 등 해당기관별 업무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비록 우리구 소관업무가 아닐지라도 관련서식, 처리절차 등 최소한의 정보라도 얻을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협조하여 우리구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함.	○주요시정정보를 알리기 위해 팝업창과 공지사항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정보는 사이트 링크를 통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예) 교통정보, 시정통계 등	추진중
총 무 과 (시 정)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충** ○법적 장애인 고용 2%를 상회한 2.4%유지하나 구청장 공약사항인 만큼 연차적 계획수립하여 5% 달성 요구	○매년 인력 충원 요구시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여 임기 마지막 년도인 2006년에는 공약사항 5% 이상 달성되도록 연차적으로 고용할 것임. ※ 붙임 : 검토보고서 1부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 무 과 (시 정)	□ **대회의실 사용허가 규정 준수** ○대회의실 사용조례에 명백히 사용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과시간내 일반인 대여는 일관성 결여된 행정으로 보아짐	○실과에서 교육 등 업무와 연계되는 것은 근무시간내 활용가능 ○그 외는 대회의실 대관 사용신청시 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 결
총 무 과 (시 정)	□ **구.강북교육청 유휴공간 활용 방안 강구** ○구 강북교육청내 유휴공간 발생하고 있음. 2005년도 대부시 공간활용 방안 검토 및 필요부분만 대부하여 예산낭비 없도록 조치	○2005년 구 강북교육청사 대부계약체결 • 대부기간 : '05.1.1~12.31 • 대 부 료 : 24,230천원 • 대부재산 : 토지11,729㎡, 건물 2,323.3㎡(본관, 별관 전부) ○2004년 미 활용공간인 별관 1층에 비정규직노동조합('05.1.3)과 울산북구자활후견기관('05.1월말경) 입주로 미 활용 공간 없음	완 결
총 무 과 (시 정)	□ **구.동울산세무서 관련 집행잔액 반납** ○구.동울산세무서가 '04.4월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동울산세무서 폐쇄 후 구 강북교육청을 대부하여 공공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 무 과 (시 정)	예산 청소인부임 등 집행잔액이 1회, 2회 추경시까지도 삭감되지 않고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해하고 있음.	요금 등으로 집행하고 잔액은 2004년 결산추경에 반납 조치함. • 예산금액 : 58,514천원 • 집 행 액 : 48,181천원 • 반납금액 : 10,333천원	
총 무 과 (시 정)	□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 ○재활용교환판매장의 당초 목적과 당위성 상실하고 2층을 내년도 효문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활용계획 수립, 또한 북구 임시도서관 계획 추진 좌절 등 행정의 불신 가중하고 있음. ○향후 해당부서들은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으로 사업의 원칙과 행정의 일관성 유지 요구	○문화예술회관 분관, 효문동사무소 임시청사, 청소년공부방 설치에 대하여 검토 하였으나 2005년 효문동사무소 신축시 활용할 계획 임	완 결
총 무 과 (시 정)	□ **청사내 유휴공간 주차공간 확보 대책 강구** ○주차공간 이외의 여유공간에 민원인들이 주차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에 불편 초래. ○유휴공간 활용하여 주차공간 확보 조치 ○무단방치 및 장기 주차차량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 조사 • 일시 : '04.12.15~12.30(2주간) • 방법 : 구역별 지정 주차공간에 주차중인 차량파악 • 결과 및 조치 : 3대 (차량소유자 연락 이동조치)	추진중

소관부서	사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 무 과 (시 정)	조사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이동조치토록 하고, 안전지대 등 유휴공간 주차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음.	
자 치 행정과 (시 정)	**□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철저** ○민방위급수시설 관리방법을 보면 시설당 명예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과 안내문 설치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안내문 내용을 보면 관리주체를 구분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 안내문이 다음 수질검사 시까지 부착되어 이용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하며, 급수시설 청소나 기타 사업시행시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함.	○민방위급수시설 정비완료 •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 7개소 • 명예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개소당 2명) • 안내문 제작설치 및 수질검사서 : 2004. 12월 완료 • 시설물의 고장 또는 정비 : 점검시 별도의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용불편을 최소화 •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음용수 제공 노력 강화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자 치 행정과 (시 정)	□ **자율방범대 운영 및 관리 철저**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자생단체로서 민간치안 유지활동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나 방범대원의 가입을 일부 제한한다 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방범대원 가입시 지역에 대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민을 발굴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로 민간치안유지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며 또한 야간 활동비 등 좀더 예산지원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자율방범대 운영 및 관리 강화 • 관내 주민이 자율방범대에 가입하여 봉사 활동을 희망할 경우 자율방범대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협조 요청(2004. 12. 13) • 2005년 지원예산 : 24,300천원(2004년 21,600천원보다 12.5% 인상) • 자율방범대 야간활동 상황을 점검하여 2006년 예산 편성시확대지원 검토 추진	완 결
자 치 행정과 (시 정)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초기에 비하면 양적으로 매우 팽창하였다고 판단되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동간 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강화 • 자원봉사자활동 지원 강화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자 치 행정과 (시 정)	그램 운영이 매우 유사하며 지역과 연계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에 대한 계층 및 연령안배 등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동별 획일적인 예산지원 등을 지양하고 활성화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강사수당 및 운영비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개최 • 1동 1특화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프로그램별 동아리운영 활성화 • 문화·여가프로그램 억제 및 지역사회공동체프로그램 확충 ○동예산의 효율적 운영 • 주민자치센터별 운영 실적에 의한 강사수당 차등교부 • 자치센터운영비(공공요금)의 차등교부	
자 치 행정과 (시 정)	□ **통장 연령제한 폐지검토** ○우리 구는 도농복합형도시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일부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청장년층 인구감소로 기존 통장연령제한으로 인하여 통장 선정대상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통장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통장 연령제한 조정추진 • 평균 연령층이 높은 자연마을의 경우 통장연령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동사무소의 하부기관으로써의 기능제고 검토중 -당초 : 25세~65세 -조정 : 25세~75세 • 조례정비 : 2005 상반기중	처리중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자 치 행정과 (시 정)	□ **「행복한 공동주택만들기」 사업 내실 있는 추진** ○공동주택의 개인주의화, 이웃간의 대화 단절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관내 12개아파트를 시범 선정하여 실시한 「행복한 공동주택만들기」 사업이 애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각 아파트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 평가 및 활동상황을 분석해야 함에도 단지 연말 순위선정을 위한 형식적 서류평가만을 고려하는 등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또 다른 아파트간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총체적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내실 있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Well Being 아파트만들기」 사업 추진 :2004년에 추진하던 행복한 공동주택만들기 사업의 연장으로 2005년도에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 • 기간 : 연중 • 대상 : 100세대 60개소 • 추진방법 : 아파트 자치회 주관으로 세부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으로 주민간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 제고 • 연말평가 : 12월 -평가단 구성 : 시민단체 -평가방법 : 서류심사 • 인센티브 제공 : 4개소 (시상금, 현판 제작) • 소요예산 : 3,500천원	완 결
자 치 행정과 (시 정)	□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 수립**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경우 당사	○개인정보유출 방지 • 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자 치 행정과 (시 정)	자의 동의나 위임장 등이 있어야 발급되는 개인정보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3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유출시킨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은 엄격한 범위에서는 범법행위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아울러 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마인드를 강화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함.	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 지시공문 발송 : 2회 ('05. 1. 21, '05. 2. 2) • 전직원 교육 : '05. 2. 2 ※ 부서(기관)별 자체교육 실시	
자 치 행정과 (시 정)	□ **문화재 관리방법 개선** ○국가지정기념물인 관문성을 비롯한 시지정문화재 제6호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등 우리지역에 문화재가 다수 산재하고 있으나 관리형태가 단순히 환경정비 및 잡초제거 등 초보적 수준으로 미흡하며, 특히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이 사유재산처럼 관리하여 이용객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문화재관	○문화재관리 마을위탁 관리 검토 • 관리대상 문화재 : 어물동마애여래좌상 • 검토내용 -마을 위탁관리보다는 구청에서 순찰활동 강화로 수시 점검관리 -관리인 1인 고정배치 관리 ○문화재 순찰활동 강화 • 순찰일시 : 매주 2회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문 화 공보과 (시 정)	리를 해당지역마을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	• 순찰인원 : 문화관광담당 외 2명 • 주요내용 -문화재주변 쓰레기 수거 -불전함 등 방치물 수거 ○동계 문화재 점검 실시 • 점검일시 : 2005.1.10~1.14(5일간) • 점검대상 : 국가지정 관문성외 12개소 • 점검자 : 문화관광담당 외 2명 • 점검내용 : 화재예방 및 환경정비 실시 • 점검결과 : 이상없음	
문 화 공보과 (시 정)	□ **노래방 단속 형평성 있는 추진**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자체단속 및 경찰 합동단속등을 통하여 접대부고용, 주류판매 등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전정보유출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부업소만이	○노래방 단속 공무원 교육 실시 • 일시 : 2005. 1. 19. 09:00 • 교육인원 : 전 직원 • 교육내용 -단속계획 수립시 단속일자 미기재 'D'로 표시	완 결

소관부서	사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문 화 공보과 (시 정)	단속대상이 되지 않고 형평성 있게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	-노래방 단속계획 사전정보 유출금지 -지역별 순회단속으로 형평성 유지	
문 화 공보과 (시 정)	□ **일관성 있는 문화공간 운영 지원** ○낙후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파트 여유 공간에 설치 운영중인 「문화공간」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함	○문화공간지원 기준 마련 • 근거 : 문화공보과-713 (2005.1.19)호 • 주민자치문화공간 도서구입비 지원기준 • 사업개요 -지원금액 : 개소당 2,000천원 (구비지원) -사업내용 : 주민자치문화공간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여 주민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제고 • 지원기준 -지원대상 : 주민자치문화공간내에 설치되어 있는 문고 -지원요건 · 1순위 : 현재까지 도서 구입비 미지원 주민자치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문 화 공보과 (시 정)		문화공간 우선지원 · 2순위 : 1일 이용자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보유장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책정 -지원부분 : 도서구입비 (개소당 2,000천원)	
문 화 공보과 (시 정)	□ **지역문화예술인 참여 확대** ○문화예술회관 개관으로 인하여 각종 기념행사 및 기획공연, 기획전시등 많은 문화예술행사가 실시되어 구민의 문화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각종 행사시 지역문화예술인이 아닌 타지역 사람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우리스스로 지역예술인을 홀대하는 처사로서 향후 쇠부리 행사, 기획 사진전 등 문화행사시 우리구 지역문화예술인을 적극 참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연극 및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 구 문화예술인 46명의 명단을 확보, 앞으로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참여케 하여 지역문화인과의 유대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여 문화예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문 화 공보과 (시 정)	□ **문고도서 활용방안 대책 강구** ○기적의 도서관개관 및 권역별 도서관이 연차적으로 개관예정으로 이에 따른 도서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새마을문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문고를 최대한 이관 관리하여 개관되는 도서관에 비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것	○전체 문고 문고운영을 폐지할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에 대하여는 구에 반납하도록 조치하고 활용 가능한 도서는 도서관에 비치. ○기존에 폐지된 대하두레글방에 있던 도서는 현재 농소1동사무소에 임시 보관하였으며 활용가능한 도서는 도서관 개관시 비치토록 할 것임.	완 결
문 화 공보과 (시 정)	□ **기적의 도서관 시설보완** ○기적의 도서관이 2004. 5월 개관이래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이용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주요 이용자들이 초등학생임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하층 바닥을 난방으로 설치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보완계획 수립하여 보완 할것을 시정 요구함	○기적의 도서관은 지난해 7월28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층 다목적실에는 현재 바닥 난방은 되지 않지만 천정형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음. ○지난해 8~12월까지 문학의 순회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바닥에 매트 및 강의용 테이블, 의자를 깔고 운영해 본 결과 그다지 어려운 점이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문 화 공보과 (시 정)		없었으며, 바닥 난방 미설치로 인한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없으나, 추후 심도있게 검토 해보겠음.	
문 화 공보과 (건 의)	□ **각종 공사 등 시설사업 시행시 계획적 추진**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각종 생활체육기반조성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초기 계획 수립시부터 사전에 시행대상지조사 및 지주협의보상 타진, 예상문제점 등 철저히 사전조사를 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기존 사업계획이 사업변경 또는 중단되어 당초계획보다 사업기간이 많이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준공시기 지연시 주민홍보도 철저히 기해 주길 바람.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시 사전 대상지 조사 및 소유자 보상 협의 타진,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부득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시 홈페이지 게시 등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 결
지방세과 (시 정)	□ **과오납 환부 발생 시정** ○매년 감사시 마다 지적된 사항으로, 과오납 건수가 늘어	○지방세 과오납 환부건수가 작년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방세과 (시 정)	나는 것은 업무소홀로 볼 수 있으며, ○세무행정의 투명성, 민원 최소와 차원에서, 향후 과오납 환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시정 요구	국세경정(연말정산등)에 따른 주민세의 과오납환부가 증가하였으나,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 환부는 2003년 60건에서 25건으로 줄었음. ○향후 지속적인 지방세제도의 홍보, 납세고지서 분실 등으로 고지서 재발급시 이중납부 될 수 있음을 홍보하는 등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지방세과 (시 정)	□ **세무조사 결과 사후조치 대책 강구**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철저히 할 것과, ○세무조사가 법령에 근거한 계획적 조사가 될 것을 요구	○세무조사는 지방세법제64조(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법인 등 기업체에 대하여 3년 주기로 매년 초 연간계획을 수립 방문 또는 서면조사 형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로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법인장부와 신고납부 과표의 대조·확인하는 업무로서 추징액은 대부분 경리전담직원 부재한 영세 기업의 과소 신고에서 발생됨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방세과 (시 정)		○세무조사결과 사후대책 • 과소·누락 업체에 대한 추징액 징수철저 및 납세지도 강화 (지방세설명 책자제작 배부 : 1월) • 세목별 적기 과세를 위한 부과담당자 자체 직무교육 실시 ('05. 1. 12 직무교육 실시) • 연간 세무조사계획 수립추진	
민 원 봉사과 (시 정)	□ **친절한 민원안내** ○민원실은 일반 제증명 서류 발급에서부터 복합민원에 이르기까지 대민접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항상 친절 향상을 위하여 예절교육 등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복합민원으로 민원방문시 여러 과를 찾아다니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어 구민들로부터 불친절 하다는 일부 여론이 발생하므로 '민원안내 도우미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여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	○형식적인 친절이 아닌 마음으로 부터 시작되는 참 친절을 위한 월 1회 정기적인 직원 친절교육 및 수시 교육으로 친절한 민원응대의 기본자세 확립. ○복합민원방문시 민원인이 여러 과를 방문하는 일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1회방문제의 내실운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각 담당별 주1회씩 윤번 근무를 통하여 민원상담 및 안내를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음.	완 결

소관부서	지적·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민 원 봉사과 (시 정)	□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민간인 전문가 위촉 운영** ○현재 관계 공무원으로만 구성한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 심의결과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시정 요구함.	○울산광역시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외부 전문가(변호사 등)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음.	추진중
민 원 봉사과 (건 의)	□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 철저** ○우리구는 신흥개발지역으로 인해 지가 상승률이 높게 형성 되는 등 여러 복합요인으로 인한 이의신청 등이 많으므로 개별공시 지가 결정시 관내 지역간 균형있는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어 2004~2005년까지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정책(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의해 타구에 비해 상승률이 다소 높은 실정이나 2005년도는 송정택지개발, 강동 산하지구,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 등 국지적인 가격상승 요인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동별 형평과 균형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결정으로 과세의 부담이 되는 이의신청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민 원 봉사과 (건 의)	□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확대 운영** ○2005.7월 주5일근무제와 관련 하여 일과시간외 일반 제증명 발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4년도 제2차 추경 시 편성된 추가설치 2개소에 대한 조속한 설치 및 주민홍보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주기 바람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완료 및 홍보 강화 • 2004. 12. 8설치완료 • 희망북구 12월호 및 북구 전자신문 게재 및 주민만남의 날 홍보	완 결
민 원 봉사과 (건 의)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철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1단계가 2004. 4월 완료되고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으로 2단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도로명칭 선정을 위하여 동 순회 설명회 및 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도로명을 선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도로명 명칭 선정시부터 설치, 사후관리시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도로명을 선정할 때에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본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최대한 설명하여 도로 명부여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실태를 파악하여 건물번호판은 자체 설치토록 하고 도로명판은 유지보수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사후관리에 대비토록 하겠음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제과 (시 정)	□ **호계공설시장 활성화방안 강구** ○호계공설시장의 경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확충, 소방도로 개설 및 도시가스 연결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적 대응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분석 등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지역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종합적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시정 요구함.	○호계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행정일변도의 지원중심에서 벗어나 공설시장, 지역사회 등과 함께 거버넌스적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시장경영 관리방법 개선, 자체 브랜드화로 경쟁력 있는 점포로의 군집화 유도, 점포 용도변경 등은 임대자 및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 반영 조치토록 하며, ○아울러, 시장상인들의 재래시장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5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석 지원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특화된 시장 운영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음.	추진중
지 역 경제과 (시 정)	□ **노동문화 축제 개선방안 강구** ○지역적, 계층별로 각각 산재되어 있는 각종 축제행사 즉 해변영화축제, 기박산성 의병축제, 농업인축제, 쇠부리축제 등을 통합하여 우리구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2003년에 이어 개최한 2004년 노동문화축제는 규모와 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 및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공연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 및 노동문화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제과 (시 정)	지역 특성에 맞게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여 노사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시정 요구함.	○행사 추진시 문제점으로 대두된 공연내용의 조정, 장소선정, 기일지정, 홍보미흡 등에 대하여는 향후행사시 축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내용으로 구성하여 특색있는 축제로 육성하겠음.	
지 역 경제과 (시 정)	□ **공공근로사업 내실 추진** ○청소·환경정비, 공공서비스 분야 등 매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사업시행 시기의 계절적 요인 및 타 부서와의 사업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미미함으로 세부 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중복되는 청소업무 등에 배정되는 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최소화하고 각 동별 일괄사업으로 배정되는 인원도 동별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며,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음.	추진중
지 역 경제과 (시 정)	□ **현장근로자 해외연수 개선방안 강구** ○선진국의 노사관계를 고찰하여 노동운동의 메카인 우리구에 대하여 성숙한 노사	○현장노동자연수의 취지는 경제의 한 축인 노사문제 해결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제과 (시 정)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한 현장근로자 해외 연수가 근로자가 아닌 노조 활동을 하는 근로자로 구성되고 또한 당초 계획인원보다 상당히 줄어든 인원으로 연수를 하는 것은 당초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추진 계획시 내실있고 심도있는 계획수립으로 추진할 것을 시정요구함	필수적인 사항으로 노사의 한축인 일선 노조 간부들에게 선진노사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계획하였던 사업으로 당초계획(22명)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참가한 것은 사실이나, ○연수목적 부합여부, 방문 기관에 대한 신뢰, 참가 신청자에 대한 신뢰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하였을 때 추진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향후 동일 사업 추진 시에는 경비부담, 기간, 일정 등 기업체의 대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음.	
지 역 경제과 (건 의)	□ **solar 2004 project 추진과정 불합리** ○솔라 2004 프로젝트은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경제성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라는	○solar 2004 project는 당초 사업비 신청시 1,875백만원으로 신청하였으나 산업자원부에서 1,300백만원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제과 (건 의)	미래 환경사업임을 감안할 때 준비과정이 철저해야 함에도 당초 구청사등 4개소로 계획되었다가 2개소로 축소되고 2월 확정내시 되었을 때 이미 사업비가 18억여원에서 13억원으로 축소되었지만 5월의회보고 뿐만아니라 그 이후에도 축소된 사업비에 의한 계획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구청사의 전기용량에 비해 턱없이 낮은 태양광공급 공급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듬 ○그렇다면 차라리 애초 계획대로 4개소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임을 주민에게 알리는 홍보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또한 향후 구청 옥상에 설치하였을 경우 머지않아 조직개편 및 과신설 등 장기적으로 청사증설에 대한 수요도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국비 900, 시비200, 구비 200) 사업비가 내시됨에 따라 사업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의견이 없어 당초 원안대로 사업대상지 4개소를 최종 신청한 바 있으며, ○2004년 제1회 추경시에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에 따른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을 의뢰한 결과, 1,300백만원으로는 소규모이나 태양열급탕시설 설치 및 태양광의 경우 10kw씩 설치는 가능하나 효율성과 사후관리 측면에서 각20kw씩 2개소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solar 2004 project 와 연계하여 계속 추진키로 최종방침을 결정 하였으며, 태양광으로의 전기생산량은 2003년도 연간 청사 전기사용량에 대비 11%정도 (149천kw)가 생산되어 그 효율성은 다소 미미할지라도 화석에너지고갈에 대비 태양광으로 우리구 자체대체에너지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제과 (건 의)	하여 청사부족 등 청사 확충 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를 생산 할 수 있다는데 크나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당초 4개소 설치시 모듈, 집열판 규모가 적고 거리상 북구청사와 보건소가 인접하였고 자원화시설 및 기적의 도서관이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 친환경 측면과 내외래 견학자안내시 홍보측면과 실효성등 종합 고려하여 2개소로 최종 확정하였음 ○당초계획 입안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옥상설치에 따른 청사미관 등 제반사항을 청사관리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실시검토 본 사업을 보다 완벽하게 추진하게 함	
사 회 복지과 (시 정)	□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확대 운영되어오고 있으나 현실 여건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하고 있으므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자원봉사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함과 아울러 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분기별 홍보책자 발간, 우수자원 봉사자 마일리지 시상 확대 등으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시 정)	원봉사센터의 본래기능에 맞도록 자원봉사자를 적재적소에 배치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요보호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자원봉사 수요처를 정기 및 수시 조사하여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따뜻한 손길이 가도록 하겠음	
환 경 위생과 (시 정)	**□ 이화중학교 앞 오·폐수관로 관리 철저** ○이화중학교 앞 하천에 노출된 오·폐수관이 위험소지가 있으므로 매설 등 보완할 것	○이화중학교 앞 이 하천에 대한 하상정비 실시(건설과) • 일시 : '04. 12. 21 ~ 12. 30 • 소요금액 : 6,776천원	완 결
환 경 위생과 (시 정)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율이 15% 발생하였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다소 체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적법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 및 체납자 채권확보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 운영기간 : 연 2회(5월, 11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체분 실시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단순체납 : 체납자의 당해 부과대상 물건에 채권 확보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위생과 (시 정)	수에 만전을 기할 것	-당해물건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체납 : 자동차원부, 부동산 소유 확인 후 대체압류 -기타 미압류 분에 대하여 자동차 및 부동산 재산조회 후 재산 발견 시 압류조치 • 무체재산(봉급, 예금)압류 실시 -100만원이상 체납자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직장 조회 -봉급, 예금 압류예고서 발송 및 자진납부 독려 -납부독려 후 미납자에 대한 압류	
환 경 위생과 (시 정)	□ **동천유역 하천 생태지도 사이트 구축 관련 부서 협조체계 마련** ○동천유역 생태지도 사이트 구축과 동천정비계획에 의한 하상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모순점이 발생하므로 건설과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동천유역 하천정비계획에 자연형 하천으로 설계에 반영 • 동천수해복구공사 ('04.9~'05. 8)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지침(건교부, 2002. 1. 24)」, 「자연형 하천정비 기법의 종류 및 특성(행자부, 2002)」을 반영하여 사업시행 ※ 협조공문 발송 (환경위생과-988)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위생과 (시 정)	□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마련 시행** ○환경부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제도 운영지침」 의하면 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향후 조례나 지침 등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울산광역시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 '05. 2 : 자료수집 • '05. 3. 조례안 방침결정 • '05. 5. :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 • '05. 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05. 8 : 조례 공포·시행 ※ 제정근거 : 2004년도 환경오염등신고포상제도운영지침(환경부 환감67421-277 2003. 12. 30호와 관련)	추진중
환 경 위생과 (시 정)	□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리 철저**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3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1개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어 가격담합, 수거지연, 계량기 눈속임 등 불합리한 민원이 발생 또는 예상됨으로 시정을 요구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강화 : 연 4회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외 특별점검 실시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처분 확행 • 부당요금 징수 : 영업정지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위생과 (시 정)		(1월~6월) 및 과태료(100만원) • 청소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영업정지(1월~6월) 및 과태료(100만원)	
환 경 위생과 (건 의)	□ **간이상수도 대체시설 확보 건의** ○농소지역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승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고 있으므로 관로매설 인근 자연부락 등을 중심으로 간이상수도를 대체하고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추진할 것을 건의함.	○간이급수시설 현황 (총 43개소) • 간이상수도 : 34개소 • 소규모급수시설 : 9개소 ○추진상황 • 시상수도 인입 적극 추진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북부사업소와 협의, -상안마을 (210백만원, D=150M/M), -동산마을 (188백만원,D=100M/M) • 배수관 부설공사가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공사계획중에 있음 ○문제점 및 대책 • 시민들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으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열악한 재정(특별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 · 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위생과 (건 의)		회계)에 따른 부담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농어촌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관련 부서와의 수도사업 적극 협조 및 검토 • 지역주민의 수도요금 부담에 따른 시상수도 이용률 저조 → 상수도사업본부와의 협조로 시상수도이용 적극 홍보, 주민 협의를 통한 점진적인 간이급수시설 폐쇄 추진	
환 경 미화과 (시 정)	□ **재활용선별장내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 ○재활용선별장내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하여 선별장 작업인부에 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감시카메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이동 설치할 것을 시정 요구함	○감시카메라 이전 재활용선별장내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04. 12. 22 연암동 441-3번지(건영빌라 입구)에 이전설치 완료하였으며, 기 설치·운영중인 감사카메라도 투기행위 근절시 이전 설치할 계획임	완 결
환 경 미화과 (시 정)	□ **이면도로 청소차량 사용 효율성 제고** ○이면도로 청소차량 2대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	○호계지역 청소차량의 구청사 주변 청소용도로 전환 현재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미화과 (시 정)	여 구입 운행하고 있으나, 도로상태 및 노면불량 등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차량구입으로 도로변 가로환경정비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차량으로 적법하게 구조 변경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 요구함.	2대의 차량을 보유하여 신주거지역으로 개발된 호계구획정리지구, 진장명촌지구내 평창리비에르 지역 일원의 노면 청소를 위해 운행중에 있으나, 호계구획정리지구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차량운행 여건에 맞지 않아 운행효율이 떨어지므로 청사내 청소용도로 변경하여 운행할 계획임	
환 경 미화과 (시 정)	□ **청소업무 일원화를 통한 청소 체계 재정비** ○청소수거체계가 이원화되어 민원불편 및 책임 있는 행정실현이 어렵고 청소인력이 증원이 되었는 데도 청결도에는 아무 변화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청소업무체계를 일원화시켜 구조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청소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종량제봉투 수거의 경우 동별 책임제를 실시 하여 단독·공동·사업장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청소업무 전반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인 검토 • 청소체계의 일원화는 단기간 내에 결정하기에는 환경미화원·대행업체와의 관계,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많은 사전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장기간의 시간을 갖고 검토토록 하겠음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 · 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미화과 (시 정)	일괄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 수거의 경우 선별작업만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소업무 전반을 재점검하여 인원 축소 없이 효율적인 청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환 경 미화과 (시 정)	□ **영농폐기물 수거 철저** ○영농철이 끝난후 폐비닐이 논두렁 인근 등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등을홍보하여 폐비닐 등 수거에 철저 요망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을 통한 수거 종료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04.11.22~12.10 - 수거대상 : 폐비닐, 농약빈병 • 영농폐비닐 수거 주민홍보 : 전동, 구 홈페이지 • 영농폐기물 수거량 : 155톤 •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 지급 : '04. 11. 10 - 지급금액 : 6,525천원	완 결
환 경 미화과 (시 정)	□ **재활용교환판매장 운영 내실화** ○지난해와 비교하여 근무인원이 줄었는데도 올해 사업비 집행내역은 별 차이가 없으며,	○교환판매장 운영상황 지도점검후 활성화 방안 강구 지시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미화과 (시 정)	○또한 수입도 감소되고 있으므로 인건비, 광고비 등 집행내역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기 바라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계획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할 것을 시정 요구함	• 재활용교환판매장 운영상황 지도·점검 : '05. 1. 10~11 -점검내용 : 중고생활물품 수집·교환·판매 등 -점검결과 :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중고의류, 유아용품 매장 폐업으로 전년 대비 판매 감소 • 활성화 방안 강구 지시 통보 : '05. 1. 15 -환판매장 주민 홍보 강화 : 홍보물 배포 등 -생단체와 협조체제 구축으로 각종 행사시 교환 판매장 물품 전시 판매 : 알뜰장터, 나눔장터 등	
환 경 미화과 (시 정)	□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대책 마련** ○우리구에서 계획하는 남은 음식물 물량이 초과 배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감량 정책 및 신규아파트 감량 시설의무화 등 법적, 정책적 검토 강구	○음식물 분리배출과 감량을 위한 홍보 및 정책적 사안은 장기적 검토 필요 •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 홍보 및 감량화를 위한 지원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 홍보 -홍보 현수막 : 10개소 (육교 2, 동청사 8)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미화과 (시 정)		-홍보물 배부 : 4,200매 · 신규 아파트의 남은 음식물 감량을 위한 지원 -입주시 가정용 탈수기 및 중간수집용기 무상 지원 (가정용 1개/세대, 중간용기 1개/50세대) • 신규 아파트의 감량시설 의무화 필요 : 장기적 검토	
환 경 미화과 (시 정)	□ **현수막 게시대 관리 철저** ○ 현수막 게시대 앞 가로수로 인해 홍보효과 및 게시대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어 농림수산과와 협의하여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입간판도 정비할 것을 시정 요구함.	○ '05. 4월중 게시시설 일제조사후 적법처리, 연중 불법광고물 정비반 편성 운영 • 게시시설 앞 가로수 가림을 '05. 4월중 일제조사하여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에 대해 가지 전지작업을 농림수산과와 협의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 무질서하게 난립된 입간판도 불법광고물 지도·단속반을 2개반 14명으로 편성,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일소할 것임	추진중

소관부서	지적 · 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미화과 (건 의)	□ **청소업무 정비** ○부서별 및 자생단체 등 산재해있는 청소업무에 대하여 투자한 만큼 효과가 미미하며 효율적인 청소업무 추진을 위하여 청소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폐목에 대하여 하루 2톤으로 반입물량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신규 대규모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우리구로서는 상당한 민원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매립장 반입물량을 조정해 주길 바람	○청소활동의 일원화 운영 • 현행 청소업무는 부서별 고유업무로 인한 청소활동을 제외하고는 환경미화과에서 전담 운영하고 있으며,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은 분기별 1회정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원지에서 실시하고 있은 바, 이는 환경미화과 주관으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얻어 시행 하고 있음 ※ 부서별 고유업무로 인한 청소 업무는 시행전 환경미화과와 협의하여 청소장비 지원 및 환경미화원이 참여하고 있음	완 결
환 경 미화과 (건 의)	□ **120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사후처리 철저** ○120 민원기동대에서 민원불편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처리결과를 해당 동 및 지역구 의원에게도 통보하여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함	○'05년도부터 민원처리 결과를 구의원 및 동에 통보 조치 • 현재까지는 120민원기동대에서 민원불편사항에 대하여 조치후 처리결과를 건의자에게만 통보 하였으나,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미화과 (건 의)		앞으로 처리중인 사항은 해당동 및 지역구 의원에게도 통보하여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생활불편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음.	
도 시 교통과 (건 의)	□ **대형마트 주변 승강장설치 검토** ○대형마트 주변 콜밴 등 기타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콜밴의 영업행위를 인정하는 만큼 까르푸 및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주변 택시 승강장처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콜밴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와 동시에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하여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건의함.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택시승강장 설치시 콜벤 화물자동차 승강장을 동시에 설치토록 하고 예산을 확보하겠음.	완 결
도 시 교통과 (건 의)	□ **버스베이 설치 신중**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부구간에 대하여 준공에 이르고 있으며 신규 개설중인 구간	○버스베이 설치에 있어 주민 및 자전거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음.	완 결

소관부서	지적·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통과 (건 의)	도 있으므로 신규개설구간에 대하여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버스베이 설치시 주민 및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중히 추진할 것을 건의함.		
도 시 교통과 (건 의)	□ **도시계획수립 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연차적 추진 철저** ○도로 및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이 558,428㎡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불편과 민원 발생이 예상됨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의무가 있는 담당부서별로 매수청구신청에 따른 예산을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확보토록 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매수청구신청 대비 담당부서별로 반드시 예산 확보토록 협조요청(담당부서별 공문 발송 '04.12.22)	완 결
도 시 교통과 (건 의)	□ **효문 국가산업단지 조성 소외 지역 주거환경개선 대책마련** ○효문동소재 율동부락이 효	○율동부락을 효문국가공단개	완 결

소관부서	시정 · 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통과 (건 의)	문국가산업단지로 편입된 이후 재산권 행사 등 각종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효문동 3통 지역에 대해서도 동해남부선 철도이설과 관련하여 충분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발 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하는 방안 등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 • 연암3통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 이주대책수립 건의(울산광역시협조요청 '04.12.22)	
건 설 과 (시 정)	□ **정자해안도로 완벽보완** ○정자 해안도로 옹벽이 해안 특성상 파도와 해일로 인하여 잦은 균열과 도로 침하가 발생되고 있어 지역주민 및 보행자들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 함.	○'04년 12월 긴급도로 복구비를 투입 공사중 • 공사착공 : 2005. 1.1 • 공사준공 : 2005. 3.1 • 사 업 비 : 43,000천원	추진중
건 설 과 (시 정)	□ **장비임차비 예산과목변경 확보집행** ○건설과 및 농림수산과에서	○변경완료('04.12.18)	완 결

소관부서	지적 · 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 설 과 (시 정)	매년 일반운영비에 긴급도로 및 농로 복구 등을 위하여 굴삭기 등 장비임차비로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집행되고 있으나 예산집행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과목을 자체사업 등 적정한 과목으로 편성하여 사업 시행할 것을 시정 요구함.	• 기존 :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 변경 : 시설비, 시설부대비	
건 설 과 (건 의)	□ **매곡지방산업단지 연접도로 개설 문제점 예방** ○ 매곡지방산업단지가 내년을 준공 목표로 시행중에 있고 산업배면도로가 매곡지방산업단지 앞으로 개설중에 있으므로 성불암 주변 등 기존도로와의 접속지점이 주민 이용시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울산광역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건의함.	○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조기개설을 위하여 울산시 도로과와 협의한 바, '05년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관계로 추가 사업비 미확보('05 추경시 사업비 확보 예정)	추진중
건 설 과 (건 의)	□ **신천천 하부도로 폐쇄에 따른 사후조치 강구** ○ 신천천 하부도로가 2002.	○ 하부도로 폐쇄에 따른 민원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 설 과 (건 의)	6월 준공이후 신천교 재가설공사로 인하여 2004.2월 폐쇄됨에 따라 내년 3월 신천초등학교 개교시 학생들의 등하교시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하부도로 폐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점을 검토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해소 협조요청(시 도로과) (사거리 신호체계로 전환) • '05. 3월 준공(예정)	
농 림 수산과 (시 정)	□ **산불초기 진화대책 강구** ○지난해 무룡산 대형산불로 인하여 많은 면적의 산림이 훼손되었는데 올해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휴대용 소화기를 구입비치하여 초동진화장비로 활용하기 바람.	○2004. 12. 7. 소화기 24개 구입 ○2004. 12. 9. 각 동 초소 배부완료	완 결
농 림 수산과 (건 의)	□ **호접란 영농농가 자생력 마련 대책 강구** ○미국 플로리다주에 호접란 해외수출전진단지를 운영해	○농가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은 새로운 기술 및	완 결

소관부서	지적·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농 림 수산과 (건 의)	오면서 전진기지 하우스 저온시설 확충 및 공동 웹 사이트 구축 등 각종 행정적 지원으로 국가신인도 및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나 타 업종 종사자와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라도 구재정상 지원이 한계가 있으므로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함	시설이나 신품종 도입 등에 국한하고, ○시설보완이나 교체 등은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보조사업 지원 최소화 조치 • 저온시설 300평 확충 • 수출전문 육묘장 1,000평 설치	
건 축 과 (시 정)	□ **각종 대형공사 성실시공** ○호계동 262-2번지에 신축하고 있는 보훈회관의 경우 당초 연약기반인데도 지질조사 등 사전 철저한 준비도 없이 공사를 발주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바, 향후 사전준비과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각종 대형공사 현장의 내실있는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로 인한 사후관리에 또다시 추가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보훈회관은 사전 지질조사(보링테스트)를 하였으며 다만, 예산관계로 전 부지에 대해 실시하지 못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인근한 일부 지반이 연약하여 당초 독립기초에서 파일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음. ○향후에는 사전 준비과정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여 내실있는 관리감독을 이행하겠음.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 축 과 (시 정)	□ **기계식 주차장 관리 철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이 주차장내 물건 적치, 입구봉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도심지 이면도로 등 주차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기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타용도 사용,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여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함.	○'04. 12. 27~12. 31(5일간)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총1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음. ○이 중 7개소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개선을 계도하였음.	완 결
건 축 과 (건 의)	□ **건축허가 미준공건물 및 방치된 건축물 사후관리 철저** ○'87년이후 건축허가 미준공 및 방치된 건축물이 41건에 이르고 있어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주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 및 행정지도로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함	○장기간 미준공 되어있는 건축물들은 정기적인 확인을 통하여 허가취소, 사용승인 독려, 위법사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2004년의 한해 동안 2차례에 걸친 장기 미준공 건축물 조사를 통하여 장기 미준공 건축물내역을 지방세과 통보 ('04.11.30), 건축	완 결

소관부서	지적·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 축 과 (건 의)		주들에게 건축물사용승인 촉구('05.1.10), 법규위반 사항 고발('05.1.5)등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미준공 건물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음	
건 축 과 (건 의)	□ **금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철저** ○2002. 6월 이후 추진해온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각 분야별 세부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당초 사업목적대로 피폐해져가고 있는 농촌을 살리고 이농한 주민들이 다시 정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온 사업인 만큼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현재 금천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주민들과 계속적인 협의로 문제점을 검토 후 해결방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완 결
건 축 과 (건 의)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홍보 철저** ○매년 저소득층을 위하여 전세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대출실적이 목표액 대비 14%정도로 저조하므로 저소득층의 특성상 우리구 홈	○전세자금 대출관련 홍보를 영세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동민게시판 게시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 축 과 (건 의)	페이지를 접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각종 행사시 홍보를 널리하여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세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함	향으로 개선할 것임 ○영세민전세자금세부지원기준이 영세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광역시에 지침변경을 요청하였음(2004.12.7)	
보 건 소 (시 정)	□ **직원복무관리철저** ○자체 감사시 국내여비 부적정, 당직근무시 당직대리 근무승인을 득하지 않고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복무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복무에 각별히 유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전반적인 복무점검 강화 • 관내, 외 출장(차량이용포함)은 담당자 책임하에 반드시 소장 결재 득한 후 시행. • 당직근무자 재차 확인하여 복무이행 철저. • 국내여비등 지급은 수차례의 확인에 의해 집행조치. • 보건소장 통제하에 직원연찬회(월별)실시, 주(월)간 보고 및 간부회의에 의해 직원정신 교육 실시. • 자체 복무(근무)점검을 상시로 실시. -상기와 같이 지적받은 이후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스스로 각별히 유념하고 있으며, 전직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철저히 병행하고 있음.	완 결

제5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개요

가. 감사의 목적

○ 2005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 하고자 함.

나. 감사기간 : 2005. 11. 28 ~ 2005. 12. 4(7일간)

다. 감사주체 : 본 회의

○ 의　　장 : 하 인 규
○ 부 의 장 : 이 재 경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이 상 찬
○ 사무직원 : 손 낙 균

2.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청		구청장	이상범		감사요구 자료참고
		부구청장	김광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 총무국	총무국장	안차수		
		총무과장	김영식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지방세과장	이동훈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 경제사회국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건축과장	박기봉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 보건소	보건소장	이병희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직	성명	전임자	감사대상 사무
울산광역시 북구청	전 동	농소1동장	정순상		감사요구 자료참고
		농소2동장	박민수		
		농소3동장	신종도		
		강동동장	신해진		
		효문동장	강수상		
		송정동장	강걸수		
		양정동장	박경규		
		염포동장	이차범		

3.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계	공통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225	14	14	54	58	65	17	3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4. 감사실시방법 및 일정

가. 감사일정별 감사대상 및 장소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2005. 11. 28 (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실·국·소·과·동장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5. 11. 29 (화)	10:00	〃	○총 무 국 · 문화공보과 · 지 방 세 과 · 민원지적과 · 자치지원단	
2005. 11. 30 (수)	10:00	〃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2005. 12. 1 (목)	10:00	〃	○경제사회국 · 환경미화과 ○도시건설국 · 도시교통과 · 건 설 과	
2005. 12. 2 (금)	10:00	〃	· 농림수산과 · 건 축 과 · 재난관리과 ○보 건 소	
2005. 12. 3 (토)	10:00	(대상사무현장)	(현장확인)	
2005. 12. 4 (일)	10:00	〃	〃	

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 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다. 증인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실·국·소·과장·동장 합동 실시 - 28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16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 : 총무국장

라. 기타 행정사항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2005. 11. 28 ~ 2005. 12. 4(7일간)

○ 출석장소 : 소회의실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외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감사지적사항 당일 제출

○ 현장확인 활동

- 현장확인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반준비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 안내

제6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실시개요

가. 감사의 목적

○ 2005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 하고자 함.

나. 감사기간 : 2005. 11. 28 ~ 2005. 12. 4(7일간)

다.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감사실 ○ 총 무 국 ○ 경제사회국 ○ 도시건설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2.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하 인 규	이 재 경	김 재 근 김 대 영 윤 임 지 류 재 건 김 진 영 류 인 목	이 상 찬	손 낙 균

나. 감사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5. 11. 28 (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기획감사실 ○총 무 국 · 문화공보과	
2005. 11. 29 (화)	10:00	〃	○총 무 국 · 지 방 세 과 · 민원지적과 · 자치지원단 · 총 무 과	
2005. 11. 30 (수)	10:00	〃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5. 12. 1 (목)	10:00	〃	○경제사회국 · 환경미화과 ○도시건설국 · 도시교통과 · 건 설 과	
2005. 12. 2 (금)	10:00	〃	· 농림수산과 · 건 축 과 · 재난관리과 ○보 건 소	
2005. 12. 3 (토)	10:00	(대상사무현장)	(현장확인)	
2005. 12. 4 (일)	10:00	〃	〃	

다. 감사방법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감사첫날 관계공무원 합동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실 · 국 · 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 · 과 · 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 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라.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주요감사 실시건수
계	225	28		225
공 통 사 항	14			14
기 획 감 사 실	13	1		13
총 무 국	54	14		54
경 제 사 회 국	59	5		59
도 시 건 설 국	65	6		65
보 건 소	17	1		17
의 회 사 무 과	3	1		3

마. 감사결과 모범사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모범사례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69**		**48**	**21**
공 통 사 항	3		3	
기 획 감 사 실	4		3	1
총 무 국	21		12	9
경 제 사 회 국	17		11	6
도 시 건 설 국	23		18	5
보 건 소	1		1	

바. 현장확인 감사

○ 현장확인 대상지

- 효문운동장 조성공사
- 원지 노인요양시설 예정부지
- 원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

○ 참석대상

- 의　　회 : 전 의원, 사무직원
- 담당부서 : 문화공보과(건축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 감사내용

- 효문운동장 조성공사, 원지 노인요양시설, 원지 자전거전용도로 현장 확인 및 추진상황 보고

3. 주요감사실시 내용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울산광역시
북 구
〔전부서
공통사항〕</td><td>
1. 예산집행현황(일반. 특별회계 구분작성)
<table>
<tr><th rowspan="2">항목</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잔 액</th><th rowspan="2">미집행사유</th></tr>
<tr><th>합계</th><th>당초 예산</th><th>1회 추경</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table>
<tr><th>민원명</th><th>접수일자</th><th>처리일자</th><th>민원인</th><th>민원내용</th><th>처리결과</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사업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위 치</th><th>사업개요</th><th>사업비</th><th>진 도</th><th>시공자</th><th>예산확보 시 기</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당초, 1회추경</td></tr>
</table>
4.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현황
<table>
<tr><th>위원회명</th><th>설치근거</th><th>설치목적</th><th>주요사항 처리결과</th><th>운영횟수</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5.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단체에 대한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 (정산서 사본첨부) - 2004. 11. 1 ~ 2005. 10. 31
★일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포함.
6. 각종용역사업 추진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용역종류</th><th>용역비 (천원)</th><th>착수일자</th><th>완료일자</th><th>용 역 결 과</th><th>계약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2">예산액</th><th colspan="2">집행액</th><th colspan="2">집행잔액</th></tr>
<tr><th>국비</th><th>시비</th><th>국비</th><th>시비</th><th>국비</th><th>시비</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8.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 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9.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서식 1」
1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서식 1」
</td><td>※항목은 세 항, 세세항, 목가채</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울산광역시
북 구
〔전부서공통
사항〕</td><td>11.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12. 2005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13. 2004년 예산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14.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table>
<tr><th>공사명</th><th>변경사유</th><th>공사금액
증 가 액</th><th>설계변경
요 청 자</th><th>설계자</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td></tr>
<tr><td>기획감사실</td><td>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2. 대학유치사업 추진현황
3.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4. 2005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
5.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6. 예산 전·이용 현황 및 사유(전부서 취합)
7.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민사)수행사항
8. 승소사례금 지급내역(사건별)
9. 자체감사, 시, 행자부, 감사원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일상감사 포함)
10.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처분사항, 모범사례)
11. 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견학 추진실적 및 성과
12. 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13. IP 기반 키폰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총 무 과</td><td>
1. 공무원 정·현원(부서별) 현황(2004, 2005)
2. 일용인부임(일시사역인부임 포함) 현황(전부서 취합)
<table>
<tr><th>부서명</th><th>성명</th><th>사역목적</th><th>사역기간</th><th>단가(원)</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연수(출장)목적, 부서명, 연수기간, 경비 등)
4. 각종 공사·물품구입 계약현황
(공사3,000만원 이상, 물품·용역 400만원 이상)
<table>
<tr><th>부서명</th><th>일자</th><th>건명</th><th>사업량
(수량)</th><th>예정가</th><th>낙찰가</th><th>낙찰율</th><th>낙찰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5.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전부서 취합작성)
- 차량번호, 종류, 용도, 구입년월일, 상태
6. 각종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7.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
8.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실적
9.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현황
10. 구청사 월별 전기요금 납부 현황
11. 공유 재산현황(구소유 - 토지, 건물)
<table>
<tr><th>품 명</th><th>구입
(취득)일</th><th>구입(취득)
방법</th><th>구입(취득)
가 격</th><th>구입(취득)
목 적</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2. 실과별 연가, 특별휴가, 관외출장, 교육 등 월별
사용 인원 및 사용일수
<table>
<tr><th>실과명</th><th>월별</th><th>정원</th><th>사용인원</th><th>사용일수</th><th>용도</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총 무 과	✱실과별, 구분별(연가, 특별휴가 등) 별지작성 ✱교육현황은 기간, 과정명, 장소 등 13. 동청사 건립추진 현황(효문, 양정동) 14. 중국 녹원구와 교류협력 추진현황	
문화공보과	1.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 2.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 3.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 (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4. 농소운동장/양정생활체육공원 월별 사용료징수 현황(구분작성) 5.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의집 운영 현황 ✱ 문화교실, 공연 등 계획 및 실적 ✱ 프로그램 강사현황 포함(이름/나이/주소 등) 6. 문화예술회관 월별 대관료 징수실적 7. 북구 공공도서관, 농소1동 도서관 건립 추진상황 (사업비, 현공정율, 문제점 및 대책 등) 8. 문화재 복원 및 정비실적 9. 청소년체육활동장 운영현황 (사용료 수입 월별작성 등) 10. 각종 주민참여 문화행사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11. 달천철장에 대한 복원과 보존대책 12. 제1회 쇠부리 문화제 개최 추진실적 13. 기적의 도서관·농소3동 도서관 운영현황 14. 주민참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15. 문화공간, 권역별 도서관 등 도서구입비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공보과	16. 이동도서관 버스 운영현황 17. 구민한마음체육대회 동별 지원금 집행현황 ✱ 동별 정산서류 포함	
지방세과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세목별)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 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 (건수, 금액, 사유 : 10만원 이상)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5. 세무조사결과 추징현황 및 내역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8. 비과세, 면세, 세액감면 현황	
민원지적과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3.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실적 4. 재택전자민원 (G4C)신청 및 처리실적 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6.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현황 및 실적	
자치지원단	1. 주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2. 동별 예산 집행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자치지원단	3.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 프로그램 강사현황 포함(이름/나이/주소 등) 4.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5.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동별) 6.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 추진 실적 7. 『살기 좋은 동네만들기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8.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9. 학교급식비 지원관련 예산집행 현황	
지역경제과	1.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현황 (행정처분 내역) 2. 가스관련 허가, 신고 접수처리 현황 3. 가스판매업소 점검현황(행정처분 내역) 4.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 및 처리결과 5. 고용촉진 훈련 추진 내역(예산집행 내역 포함) 6. 업체별 외국인 취업현황 7.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8.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현황 9. 솔라(Sola) 프로젝트 사업 및 지역에너지사업 추진현황 - 준공후 사용효과 분석(구청사,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 에너지 절감(전기사용료)효과 등 10. 노동자지원관련 사업 및 행사 추진현황 11.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2.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현황 13. 시장조사개척단 추진현황 및 성과	
사회복지과	1.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2. 저소득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사회복지과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현황 4. 아동, 노인, 여성복지 지원사업 현황 5. 경로당 및 북구 노인회 지원 현황(실적) 6. 종합사회복지회관/보훈회관 운영현황 7.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생산물 판매처·실적 등) 8. 노인의 달 및 가정의 달, 여성주간 행사 개최 내용 및 실적 9.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10.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11.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 12.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스티커제작 및 발급현황 - 부정 부착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13. 자활후견기관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 2005년도 사업계획, 예산지원현황 - 2005년도 사업실적 - 년간 총수익금 - 수익금집행내역 14. 태연재활원·메아리복지원 운영현황 - 2005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현황, - 2005년도 사업실적 - 년간 총수익금(후원금 포함) - 수익금집행내역 - 재단출연금 현황 -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 재학생입학 및 대기자 현황 15.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 및 아동공부방 운영현황 (설치장소, 설치시설내용, 이용인원 등)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사회복지과</td><td>16. 여성권익신장사업 현황 및 성과
17. 장수수당 지급현황(동별/월별/인원 등)
18.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현황
19. 동별 경로잔치 예산집행 현황
<table>
<tr><th rowspan="2">동별</th><th rowspan="2">주관</th><th rowspan="2">사업시기</th><th rowspan="2">사업내용</th><th colspan="2">사업금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지원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td></tr>
<tr><td>환경위생과</td><td>1.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실적
2.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 및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3. 부정 불량식품 수거검사 처리내역
4.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5.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현황(개소수)
(체육공원, 근린공원, 정자해변 등)
6.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
7. 관내 숙박시설 관리현황
<table>
<tr><th>업 소</th><th>위 치</th><th>건축허가일</th><th>객실수</th><th>위반현황</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8. 간이상수도 관리현황 및 긴급 보수비 집행 내역
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자동차, 시설물)
10. 생태환경 체험교육장 예산집행 및 운영현황
11. 공중위생업소 그린카드 할인제 운영현황
12.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현황
13. 노래방 및 청소년 다중이용시설(PC방 등) 점검 내역과 단속 실적</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미화과	1. 생활폐기물 수거(종량제봉투/재활용/음식물) 현황 -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지역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포함) - 지도점검 결과 2.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3.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내역 등) - 별도작성 4. 환경미화원 정·현원(2004, 2005) 및 담당구역현황 5.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6. 분리수거 추진실태(종량제봉투/재활용/음식물) 7. 환경미화원 복지관련 예산집행 현황 8. 재활용교환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 ① 매출실적 ② 예산지원 현황 9. 재활용 선별장 운영실태 10. 음식물자원화 시설 운영현황 ✱민간위탁체결현황(계약서 포함) ✱사용료 월별징수내역, 처리물량 등 11.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등 12. 구민환경감시원 운영실적 13.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14. 120 민원기동대 운영현황 및 실적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도시교통과</td><td>
1.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 현·과년도 구분작성
- 주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
2.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 등)
3.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내역
4.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5. 공영주차장 신규설치 현황
6.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공사현
<table>
<tr><th>사업명</th><th>위 치</th><th>공사규모</th><th>사업비</th><th>업체명</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도시계획관련 용역업무 추진현황
8. 도시계획수립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9.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보수현황
10.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실적 및 문제점 등
11.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1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실적
</td><td></td></tr>
<tr><td>건 설 과</td><td>
1. 하천 점 사용료 부과 및 납부현황, 무단사용자 조치내역
2. 도로굴착허가 및 조치내역
3. 긴급도로 복구공사 현황
(도로명, 위치, 복구내용, 공사기간, 사업비 등)
4. 도로 점 사용료 부과, 징수내역
5. 가로등·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table>
<tr><th>민원접수일자</th><th>내 용</th><th>완료일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부요구자료내용	비 고
건 설 과	7. 제방 응급복구 공사 내역 8.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9.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현황 10. 침수예상지역 하수구 정비실적 11. 자전거 전용로로 개설 추진현황(개설구간 구분/부대시설 포함) (예산 투입액-2004년이전, 2005년, 향후예산투입예상액등) 12. 우·오수관로 뚜껑교체 정비현황 13. 소방도로 개설후 잔여지 활용현황 14. 생활속의 동천 가꾸기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15. 산업로배면도로 개설공사 및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추진현황	
농림수산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휴경농지 보조금 집행내역 4.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5.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 6. 수산관련 인허가 현황 7.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8.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9. 임도 개설·보수 현황 및 업체계약내역 10.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11. 전복 치패사업 투자현황 및 실적분석 12.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3. 소 브루셀라병 발병 및 처분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농림수산과</td><td>
<table>
<tr><th>동별</th><th>농가명</th><th>발병
두수</th><th>처분내역
(살처분 등)</th><th>살처분
위 치</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4. 관내 공원시설물 보수 및 정비 실적
(시설명, 보수내역, 사업비, 화장실 관리 실태 등)
15.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및징수 현황
16.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17.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현황
18. 강동 해안가꾸기 사업현황
19. 재해대비 어업기반시설확충 현황
20. 산림자원화 및 녹색휴양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21. 민간자본 보조사업 지원현황
<table>
<tr><th rowspan="2">순번</th><th rowspan="2">제품별</th><th rowspan="2">연도별</th><th rowspan="2">품목</th><th rowspan="2">수량</th><th colspan="2">사업금액</th><th rowspan="2">설치자</th><th rowspan="2">설치
장소</th><th rowspan="2">면적/
수확량</th><th rowspan="2">비고</th></tr>
<tr><th>지원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제품상태/
내구연한 등</td></tr>
</table>
✱ 최근 3년간 현황(2003~2005)
</td><td></td></tr>
<tr><td>건 축 과</td><td>1.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및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공유수면, 하천부지, 국·공유지상의 건축허가 현황
4. 관내숙박업 허가관련 허가사항 및 관리 현황
5.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6.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7. 불법건축물(GB해제지역 등)현황 및 처리내역
8.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추진실적
9. 『금천아름마을가꾸기사업』 추진현황
10. 효문운동장 추진현황</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부요구자료내용	비 고
재난관리과	1.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2.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3. 민방위교육 실시 현황 - 일시, 참여인원, 교육내용, 강사 포함 - 민방위 교육불참자 고발 현황 4.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현황 - 부서별 현황(인원, 분장업무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현황(복무연장 등) 5.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6.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현황 및 관리 실태 7. 태풍"나비"에 따른 피해현장별 피해복구 예산집행 등 추진실적	
보 건 소	1.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2.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사항 3. 진료비조정 및 징수현황 4. 주요약품 구입내역 및 관리현황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및임시) 유형별 약품구입 및 접종 실적 7.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및 보상내역 8.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 및 대책 9.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10.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현황 11. 동별 간호방문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보 건 소</td><td>【대상자(명)/방문일수】
<table>
<tr><th>월별
동별</th><th>'04
.11</th><th>12</th><th>'05
.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r>
<tr><td>농소1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농소2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농소3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강동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효문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송정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양정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염포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2.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3.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14. 감염성폐기물 처리현황
15. 건강운 동실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체력진단실, 체력단련실 등)
16. 비만·당뇨 예방대책 및 실적(효과)
17. 모자보건사업 및 금연사업현황 및 성과</td><td></td></tr>
<tr><td>의회사무과</td><td>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의회개회 및 회의록 발간배부 현황</td><td></td></tr>
</table>

제7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36조와「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 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25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69건이며 시정요구사항 48건, 건의사항 21건으로서 지적사항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06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기 바람.

제8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시정 · 건의 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69	49	20		48	39	9		21	10	11	
공통사항		3	3			3	3			-			
기획감사실		4	1	3		3	1	2		1		1	
총무국	계	21	19	2		12	12			9	7	2	
	총무과	6	4	2		3	3			3	1	2	
	문화공보과	7	7			4	4			3	3		
	지방세과	2	2			1	1			1	1		
	민원지적과	2	2			1	1			1	1		
	자치지원단	4	4			3	3			1	1		
경제사회국	계	17	9	8		11	8	3		6	1	5	
	지역경제과	5	4	1		4	3	1		1	1		
	사회복지과	6	2	4		3	2	1		3		3	
	환경위생과	2	2			2	2			-			
	환경미화과	4	1	3		2	1	1		2		2	
도시건설국	계	23	16	7		18	14	4		5	2	3	
	도시교통과	4		4		2		2		2		2	
	건설과	3	2	1		2	1	1		1	1		
	농림수산과	8	6	2		7	6	1		1		1	
	건축과	4	4			3	3			1	1		
	재난관리과	4	4			4	4			-			
보건소		1	1			1	1			-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공통사항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 일시 : 2006. 1. 23. 16:00 ○ 장소 : 구민대화의 방 ○ 대상 : 실·과·소 주무담당 차석(16명) ○ 교육내용 -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공통지적사항(시정·건의)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공통사항 (시 정)	□ **예산집행시 효율적 운영 촉구** ○자체감사에서 대부분의 실·과·소·동 예산집행에 있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음. 특히 동별 종합감사시 업무추진비 현금지출 초과, 예산배정보다 많은 예산지출 등 기본적인 예산지침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동 예산담당자들에 대한 예산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예산담당자에 대한 잦은 인사이동이 지양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바람.	○예산집행 관련 등 담당자 교육실시 • 예산집행 철저(업무추진비 등) • 예산배정 금액 철저 확인 후 정확한 예산집행 • 예산관련 업무 연찬회 자체 실시 • 경리담당자의 근무년한 준수	완 결
공통사항 (시 정)	□ **민원처리방법 개선**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대처능력이 대	○공무원이 대민봉사 행정에 있어 관련법 규정을 정확하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공통사항 (시 정)	체적으로 미흡하다고 봄. 민원 발생시 법적용에만 한정지어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주민의 입장에서 해당 사안을 이해시켜 나간다면 집단민원 발생은 사전에 예방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한층 효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함.	게 숙지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주는 행위 근절하고, ○주민의 입장에 선 선진행정 제공으로 각종 민원 해결이 되도록 직무교육 실시	
공통사항	□ **각종 대형공사 성실 시공**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된 것은 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음을 감사시 수차례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 향후 각종 공사 계획시 사전 준비과정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부실공사로 인한 추가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바람. 또한 시공후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관급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각종 대형공사시 공사감독 철저 • 잦은 설계변경 지양 • 각종 공사시행에 따른 공사감독 철저 • 시공 후 공사전반에 걸쳐 하자여부를 집중점검 실시로 하자 발생시 시공업체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조치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시 정)	□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 ○시민위원 구성시 단순 인지도 등에 따라 위촉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민위원 위촉에 있어 자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촉하기 바람.	○시민위원회 구성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준하여 선정하고 있음. ○향후 시민위원 위촉시 규칙 범위내에서 선정기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외대상자, 우선 선정대상자, 동별 배정 등 합리적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겠으며, 강도 높은 예산교육을 통해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분들이 시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기 획 감사실 (시 정)	□ **행정전산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검토** ○행정전산화에 따른 투자시 투자대비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	○향후 행정전산화 추진시 기개발 프로그램과의 중복 여부, 공동 활용성, 타 기관의 도입사례 및 상위기관의 전산화 추진·보급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중복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의 생산성, 효율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시 정)	□ **각종 통계조사방법 개선** ○인구주택 총조사시 사생활 관련 질문은 지양되어야 하며, 통계 조사원 선발에 있어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조사원 선발에 따른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시정 바람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시 사생활 관련 질문의 경우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표본집단으로 선정되도록 통계청에 건의하였으며, 조사원 선발시에도 통계청과 협의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음.	완 결
기 획 감사실 (건 의)	□ **중산동 대학유치부지 후속 조치 실행** ○울산국립대유치 예정부지 가운데 약수동산회에서 무상기부한 중산동일원이 부지여건상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국립대유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기부단체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적 후속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01.5.14 약수동산회에서 중산동 산3-3외 4필지 650,973㎡(196,919평)를 대학유치 목적으로 북구청장에게 무상기부 ○'02.7.19 대학부지 무상기부 약정 공증기간 4년 연장 ○'03.9.22 경북대학교를 방문 대학유치 설명회 개최 등 대학유치관련 25회 현장방문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관심표명이 없었고, 또한 울산국립대 설립추진과 대학의 구조조정 등으로 유치가 부진한 상태로 있었음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건 의)		○'05.9.16 울산국립대설립확정 후 구,군 후보지 추천기준을 최소30만평이상 규모로 규정하여 후보지 면적 미달과 '09.3월 개교시 주변여건이 타 구,군의 후보지보다 불리한 조건이라 후보지로 추천하지 않았으며, 북구의 국립대설립 후보지로 창평지구, 상안·달천지구를 후보지로 추천 ○'06.1.19『울산광역시국립대설립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복수후보지로 울주군 반연지구, 삼동지구, 북구 상안·달천지구, 중구 성동지구로 선정하였고, 정부균형발전위원회의 『울산국립대학 설립 추진위원회』가 최종 후보지 한군데를 3~4월중 결정예정. ○중산동 대학부지는 국립대후보지로 부적합하였고 대학구조조정 등으로 더 이상 대학유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북구 대학유치위원회와 약수동산회가 협의한 후 빠른 시일내 공증해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임.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 무 과 (시 정)	□ **외부용역업체 당직근무자 민원응대 철저** ○정규직원이 비상사태 발생시 당직실을 비울때와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외부용역업체 직원이 친절히 안내하는 교육이 필요함.	○외부용역업체 직원 교육실시 : 2회 • 교육일시 : '05.11.30/ '06.1.13 • 교육내용 -청사방문 민원인 친절안내 -청사무단 침입 등 비상사태시 신속하게 당직근무자에게 연락 -순찰수칙 준수 등	완 결
총 무 과 (시 정)	□ **신중한 국제교류 협력 추진** ○중국 장춘시 녹원구와 자매결연 체결 및 소요예산 승인 후 추진사항이 지지부진함 ○향후 미국 아팝카시와 교유추진시 신중한 교류협력을 추진요구.	○미국 아팝카시와 국제교류 협력 추진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등 관련기관과의 사전정보 요청 등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 후 국제교류 추진	완 결
총 무 과 (시 정)	□ **차량유지보수비 과다집행 시정** ○신차 구입시 2~3년간 차량 보수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	○차량유지보수비 집행 철저 • 차량 유지보수비 과다 집행	완 결

소관부서	시장·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 무 과 (시 정)	는데 과다하게 차량유지보수비가 집행 ○관용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차량관리 집행에 만전 ○관용차량 일과시간 활용실태 점검 요구	에 따른 조치 -전문지식이 풍부한 운전원을 차량담당자로 지정('05.12.19) -'06. 1. 2부터 환경미화과의 차량정비 및 유류 수불사항에 대하여 총무과로 통합관리 조치 • 경정비 단가계약 체결하여 예산 절감 • 관용차량 일과시간 활용실태 확인 후 미흡부서 차량관리전환 조치 및 2월중 운전자(기사, 직원, 공익요원) 교육 계획임.	
총 무 과 (건 의)	□ **청사 주차공간 확보 방안 강구** ○청사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주차 공간 확보 개선책 만련, 장기주차차량 조치 ○장기주차차량에 대해 일정기간 계고 후 미 이행시 견인조치, 차량10부제 추진 등 최선책 강구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 조사 • 기간 : '05. 12. 2 ~ 12. 23 • 방법 : 매일2회(00:00~07:50) 주차 차량 조사 • 대상 : 2일 이상 주차차량 • 조치결과 -2일 이상주차 차량 이동조치 : 9대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방치(10일이상) 차량 도시교통과 조치 통지 : 2건 -장기주차차량 전면 유리에 안내문 부착 : 83건 ※안내문 제작 : 500매(청사 주차장 용도 및 계속 주차 시 관련법에 의거 견인 조치 안내 등) ○향후계획 : 10부제 이행 및 주기적인 장기주차차량 단속	
총 무 과 (건 의)	□ **기증 조각품 청사내 설치 검토** ○쇠부리 축제 기간 중 전시된 조각품 3점을 구청 청사내 설치 검토	○2005년 쇠부리축제시 제작된 철조각품(4점) 청사내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 추진위원회 개최 • 일시 : '06. 1. 18(수) 14:00 • 참석자 : 울산 생명의 숲 연구 소장 정우규 외10명 • 검토결과 -대다수 위원 청사내 설치 공감 -매년 철조각품 제작에 따른 형평성 문제 예방차원 설치기준 필요 -2~3년 조각품 모아 전체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 무 과 (건 의)		적으로 위치 선정 후 설치 다만, 금년도 쇠부리 축제 후 작년 조각품을 모아 설치 장소 결정	
총 무 과 (건 의)	□ **잔여 공유재산 매각 적극 검토** ○소방도로개설 등으로 3~10평 내외의 공유재산 잔여지가 쓰레기 적치장이 되고 있어 환경개선 측면에서라도 공유재산 잔여지 매각 적극 검토	○2006년 공유재산 정기적인 전수 실태조사시 유휴방치 재산에 대하여는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잔여지 등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 처분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음.	추진중
문 화 공보과 (시 정)	□ **문화예술강좌 관내거주자 강사 채용 확대** ○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 강사 현황을 보면 67명중 관내 거주자가 10여명에 불과한 실정임. 관내 거주자중 강사의 자격요건 미비로 신청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으나, 문화예술강좌는 전문적인 예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강좌 수료자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수강자를 강사로 채용	○문화예술 아카데미 강좌의 강사위촉은 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강사모집 공고, 적격여부심사를 거쳐 강사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위촉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예술 아카데미 강좌의대부분이 전문적인 학문의 지식과 자질을 소유한 강사만이 가능하며,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향후 강사 선발시 관내 거주자를 배려하여 채용하기 바람.	간혹, 실용 및 취미과정을 1년 이상 꾸준히 수강하면 민간에서 발급하는 사범증을 취득하여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나 북구에서는 취득한 사례가 없는 실정임. ○앞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수강생이 강사로 활동하기를 원하고 신규강사 위촉 사유가 발생되면 최대한 북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음	
문 화 공보과 (시 정)	□ **해외 선진지견학 부적절 시정** ○쇠부리축제관련 선진지견학(일본)이 목적과 취지에 어긋남 ○해외선진지 견학시 사업목적에 맞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직원 교육실시 • 일 시 : 2006. 1. 19(목) 17:30 ~ • 장 소 : 문화공보과 • 내 용 : 예산집행시 목적외 사용 금지 및 집행 철저 등	완 결
문 화 공보과 (시 정)	□ **종합적인 문화행사 추진 검토** ○문화행사가 일부 중복적이며 예산낭비의 요인이 많음 ○성격이 비슷한 행사를 통합	○제2회 울산쇠부리 문화축제 개최시 사전에 축제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타부서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문 화 공보과 (시 정)	하여 종합적 문화행사로 추진	축제와 통합개최 등을 협의하여 종합적인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문 화 공보과 (건 의)	□ **각종체육행사 경비의 투명성 확보** ○각종 체육행사시 찬조금을 받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 찬조된 보조금 및 협찬품은 공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와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각종 체육행사시 찬조금 및 협찬품은 받지 않도록 하고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공개 및 정산 철저	완 결
문 화 공보과 (건 의)	□ **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확충 등 종합적 계획수립 검토** ○권역별도서관 및 종합사회복지회관 등 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확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 ○사전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확보 등에 관한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건립을추진하면서 직영 또는 위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후 추진토록 하겠음.	완 결
문 화 공보과 (건 의)	□ **권역별도서관의 특성화 추진** ○권역별도서관의 경우 획일적인 도서관이 아닌 특성화 차별화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공공(중앙)도서관 및 권역별 도서관이 계획대로 '07년에 완료되면 기 수립된 북구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문화공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각 특색있는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보과-7529, '05.3.24)에 의거 공공(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특성화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음.	
문 화 공보과 (건 의)	□ **문화정책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강화** ○문화정책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문화행사의 심의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토록 운영	○2006년 상반기 문화정책위원회 개최시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음.	완 결
지방세과 (시 정)	□ **과오납 환부발생 최소화 요구** ○공장내 청소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여부를 면밀한 법적 검토로 중앙부처에 재협의요구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2" 규정에 의한 청소를 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청소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용구에는 해당되나,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가 아니고, 단지 공장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청소용구"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음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세무행정의 투명성, 민원 최소와 차원에서, 향후 과오납 환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시정 요구	○지방세 과오납 환부건수가 작년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자동차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자동차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 차량사용 일자를 계산하여 선납세액을 납부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환부해야 함으로 환부건수가 증가하였음. 행정착오로 인한 건수는 2005년 1건으로 2004년 25건에 비해 대폭 줄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세제도의 홍보, 정확한 부과고지로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여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지방세과 (건 의)	□ **세금고지서 송달방법 변경 검토** ○과거 세금고지서 송달을 통장을 통하여 하였으나, 현재는 우편송달 방식을 시행 ○통장을 통한 송달방법과 우편송달의 장·단점을 비교하	○지방세고지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통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정확하게 전달된다면 이 전달방법을 제고할 수 있으나,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방세과 (건 의)	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 채택 시행 요구	• 법정고지일(납기개시 5일 전)까지 전달이 불투명 함 • 업무처리절차 복잡으로 인력 및 시간 소요로 행정비 능률 • 통장 개인사정에 따라 본 업무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고 • 우편송달보다 약 9%정도 예산소요가 증가함 • 우편송달을 위한 장비(자동봉합기)불용 등의 문제점 발생됨 ※위의 문제점 등으로 우편발송 방식을 계속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민 원 지적과 (시 정)	□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인 위촉 확대** ○지난 감사때 시정 요구한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인 위촉 운영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민간인 위촉자가 구청 고문변호사 등 행정과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을 위촉 하였다고 판단됨. 따라서 객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전문적 자질	○2005년 10월 규칙개정으로 위촉직 위원은 3인이내로 하되 법률전문가 및 민원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 교수, 북구의회의원으로 민간인 위원을 위촉하여 현재 정수인 9명으로 구성되어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민 원 지적과 (시 정)	을 갖춘 민간인이 확대위촉 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 바람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전에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시 관련 민원인을 참석토록하여 민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최대한 하도록 하고 ○2005. 10. 18일 위촉한 현재 위원회 구성형태로 운영해보고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전문적 자질을 갖춘 민간인을 확대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함	
민 원 지적과 (건 의)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지역 재검토 요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태를 보면 위치별 이용건수가 차이가 많음. 까르푸의 경우 이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설치비까지 부담해야 되므로 이동 설치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주민의 왕래가 잦은 상가나 은행 등으로 이동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기 바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건수 및 이용실태를 위치별 점검해 본 결과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원예농협의 경우 평창리비에르의 재계약기간등과 맞물려 민원발급 수요량이 집중적으로 높았음 ○까르푸의 경우 설치위치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되어 있어 정면입구 고객센터로 재배치 설치하여 주5일 근무 및 관공서 휴무일에 대비한 권역별 민원발급 수요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음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자 치 지원단 (시 정)	□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만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대상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라며, 총사업비 5천만원 중 20%인 1천만원이 자부담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마을단위에서 1천만원의 사업비 확보는 매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자부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바람.	○아름다운마을가꾸기추진사업은 2006년도 당초예산 미반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추경 예산 확보시 사업비 자부담 비율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할 것임	완 결
자 치 지원단 (시 정)	□ **학교급식지원 효율적 추진** ○학교급식지원 품목을 비교적 식품안전도가 떨어지는 농산물 위주로 지원품목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관내 농민들의 농가소득 창출이라는 목적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가에서는 꾸준한 판로만 개척된다면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므로 농협 등과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등을 협의해 보기 바람. 또한 현재 학교 영양사가 납품물품에 대한 검수	○학교급식지원 업무소관 부서 조정 • 우수농산물의안정적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심발달 기여와 농가소득 증대 등 학교급식지원업무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위하여, • 친환경농산물관리,계약재배, 납품물품의 검수등 전문성을 겸비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하도록 소관부서를 조정(농림수산과 업무이관조치 '06.1.23)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별 체계적인 검수시스템도 갖추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람.		
자 치 지원단 (시 정)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 중인 1동 1특화 지역사회 진흥 프로그램 육성사업 성과가 미비하다고 봄.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문화의 집과 차별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영역도 불명확한 실정임. 또한 사설학원 영역을 침해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취지에 맞는 운영의 내실화에 노력하여 줄 것을 바람.	○2006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서 수립('06. 1. 13) • 동별 1동 1특화 지역사회 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자치센터별 기존 프로그램 수강생 및 신규참가자를 대상으로 동아리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봉사활동) 및 반기별 운영실적 점검을 통한 내실운영유도 • 동별 자치센터프로그램 특성화 운영(자치기능 및 지역사회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동별 유사프로그램 통합운영, 사설학원 등으로의 수강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지양, 문화의집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운영 등)을 통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주민자치센터를 지역공동체의 중심축으로 정착시키기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및 노력을 계속하겠음.	
자 치 지원단 (건 의)	□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한 효율적 행정지원 당부** ○민주평통자문회의는 헌법기관으로서 다른 사회단체와는 구별되어 지원 되어져야 한다고 봄. 단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아닌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구체적 제도 장치를 마련,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람.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한 예산확보시 행정적 역할 철저 •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역협의회는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내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책정시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역할을 다 하겠음.	완 결
지 역 경제과 (시 정)	□ **석유류판매업소 불법 상행위시정** ○석유류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용량이 적시된 용량보다 적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음.	○석유류 판매업소 단속 실시 • 석유류 판매업소 불법상행위 시정건에 대하여 2005.12.	완 결

소관부서	사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제과 (시 정)	ㅇㅇ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법상행위이며, 여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담당부서의 안이한 행정도 일조를 하고 있음. 따라서 석유류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상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함.	5~12.16까지 관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일제점검 결과 기존주유소의 경우 20리터 주유시 사용공차 허용범위가±150㎖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0를 기준으로 봉인조치 하여 왔으며, 인건비 부담가중을 사유로 비법정 계량용기를 이용한 배달행위 등의 위법사항은 없었으며 • 일반판매소의 경우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하고 있으며 비법정 계량용기를 사용한 배달행위 및 민원제기 사항 등 위반사항 없음 • 속칭 "말통"배달의 경우 무허가 및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시내에서 우리구 까지 유통될 것으로 추측되어 유사석유 제품의 단속시 경찰 및 소방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수시 순찰을 통하여 배달차량의 차적조회 및 채증확보 등으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로 관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지 역 경제과 (시 정)	□ **노동문화축제에 대한 주민 홍보 강화** ○노동문화축제가 전구민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구민에 대한 홍보에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등 행사홍보 유인물에 행사장소 조차도 잘못 표기 하는 등 구민홍보에 문제점이 많다고 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행사인 만큼 행사 주최측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많은 구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시정하기 바람.	○노동문화축제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민주노총울산 지역 본부가 주최하고 노동문화제 추진위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행사장소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장소가 행사홍보를 위해 사전에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장소가 확정된 후 현수막의 대부분을 수정 내지 철거하였으나 일부 현수막의 경우 수정 철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포스터 및 홍보문을 지역별 게첨 내지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배포를 통해 주민홍보 실시함 ○향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최 측과의 긴밀한 협조체	완 결

소관부서	사점·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제과 (시 정)		계와 대주민 홍보전략을 강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지 역 경제과 (시 정)	□ **재래시장활성화 종합적 계획 수립**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온라인쇼핑몰 및 온라인점포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느 사이트로 접근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음. 구청 홈페이지 등에 링크시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호계공설시장 업종과 온라인 쇼핑몰과의 연관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지만, 시장번영회와 협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또한 특화된 재래시장 육성 등 종합적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시정 요구함.	○재래시장 홈페이지는 중소기업청 출자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제작·운영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호계공설시장 홈페이지는 지역경제과 홈페이지에 링크를 하여 접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온라인 점포(2개소)는 특성상 상인 직접운영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중소기업유통센터 차원에서 전국에 개설한 온라인 점포 홍보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특화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는 시장 구성주체들과 거버넌스적 발전방향 모색, 시장 상인 마케팅 교육 등 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우량시장 견학을 추진하고, 중·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장기 과제로서는 호계공설시장 인근지역을 포함하는 시설현대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검토 추진	
지 역 경제과 (시 정)	□ **솔라프로젝트 및 지열 에너지사업 사후평가·관리 철저** ○솔라프로젝트 및 지열에너지 사업추진 후 전기료 절감 등 사업효과에 의구심이 듬. ○구청사 9월중 전력사용량을 보면 사업전 대비 전력비가 오히려 많이 나오고 있음. 7~8월의 경우 일조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사후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봄. 그리고 청내 화장실 온수의 온도가 너무 높아 민원인 등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지열에너지사업의 경우 지하수 환경오염 문제도 우려되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솔라프로젝트 사업 및 지열에너지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에너지 발생량 및 효과의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3월중 솔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청사내 태양열로 생산된 온수의 잉여에너지로 보건소에 온수 공급(1월중 완료)을 완료한 후 온도조절을 위해 시공사와 협의 추진	추진중

소관부서	지적·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제과 (건 의)	□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 ○지난 임시회시 에너지절약 전열기구 전시회를 추진한다고 보고 했는데 그 추진 상황이 전무함.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실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사업추진 하기 바라며, 공동 주택내 공공시설에 대한 절연 전열기구사업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기 바람.	○에너지 절약전시회를 구 독자적 추진보다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이동 전시회」를 검토하여 우리구의 축제·행사와 병행실시로 홍보 효과성 극대화 추진. ○고효율 조명기기, 인버터, 펌프 등 고효율기기 교체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 고효율 기기 장려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협조 지원 만전.	추진중
사 회 복지과 (시 정)	□ **동별 경로잔치 사후 정산 관리 철저** ○행사개최방법 개선 ○보조금 정산검사 개선 ○경로잔치 행사시기 통일	○구청 및 洞 주관행사는 공선법에 저촉되므로, 洞자생단체에 교부하여 시행 ○보조금, 주민찬조금 등 행사 일체의 경비를 정산검사 ○행사시기를 경로의 달(10월)로 통일하여 일관성 유지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시 정)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내실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분석 및 조치 ○고용촉진장려금 관리감독 철저 ○시설장과 지장협의 관계 개선 ○고용창출을 위한 생산방식 개선 모색	○칫솔포장작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06. 4월경 칫솔 식모기 설치 예정 ○'05. 12월 보호작업장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고용촉진장려금 정상지급 토록 조치함 ○유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력사업자를 통하여 판로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 아이템 개발을 통하여 고용창출에 노력	완 결
사 회 복지과 (시 정)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 강구** ○중장기계획 수립시 확충방안 적극 검토 ○농소어린이집 이전신축 업무추진에 만전	○농소어린이집 이전 신축 • 부지매입 : '06. 2~3월경 • 설계 : '06. 4월경 • 공사 : '06. 5~8월경 ○명촌어린이집 신축계획 • 시기 : 2007년도 • 장소 : 진장명촌지구내	추진중

소관부서	지적·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건 의)	□ **원지 노인요양원건립 만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서적인 인식이 아직 부족함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	○05년 10월 31일 및 11월 8일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였으며 ○06년 1월 11일 지역주민 및 노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구에 소재한 전문요양시설 2개소 견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주민설득작업을 계속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당법인과 공동 노력함	추진중
사 회 복지과 (건 의)	□ **관내거주자 사회복지시설 입소 혜택부여 방안 검토**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는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추가 입소는 어려운 상태이나, 해당시설과 협의하여 차후 입소에 있어서는 관내거주자에게 입소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	추진중
사 회 복지과 (건 의)	□ **보훈단체 지원대책 마련** ○보훈단체 행정적 지원책 마련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되고 있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건 의)	○보훈단체 지원 조례 제정 검토	으며 추가적 지원 관련하여서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지원 현황 등을 검토하여 추진함	
환 경 위생과 (시 정)	□ **효문 배수펌프장 오·폐수 방류에 따른 시정조치**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효문 배수펌프장 가압펌프 4대 중 1대가 고장으로 인해 오·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실이 있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과 대책을 강구할 것	○효문 중계펌프장 관리 책임이 있는 시 수질보전과에 시설관리 철저를 당부하는 협조 공문 발송('06. 1. 17) ○오수방류 시정 요구건에 대한 회신공문 접수('06. 1. 20) • 회신내용 :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및 현장 근무요원 긴급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완 결
환 경 위생과 (시 정)	□ **부적합 농산물 판매 단속 철저** ○관내 부추작목반에서 재배한 부추가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되어 고발 조치되는 경우가 많음. 울산광역시가 공해도시 탈피를 위해 부단히 노력중인데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	○매월 실시하고 있는 식품수거 검사 계획에 의거 엽경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신속수거 검사 시 관내 부추작목반에서 재배하여 출하한 농산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수거 검사할 계획이	완 결

소관부서	사절·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생하고 있어 지역 농산물 전체에 대한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며, 관련 부서(농림수산과)에 농산물 출하 전 농약살포 금지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감독 당부	
환 경 미화과 (시 정)	□ **효문공단 내 장기 방치폐기물 처리 추진** ○효문공단 내 합성수지 원단을 가공하여 자동차 시트를 제조하던 공장이 오래전 부도처리 되어 약 1만5천톤 가량의 산업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장기 방치에 따른 화재발생 등 2차적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므로 중앙부처와 협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바람.	○환경위생과에 방치폐기물관련 주변 환경오염 여부에 조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결과 대기 및 수질오염(침출수)은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고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06년 4월경 토양실태 조사시 오염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1만5천톤의 폐기물 처리 주체관련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폐기물 관리법상 현 토지소유자에게 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함. ○방치 폐기물 처리 관련 관계자 회의에 과장이 2차례('05.5.23, 10.23) 참석하여 국비 무상 지원을 건의한 바 있고 또한 토지소유자에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게도 자체 처리토록 유도 및 설득을 하고 있음.	
환 경 미화과 (시 정)	□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과의 약속 이행 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인센티브 약속 이행에 만전을 기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잃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인센티브로 약속한 중산동 어린이공원 내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 사업비를 다른 곳으로 전용한 사례, 그리고 음식물 처리용량이 당초 계획된 30t/일 이며 2008년 까지는 처리가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이를 초과 처리된다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불이행 하는 것이라고 봄. 부득이 처리량이 늘어나게 되면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용량을 늘리던지 아니면 추가 반입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과 관련 주민들과 인센티브 20억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약속이행을 위하여 2005년 15억, 2006년 5억, 총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 ○문화공보과에서 중산동 어린이공원 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판명되어 사업이 불가하여 부득이 효문운동장 내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였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일일 처리능력이 30톤 설계되어 설치되었으나, 2005. 1. 1부터 시행된 음식물 직매립 금지로 인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였고, 2006. 1. 1부터 울산광역시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운영 방	완 결

소관부서	지적·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법 변경으로 우리 시설 처리 능력인 일일 30톤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환 경 미화과 (건 의)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운영 철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되겠지만 설치장소를 자주 이동시켜 효율적인 감시가 되도록 운영하기 바람.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는 분기별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들의 요구 또는 불법투기 성행 장소 등에 수시로 이전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감시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추진중
환 경 미화과 (건 의)	□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종합적 계획수립 추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행정적 대처방안이 미비하다고 봄. 예를 들면 대규모 개발예정지역 인·허가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각종 환경관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신규 공동주	○남은 음식물의 감량으로 자원 낭비를 최소함은 물론 범 구민 의식 제고 방안으로 "빈그릇 운동"을 민간단체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임. ○음식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북구 음식업지부와 연계하여 감량을 위한 협약 이행 서약 추진 및 음식업주 교육시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택 건설시 음식물처리감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거나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 부분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음식물 감량을 홍보할 계획임. ○음식물 분리배출과 자원 재활용에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 부녀회, 자생단체 등에 자원화시설 방문을 유도함은 물론 "환경투어"시 자원화시설을 견학코스로 삽입할 계획임. ○대주민 홍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음식물 감량 통합 홈페이지를 제작 할 계획임. ○북구에 건립 예정인 신규 공동주택 6개소에 대하여 조사한 바 현재는 공동주택의 브랜드 가치 고급화로 인하여 감량기기를 건축 기본사양에 포함하여 설치하는 추세에 있고 공동주택 허가시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고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 건의함은 물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감량기기에 대한 효율성과 구 재정여건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임.	

소관부서	지적·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통과 (시 정)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철저** ○농소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대량의 토사가 반입되어 토지 무단형질변경 등의 불법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단속해야할 청경들의 감시활동은 매우 미비하다고 판단됨. ○최근 달천 아이파크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주민신고에 의해 이루어 졌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단속원들의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일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내 산림을 훼손하여 텃밭을 일구는 등의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함.	○2006개발제한구역관리 종합계획수립 추진(계획수립 : 2005.12.28) ○단속직원 및 청원경찰 합동교육 • 일시 : 2006. 1. 10(화) 17:00 • 대상 : 8명(청경5명 포함) • 내용 : 청원경찰복무기강확립, 텃밭경작행위 집중단속, 불법행위 단속계획 등 ○단속반 1일 업무협의강화 • 출장전 매일 10분, 출장후 10분 • 1일중점추진상황 확인 등 • 근무일지 확인(1일 결재) • 차량 : 공무수행 스티카 부착운행 ○단속반 주1회 복무교육 • 대상 : 8명(직원 3, 청경 5) • 교관 : 도시교통과장 ○달천아이파크일원 불법행위 단속 • 정부합동감사시 지적, 불법발생	추진중

소관부서	지적·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통과 (시 정)		• 1일 1회이상 순찰(청경1명 • 행위허가시까지 지속순찰 ○주택지 인근 텃밭 훼손 단속 • 안내판을 설치 : 2006.1월 (10개) • 집중단속 및 홍보 : 2006.2~3월 ○개발제한구역 명예감시원제 운영 • 2006. 3월 : 20~30명 위촉 운영	
도 시 교통과 (시 정)	□ **대형트럭 불법주차단속 강화** ○최근 송정동 및 농소1동 호계구획정리지역 도로노면에 많은 대형트럭들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법주차하고 있어 자칫 주민들의 야간통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 대형차량 유료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 바람.	○2006년도 영업용 화물자동차 단속계획수립추진 • 시기 : 분기별 1회 집중단속 -1/4분기 단속 : 2006. 2월중 • 대상 :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 필요시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대형차량 유료주차장 조성 • 현재 효문동 소재 울산화물자동차터미널(주) (대표 박영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추진중

소관부서	지적·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 구에서 대형차량유료주차장을 조성 하기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도 시 교통과 (건 의)	□ **약수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건의** ○ 약수초등학교 부근 횡단보도가 있는 7번 국도는 오후부터 새벽까지 대형차량의 과속운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임. 기존의 무인단속카메라로 교통사고 위험성을 현저히 줄였으나 최근 무인단속카메라가 철거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무인단속카메라 재설치를 검토 해주기 바람.	○ 울산지방경찰청에 중산동 약수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건의 공문 발송 (도시교통과 -21980, 2005.12.23)	추진중
도 시 교통과 (건 의)	□ **명촌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 요구** ○ 명촌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한 후 인도 부분 난간만 설치하고 보도 블록에 대한 정비는 없었음. 따라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인 만큼 자전	○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조합에 명촌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 요구 공문발송 (도시교통과-21976, 2005.12.23)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통과 (건 의)	거전용도로 노면 재질로 어린이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동물모양의 그림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재정비 조치 요망.		
건 설 과 (시 정)	□ **원지삼거리~농소운동장 구간 자전거 전용도로 시정요구** ○ 원지삼거리~농소운동장간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하여 당초폭 2m로시행한다고 하였으나, 그폭이 적게 시행된 사유와 가로등 인한 경운기 운행에 저해되어 가로등 이설을 요구하며,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재검토 요구	○ 원지삼거리~농소운동장간 자전거전용도로는 당초설계와 같이 폭 2m로 개설되었고, 의회 보고과정에서 자전거 도로 전폭이 아닌 순수폭이 2m로 보고된 것이며, 가로등 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농기계와 주민이 함께 통행 가능하도록 최적의 위치에 가로등을 설치하였음	완 결
건 설 과 (시 정)	□ **동천강수해복구사업 재검토 요구** ○ 태풍나비로 인해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동천강 조수 호안공사가 400mm 가량의 폭우를 견디지 못하	○ 동천수해복구공사(매미)는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수해로서(주) 창홍건설에서 2차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 설 과 (시 정)	고 유실되었는데, 또다시 40억원의 국비를 요구 재정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계획 이라고 봄. 동천강 수해복구보다는 지역소하천 정비사업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동천강 수해복구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함	구간50,000천원의 사업비를 무상지원, 복구완료하였으며, 차후 동천 가꾸기 사업, 하천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등으로 복구 완료할 예정임.	
건 설 과 (건 의)	□ **각종 공사시행시 주민의 감시감독 역할 유도** ○각종공사 시행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장의 경우 관리감독이 잘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동별 공사시행시 해당지역 구의원이나 통장등 지역주민들에게 공사내역을 상세히 알려 감시감독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람	○각종 공사시 해당지역의 동으로 공사내용을 통보하고 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공사참여를 유도하여 공사시행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 결
농 림 수산과 (시 정)	□ **중산어린이공원 조성 만전** ○중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구청과 주민들과 약속사항인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관련 문화재협의결과 문화재발굴이 선행된 후 검토할 사항으로 불가하고 인근아파트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농 림 수산과 (시 정)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놀이공원 놀이기구를 다양하게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단지와의 연계성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할 어린이공원 조성시 다양한 놀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농 림 수산과 (시 정)	□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철저** ○축산물과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은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단속실적이 전무함. 농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감. 중국산 농산물 유통의 보편화, 수입쌀개방의 본격화 등 우리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원산지표시 지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람	○현재 수입농산물 식별 능력 부족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미흡하나 지속적으로 원산지 식별능력 연찬 및 기관합동 단속 실시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단속 실시 • 원산지 단속 계획 -시기 : 분기별, 명절 전·후 -단속반 편성 :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으로 효율성 제고	완 결
농 림 수산과 (시 정)	□ **저인망어선 불법어로 행위 지속적 단속요구** ○현재 어획량의 감소로 어민들이 조업을 중단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유일하게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인 울주군 울기등대에서 110도 2,000미터 지점	완 결

소관부서	사항·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농 림 수산과 (시 정)	어획량의 감소원인은 수자원 감소의 요인도 있지만 저인망어선의 불법어로행위 또한 심각한 원인이라고 봄. 따라서 저인망어선의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부터 경상북도의 경계까지는 어업 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울산시 연해에서 조업하는 것은 처벌할 규정은 없으나,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적발하여 사법처리하겠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울산해양 경찰서 및 울산광역시와 긴밀한 협조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음.	
농 림 수산과 (시 정)	□ **용배수로 설치공사 추진 철저** ○신명들 용배수로 설치공사가 당초 사업계획 물량과 다르게 추진 완료되었음. 앞으로 사업추진시 물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에 편성하기 바라며, 지가상승으로 지주들의 토지사용 승낙 협조가 없을 경우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치하시기 바람.	○용배수로 규격 변경사유 • 공사설계시 지역주민(신명통장외)에게 현장여건 설명 -용배수로 456m를 정비할 경우 잔여구간 486m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당초 : 용배수로(0.6×0.5) L=456m -변경 : 용배수로(0.4×0.4) L=770m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 사업추진 과정에 사유지 편입구간에 대한 사용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752m 정비완료 (잔여구간 L=190m) ○ 향후계획 • 사업비 확보시 현장여건에 맞도록 사업물량을 정확히 산출 하겠으며, • 토지사용 동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동의서 미확보시 사업비 반납 등의 조치를 하겠음.	
농 림 수산과 (시 정)	□ **진장·명촌 택지개발지역 부 담금 부당징수 시정** ○ 진장·명촌 택지개발지역내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개발조합에 부담시키지 않고 개별 건축주에게 부담의무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건축주의 부담의무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개발조합과 협의 시정조치 하기 바람.	○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대상자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납입기한내 부과금을 미납하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개별건축허가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주가 선납하고 조합이 사후 정산하였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조합측과 협의하여 '06. 1. 25한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농 림 수산과 (시 정)		완납예정이며 미납시 지구내 개별 건축허가를 포함한 사업 중단 등 조치하겠음.	
농 림 수산과 (시 정)	□ **농소 호접란 수출 추진 철저** ○호접란 농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추진된 수출 지원사업이 실제적으로 국내 농가의 매출실적은 미진하고 미국 현지 코러스 수출 물량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사업목적에 맞게 국내농가의 이익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수종의 품질개발 등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람	○농가 재배관행 및 시설여건에 따라 품종 갱신이 어려움. 미국수출전진기지 시설확충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수출물량 확대로 국내 농가의 소득도 점차적으로 증가될 전망 • 수출전진기지 시설확충 -면 적 : 3,000평 -사 업 비 : 1,100백만원 -사업기간 : '06. 2 ~ 12월 -수출물량 확대계획 : 12만본 → 32만본	완 결
농 림 수산과 (시 정)	□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 지속적 단속 요구** ○현재 농지에 대한 불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각종 공사장의 흙을 농지에 반입하여 불법적으로 성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철저	○농지법시행령제3조의2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임. 따라서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농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농 림 수산과 (시 정)	한 관리와 단속이 요구되며, 또한 행정적 고발 조치와 더불어 원상복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바람.	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후의 농지 상태가 더 양호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 행위로써 농지전용(또는 일시사용)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2005년도 5건), 농지의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조치로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음	
농 림 수산과 (건 의)	□ **산불감시원 유류비 지원 검토** ○산불감시요원 인원이 대폭 감소되어 개인별 활동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유류비 등의 부대경비는 어느정도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예산이 허락된다면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산불감시요원 인원이 대폭 감소되어 개인별 감시구역이 늘어 초소근무보다는 기동순찰을 위주로 근무해야 하므로 기동순찰 요원 유류비 지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 축 과 (시 정)	□ **방치된 기계식주차장 처리방안 모색**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지	○기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 축 과 (시 정)	적된 기계식 주차장 관리개선 여부를 최근 살펴본 결과 여전히 대부분의 시설이 작동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출입을 못하게 막아 놓고 있었음. 기계식주차장 설치 목적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가 목적이지만 현재 잦은 안전사고로 인해 건물주들이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며, 법적 규정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시설이라고 보면 무방할 것임. 따라서 행정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중앙부처와 협의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람.	경우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20대 미만의 소규모 기계식주차장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위임조항을 신설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광역시에 제도개선 건의('06.01.20.)	
건 축 과 (시 정)	□ **달천그린카운티 입주민 불편 시정** ○달천그린카운티 주진입도로는 4차선인데 반해 단지별 도로는 교행할 수 있는 중앙 분리선도 없고, 더구나 인도조차도 확보되어 있지	○8m 미만의 단지내 도로의 인도설치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단지 내 인도 확보방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 축 과 (시 정)	않은 상태로 어떻게 준공인가를 받았는지 의문이 생김. 또한 달천그린카운티 분양 설명회시 5차단지로 홍보하던 부지가 달천초등학교 부지로 변경되어 있어 분양계획과 같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바람.	안을 요구함. ('05.12.11.)	
건 축 과 (시 정)	□ **효문공단내 율동마을 주거환경 개선 요구** ○효문공단내 율동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포함 문제를 울산광역시와 협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오랜 기간동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난 감사에 이어 다시 한번 요구하고자 함. 울산광역시와 재차 심도있는 협의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함.	○도시교통과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을 조속히 광역시에 건의토록 요청 ○율동부락은 준공업지역(국가산업단지)에서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지역으로 변경중에 있음.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 축 과 (건 의)	□ **적정한 아파트분양가 책정 유도** ○최근 아파트 분양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서민들 내집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구청에서 분양가에 대한 일부조정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정한 분양가 책정에 따른 구청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래 줄 것을 요구함.	○사업승인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 시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예정.	완 결
재 난 관리과 (시 정)	□ **재해복구사업 추진 만전** ○내실 있는 복구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재해복구사업 시행부서(건설과, 농림수산과, 지역경제과)에 공문 발송 • 내실있는 재해 복구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재난관리과-91, '06.1.4)	완 결
재 난 관리과 (시 정)	□ **산업로 및 효문공단 침수에 따른 대책강구**	○효문동 일원 산업로(국도7호선) 및 효문공단지역 관할 행정기관 및 부지 조성사업 중에 있는 한국토지공사에 침수에 따른 대책요구 공문 발송 • 재난관리과-85, '06.1.4 • 재난관리과-92, '06.1.4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재 난 관리과 (시 정)		• 발송처 :울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종합개발본부)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재 난 관리과 (시 정)	☐ **재해·재난대비 비상체계 운영철저**	○기상특보 대응회의 개최 • 일 시 : 2005.12.9 10:00 • 장 소 : 재난관리과 • 참석자 : 정보관리담당 외6명 • 회의내용 -NDMS 운용 -음성자동통보시스템 사용요령 등 -공휴일 및 야간 기상특보 시 대응요령 -부서별 임무사항 등 -겨울철 비상소집 계획 ○풍랑위험 안내표지판 설치 • 일시 : 2006.1.11 • 장소 : 4개소(정자2, 우가1, 어물1)	완 결
재 난 관리과 (시 정)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수원지 파괴, 전쟁같은 유사시 상수도 시설이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비상용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재 난 관리과 (시 정)		(음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시설로서, ○비상급수시설 관련지침에 따라 매년 4회의 수질검사(시 보건환경연구원)와, 매월 2회 이상의 수시 확인으로 주변청소 등 오염방지를 위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우리구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의 사용약품(메탐소디움액제-상품명 : 킬퍼)은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의 검사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토양침투율은 10㎝미만이며 7일이내 기화되는 것으로, 훈증처리를 위하여 집재된 소나무에 약품처리 후 덮는 비닐이 훼손되더라도 악취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있음	
보건소 (시 정)	□ **보건진료소 운영 철저** ○신명진료소의 진료건수가 어물진료소 보다 적으며 단순한 진료의 질 서비스 문제 등의 요인이 있어 주	○진료소 행정지도 점검 및 교육 • 일시 : 2005. 12. 17 • 장소 : 신명, 어물진료소	완 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보건소 (시 정)	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것	• 내용 : 서비스 향상 및 행정지도 ※ 점검결과 : 2개소 적합 - 진료소를 찾는 구민이 만족토록 진료서비스 향상 지도	

제 6 장
기타의정활동

제 1 절 5분 자유발언
제 2 절 진정 · 건의서 처리현황
제 3 절 주요의정활동사항
제 4 절 의정활동일지

제1절 5분 자유발언

□ 김진영의원

○ 발언일시 : 제88회임시회 제1차본회의(2006. 5. 2)

○ 건　　명 : 효자 송도선생 정려비 이전에 관하여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김진영의원 입니다.

열악한 재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 권한대행 김광오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북구뿐 아니라 울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역사상 효자로서 가장 이름이 높으신 효자 송도선생 정려비 이전과 관련하여 당초 세워졌던 우리 관내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자 함입니다.

효자 송도선생은 조선 세종 때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에 살았던 효자이자 울산지역 최초의 생원입니다.

병든 부모를 10여년 동안이나 정성껏 간호했으며, 1년 사이에 부모가 잇달아 돌아가시자 몸소 흙과 돌을 져다 무덤을 만들고 유교식으로 6년간 시묘살이를 하면서 정성껏 받들어, 이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 표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선생의 효성은 중국에까지 알려져서 명나라 신종으로부터 어제시와 홍문을 하사 받았으며, 효문(孝門)동이라는 마을이름도 이러한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정려비는 본래 효문동에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에 파손되었기 때문에, 영조 13년에 다시 만들어 지금의 우정동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고장의 효자로서 이름을 드높인 송도 선생의 정려비가 당초 세워진 효문동이 아닌 중구 동헌으로 이전 된다는 것이 저로

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마땅히 지역문화재의 보존차원에서 당초 세워진 장소로 고증을 통하여 이전되든지, 효문동이라는 동명에 맞게 그 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문화재가 이전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북구의 인물로 익히 알려진 송도선생의 정려비를 북구지역에 이전한다면 문화복지 북구로써 주민의 자긍심 또한 한층 고조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집행부에서는 정려비가 중구 동헌으로 이전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지역 문화재는 우리가 손수 가꾼다는 마음으로 정려비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심하여 정려비가 북구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지역의 문화는 우리가 앞장서서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한 작은 노력이 북구 주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도 있듯이 문화는 후손대대에 본보기와 교훈이 되어 우리 지역의 정신적 지주로써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문화북구로써 손색이 없고 북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송도선생 정려비는 당연히 북구 지역에 이전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 넋을 기리고 우리 부모, 형제, 이웃과 나라에 대해 효 사상을 한층 발전·계승시키는 자리에 마땅히 우리 지역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구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북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북구의 역사 인물로 널리 알려진 송도선생 정려비가 북구 지역에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북구 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한편으로 북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 권한대행 김광오 부구청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북구청 전 공무원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1. 처리현황

(2004. 7. 1 ~ 2006. 6.30)

연도별	접 수	처 리 결 과			
		계	완 료	추진중	불 가
계	26	26	26		
2004	5	5	5		
2005	14	14	14		
2006	7	7	7		

2. 2004년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계	5건		
○ 2004. 7. 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건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울산북구 지회 외 5개 단체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확대 건의	○2004. 7. 13 ○각종 사회단체가 설립목적에 맞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체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예산은 동결되어 있어 신규지원은 어려움. 정부차원에서 지원토록 건의.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 2004. 8. 11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평창리비에르 2차 주민자치회 정기락	○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건의	○2004. 8. 20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기 시행중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법령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2004. 8. 13 ○농소1동 소방도로 개설 건의	수동리 657-15 손대호외 307명	○농소1동 수동마을(5,6통) 태양그린빌라 868-1번지에서 구.7번국도까지 L자형에서 직선으로 약 20m, 폭 10m 도로 개설 요망	○2004. 8. 2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향후 주변지역의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 검토후 우리구 제정 여건 감안하여 검토 반영.
○ 2004. 11. 16 ○"통시미 뜰" 도시계획 변경 건의	호계동 377 박관수외 90명	○호계동 218번지 일원 통시미 뜰을 도시기본계획에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 요구	○2004. 11. 24 ○2021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이 2002. 12. 31일자로 승인되어 현재로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어려움이 있음.
○2004. 11. 19 ○소방도로 개설 건의	염포동 392-5 박영길외 10명	○염포동 392-3번지 일원 소방도로 조기 개설 요구	○2004. 11. 20 ○구 재정상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차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3. 2005년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계	14건		
○2005. 1. 25 ○무지개 1,2차아파트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무지개 아파트 송기남	○신천교하부도로 폐쇄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 해소대책 요구	○2005. 1. 31, 2. 17 ○도로 및 교량확장 완료후 교통신호기 운용으로 교통체계가 가능하여 별도의 교량 하부도로 설치는 공간협소 및 도로구조상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어려움.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조기개설	○예산감소와 전국체전 준비에 많은 예산의 소요가 불가피함.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임.
		○무지개1차아파트 진입로 확장 요망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시 포함하여 추진.
		○노점상 철거 요구	○단속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
		○우천시 노면 배수불량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하므로 우기시 재확인하여 조치.
		○신천소공원내 체육시설, 벤치, 등나무 그늘막 설치	○체육시설물과 등의자 등 주민휴식공간 8개소 기설치. 등나무 그늘막 설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불가.
		○102동 측면 소하천 악취발생 개선요구	○특이한 악취발생 및 오수유출은 확인 못함. 향후 수시 점검 강화.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 2005. 1. 27 ○동해남부선 노선 계획 변경 건의	상공회의소 회장 이두철	○동해남부선 "울산~포항간 복선전철" 노선구간이 연암공단 우회토록 노선변경 건의	○2005. 1. 31 ○대형공장 연접 등의 문제가 있어 기본설계 과정에서 인근 공단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부 선형 조정 설계중.
○2005. 3. 28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건의	LG진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연암초등학교 앞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2005. 3. 29 ○연암초교 앞 도로는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으며, 연암초교 일부지역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건은 200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어 빠른 시일내 추진토록 노력하겠음.
○ 2005. 5. 9 ○동해남부선 노선 계획 변경 건의	덕산하이메탈(주) 이준호	○동해남부선 "울산~포항간 복선전철" 노선구간이 연암공단 우회토록 노선변경 건의	○2005. 1. 31 ○대형공장 연접 등의 문제가 있어 기본설계 과정에서 인근 공단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부 선형 조정 설계중. ○2005. 6. 15 효문공단 통과구간 피해예상 민원 협의 (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용역업체)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 2005. 7. 4 ○법면 배수로 보강공사 요청	염포동 999-13번지 초원빌라 입주자대표 유현기	○염포동 소재 초원빌라 3동 법면 배수로 공사 및 하부 배수로 내부균열 보수 요청	○ 2005. 7. 13 ○ 법면아래 개거배수로의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복개 요청 건은 우수기시 원활한 우수배제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법면옹벽 및 산마루 측구에 대한 보강 요청 건은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후 처리하도록 하겠음.
○2005. 7. 11 ○신천교 하부도로 개설과 횡단보도 설치 및 위치 변경 요청	농소1동 주민자치 위원장 안재호외 1128명	○신천교 하부도로 조속개통 ○귀영아파트입구 신호등 신규설치 ○성우아파트 후문 횡단보도(신호등)를 성우아파트 정문으로 위치 변경	○2005. 7. 15 ○ 신천교 하부도로 개설은 교량 확장후 교통신호기 운용 체계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하부도로 설치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어려움. ○귀영아파트 입구에서 인근 교차로까지 거리가 근접(약 50m)하여 출.퇴근시 차량이 집중할 경우 교통소통에 악영향 우려. ○성우아파트 정문과 인근 교차로 간격이 약 25m로서 별도의 신호기 설치시 교통소통 저해 우려. 향후 조정 검토하겠음.

접수일자 및 처리부서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 2005. 7. 26 ○신천삼거리～매곡간 도로확장공사 조기시행 건의	김재근의원 외 3,039명	○신천삼거리～매곡간 도로확장공사 조기시행 건의	○ 2005. 7. 27 ○ 올해 8월 준공예정인 농소 구국도 확장공사와 2007년 6월 준공예정인 배면도로 3구간이 개통되면 다소 교통정체의 해소가 예상됨. ○시 재정여건상 매곡진입로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음.
○2005. 9. 8 ○코아루아파트 시공변경 시정 건의	화봉동 816-1 정대희	○코아루아파트 단지내 경비실, 유적전시관 등 시공변경 시정 요구	○2005. 9. 14 ○부대시설인 경비실, 주차장 출입구 등은 입주자모집 승인 전에 기 결정된 사항이며, ○유적전시관 이전 및 형태변경 가능여부는 검토할 계획임을 시공사로부터 통보 받음.
○2005. 9. 12 ○신동아파트 진입로 폐쇄에 따른 진입로 확보 및 신호등 설치 건의	신천동 430-1 신동아파트 입주자대표 윤경호외 638명	○신동아파트 진입로 확보 및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요구	○시 교통기획과 및 울산지방경찰청에 요청,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 2005. 9. 27 ○쌍용아진아파트 2, 3단지 사이도로 차없는 거리조성 건의	쌍용아진아파트 2, 3단지입주자대표외 180명	○쌍용아진아파트 2,3단지 사이도로를 주민 휴식공간 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없는 거리 조성 건의	○ 2005. 10. 4 ○본 도로의 주변지역 일원은 대단위 공동주택이 형성 또는 계획중이고, 장래 많은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차없는 거리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2005. 10. 4 ○난 개발로 인한 식수(지하수) 고갈 대책 요구	매곡동 422 현대파크 101/909 이기주외 180명	○매곡동 일원 난 개발로 인한 식수대책 방안 강구 요청	○2005. 10. 5 ○간이상수도 취수원과 교회와의 표고차가 심해 자연유하식 간이상수도 급수는 불가하나, 상본 북부사업소에서 신천천 주변 압력관측중에 있어 지방상수도는 최적의 관망 형성후 급수가 가능할 것임.
○2005. 12. 1 ○산업로 배면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범진약수빌라 입주민 피해 진정	중산동 121-1 범진약수빌라입주자협의회	○산업로 배면도로 개설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대책 요구	○2005. 12. 8 ○도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주민생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가설방음벽, 방진막 등을 설치하였으며, 법적기준에 준하여 시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 2005. 12. 8 ○달천 I-PARK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진정	천곡동 510-1 박경동 외 25명	○달천 I-PARK 인근 지역의 주택훼손 및 가축피해,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 소음·진동피해 시정 요구	○ 2005. 12. 13 ○ 옹벽설치로 인한 일조권 침해는 옹벽을 계단식으로 축조 검토하고 있으므로 개선되리라 보며, ○그외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시정요구는 구에서 수차례 걸쳐 소음 등을 실시한 바,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였음.
○ 2005. 12. 12 ○양정동 송전탑 이설 및 철거	송전탑 이설 및 철거를 위한 양정동 비상대책위원회	○양정동 송전탑 신설 공사 백지화 요구및 기존 송전탑 이설 요구	○ 2005. 12. 15 ○ 송전철탑 공사중지 명령('05. 12. 15) ○의회 주관 간담회('06. 3. 6) ○구청(도시녹지과) 주관 간담회('06. 9. 8) ○간담회 결과 : 13-1호기를 13호기 부근으로 위치이동 합의(주민, 한전,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조합)

4. 2006년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계	7건		
○ 2006. 1. 12 ○ 양정동 송전탑 이설 및 철거	송전탑 이설 및 철거를 위한 양정동 비상대책위원회	○양정동 송전탑 신설 공사 백지화 요구및 기존 송전탑 이설 요구	○ 2006. 1. 19 ○ 송전철탑 공사중지 명령 ('05. 12. 15) ○의회 주관 간담회 ('06. 3. 6) ○구청(도시녹지과) 주관 간담회('06. 9. 8) ○간담회 결과 : 13-1호기를 13호기 부근으로 위치이동 합의(주민, 한전,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조합)
○2006. 1. 27, 3. 31 ○신천삼거리~ 매곡간 도로확장공사 조기시행 재촉구 및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 우회도로 개설촉구	매곡동 주민공동대표 이진국,박종섭,이수용,오수용외 3,039명	○신천삼거리~매곡간 도로확장공사 조기시행 재촉구 및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 우회도로 개설촉구	○2006. 1. 31, 4. 6 ○매곡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06.9.28~10.27 : 보상협의 • '06.11월:2차, 3차 보상협의 추진 • '06.12월:울산광역시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 '07.1월:공사착공 예정 • '07.6월:공사준공 예정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대우푸르지오를 비롯한 일대에 수시 지도점검 실시 및 교통체증 발생시간대에 출입차량 배차시간 조정 요구, 시행사의 아파트상가분양 공고 신고 반려 및 시행사 고발
○2006. 2. 14 ○매곡천변 폐천부지 불하 건의	매곡동 795-71 박만생외 24명	○매곡동 신기마을 일원 폐천부지 불하 건의	○2006. 2. 17 ○신기부락 일원 폐천부지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도로개설 이전에는 매각이 불가하며,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않은 폐천부지는 보존부적합 토지는 매각 가능하나 농경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기득권을 인정하므로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006. 2. 17 ○염포동 불무천 하천정비 공사 조기시행 촉구	성원상떼빌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정창윤	○성원상떼빌 단지상부 불무천 토사유입 방지공사 조기시행 촉구	○2006. 2. 20 ○불무천 하천정비공사 • 기간 : '06. 3. 8~7. 28 • 내역 : 침사지 2개소외 3 • 사업비 : 494,745천원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6. 3. 23 ○송도선생 정려각 이전 설치에 따른 건의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원장 이병우	○현재 중구 우정동에 건립되어 있는 송도선생 정려각 이전시 효문동 지역으로 이전토록 건의	○2006. 5. 2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이며 관리단체인 연안송씨 효자공파문회에서 이전장소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세부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할 경우 가능.
○2006. 3. 31 ○신천삼거리~ 매곡간 도로확장공사 조기시행 재촉구 및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 우회도로 개설촉구	매곡지역 공동비상대책위원회장	○신천삼거리~매곡간 도로확장공사 조기시행 재촉구 및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 우회도로 개설촉구	○2006. 4. 6 ○매곡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06.9.28~10.27 : 보상협의 • '06.11월:2차, 3차 보상협의 추진 • '06.12월:울산광역시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 '07.1월:공사착공 예정 • '07.6월:공사준공 예정 ○대우푸르지오를 비롯한 일대에 수시 지도점검 실시 및 교통체증 발생시간대에 출입차량 배차시간 조정 요구, 시행사의 아파트상가분양공고 신고 반려 및 시행사 고발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6. 4. 7 ○통장해임 건의	명촌동 평창리비에르 2차 노인회장 김대석 외 32명	○효문동 25통장 해임 건의	○2006. 4. 10 ○부재자 투표와 관련한 내용은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 ○통장의 직무수행 능력 등에 관한 문제는 동 자체조사 결과 해촉사유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향후 통장교육 강화하겠음.

제3절 주요의정활동사항

1. 공무원노동조합노동3권보장입법촉구결의안

가. 발의자 및 일자 : 류인목의원 외2명 (2004. 10. 25)

나. 의결일시 : 2004. 10. 26 (제76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북구의회는 노동자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전국 9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적법한 노동3권 보장요구,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활성화가 가질 공직사회 개혁을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정부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법안의 제정을 둘러싸고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함

○정부는 특별법 형태의 "공무원조합법" 입법발의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과 단체행동, 단체교섭 등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위의 결의가 우리 북구주민은 물론 전국 90만 공무원노동자와 양식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정부측에 성실한 대응을 촉구함.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바. 조치사항 : 국회, 행정자치부, 노동부, 울산광역시북구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울산지역본부북구지부 결의문 이송

2. 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결의안

가. 발의자 및 일자 : 윤임지의원 외2명 (2004. 12. 15)

나. 의결일시 : 2004. 12. 20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특정어업의 금지구역)제4호 기선선인망 〔기선권현망〕 어업금지구역의 별표4 제10호가 '울산 동구 방어동 울기등대에서 110도 2천미터의 점' 의 규정이 수십년간 그대로 유지돼 옴으로써

○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 어업활동의 제약 등 시대적, 환경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 왔지만 동령은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구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어구훼손은 물론 자원 남획으로 지역어업인들과 기선권현망어업인들과의 잦은 마찰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북구의회는 지역별 형평성 및 어업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북구지역 연안해상도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 보호령 제4조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함.

라.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는 입법당시 어업여건과 현재의 여건이 변화한 만큼 현실성 있게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영세한 우리구 연안어업인을 보호할 것을 촉구함.

○ 2002.11. 우리구에서 동령 제4조제4호의 별표4제10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연안에 대하여도 조업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 을 요구하여 「해양수산부 개정시안」에 반영되었으나,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선권현망수협의 반발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던 내용이 당초 요구안대로 개정되도록 촉구함.

마. 심의결과 : 원안 가결

바. 조치사항 : 국회, 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북구청 결의문 이송

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철회 촉구결의안

가. 발의자 및 일자 : 윤임지의원 외2명 (2005. 5. 26)

나. 의결일시 : 2005. 5. 27 (제8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지난 3월 2일『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기피대상이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급기야 지난 4월 2일 경주시의회에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및 원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감으로 인해 울산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철회촉구에 따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해안에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 단지화의 즉각적인 철회 촉구

○핵폐기장과 핵발전소는 따로 뗄 수 없는 같은 사안임으로 편의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 실시

○정부는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부추겨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

○한 세대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핵 쓰레기장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까 심히 우려되므로 핵폐기물관리·처분에 관한 장기로드맵을 작성하고 지역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력 촉구.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바. 조치사항

○국회,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회, 경북경주시, 경북경주시의회 결의문 이송

4. 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파업 징계최소화 촉구결의안

가. 발의자 및 일자 : 김대영의원 외2명 (2005. 12. 26)

나. 의결일시 : 2005. 12. 27 (제86회 제2차 정례회 제18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울산광역시북구의회는 지난 2004년 10월 26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보장 입법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음.

○공무원의 파업은 현실적인 법 아래에서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지만 수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엄청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에 동참하여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려 했는지를 우리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임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또 다른 문제의 불씨를 만들기보다 시와 구·군간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공직사회의 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해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올바르게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징계의 중요한 잣대로 삼길 바람.

○울산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하고, 울산시민을 위해 더욱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길 바람.

○특히, 지도부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사익이 아닌 공직사회의 개혁이라는 공익에 희생되지 않도록 징계를 최소화하길 바람.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바. 조치사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북구청 결의문 이송

5. 경주시 방폐장 유치 철회를 위한 의정활동

○ 2005. 5. 27 : 제82회 임시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유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윤임지의원 외 2명 발의)

○ 2005. 6. 13 :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방폐장 유치 철회 촉구 결의문 전달

○ 2005. 6. 29 : 강동주민, 경주 방폐장 유치반대 궐기 대회 참석

○ 2005. 9. 5 : 윤임지의원 경주시 방폐장 유치 관련 울산 mbc와 인터뷰

○ 2005. 11. 1 : 방폐장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하는 울산지역 기자회견

○ 2005. 11. 3 : 방폐장설치의 원칙적 반대와 북구의 주민투표 무효·주민투표법 16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기자 간담회 개최

○ 2005. 11. 10 : 경주 방폐장 유치 철회를 위한 울산대책위(준) 1차 회의 개최

○ 2005. 11. 11 : 경주 방폐장 유치 철회를 위한 울산대책위 기자회견

및 간담회

○ 2005. 11. 25 : 경주 방폐장 유치관련 헌법소원 접수 전체 집행위원 회의 참석

○ 2005. 11. 28 : 울산대책위 경주 방폐장 유치 관련 헙법소원 접수 기자회견

○ 2005. 12. 6 : 윤임지의원 방폐장 문제 관련 ubc와 인터뷰

6. 울산국립대학교 북구유치를 위한 의정활동

○ 2005. 12. 13 : 국립대학교 북구유치 추진단 창립총회 개최

○ 2005. 12. 15 : 국립대학교 북구유치 추진단 임원회의

○ 2005. 12. 15 : 울산국립대학교 북구유치 추진단 기자회견

○ 2006. 1. 4 : 국립대학교 북구유치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울산국립대학교』 북구유치 기자회견문

우리 북구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및 「국립대부지 선정」에 대한 시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해 왔으나, 「혁신도시」가 중구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선정상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평가의 공정성에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110만 울산시민이 염원해 왔던 「고속철도 울산역」을 "울주군"에 유치하여 역세권개발이 가시화되고 있고, 「혁신도시」의 경우 "중구"로 확정지어 명실상부한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울산국립대학교」는 "북구"에 건설하여 시가 추진하는 오토밸리, 모듈화단지 등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cluster) 집적화를 통하여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국립대부지 선정」이 미래 울산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로 선정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왜, 북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북구가 최적지임을 울산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우리 북구는

먼저, 많은 가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경제성이 뛰어나다

○ 우리구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농소1동의 창평지역과 농소3동의 상안, 달천지역은 많은 가용 토지와 함께 시가지와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 특히, 후보지 구비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필수요건 뿐만 아니라 진입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개설이 용이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타 구·군 후보지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둘째, 접근성이 뛰어나다

○ 도시간선도로인 국도 7호선, 국도31호선과 산업로 배면도로, 동서외곽 순환도로 등 울산전역과 30분 이내에 연결되어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울산~포항간 고속도로와 산업도시고속도로가 통과하여 주변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 그리고, 유일하게 울산공항이 입지하고 있고, 동해남부선(부산~포항)복선전철화가 진행 중이며, 고속철도 울산역 ~ 북구 효문역까지 경전철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와 같이 북구는 항공과 도로, 철도, 경전철 등 광역교통망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으로 대학 유치의 최적지이다.

셋째, 무한한 발전가능성이다.

○ 북구 전역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기반시설의 확충 및 설치 여건이 용이하며 부대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대학설립과 동시에 대학 배후도시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오토밸리조성사업과 모듈화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어 21세기 대학이 추구하는 산·학·연 협동체제가 이루어지기 쉽고, 대학의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축적된 기술 그리고 혁신도시의 연구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울산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넷째,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반하여 울산에 「국립대 신설」이 가능했던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국립대가 우리 북구에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

○ 넓은 면적에 비해 저개발에 따른 주민생활의 불편, 낮은 재정자립도 등은 지역균형발전과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북구에 건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울산시 전역의 상호보완적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북구는 많은 가용부지와 경제성, 우수한 접근성, 발전가능성, 울산의 균형발전 등으로 「울산국립대학교설립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후보지 구비요건'을 두루 갖춘 대학설립의 최적지임을 울산시민들에게 밝힌다.

그리고, 북구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자「울산국립대학교 북구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여 울산시민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그 당위성을 알릴 것이며, 마지막으로「국립대부지 선정」이 울산시민들에게 공개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2005. 12. 15

울산국립대학교 북구유치 추진단 일동

공동대표 이병우 북구문화원장

하인규 북구의회의장

강석구 시의회내무위원장

제4절 의정활동일지

2004년도

일 자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7. 1(목) 05:00	중국 장춘시	자매결연	○중국 장춘시 녹원구 방문	
7. 1(목) 14:00	부산시청	토 론 회	○지방분권 대토론회	
7. 1(목) 16:00	롯데호텔	취 임 식	○국제로터리 3720지구 총재 취임식	
7. 7(수) ~7. 16(금) 〈10일간〉	본회의장	정 례 회	○제74회 제1차 정례회	
7. 7(수) 13:30	북구문예회관	개 강 식	○북구 주민자치대학 개강	
7. 7(수) 18:00	해송복집	간 담 회	○전·현직 의원들과의 간담회	
7.12(월) 11:00	시의회	취 임 식	○제3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 취임식	
7.14(수) 13:00	북구청 야외공연장	글 짓 기	○제4회 효자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글짓기대회	
7.14(수) 18:30	효문동	간 담 회	○구청장과 의원과의 간담회	
7.19(월) 14:00	북구문예회관	기념행사	○제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7.19(월) 18:30	주전동	간 담 회	○현대자동차 임원과의 간담회	
7.20(화) 14:00	삼산동	간 담 회	○울산경실련 교육위원 간담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7.21(수) 18:00	호계동	간 담 회	○현대자동차 노조간부와의 간담회	
7.22(목) 15:00	상공회의소	발 대 식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발대식	
7.24(토) 10:00	무룡정	단합대회	○북구생체협 단합대회	
7.24(토) 14:00	울산시티병원	개 원 식	○울산시티병원 개원식	
7.27(화) 14:00	2층 대회의실	발 대 식	○사랑의 집 고쳐주기 발대식	
7.27(화) 18:30	롯데호텔	이.취임식	○국제라이온스클럽 355-1지구 총재 이.취임식	
7.28(수) 15:00	기적의도서관	개 관 식	○북구 기적의도서관 개관식	
7.29(목) 13:00	아진프라자	바 자 회	○농소3동 자율방범대 일일호프	
7.29(목) 18:00	당사동	간 담 회	○구·군의장단 협의회	
8.11(수) 11:00	신기경로당	준 공 식	○신기경로당 준공식	
8.12(목) 11:50	롯데호텔	간 담 회	○울산지역 혁신 간담회	
8.13(금) 14:00	의장실	간 담 회	○북구문화공간협의회 임원과의 간담회	
8.15(일) 10:00	울산문예회관	경 축 식	○8·15 광복절 경축식	
8.15(일) 10: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농소,강동,양정동 체육대회	

월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8.15(일) 10:00	울산문예회관	경 축 식	○8·15 광복절 경축식	
8.15(일) 10: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농소,강동,양정동 체육대회	
8.15(일) 11:30	북정공원	추 모 식	○박상진의사 추모식	
8.17(화) 10:00	민원접견실	자문위원회	○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 자문위원회	
8.18(수) 10:00	시청	걷기대회	○국가보안법 철폐 걷기대회	
8.18(수) 13:30	시의회	토 론 회	○고리원전추가건설관련 울산지역 국회의원 초청 토론회	
8.18(수) 19:30	북구청광장	문화행사	○통일 문화행사	
8.20(금) 10:00	울산문예회관	초 대 전	○전국예총 6대광역시 및 제주도 미술 작가 초대전	
8.20(금) 17:30	무주 등나무운동장	축 제	○무주 반딧불 축제 견학	
8.24(화) 10:00	울산대공원	도보행진	○고리핵발전소 추가건설 반대 도보 행진	
8.25(수) 15:00	의장실	간 담 회	○의원 간담회	
8.25(수) 16:00	지하 충무상황실	참 관	○을지연습 참관	
8.25(수) 21:00	지하 충무상황실	격려방문	○을지연습 상황실 격려 방문	
8.31(화) 15:30	롯데호텔	포 럼	○제1회 울산평화통일 포럼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9. 2(목) 13:00	마우나오션 리조트	세 미 나	○2004장애인의식교육 세미나 및 가족캠프	
9. 3(금) 14:00	효문동사무소	개 장 식	○효문동사무소 민원주차장 개장식	
9. 4(토) 13:00	중앙여중	체육대회	○광역일보사장기 배구대회	
9.10(금) 18:30	문수공원	기념행사	○울산문수국제양궁장 개장 기념행사	
9.14(화) 19:30	북구문예회관	예 술 제	○2004년 무룡예술 한마당	
9.15(수) 18:00	강북테니스장	개 장 식	○강북테니스장 개장식	
9.16(목) 10:00	시청	기 념 식	○2004 울산사회복지대회 기념식	
9.16(화) 14:00	문수컨벤션센터	지역회의	○제11기 민주평통자문위원 울산지역 회의	
9.18(토) 17:00	롯데백화점	캠 페 인	○국가보안법폐지 울산시민연대 1차 캠페인	
9.21(화) 11:00	청소년체육 활동장	전진대회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	
9.21(화) 15:00	시의회	워 크 샵	○기업의제 발굴을 위한 워크샵	
9.22(수) 13:00	북구청광장	글 짓 기	○제4회 효자송도선생 효사상고취 글짓기대회	
9.22(수) 19:30	울산문예회관	음 악 회	○ubc창사 7주년기념 푸른음악회	
9.23(목) 19:30	북구청야외 공연장	열린마당	○제4회 함께하는 열린마당	

월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9.24(금) 10:30	장애인 복지센터	위 문	○울산 장애인복지센터 위문	
10.1(금) 12:00	울주군	간 담 회	○구·군의장단 간담회	
10.1(금) 15:00	동천체육관	결 단 식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울산시 선수단 결단식	
10.3(일) 09:3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9회 화봉.연암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10.5(화) 11:00	울산화력 발전소	기 념 식	○제25회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	
10.5(화) 14:00	울산문예회관	전 시 회	○울산의 어제와 오늘 사진 전시회	
10.5(화) 15:00	시의회	공 청 회	○국립대학교 설립을 위한 시민공청회	
10.5(화) 19:00	문수월드컵 컨벤션	보 고 회	○제7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추진상황 보고회	
10.7(목) 18:30	문수체육공원	기념행사	○제4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10.9(토) 08:00	종하체육관	체육대회	○제7회 시민생활체육대회	
10.11(월) 10:30	의장실	간 담 회	○의원 간담회	
10.15(금) ~10.26(화) 〈12일간〉	본회의장	임 시 회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10.15(금) 11:00	북구청	가 요 제	○북구경로잔치 및 실버가요제	
10.15(금) 19:30	문수구장	콘 서 트	○2005 울산전국체전 성공기원 추억의 콘서트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16(토) 10:00	태연재활원	체육행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 체육행사	
10.17(일) 09:3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5회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10.17(일) 10:00	문수양궁장	체육대회	○제3회 울산지역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및 어울마당	
10.19(화) 11:00	울산대	개 막 식	○2004 국화전시회 개막식	
10.20(수) 11:00	문수월드컵 컨벤션	기념행사	○제33회 문화의 날 기념행사	
10.20(수) 16:30	울산대학교	환영행사	○제86회 전국체육대회 환영행사	
10.22(금) 10:00	화봉제1공원	개 장 식	○북구 나눔장터 개장식	
10.22(금) 11:00	농소2동	경로잔치	○농소2동 경로잔치	
10.22(금) 19:00	롯데호텔	간 담 회	○시장님과 구·군의장단과의 간담회	
10.23(토) 11:00	염포초교	위안잔치	○제8회 염포동 어르신 위안잔치	
10.24(일) 09:3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1회 북구청장기 축구대회	
10.24(일) 10:00	북구청광장	사생대회	○북구문화공간협의회 글짓기 사생대회	
10.24(일) 11:00	무룡정	궁도대회	○영남동해지구 초청 남녀궁도대회	
10.25(월) 14:00	현자문화회관	출 범 식	○사랑의 지팡이운동 염포·양정센터 출범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25(월) 16:00	3층 소회의실	보 고 회	○동대산 및 무룡산일원 보존방안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10.27(수) 14:00	2층대회의실	토 론 회	○재생가능 에너지보급 토론회	
10.27(수) 16:20	시청광장	환영행사	○제86회 전국체전 대회기 환영행사	
10.27(수) 17:00	현대백화점	보도사진전	○제3회 울산매일신문사 보도사진전	
10.28(목) 11:00	현자문화회관	기념행사	○양정동 경로의 달 기념행사	
10.29(금) 09:00	태화동축구장	기념행사	○제2회 울산자활 한마당	
10.29(금) 11:30	평창3차 노인정	개 관 식	○평창리비에르3차아파트 노인여가복지시설 개관식	
10.30(토) 09:00	문수양궁장	체육대회	○제1회 울산광역시 구·군 선출직 친선 축구대회	
10.30(토) 11:00	연암초	경로잔치	○효문동 경로잔치	
10.30(토) 14:00	북구청광장	백 일 장	○제1회 북구 청소년 충·효 백일장	
10.30(토) 14:30	남구청후생관	출 범 식	○울산광역시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조합 출범식	
10.30(토) 19:00	화봉사거리	문화축제	○2004년 노동문화축제	
10.31(일) 09:00	강북테니스장	체육대회	○제3회 북구생체회장배 테니스대회	
10.31(일) 10:00	현자문회회관	체육대회	○제4회 북구청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31(일) 12:30	현자문화회관	체육대회	○제5회 북구생체회장배 볼링대회	
11. 1(월) 15:00	시청대회의실	해 단 식	○전국체육대회 해단식	
11. 1(목) 19:00	울산문예회관	서 막 식	○제24회 울산예술제 서막식	
11. 2(화) 10:30	시의회	연 찬 회	○2004 하반기 의원 연찬회	
11. 2(화) 14:30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연찬대회	○대한적십자사 창립99주년 울산광역지사 연찬대회	
11. 4(목) 11:00	달천농공단지	개 소 식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소식	
11. 5(금) 11:00	화봉공원	바 자 회	○공명선거 바자회	
11. 6(토) 10:00	농소운동장	축 제	○제1회 북구 농·도 한마당 축제	
11. 6(토) 13:00	평창1차	어울림마당	○평창1차 주민 어울림 마당	
11. 6(토) 16:00	북구문예회관	콘 서 트	○사랑과 감동 그리고 희망 콘서트	
11. 7(일) 11:00	농소중	전진대회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한마음 전진대회	
11. 8(월) 13:00	의장실	간 담 회	○염포경로당 어르신들과의 간담회	
11. 8(월) 18:00	어전마을	간 담 회	○의원 간담회	
11.12(금) 10:00	남구청	기금조성	○2006 장애인전국체전 성공개최 기금조성을 위한 일일호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12(금) 11:00	의장실	간 담 회	○7765부대 2대대장과의 간담회	
11.12(금) 11:00	강동초	경로잔치	○강동동 경로위안잔치	
11.12(금) 12:30	효문공원	단합대회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11.13(토) 09:30	문수구장	체육대회	○제4회 경상일보사배 울산한마음 축구대회	
11.14(일) 09:30	문수국 제양궁장	체육대회	○제3회 울산통일축구대회	
11.14(일) 10:00	농소중	체육대회	○제5회 북구청장배 생활체육 족구대회	
11.14(일) 11:00	호계초	체육대회	○제3회 북구생체협의회장배 배구대회	
11.15(월) 11:00	의장실	간 담 회	○의원 간담회	
11.16(화) 11:00	민원접견실	정 례 회	○민주평통 자문회의 11월 정례회	
11.18(목) 10:00	울산충의사	추향대제	○울산충의사 추향대제	
11.18(목) 14:00	화봉동	바 자 회	○효문동 통정회 불우이웃돕기 일일 호프	
11.19(금) 10:00	울산지방 경찰청	준 공 식	○울산지방경찰청 신청사 준공식	
11.19(금) 14:00	2층 대회의실	창립대회	○아파트연합회 북구지회 창립대회	
11.19(금) 18:30	문수컨벤션 센터	세 미 나	○민주평통 광주·울산지역 교류 및 통일정세 세미나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20(토) 10:30	호계초	증진대회	○제6회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11.21(일) 10:30	무룡산 매봉재	체육대회	○제1회 구민한마음 산악걷기 및 북구청장배 산악마라톤대회	
11.22(월) 14:00	울산문예회관	발 대 식	○북녘어린이에게 사랑의 우유보내기 운동 발대식	
11.23(화) ~11.24(수) 〈2일간〉	본회의장	임 시 회	○제77회 임시회	
11.23(화) 15:00	매곡지방 산업단지	기 공 식	○울산 자동차기술센터 기공식	
11.24(수) 10:30	근로자 복지회관	정기총회	○울산광역시청 노동조합 제8년차 정기총회	
11.24(수) 18:00	현자문회회관	정기공연	○제5회 북구 풍물연합회 정기공연	
11.25(목) ~12.18(토) 〈24일간〉	본회의장	정 례 회	○제78회 제2차 정례회	
11.25(목) 18:30	목화예식장	후원의 밤	○울산참여연대 후원의 밤	
11.26(금) 18:30	성내경로당	만남의 날	○염포동 주민만남의 날	
12. 2(목) 19:00	문화예술센터	개 소 식	○문화예술센터 "결" 개소식	
12. 3(금) 14:00	성남동	개 소 식	○울산 노인대학 예방센터 개소식	
12. 4(토) 19:00	북구문예회관	가 요 제	○2004년 무룡가요제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2. 6(월) 13:30	북구문예회관	대 회	○2004년 북구 자원봉사자 대회	
12. 6(월) 19:00	2층 대회의실	기념식	○북울산JC창립 제14주년 기념식 및 이·취임식	
12. 7(화) 10:00	동축산 팔각정	준공식	○염포개항 기념공원 준공식	
12. 7(화) 17:30	롯데호텔	기념식	○e 조은뉴스 창간 4주년 기념식	
12. 8(수) 13:00	북구문예회관	수료식	○제2기 북구 주민자치대학 수료식	
12. 9(목) 11:00	농업기술센터	기념식	○울산광역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12. 9(목) 14:00	시교육청	학술대회	○고헌 박상진의사 독립운동사 재조명 학술대회	
12. 9(목) 17:00	평창2차	바자회	○평창리비에르2차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및 바자회 먹거리	
12.10(금) 10:00	종하체육관	경로위안잔치	○호국선열 위령제 및 경로위안잔치	
12.10(금) 15:00	상수도사업본부	심포지엄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수도정책수립을 위한 심포지엄	
12.15(수) 18:00	현자문회회관	발표회	○현자노조 가족문화교실 발표회	
12.16(목) 18:30	문수컨벤션센터	총 회	○울산광역시 가정보육시설 총회	
12.16(목) 19:00	롯데호텔	이.취임식	○울산JC전역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	
12.16(목) 19:00	북구문예회관	발표회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의 집 작품발표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2.17(금) 12:00	호계동	경로 위안행사	○2004 연말 고령회원 경로위안행사	
12.17(금) 16:00	시의사당	조 인 식	○강동권 개발을 위한 개발방안발표 및 기본협약체결 조인식	
12.18(토) 10:30	농소미곡종합 처리장	준 공 식	○농소농협 정부양곡 창고 및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준공식	
12.20(월) 10:00	농소지구대	준 공 식	○농소지구대 신축 준공식	
12.20(월) 11:30	무룡산	단합대회	○의원 및 직원 산행	
12.21(화) 18:30	롯데호텔	시 상 식	○울산체육인 단합대회 및 체육상 시상식	
12.22(수) 11:00	롯데호텔	포 럼	○제2회 울산평화 포럼	
12.22(수) 19:00	마산시	이.취임식	○울산경남지구 JC 회장단 이.취임식	
12.23(목) 18:00	2층 대회의실	시 상 식	○2004 생활체육 유공자 시상식 및 송년의 밤	
12.29(수) 12:00	동해농장	간 담 회	○구청장과의 간담회	

제5절 의정활동일지

2005년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 1(토) 06:30	강동산하해변	해맞이축제	○2005년 정자해변 해맞이축제	
1. 7(금) 11:00	2층 대회의실	신 년 회	○신년인사회	
1.14(금) 11:00	울산가족문화센터	신 년 회	○2005년 울산광역시 여성 신년 교류회	
1.15(토) 19:00	이화체육관	신 년 회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북구지부 신년회 및 지부장 이·취임식	
1.18(화) 10:00	염포성내마을	간담회	○염포도로통행체계관련 회의	
1.18(화) 11:00	농소농협 대회의실	이·취임식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장 이·취임식	
1.20(목) 16:30	의장실	전 달 식	○특별적십자회비 전달	
1.21(금) 10:00	농소농협 3층대강당	정기총회	○농소농협 제36회 정기총회	
1.21(금) 14:00	시 문예회관	개 막 식	○북녘작가 울산미술대전 개막식	
1.21(금) 19:30	현자문화회관	정기연주회	○제8회 현대자동차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	
1.26(수) 18:30	울주군청	협의회	○구·군의장단 협의회	
1.28(월) 11:00	보훈회관2층	정기총회	○6.25참전 유공자회 북구지회 2005년 정기총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2. 2(수) 11:00	3층 소회의실	정 례 회	○민주평통북구자문위원회 2월 정례회	
2. 2(수) 15:00	시 교통관리센터	준 공 식	○울산광역시지능형교통체계구축 준공식	
2.18(금) ~2. 28(월) 〈11일간〉	의 사 당	임 시 회	○제80회 북구의회 임시회	
2.23(수) 16:50	신 천 천	달맞이축제	○2005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2.26(토) 19:00	현자문화회관	체육대회	○2005년 전국연합회장배 남·녀볼링 대회	
3. 1(화) 10:00	시 문예회관	기 념 식	○제86주년 3·1절 기념행사	
3. 3(목) 10:30	동광노인대학	개 강 식	○동광노인대학 1학기 개강식	
3. 6(일) 19:00	대영교회	기 도 회	○3·1절기념 구국 기도회	
3. 7(월) 11:00	의 장 실	간 담 회	○의원 간담회	
3. 8(화) 11:00	시 의사당	정기총회	○자연보호울산광역시협의회 정기총회	
3. 8(화) 15:00	롯데호텔	창립총회	○제86회 전국체전 조직위원회 창립 총회	
3.10(목) 14:00	북구문예회관	개 강 식	○제3기 북구주민자치대학 개강식	
3.11(금) 18:30	북구문예회관	전 시 회	○곽영화의 그림 플러스전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3.16(수) 18:00	동 구	간 담 회	○구·군 의장단 협의회	
3.17(목) 11:00	염포 성내경로당	현 판 식	○경로당 현판식 및 어울림 한마당	
3.17(목) 14:30	2층 대회의실	정기총회	○한국음식업중앙회울산지부 정기총회	
3.18(금) 16:00	염포마을 공동주차장	기 원 제	○염포동마을공동 주차장 기원제	
3.19(토) 10:00	동대산 임도	기 념 식	○제60회 나무심기 주간행사	
3.20(일) 09:00	강북테니스장	체육대회	○제8회 연합회장배 테니스대회	
3.22(화) 14:00	시청프레스 센터	기자회견	○원전추가건설 반대 기자회견	
3.22(화) 19:00	문수컨벤션 센터	후원의 밤	○울산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3.24(목) 10:00	의 장 실	간 담 회	○구로구 의회 내방	
3.25(금) 11:30	3층 소회의실	간 담 회	○기관·단체장 간담회	
3.25(금) 18:30	올림피아호텔	기 념 회	○울산예총 30년사 출판기념회 및 회장 이·취임식	
3.30(수) ~3.31(목) 〈2일간〉	본회의장	임 시 회	○제81회 임시회	
3.30(수) 11:00	의 장 실	간 담 회	○의원간담회	
3.30(수) 13:30	의 장 실	설 명 회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3.30(수) 19:00	2층 대회의실	창립총회	○울산교육문화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	
4. 2(토) 11:00	매곡 배드민턴장	창 단 식	○매곡배드민턴클럽 창단식 및 회장배 대회	
4. 3(일) 08: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북구OB 4개팀 축구대회	
4. 3(일) 10:00	강동구장	체육대회	○화봉·연암·강동연합회 축구대회	
4. 5(화) 11:00	호 봉 사	위 령 제	○농소6.25전몰군경 유족회 합동 위령제	
4. 7(목) 10:20	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원전추가건설반대관련 기자회견	
4. 9(토) 09:50	현자 3공장 잔디구장	체육대회	○통합사업부 춘계연합 축구대회	
4.10(일) 09:00	문수구장	체육대회	○제2회 울산매일 마라톤대회	
4.12(화) 12:00	식 당	정례회의	○민주평통북구협의회 4월 정례회의	
4.12(화) 19:00	성원상떼빌 노인정	주민 만남의날	○구청장과 주민만남의 날(염포동)	
4.13(수) 14:00	시청 프레스센터	시민설명회	○지방의제21 시민설명회	
4.13(수) 15:00	강동구장	축구대회	○시·구의원 친선 축구대회	
4.15(금) 14:00	2층 대회의실	세 미 나	○기박산성의병축제 학술세미나	
4.16(토) 11:00	성원쌍떼빌	개 소 식	○성원쌍데빌 노인정 개소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4.17(일) 10:00	농소중학교	체육대회	○제6회 북구족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	
4.17(일) 10:00	천곡초 체육관	체육대회	○제2회 북구청장기 배구대회	
4.17(일) 11:00	농소초 체육관	체육대회	○현대자동차 곰두리회주관 경로잔치	
4.18(월) 11:00	3층 소회의실	위 원 회	○쇠부리축제추진위원 1차 회의	
4.19(화) ~4.21(목) 〈3일간〉	청주시 등	견 학	○선진지 견학	
4.22(금) 17:00	3층 소회의실	월 례 회	○무룡회 4월 정례회	
4.23(토) 11:00	동대산 기령고개	축 제	○기박산성의병축제	
4.24(일) 09:00	농소테니스장	체육대회	○제8회 북구청장배 테니스대회	
4.24(일) 10: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농소3동 한마음 체육대회	
4.24(일) 10:30	호계초	체육대회	○제5회 북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4.24(일) 11:00	무룡정	체육대회	○제5회 북구청장기 남녀궁도대회	
4.24(일) 12:00	금강볼링장	체육대회	○제6회 북구청장기 볼링대회	
4.29(금) 17:00	문수월드컵 컨벤션	기념행사	○광역일보 창립 7주년 기념행사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4.30(토) 09:00	승용3공장 잔디밭	체육대회	○제1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 및 마라톤대회	
5. 2(월) 10:30	2층 대회의실	발 대 식	○북구생체협 주부자원봉사단 발대식	
5. 3(화) 11:00	구청 서편입구	페스티발	○제1회 울산북구 큰기쁨 꽃 페스티발	
5. 3(화) 11:00	연암중	개 교 식	○연암중 개교식	
5. 3(화) 14:00	의 장 실	간 담 회	○강북교육청 관계자 내방	
5. 4(수) 11:00	국 회	방 문	○핵발전소 추가건설반대지원관련 국회방문	
5. 4(수) 17:30	LG진로아파트	먹거리장터	○LG진로아파트 먹거리장터	
5. 5(목) 09:30	북구청	축 제	○제9회 어린이날 큰잔치	
5. 6(금) 11:00	구청장실	간 담 회	○울산급식연대 간담회	
5. 6(금) 12:00	봉화장수촌	위안잔치	○LG진로아파트 경로위안잔치	
5. 6(금) 18:00	강 동	간 담 회	○구·군 의장단협의회 간담회	
5. 7(토) 09:3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직원한마음체육대회	
5. 7(토) 12:00	농소중학교	효도잔치	○농소1동 어버이날 효도큰잔치	
5.10(화) 12:00	강 동	간 담 회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5.10(화) 18:00	2층대회의실	보 고 회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5.12(목) 11:00	롯데호텔	정기총회	○건설협회 울산광역시 정기총회	
5.13(금) 11:00	의 장 실	간 담 회	○(사)장수마을 관계자 내방	
5.14(토) 15:00	북구 사회복지회관	창립대회	○울산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연합회 창립대회	
5.16(월) 16:00	문수국제 양궁장	개 막 식	○제6회 코리아 국제양궁대회 개막식	
5.18(수) 14:00	미포구장	축구대회	○민주평통자문회의북구협의회 통일염원축구대회	
5.19(목) ~5.27(금) 〈9일간〉	본회의장	임 시 회	○제82회 북구의회 임시회	
5.20(금) 12:00	화봉제1공원	단합대회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5.22(일) 07:00	약 수 초	체육대회	○제7회 구민화합 건강달리기대회	
5.22(일) 09:00	연 암 초	체육대회	○제5회 효문동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5.22(일) 10:3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14회 농소지구아파트 생활체육 연합체육대회	
5.23(월) 18:00	롯데호텔	기 념 회	○"경남은행과 함께하는울산"출판기념회	
5.24(화) 19:00	울산교육 수련원	이·취임식	○울산동해라이온스클럽이.취임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5.25(수) 10:10	대로탕5층	입 학 식	○제5기 무룡탑 주부대학 입학식	
5.27(금) 10:1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1회 북구생체회장배 게이트볼대회	
5.27(금) 11:30	의 장 실	위촉장수여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5.27(금) 12:00	화봉제1공원	나눔장터	○북구나눔장터	
5.28(토) 19:00	북구문예회관	페스티벌	○2005 북구청소년 뮤티 페스티벌	
6. 2(목) 16:00	강동 산하해변	방류행사	○바다의 날 기념 수산종묘 방류행사	
6. 2(목) 17:30	3층소회의실	월 례 회	○북구무룡회 6월 월례회	
6. 3(금) 11:00	2층대회의실	설 명 회	○제1회 쇠부리문화축제 설명회	
6. 3(금) 14:00	덕양산업	제 막 식	○연암동 백연암바위 현판 제막식	
6. 3(금) 19:00	2층대회의실	발 대 식	○통일축구대회 조직위 발대식	
6. 4(토) 09:30	현자3공장 잔디구장	축구대회	○현대자동차축구중앙연합회 춘계축구대회	
6. 4(토) 11:00	양 정 초	명예교사제	○1일 명예교사제(유인목)	
6. 8(수) 10:00	현대자동차	체 결 식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약정 체결식	
6. 8(수) 14:00	7765부대	이,취임식	○7765부대 2대대장 이,취임식	
6. 9(목) 14:00	중소기업 지원센터	심포지엄	○풍요로운 강동권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일시	장소	행사명	내용	비고
6. 9(목) 18:00	문수컨벤션 센터	시 상 식	○오영수 문학상 시상식	
6.10(금) 18:30	구청광장	축 제	○제1회 울산쇠부리문화축제	
6.13(월) 13:00	경주시의회	전 달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유치철회 질의서 전달	
6.19(일) 07:30	남구 달동공원	체육대회	○울산 고래마라톤 대회	
6.20(월) 11:00	약수초	명예교사	○1일 명예교사(김재근)	
6.21(화) 11:00	곡리경로당	준 공 식	○송정동 곡리경로당 준공식	
6.22(수) 11:00	보건소	평 가 회	○태연학교 구강보건실운영 평가회	
6.22(수) 13:00	2층 대회의실	글 짓 기	○효자송도선생 효사상고취 글짓기대회	
6.23(목) 15:00	3층 소회의실	보 고 회	○제1회 울산쇠부리문화축제 평가보고회	
6.24(금) 10:00	김기순회장댁	실 습 회	○생활개선북구협의회주관 천연염색 실습	
6.24(금) 11:00	농소농협3층	수 료 식	○제15기 농소농협 주부대학 수료식	
6.25(토) 09:30	현자3공장 잔디구장	체육대회	○현자사원가족 건강 마라톤대회	
6.29(수) 10: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1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장배 게이트볼대회	
6.30(목) 18:00	평창 리비에르3차	개 관 식	○평창리비에르3차 도서관 개관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7. 1(금) ~7.15(금) 〈15일간〉	본회의장	정 례 회	○제83회 제1차 정례회	
7. 5(화) 14:00	북구문예회관	기 념 식	○제10회 북구여성주간행사	
7. 8(금) 18:00	울주군청	간 담 회	○구·군 의장단 협의회	
7.10(일) 09:30	양정생활 체육공원	개 장 식	○양정생활체육공원 개장식 및 북구청장배 축구대회	
7.18(월) 14:00	울산장애인 체육관	개 관 식	○울산장애인 체육관 개관식	
7.18(월) 17:30	3층소회의실	정 례 회	○무룡회 8월 정례회	
7.18(월) 20:00	2층대회의실	예산교육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예산교육	
7.19(화) 15:00	울산장애인 체육관	이.취임식	○(사)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각 구.군지회장 이.취임식	
7.19(화) 18:30	현대백화점	사 진 전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7.23(토) 10:00	양정생활 체육공원	체육대회	○구청출입기자들과의 친선축구	
7.26(화) 11:00	의 장 실	간 담 회	○매곡진입로 공사관련 주민내방	
7.28(목) 12:00	연 암 동	간 담 회	○조승수의원과의 간담회	
7.28(목) 14:00	2층대회의실	결의대회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배제 관련 토론회 및 결의대회	
7.28(목) 14:30	기적의도서관	기 념 식	○기적의도서관첫돌기념 및 북스타트 행사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7.29(금) 17:00	서생복지 체육공원	대 회	○제6회 울산광역시 농업경영인대회	
7.30(토) 19:00	정자해변	축 제	○제3회 정자해변영화축제	
8.15(월) 10:00	시 문예회관	기 념 식	○광복60주년 경축행사	
8.15(월) 10: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농소1동 통대항 동민단합 체육대회	
8.15(월) 10:00	농소고	체육대회	○농소3동 체육회장기 축구대회	
8.15(월) 10:00	강동초	체육대회	○제44회 강동동민 체육대회	
8.15(월) 10:00	양정생활 체육공원	체육대회	○양정·염포 친선축구대회	
8.15(월) 10:30	약수초	체육대회	○농소2동 체육대회	
8.18(목) 10:00	3층소회의실	설 명 회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설명회	
8.18(목) 18:30	선돌횟집	간 담 회	○영농단체장들과의 간담회	
8.19(금) 10:00	시청대회의실	토 론 회	○한국석유화학산업관련 정책토론회	
8.23(화) 10:00	의 장 실	간 담 회	○의원 간담회	
8.23(화) 15:00	지하충무상황 실	참 관	○2005을지연습 참관	
8.24(수) 10:30	경남은행 6층회의실	강 좌	○환경이야기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8.26(금) 18:00	동천강둔치	경로잔치	○농소2동 경로잔치 및 한마음축제	
8.29(월) 11:00	3층소회의실	출 범 식	○평통자문회의 12기 출범식 및 1차 정례회의	
8.30(화) 14:00	중산동음식물 자원화시설	준 공 식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식	
8.30(화) 18:00	중 구	간 담 회	○구·군의장단 협의회	
8.31(수) 18:00	화봉동	이.취임식	○송정동 생활체육협의회장 이.취임식	
9. 2(금) 14:00	의장실	간 담 회	○옥외광고협회 관계자 내방	
9. 5(월) ~9. 6(화) 〈1일간〉	본회의장	임 시 회	○제84회 북구의회 임시회	
9. 5(월) 11:00	양정생활 체육공원	전진대회	○2005북구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전진 대회	
9. 5(월) 14:00	종합사회 복지회관	개 소 식	○북구IT플라자 개소식	
9. 5(월) 19:30	북구문예회관	예 술 제	○북구 무룡예술제	
9. 9(금) 07:30	천곡초	캠 페 인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 기초질서 지키기캠페인	
9.10(토) 10:00	연암동	발 대 식	○쇠부리보존회 발대식	
9.14(수) 10:00	종하체육관	결 단 식	○제86회 전국체육대회 울산선수단 필승다짐대회 및 선수단 결단식	
9.15(목) 10:30	민원접견실	교 육	○선거법관련 교육	

일시	장소	행사명	내용	비고
9.15(목) 14:00	경주시청	기자회견	○경주시방폐장 유치 반대 기자회견	
9.24(토) 09: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6회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9.26(월) 10:00	소회의실	간 담 회	○의원 간담회	
9.26(월) 10:30	2대대 본관	방 문	○무룡회 7765부대 2대대 방문	
9.27(화) 16:00	북구체험환경 교육관	심포지엄	○태양광시민발전소 설립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9.28(수) 10:3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북구장애인 체육행사	
9.28(수) 16:00	방어진수질 개선사업소	준 공 식	○방어진수질개선 사업소 준공식	
9.29(목) 14:00	구청광장	축 제	○제2회 북구민 건강 한마당	
9.30(금) 15:00	농소3동도서관	개관식	○농소3동도서관 개관식	
9.30(금) 19:00	문수컨벤션 센터	보 고 회	○제8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추진상황 보고회 및 우승기 반환	
10.4(화) 10:30	3층소회의실	보 고 회	○북구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1차 중간보고회	
10.4(화) 18:00	이화한정식	간 담 회	○구·군의장단 협의회 간담회	
10.5(수) 09:00	대구BEXO	박 람 회	○대한민국지역 혁신 박람회	
10.5(수) 17:00	LG진로아파트	먹거리장터	○LG진로아파트 먹거리장터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6(목) ~10.7(금) 〈2일간〉	지리산	연 수	○하반기 의원 연수	
10.12(수) 09:50	시청광장	출 발 식	○전국체육대회 성화합화 및 성화봉송 출발대회	
10.12(수) 16:00	성내삼거리	성화봉송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10.12(수) 16:30	북구청광장	안치행사	○전국체전성화안치식 및 함께하는 열린마당	
10.13(목) 09:00	경남은행 명촌지점	개 점 식	○경남은행 명촌지점 개점식	
10.14(금) 18:00	울산 종합운동장	개 회 식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10.15(토) 18:00	체육공원 호반광장	개 막 식	○시민의날 기념식 및 처용문화제 개막식	
10.16(일) 19:30	북구문예회관	개 막 식	○2005국제클라운마임축제	
10.17(월) 13:30	마우나오션	세 미 나	○2005장애인의식교육세미나 및 가족캠프	
10.19(수) 10:30	북구어르신 복지회관	축 제	○제1회 어울림 은빛축제	
10.20(목) 18:00	울산종합 운동장	폐 회 식	○전국체육대회 폐회식	
10.23(일) 10:00	무룡고	체육대회	○제1회 북구생체회장배 족구대회	
10.23(일) 11:00	현자문화회관	체육대회	○제5회 북구생체회장배 탁구대회	
10.23(일) 14:30	현자문화회관	체육대회	○제6회 북구생체회장배 볼링대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24(월) ~10.28(금) 〈5일간〉	본회의장	임 시 회	○제85회 북구의회 임시회	
10.27(목) 11:00	문수컨벤션 센터	기 념 식	○제34회 문화의 날 기념식	
10.28(금) 10: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5회 북구청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10.28(금) 11:00	아산 스포츠센터	준 공 식	○아산스포츠센터 준공식	
10.29(토) 10:00	울산대공원	축 제	○울산배 축제	
10.29(토) 11:00	연암초	경로잔치	○효문동 경로잔치	
10.29(토) 14:00	북구청광장	글 짓 기	○제2회 북구청소년 충·효 백일장	
10.29(토) 15:00	시의회 대강당	창립기념식	○울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창립1주년 기념식	
10.31(월) 14:00	2층 대회의실	보 고 회	○통합방위 지방회의 및 방위태세점검 결과보고회	
11. 1(화) 19:00	울산문예회관	개 막 식	○제25회 울산예술제 서막식	
11. 1(화) 19:30	북구문예회관	개 막 식	○2005 함께하는 북구아카데미	
11. 2(수) 18:00	세종문화회관	출 범 식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식	
11. 2(수) 19:30	북구문예회관	발 표 회	○2005 함께하는 아카데미 작품 발표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 3(목) 14:00	의 장 실	간 담 회	○북울산청년회의소 회장단 내방	
11. 4(금) 11:00	2층대회의실	시 상 식	○민주평통자문회의11월 정례회 및 통일염원글짓기대회 시상식	
11. 4(금) 15:00	가족문화센터	심포지엄	○방과후 공부방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향상방안 심포지엄	
11. 5(토) 09:30	미포구장	축구대회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선출직 친선 축구대회	
11. 5(토) 10:00	화봉제1공원	기념행사	○북구자원봉사자대회 및 무룡산 산행	
11. 5(토) 16:00	북구청광장	개 막 식	○2005 노동문화제	
11. 7(월) 15:00	동천체육관	해 단 식	○제86회 전국체육대회 울산시선수단 해단식	
11. 8(화) 14:00	3층소회의실	회 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11. 9(수) 15:00	3층소회의실	심 의 회	○지방재정계획 심의회	
11.10(목) 11:00	문수체육공원	개 막 식	○제8회 울산광역시 농업인대회	
11.10(목) 19:30	삼산컨벤션 웨딩홀	후원의 밤	○북녘국수공장 건립 후원의 밤	
11.11(금) 11:00	강동초	경로잔치	○강동동 경로잔치	
11.13(일) 10:00	천곡초 실내체육관	체육대회	○제4회 북구생체회장배 동 대항 배구 대회	
11.15(화) 19:00	북구문예회관	발 표 회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16(수) 11: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회원대회	○2005전국바르게살기 회원대회	
11.17(목) 19:00	북구문예회관	작품발표회	○2005차돌이가족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11.18(금) 10:30	무룡산 매봉재	기념행사	○2005년 육림의 날 행사	
11.22(화) 10:00	울산대공원	준 공 식	○울산대종 준공식	
11.22(화) 15:00	문수컨벤션센터	심포지엄	○2005 통일정세 심포지엄	
11.22(화) 18:00	현대백화점	사 진 전	○제4회 울산매일신문사 보도사진전	
11.24(목) 11:00	경동도시가스	준 공 식	○경동도시가스 태양광발전 시스템 준공행사	
11.25(금) ~12.27(화) 〈33일간〉	본회의장	정 례 회	○제86회 북구의회 2차 정례회	
11.26(토) 10:30	호계초	대 회	○제7회 지체장애인 복지증진대회	
11.27(일) 11:30	무룡산 매봉재	체육대회	○제2회 구민한마음 산악걷기대회 및 산악마라톤대회	
11.29(화) 15:00	장애인 복지센터	개 소 식	○어울림작업활동 개소식	
11.30(수) 09:30	북구청광장	지도자대회	○2005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여	
12. 2(금) 11:00	북구보훈회관	위 로 연	○2005년 북구보훈가족 위로연	
12. 7(수) 13:30	당사경로당	준 공 식	○당사경로당 준공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2. 7(수) 14:00	북구문예회관	수 료 식	○제3기 북구주민자치대학 수료식	
12. 8(목) 11:00	울산근로 복지회관	정기총회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창립 제9년차 정기총회	
12. 9(금) 12:00	소구루마	위로연	○2005년 연말고령회원 경로위로연	
12.13(화) 09:00	보건소 지하주차장	행 사	○김장담그기 행사	
12.13(화) 14:00	시청대회의실	대 회	○2005년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자 대회	
12.14(수) 10:00	어르신 복지회관	종 강 식	○2005 어르신 행복대학 종강식 및 송년대회	
12.15(목) 08:40	지팝프라자 1층	개 점 식	○농협중앙회달천지점 개점식	
12.15(목) 10:00	종하체육관	강 연 회	○나라사랑 안보결의대회 및 시국 강연회	
12.16(금) 11:00	2층대회의실	기념행사	○아파트연합회북구지회 창립기념식	
12.17(토) 15:30	강동농협	송 년 회	○해병전우회 북구지회 회장취임식 및 송년회	
12.21(수) 18:00	2층대회의실	송 년 회	○연말체육유공자 표창 및 체육인의 밤	
12.26(월) 13:00	시 문예회관	음 악 회	○울산광역시 장애인 음악회	
12.27(화) 10:30	민원접견실	종 무 식	○북구의회 종무식	
12.28(수) 19:30	북구문예회관	연 주 회	○제2회 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제6절 의정활동일지

2006년도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4(수) 14:00	3층소회의실	기자회견	○국립대 유치 관련 기자회견	
1.13(금) 18:00	북구문예회관	기 념 식	○제 1회 여성문화의 밤	
1.17(화) 15:30	양 정 동	개 통 식	○오토밸리로 1공구(산업로배면도로) 개통식	
1.19(목) 18:00	3층소회의실	신 년 회	○북구 무룡회 신년회	
1.24(화) 10:30	2층대회의실	회원한마당	○2006 북구문화공간협의회 회원한마당	
1.24(화) 1:00	보훈회관 2층	정기총회	○6.25 참전유공자회북구지회 정기총회	
1.24(화) 13:30	의장실	전 달 식	○적십자특별회비 전달식	
2.10(일) 10:00	의사당	임 시 회	○제 87회 북구의회 임시회 (2.10~2.22)	
2.12(일) 17:50	신천천	축 제	○2006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2.22(수) 1:00	의장실	간 담 회	○북구아파트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2.22(수) 14:00	2층대회의실	이.취임식	○새마을지도자 북구협의회장 및 북구 새마을 부녀회장 이 · 취임식	
2.22(수) 18:00	3층소회의실	월 례 회	○ 북구 무룡회 월례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2.22(수) 19:00	삼산컨벤션 웨딩	발 족 식	○북녘국수공장 사업본부 발족식	
2.23(목) 14:00	시 의사당	보 고 회	○2006 울산사랑운동추진계획 보고회	
2.23(목) 15:00	3층소회의실	보 고 회	○북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3.1(수) 10:00	시 문예회관	기념행사	○제 87주년 3·1절 기념행사	
3.6(월) 15:00	민원접견실	간 담 회	○양정동 송전탑 관련 간담회	
3.17(금) 15:00	2층대회의실	정기총회	○한국음식업 중앙회 북구 지부 제 10회 정기총회	
3.18(토) 10:00	북구지회 다목적실	정기총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2006년도 정기총회	
3.23(목) ~ 24	청주시외 1	벤치마킹	○선진 문화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	
3.23(목) 14:00	3층소회의실	위 원 회	○울산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3.25(토) 11:00	효문운동장	체육대회	○효문운동장 개장식 및 제13회 북구 축구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3.27(월) 10:30	강동농협2층	수 여 식	○제13회 유포장학회 장학금 및 장학 증서 수여식	
3.30(목) 11:30	문수월드컵 컨벤션	이.취임식	○울산광역시 새마을회 회장단 이·취임식	
3.31(금) 14:00	시의회 3층	토 론 회	○울산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토론회	
4.6(목) 11:00	전몰군경 충혼비	위 령 제	○제53회 농소 6·25 전몰군경 합동 위령제	

일시	장소	행사명	내용	비고
4.12(수) 10:30	농소농협 산지유통센터	기 원 제	○2006년 북구 배 풍년기원제	
4.13(목) 18:00	3층소회의실	월 례 회	○북구 무룡회 4월 월례회	
4.19(수) 10:00	울산교원 연수원	특 강	○신규공무원 교육(특강)	
4.22(토) 09:30	연암초등학교	체육대회	○제 4회 진실모 가족단합 체육대회	
4.24(월) 16:00	3층소회의실	위 원 회	○울산북구 의정비심의회 개최	
4.25(화) 15:00	문수월드컵 컨벤션센터	창립총회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 2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창립총회	
4.26(수) 10:30	의장실	간 담 회	○공동주택 관련 간담회	
4.29(토) 11:00	당사동 방파제	이.취임식	○한국해양구조단 울산지역대 제 5대 지역대장 이. 취임식	
5.2(화)	의사당	임 시 회	○제 88회 북구의회 임시회	
5.5(금) 09:30	구청광장	기념행사	○제 10회 어린이날 행사	
5.10(수) 10:00	북구 사회복지관	경로잔치	○제 34회 어버이날 기념 효도 큰 잔치	
5.10(수) 10:30	울산정보통신 고등학교	준 공 식	○울산정보통신 고등학교 준공·이전식	
5.12(금) 09:00	가지산	단합대회	○춘계 직원 MT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5.13(토) 17:00	문예회관	경연대회	○2006 북구 청소년 댄스 & 가요 경연대회	
6.2(금) ~6.3(토)	전북 무주군	밴치마킹	○제10회 무주반딧불 축제 견학	
6.6(화) 09:50	현충탑광장	기념행사	○제51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6.7(수) 10:00	본회의장	임 시 회	○제89회 북구의회 임시회	
6.13(화) 17:00	민원접견실	상 견 례	○의원 당선자 상견례	
6.16(금) 19:00	구청 광장	개 막 식	○제2회 울산 쇠부리 문화축제 개막식	
6.26(월) 14:00	부산 메리어트 호텔	오리 엔테이션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6.28(수) 17:00	3층 소회의실	월 례 회	○북구 무룡회 월례회	

부 록

1. 역대의장단 명단
2. 초대의원 명단
3. 초대의원 사진
4. 제2대의원 명단
5. 제2대의원 사진
6. 제3대의원 명단
7.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97. 7. 15 이전)
8. 역대 구청장 명단
9.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10.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역대 의장단 명단

□ 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강 동 동	김 성 보	1937. 4. 4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8.7.7 ~2000.2.21	
〃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11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양 정 동	진 한 걸	1953.11.15	2000.7.7 ~2002.6.30	
제3대 전반기	송 정 동	김 진 영	1964.10.11	2002.7.9 ~2004.7.6	
제3대 후반기	염 포 동	하 인 규	1959. 9.17	2004.7.7 ~2006.6.30	

□ 부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11	1998.7.7 ~2000.2.21	
〃	양 정 동	진 한 걸	1953.11.15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강 동 동	박 광 식	1955.11.15	2000.7.7 ~2002.6.30	
제3대 전반기	농소2동	김 재 근	1958. 9.11	2002.7.9 ~2004.7.6	
제3대 후반기	농소1동	이 재 경	1956. 4.25	2004.7.7 ~2006.6.30	

초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강동동	김성보	1937. 4. 4	1997.7.15 ~1998.6.30	환경수도
2	부의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7.7.15 ~1998.6.30	교육사회
3	의 원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7.7.15 ~1998.6.30	운영·건설
4	의 원	농소동	한성두	1941. 3.31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5	의 원	농소·강동 (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7.7.15 ~1998.6.30	운영·내무
6	의 원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7.7.15 ~1998.6.30	내무위원장
7	의 원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간사)·운영
8	의 원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8.3.2 ~1998.6.30	환경수도 (간사)·운영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

초대의원 사진

□ 의장단

강 동 동(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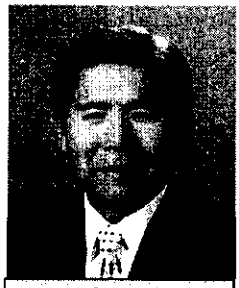

의장 김 성 보

송 정 동

부의장 윤 두 환

□ 의 원

제10선거구

농 소 동(읍)

진 장 동

이 상 원

한 성 두

정 석 수

효 문 동

양 정 동

염 포 동

이 병 우

진 한 걸

조 승 수

제2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8.7.1 ~2000.2.21	전반기
2	〃	농소3동	박춘환	1952. 1.11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 및 의장(보궐)
3	〃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보궐) 및 후반기 의장
4	부의장	강동동	박광식	1955.11.15	1998.7.1 ~2002.6.30	
5	의 원	농소1동	김수헌	1957.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6	〃	농소2동	강혁진	1961.10. 1	1998.7.1 ~2002.6.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1998.7.1 ~2002.6.30	
8	〃	송정동	김진영	1964.10.11	2000.6.8 ~2002.6.30	보궐선거 당선
9	〃	염포동	윤종오	1963. 8.14	1998.7.1 ~2002.6.30	후반기 운영위원장

제2대의원 사진

□ 의장단

송 정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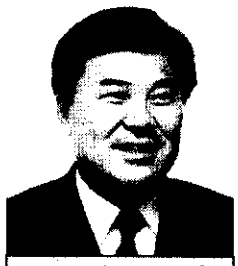

의장 윤 두 환

농소3동

의장 박 춘 환

양 정 동

의장 진 한 걸

강 동 동

부의장 박 광 식

□ 의 원

농 소 1 동

김 수 헌

농 소 2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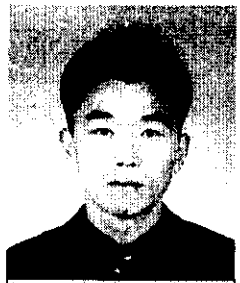

강 혁 진

효 문 동

류 재 건

송 정 동

김 진 영

염 포 동

윤 종 오

제3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김진영	1964.10.11	2002.7.1 ~2006.6.30	전반기 의장
2	〃	염포동	하인규	1959. 9.17	2002.7.1 ~2006.6.30	후반기 의장
3	부의장	농소2동	김재근	1958. 9.11	2002.7.1 ~2006.6.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1동	이재경	1956. 4.25	2002.7.1 ~2006.6.30	후반기 부의장
5	〃	농소3동	김대영	1960. 2. 2	2002.7.1 ~2006.4.10	후반기 운영위원장
6	〃	강동동	윤임지	1952.10.15	2002.7.1 ~2006.6.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2002.7.1 ~2006.6.30	
8	〃	양정동	류인목	1961.12.30	2002.7.1 ~2006.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97.7.15 이전)

연번	직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원	울산시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5.7.1 ~1997.7.14	제5대 경남도의회의원 운영·내무위원
2	의장	울주군 농소읍	한성두	1941. 3.31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울주군의회의장 통합시의회 부의장
3	의원	울주군 강동면	김성보	1937. 4.4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원
4	〃	중 구 송정동	윤두환	1955. 3.5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교육사회위원
5	〃	중 구 진장동	김두헌	1936. 4.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원
6	〃	중 구 효문동	한기찬	1938. 4.3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건설위원
7	운 영 위원장	중 구 양정동	류재락	1945. 8.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위원장
8	의원	중 구 염포동	김춘길	1942. 10.10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
9	〃	중 구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건설위원
10	내 무 위원장	중 구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장
11	의 원	중 구 양정동	진한걸	1953. 11.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운영위원
12	〃	중 구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간사·운영위원

역대 구청장 명단

연 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직무대행	황 성 환	1948. 2.29	1997.7.15 ~1998.6.30	
2	민선초대	조 승 수	1963. 1.22	1998.7.1 ~ 2002.6.30	
3	민선제2대	이 상 범	1957. 4.15	2002.7.1 ~ 2006.5.24	
4	민선제3대	강 석 구	1960. 9.18	2006.7.1 ~ 현 재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연번	직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1	사무 국장	지 방 서 기 관	이종영	1939. 9.27	1997.7.15 ~1998.9.30	1998.10.1 구조조정으로 직제개편
2	사무 과장	지방행정 사 무 관	백용한	1946.12.30	1998.10.1 ~ 2001.1.15	〃
3	〃	〃	최종식	1952.10.20	2001.1.16 ~ 2004.3.5	
4	〃	〃	송태호	1955. 1.10	2004.3.6 ~ 2006.1.11	
5	〃	〃	이상헌	1955. 2. 6	2006.1.12 ~ 현 재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1	전문위원	지방행정 사 무 관	백용한	1946.12.30	1997.7.15 ~1998.9.30	
2	〃	〃	이차호	1960.10.26	1998.10.1 ~1999.9.30	
3	〃	〃	성낙화	1952. 5. 5	1999.10.1 ~ 2001.1.15	
4	〃	〃	김찬수	1955. 9.28	2001.1.16 ~ 2003.1.27	
5	〃	〃	이상찬	1971.12.25	2003.1.28 ~ 2006.1.8	
6	〃	〃	박민수	1957. 4.27	2006.1.12 ~ 현재	